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3



세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 | www.kipf.re.kr

93320
9 788981 319757
ISBN 978-89-8191-975-7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서 언

『주요국의 조세제도』 시리즈는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집필된 주요국의 조세제도는 조세제도 전반을 국가별로 다루었으며, 개별 국가의 조세제도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었다. 이번에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제도는 기존의 보고서와 달리, 세목별(소득세제, 소비세제, 법인세제, 재산세제 등)로 국가 간 조세제도가 비교 가능하도록 한 권에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다만, 세목별로 주요국의 조세제도를 단권에 담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목 내에서 제1권과 제2권, 분량이 많은 세목은 제3권까지 나누어서 집필한다.

대상 국가의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이번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다루게 될 첫 번째 세목은 전반적으로 연구 수요가 높은 소득세제이다. 주요국의 소득세제는 전체 3권으로 나누어서 발간될 예정이다. 제1권에서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를 개괄하여 독자들에게 주요국의 소득세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어서 제2권에서는 우리나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개별 소득의 유형을 다루어 독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3권에서는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및 국제조세와 관련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주요국의 소득세제 제1권에 해당하는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소득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독자들에게 최신 자료(2018~2019년도)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소득세 관련 통계와 제도 비교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조세제도 자체가 각국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는 최소한의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별 국가의 최신 내용을 포함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OECD의 홈페이지, 각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요 출판물 및 관련 법령정보를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권성오 부연구위원과 김무열 초빙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연구책임을 맡았다. 미국편은 세정연구센터 서희진 회계사, 영국편은 세정연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상명대 교수로 있는 김준현 교수와 그 뒤를 이어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훈 공인회계사가 집필하였다. 또한, 일본편은 세정연구센터에서 재정성과평가센터로 보직을 이동한 정경화 선임연구원, 호주편은 세정연구센터 김민경 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그리고 독일편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교수, 프랑스편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다.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과정 중에 있었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감수 및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교정과 편집 및 통계정리를 도맡아주고, 회의를 준비해준 박하얀 연구원과 권선정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19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제도 비교 ····· 3

Ⅰ. 소득세 과세체계 ····· 3
Ⅱ. 납세의무자 ····· 7
Ⅲ. 과세대상 소득 ····· 10
Ⅳ. 소득공제제도 ····· 15
Ⅴ. 소득세율 및 세액공제제도 ····· 19
Ⅵ. 신고·납부제도 ····· 26
Ⅶ. 국가별 시사점 ····· 31
1. 미국 ····· 31
2. 일본 ····· 31
3. 호주 ····· 32
4. 영국 ····· 33
5. 독일 ····· 34
6. 프랑스 ····· 34

제2장 OECD회원국의 소득세 통계 ····· 36

Ⅰ. 개인소득세 부담률 및 총 세수 대비 비중 ····· 36
Ⅱ.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수 ····· 41
Ⅲ. 개인소득세 세수입구조 ····· 47

[제2편 조사대상 국가별 개인소득세 제도]

제1장 미국 ····· 51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 51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 ····· 51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 52
3.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 56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 61
1. 과세권자 ····· 61
2. 법령 체계 ····· 61
가. 헌법 ····· 62
나. 내국세법 ····· 62
다. 조세조약 ····· 63
라. 재무부 시행규칙 ····· 64
마. 국세청 통칙 ····· 64
바. 판례 ····· 65
3. 열거주의·포괄주의 ····· 66
4. 과세권 범위 ····· 66
5. 과세기간 ····· 66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68
1. 납세의무자 ····· 68
2. 거주자 판정요건 ····· 68
가. 영주권 심사 ····· 69
나. 실질적 거주 심사 ····· 69
3. 납세자 단위 ····· 73

목 차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 75
1. 총수입금액 ····· 75
2. 비과세소득 ····· 76
3. 분류과세 대상소득 ····· 78
4. 분리과세 대상소득 ····· 79

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 체계 ····· 80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80
2.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 81
가. 조정된 총수입금액 전 공제 ····· 81
나. 조정된 총수입금액 후 공제 ····· 82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 체계 ····· 89
1.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89
2. 세액공제 ····· 91
가.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 92
나.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 ····· 92
3. 근로소득장려세제 ····· 95
4. 최저한세 ····· 97
5. 사회보장세 ····· 98
가. FICA세와 SECA세 ····· 98
나. FUTA세 ····· 99
6. 계산사례 ····· 100
가. 근로소득자 계산사례 ····· 100
나. 자영업자 계산사례 ····· 101

Ⅶ. 신고, 납부 및 징수 체계 ····· 102
1. 신고납부 제도 ····· 102

가. 신고 ····· 102
나. 납부 및 환급 ····· 104
2.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 105
가. 신고 의무 불이행 가산세 ····· 105
나. 납부 의무 불이행 가산세 ····· 106
다.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 106
라. 고의 및 중대 누락 가산세 ····· 106
마. 예정세액의 과소납부 ····· 107
바. 과오 환급 ····· 107
3. 원천징수제도 ····· 108
가. 거주자의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 108
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 109
4. 국외전출세 ····· 110

제2장 일본 ····· 112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 112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 ····· 112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 113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 117
1. 과세권자 ····· 117
2. 소득세 법령 체계 ····· 117
3. 과세권 범위 ····· 119
4. 열거주의·포괄주의 ····· 120
5. 과세기간 ····· 120

목 차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121
1. 납세의무자 ····· 121
2. 거주자 판정 요건 ····· 121
가. 기본 요건 ····· 121
나. 판정기준 ····· 122
다. 체류 일수 판정 세부사항 ····· 124
라. 특례규정 및 사례 ····· 125
3. 납세자 단위 ····· 126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 128
1. 종합과세 대상 소득 ····· 128
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 128
나. 소득 종류 ····· 129
2. 분류과세 대상 소득 ····· 135
가. 분류과세 적용 소득 종류 ····· 135
나. 분류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 135
3. 분리과세 대상 소득 ····· 136
가. 분리과세 적용 소득 종류 ····· 136
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 136

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 체계 ····· 137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137
2. 필요경비 ····· 138
3. 소득공제 ····· 142
가. 기본 인적공제 ····· 142
나. 특별 인적공제 ····· 146
다.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 149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 체계 ····· 153
1. 세율 ····· 153
2. 세액공제 ····· 154
가. 세액공제 종류 ····· 154
나. 세액공제별 요건 및 한도 ····· 154
3. EITC, CTC ····· 156
4. 최저한세 ····· 156
5. 계산사례 ····· 156

Ⅶ. 신고, 납부 및 징수체계 ····· 158
1. 신고납부제도 ····· 158
2.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 158
3. 원천징수제도 ····· 161
가. 근로소득 관련 원천징수 ····· 161
나. 기타 원천징수 ····· 163
4. 국외전출세 ····· 163

제3장 호주 ····· 165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 165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 ····· 165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 166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 170
1. 과세권자 ····· 170
2. 소득세 법령체계 ····· 170
3. 과세권 범위 ····· 174
4. 열거주의·포괄주의 ····· 175
5. 과세기간 ····· 175

목 차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175
1. 납세의무자 및 과세 범위 ····· 175
2. 거주자 판정 요건 ····· 176
가. 거주 기준 ····· 177
나. 주소 기준 ····· 178
다. 183일 체류 기준 ····· 180
라. 퇴직연금 기준 ····· 182
마. 거주자 판정기준 요약 ····· 183
3. 납세자 단위 : 개인, 가족 단위 과세 ····· 184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 185
1. 종합과세대상 소득 ····· 185
가. 종합소득으로 포함하는 기준 ····· 186
나. 종합소득 구성 소득 종류 ····· 188
다. 면세소득 ····· 194
라. 비과세-비면세 소득 ····· 195
2. 분류과세 대상 소득 ····· 197
3. 분리과세 대상 소득 ····· 199

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체계 ····· 200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200
2. 각종 소득공제 ····· 200
가. 일반소득공제 ····· 200
나. 특별소득공제 ····· 204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체계 ····· 205
1. 구간별 적용 세율 및 특칙 ····· 205
가. 구간별 적용 세율 ····· 205
나. 세율 적용 특칙 ····· 207
2. 세액공제 ····· 210

가. 인적공제 ····· 210
나. 특별지출액 공제 ····· 211
다. 저소득·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 212
라. 기타 세액공제 ····· 214
마. 외국납부세액공제 ····· 215
바. 세액공제순서 ····· 215
3. 최저한세 ····· 216
4. 근로소득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 216
5.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 ····· 216

Ⅶ. 신고, 납부 및 징수 체계 ····· 218
1. 신고납부제도 ····· 218
2.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 219
가. 신고관련 가산세 ····· 219
나. 납부관련 가산금 ····· 221
다. 기록 및 유지 관련 가산세 ····· 222
3. 원천징수제도 ····· 223
4. 국외전출세 개요 및 적용 요건 ····· 225

제4장 영국 ····· 226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 226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 ····· 226
가. 소득세 도입 이전 ····· 226
나. 개인소득세 도입 ····· 227
다. 소득세 폐지 및 재도입 ····· 227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 228
가. 제1,2차 세계대전 전후 ····· 228
나. 20세기 후반 ····· 229

목 차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 233
1. 과세권자 ····· 233
2. 소득세 법령 체계 ····· 233
가. 성문 규정 ····· 234
나. 판례법(Case Law) ····· 235
다. 행정규칙 등 ····· 235
3. 과세권 범위 (terrirtory, geographical jurisdictions) ····· 236
4. 열거주의·포괄주의 ····· 237
5. 과세연도 ····· 238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239
1. 납세의무자 ····· 239
2. 거주자 판정 요건 : 기본 요건, 체류 일수 판정 세부 내역, 기타 특칙 등 ····· 239
가. 1차 영국거주 심사 ····· 241
나. 국외거주 심사 ····· 242
다. 2차 및 3차 영국거주 심사 ····· 242
라. 영국관계 심사 ····· 244
3. 납세자 단위: 개인 단위 과세 및 배우자와의 관계 ····· 245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 247
1. 종합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으로 포함하는 기준 ····· 247
가. 종합소득 구성 소득 종류 ····· 247
나. 비과세소득 ····· 249
2. 분류과세 대상 소득 ····· 251

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체계 ····· 254
1.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 방법 개괄 ····· 254
2. 각종 소득공제 ····· 255
가. 특정한 비용 공제 (deductions) ····· 255
나. 일반적 소득공제 (allowances) ····· 257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체계 ····· 259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259
2. 구간별 적용 세율 및 특칙: 적용 세율 표, 과거 주요 세율 변동 내역 ····· 259
3. 세액 공제: 세액공제 종류, 각 세액공제별 요건 및 한도 ····· 261
가. 기업투자기구(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 261
나. 초기기업투자기구(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 ····· 264
4.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유무 및 관련 제도 개관 ····· 266
가. Working Tax Credit (WTC) 및 Child Tax Credit (CTC) ····· 266
나. 세액공제 실행 규모 ····· 269
5. 최저한세 ····· 271

Ⅶ. 신고, 납부 및 징수 체계 ····· 272
1. 신고 및 납부 의무 ····· 272
가. 신고 의무 ····· 272
나. 납세의무 확정(assessment) ····· 272
다. 세액 납부 ····· 273
라. 수정(경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 274
2.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 275
가. 무신고 가산세 (failure to notify chargeability to tax) ····· 276
나. 신고불성실 가산세(inaccuracy penalties) ····· 276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279
라. 지연이자 ····· 279
3. 원천징수세율 및 절차 ····· 279
가. 급여소득 원천징수 ····· 280
나. 배당소득 ····· 282
다. 이자소득 ····· 282
라. 사용료소득 ····· 283
마. 기타소득 ····· 283
4. 국외전출세 ····· 283

목 차

제5장 독일 ····· 284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 284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 ····· 284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 284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 288
1. 소득세 법령 체계 ····· 288
2. 과세권자 ····· 291
3. 과세권 범위 ····· 291
4. 열거주의·포괄주의 ····· 292
5. 과세연도 ····· 293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295
1. 납세의무자 ····· 295
가. 의의 ····· 295
나. 무제한 납세의무자와 제한적 납세의무자 ····· 295
2.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요건 ····· 297
가. 법적 규율 ····· 297
나. 주소와 일상적 체류장소(거소)의 개념정의와 양자의 관계 ····· 297
다. 주소 개념의 세부판정기준 ····· 298
라. 일상적 체류장소 판정의 세부기준 ····· 299
3. 납세자 단위 ····· 300
가. 개관 ····· 300
나. 역사적 변천 ····· 300
다. 과세단위에 대한 현행 제도 내용 ····· 301
라. 이분이승방식에 의한 부부합산과세와 혼인의 자유 ····· 302

Ⅳ. 과세대상 소득(Einkünfte) 종류 ····· 303
1. 독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파악의 원칙들 ····· 303

2. 소득의 종류 ····· 303
3. 이원적인 소득종류의 구분(Dualismus der Einkunftsarten) ····· 304
4. 개별적 소득유형 ····· 305
가. 농림업소득 ····· 305
나. 영업소득 ····· 306
다. 자유직업소득 ····· 307
라. 근로소득 ····· 308
마. 자산소득 ····· 309
바. 임대소득 ····· 309
사. 기타소득 ····· 309
5. 비과세소득 ····· 310
가. 법적 근거와 법조문의 성격 ····· 310
나. 비과세소득(Steuerfreie Einnahmen)의 3가지 유형 ····· 311
다. 주요 비과세소득 항목들 ····· 311

V.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체계 ····· 313
1. 개관 ····· 313
2. 소득금액계산 ····· 314
가.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소득금액계산 ····· 314
나. 잉여소득유형에 있어서 소득금액계산 ····· 316
3. 과세표준 산출체계 ····· 317
가. 개관 ····· 317
나. 소득(das Einkommen) 산출을 위한 다양한 공제 ····· 318
다.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 Einkommen) 산출을 위한 다양한 공제 ····· 319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체계 ····· 321
1. 세율체계 ····· 321
가. 세율체계의 역사적 변천 ····· 321
나. 현재의 기본 세율체계 ····· 322
다. 특별한 세율 ····· 323

목 차

2. 세액공제 및 감면 ····· 324
3. EITC제도의 존재 여부 등 ····· 325
4. 최저한세 ····· 325

Ⅶ. 신고, 납부 및 징수체계 ····· 326
1. 신고납부제도 ····· 326
가.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326
나. 소득세 신고 ····· 326
다. 소득세 납부 ····· 327
2. 신고 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등 ····· 327
가. 개관 ····· 327
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지연가산세(Verspätungszuschlag) 부과 ····· 328
다.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Säumniszuschläge) 부과 등 ····· 328
3. 원천징수제도 ····· 329
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329
나.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330

제6장 프랑스 ····· 332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 332
1. 개인소득세 도입 역사 ····· 332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 334
가. 1945년 이전 ····· 334
나. 1945년 이후 ····· 335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 339
1. 과세권자 ····· 339
2. 소득세 법령체계 ····· 340
가. 법원(法源, Source du Droit) ····· 340

나. 소득세 관련 세법조문의 구성 341
3. 과세권의 범위 343
4. 열거주의·포괄주의 343
5. 과세기간 344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345
1. 납세의무자와 과세범위 345
가. 개인 346
나. 법인격 없는 법인 347
다. 과세범위 347
2. 거주자 판정요건 348
가.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349
나. 조세조약상 판정 기준 350
3. 과세단위 351
가. 개인 352
나. 부부 또는 시민연대계약(PACS)에 의한 결혼 352
다. 가족 구성원 353
라. 가족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354
마.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세부담 비교 355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357
1. 근로소득 357
가. 급여 및 봉급 358
나. 연금소득 359
다. 종신주택연금 및 자녀양육수당 359
2. 양도소득 359
가.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양도소득 360
나. 동산 양도소득 361
다. 주식양도소득 361
3. 부동산 임대소득 361

목 차

4. 자본소득 ····· 362
5. 산업 및 상업소득 ····· 363
6. 이사의 소득 ····· 364
7. 농업소득 ····· 365
8. 비상업소득 ····· 365
9. 비과세소득 ····· 366
가. 근로소득 ····· 366
나. 양도소득 ····· 367
다. 자본소득 ····· 367

V.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체계 ····· 368
1. 근로소득금액 ····· 368
가. 근로수입금액 ····· 368
나. 필요경비계산 ····· 369
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 도입 ····· 373
2. 양도소득금액 ····· 373
가. 수입금액 ····· 373
나. 필요경비 ····· 374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374
라. 동산의 경우 ····· 374
마. 주식양도의 경우 ····· 375
3.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376
가. 수입금액 ····· 376
나. 필요경비 ····· 376
다. 결손금공제 ····· 377
4. 자본소득금액 ····· 378
가. 수입금액 ····· 378
나. 필요경비 ····· 378
다. 결손금 공제 ····· 378
라. 원천징수 ····· 378

5. 산업 및 상업소득금액 ····· 379
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 379
나. 결손금 공제 ····· 381
다. 세무조정 책임자 ····· 381
라. 소규모 사업자 소득금액 결정 특례규정 ····· 381
6. 이사의 소득금액 ····· 382
7. 농업소득금액 ····· 383
가. 수입금액 ····· 384
나. 필요경비 ····· 384
8. 비상업소득금액 ····· 384
가. 수입금액 ····· 385
나. 필요경비 ····· 385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체계 ····· 386
1. 결손금 공제 ····· 386
2. 사회보장분담금 공제 ····· 387
3. 특별비용공제 ····· 387
4. 가족단위 Parts 계산 ····· 388
5. 적용세율 ····· 389
6. 고소득자의 추가적 소득세 부담 ····· 390
7. 소득공제 ····· 391
8. 세액공제 ····· 391
9. 조세감면 ····· 393
가. 창업기업 ····· 393
나. 연구개발기업 ····· 394
다. 면세지역 투자기업 ····· 395

Ⅶ. 신고, 납부 및 징수체계 ····· 396
1. 신고 및 납부 ····· 396
2. 소득세 신고납부 위반 시 가산세 세율 ····· 397

목 차

가.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의 경우 ····· 397
나. 과소신고의 경우 ····· 397
다. 무납부 또는 지연납부의 경우 ····· 397
라. 국세환급금과 환금가산금 ····· 397
3.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 397
4. 출국세 ····· 398
5. 원천징수 ····· 398
6. 최저한세 ····· 400
7. 사회보장분담금 ····· 400
8. 근로장려세제 ····· 401

참고문헌 ····· 402

표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제도 비교

〈표 Ⅰ-1〉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 6
〈표 Ⅱ-1〉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 9
〈표 Ⅲ-1〉 주요국의 과세대상 소득 비교 ····· 13
〈표 Ⅳ-1〉 주요국의 소득공제제도 비교 ····· 17
〈표 Ⅴ-1〉 주요국의 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제도 비교 ····· 24
〈표 Ⅵ-1〉 주요국의 신고납부제도 비교 ····· 29

제2장 OECD회원국의 소득세 통계

〈표 Ⅰ-1〉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 변화 ····· 36
〈표 Ⅰ-2〉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수 비중 (총 세수 기준) ····· 39

〈표 Ⅱ-1〉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변화 ····· 41
〈표 Ⅱ-2〉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 변화 ····· 44
〈표 Ⅱ-3〉 OECD 회원국의 과세표준 구간 수 변화 ····· 46

〈표 Ⅲ-1〉 OECD 회원국의 국세·지방세 구조 변화 추이 ····· 48

목 차

[제2편 조사대상 국가별 개인소득세 제도]

제1장 미국

〈표 Ⅰ-1〉 2001년 EGTRA법에 따른 상위소득자 소득세율 인하계획 ····· 54
〈표 Ⅰ-2〉 소득세법의 주요 연혁(1943~2017) ····· 55
〈표 Ⅰ-3〉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율 변화(개인 단독신고 기준) ····· 57
〈표 Ⅰ-4〉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표준공제 한도액 변화 ····· 58
〈표 Ⅰ-5〉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2017년 ~ 2026년의 소득수준별 항목별 공제적용 예상 납세자 수 ····· 58
〈표 Ⅰ-6〉 2018년 세법개정 - 항목별공제 관련 개정내용 요약 ····· 59
〈표 Ⅰ-7〉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2017 ~ 2026년 근로소득자의 추정 평균한계세율 ····· 60

〈표 Ⅱ-1〉 내국세법(IRC)의 소득세 관련 구성 내용 ····· 63

〈표 Ⅲ-1〉 납세 거주지 판단을 위한 고려 사항 ····· 71
〈표 Ⅲ-2〉 납세자 단위 ····· 74

〈표 Ⅳ-1〉 총수입금액으로 포함되는 항목별 범주 ····· 75
〈표 Ⅳ-2〉 비과세소득 ····· 76
〈표 Ⅳ-3〉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 78

〈표 Ⅴ-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개괄 ····· 81
〈표 Ⅴ-2〉 조정된 총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공제항목 ····· 82
〈표 Ⅴ-3〉 2017년도 소득세 인적공제금액이 감면되는 소득구간 ····· 83
〈표 Ⅴ-4〉 2018년도 소득세 표준공제 ····· 84
〈표 Ⅴ-5〉 항목별 공제 ····· 85
〈표 Ⅴ-6〉 2017년도 항목별 공제제한 적용한도 ····· 88

〈표 Ⅵ-1〉 2018년 기준 납세자 유형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89
〈표 Ⅵ-2〉 5개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4~2018년) ····· 90
〈표 Ⅵ-3〉 세액공제 항목 및 유형 ····· 91
〈표 Ⅵ-4〉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납세자의 근로소득 한계점 ····· 95
〈표 Ⅵ-5〉 최저한세 계산구조 ····· 97
〈표 Ⅵ-6〉 2018년도 최저한세 공제액 ····· 98
〈표 Ⅵ-7〉 2018년도 급여소득자 소득세 산출과정 ····· 100
〈표 Ⅵ-8〉 2018년도 사업소득자 소득세 산출과정 ····· 101

〈표 Ⅶ-1〉 2018년도 납세신고의무 면세점 ····· 102
〈표 Ⅶ-2〉 2018년도 부양자 납세신고의무 기준 ····· 103

제2장 일본

〈표 Ⅰ-1〉 연도별 주요 세제개정 ····· 115

〈표 Ⅱ-1〉 소득세법 편제 ····· 118

〈표 Ⅲ-1〉 과세소득 범위 ····· 121
〈표 Ⅲ-2〉 거주자 판정기준 관련 법령 ····· 122

〈표 Ⅳ-1〉 소득 종류 및 과세방법 ····· 128
〈표 Ⅳ-2〉 근로소득 관련 비과세소득 ····· 130

〈표 Ⅴ-1〉 소득세 산출체계 ····· 137
〈표 Ⅴ-2〉 급여소득공제 ····· 139
〈표 Ⅴ-3〉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 항목 ····· 140
〈표 Ⅴ-4〉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 금액 ····· 140
〈표 Ⅴ-5〉 기본 인적공제 ····· 142
〈표 Ⅴ-6〉 기초공제금액(2018년) ····· 144

목 차

〈표 V-7〉 배우자공제금액 ····· 144
〈표 V-8〉 배우자 특별공제금액 ····· 145
〈표 V-9〉 부양공제금액 ····· 146
〈표 V-10〉 특별 인적공제 ····· 147
〈표 V-11〉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 149

〈표 VI-1〉 개인소득세 세율(2018년도) ····· 153
〈표 VI-2〉 개인소득세 세율(2007~2014년도) ····· 154
〈표 VI-3〉 주택차입금 등 세액공제의 계산 ····· 155

〈표 VII-1〉 신고 및 납부불성실미납부 가산세 ····· 160
〈표 VII-2〉 원천소득세의 개요 ····· 161

제3장 호주

〈표 I-1〉 소득세제 주요 개정 연혁 ····· 169

〈표 II-1〉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법체계 ····· 171
〈표 II-2〉 조세법(Taxation)의 구성항목 ····· 172
〈표 II-3〉 소득세 관련 주요 법령 및 내용 ····· 173

〈표 III-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 176
〈표 III-2〉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요약 ····· 184

〈표 IV-1〉 소득세법(1997)에 따른 개인의 주요 면세소득 ····· 194
〈표 IV-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주요 비과세-비면세 소득 ····· 196
〈표 IV-3〉 퇴직연금 납입단계 과세제도 ····· 198
〈표 IV-4〉 퇴직연금 수령 시 과세제도 ····· 199

〈표 VI-1〉 2018/19년도 소득세율 ····· 205

〈표 Ⅵ-2〉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2012~2018년)…… 206
〈표 Ⅵ-3〉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개정내용(2018~2024년)…… 207
〈표 Ⅵ-4〉 평균소득 계산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예시…… 209
〈표 Ⅵ-5〉 보험료 세액공제율 …… 212
〈표 Ⅵ-6〉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액…… 212
〈표 Ⅵ-7〉 고령 연금수령자 세액공제액…… 213
〈표 Ⅵ-8〉 종합소득세 산출 예제…… 217

〈표 Ⅶ-1〉 신고 관련 가산세…… 221
〈표 Ⅶ-2〉 미납부·지연납부 시 가산금 (2018/19년 기준) …… 221
〈표 Ⅶ-3〉 과소납부 가산금 (2018/19년 기준) …… 222
〈표 Ⅶ-4〉 기록 및 유지의무 위반 시 가산세…… 222

제4장 영국

〈표 Ⅰ-1〉 최근 30년간 소득세율 변화 ……230
〈표 Ⅰ-2〉 최근 30년간 기본인적공제액 및 기본세율 적용구간 한도 변화 ……231
〈표 Ⅰ-3〉 최근 30년간 소득세 납세자 규모 변화 …… 232

〈표 Ⅱ-1〉 주요 소득 종류별 과세연도 귀속 기준…… 238

〈표 Ⅲ-1〉 거주자 심사 단계별 판정 개요…… 241
〈표 Ⅲ-2〉 국외거주 심사 관련 단계별 테스트…… 242

〈표 Ⅳ-1〉 2018/19년도 배당소득 적용세율…… 252

〈표 Ⅴ-1〉 과세표준 산출체계…… 254
〈표 Ⅴ-2〉 기본인적공제 및 시각장애인공제 금액 변화…… 258

〈표 Ⅵ-1〉 2018/19년도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 259

목 차

〈표 Ⅵ-2〉 2018/19 연도 산출세액 계산 예시 ····· 259
〈표 Ⅵ-3〉 스코틀랜드 지역의 2018/19년도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 ····· 260
〈표 Ⅵ-4〉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2012~2018년) ····· 261
〈표 Ⅵ-5〉 세액공제 비교 ····· 266
〈표 Ⅵ-6〉 영국의 연령별 업무시간 요건 ····· 267
〈표 Ⅵ-7〉 영국의 WTC 급여산정요소(2017~18) ····· 267
〈표 Ⅵ-8〉 영국의 소득별 적용금액(자녀가 없는 경우) ····· 268
〈표 Ⅵ-9〉 영국의 소득별 적용금액(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 268

〈표 Ⅶ-1〉 가산세 종류별 개요 ····· 275
〈표 Ⅶ-2〉 과소신고 사유별 적용 가산세율 ····· 277
〈표 Ⅶ-3〉 카테고리별 가산세 가중 ····· 279
〈표 Ⅶ-4〉 고용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 ····· 281

제5장 독일

〈표 Ⅱ-1〉 과세대상 소득 유형 ····· 293

〈표 Ⅶ-1〉 소득세법의 납세자 등급 ····· 330

제6장 프랑스

〈표 Ⅰ-1〉 소득세제 연혁표 ····· 338

〈표 Ⅱ-1〉 조세일반법 조문상 소득세 주요 내용 ····· 342

〈표 Ⅲ-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 ····· 348

〈표 Ⅳ-1〉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 357

〈표 V-1〉 자동차 경비 한도액 계산표 ····· 370
〈표 V-2〉 종신주택연금 (rentes viagères)의 필요경비 반영비율 ····· 372
〈표 V-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74
〈표 V-4〉 법인이사 급여의 소득 종류 ····· 382

〈표 VI-1〉 소득종류별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 387
〈표 VI-2〉 가족과 생활하는 납세자의 parts 계산표 ····· 388
〈표 VI-3〉 1part에 적용하는 소득세 세율표 ····· 389
〈표 VI-4〉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표 ····· 389
〈표 VI-5〉 초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추가적 소득세 세율표 ····· 390
〈표 VI-6〉 소득공제 산출 및 한도 ····· 391
〈표 VI-7〉 세액공제 산출 및 한도 ····· 392
〈표 VI-8〉 소득세 계산흐름도 ····· 392

〈표 VII-1〉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 399
〈표 VII-2〉 사회보장 분담금 변천 내역 ····· 401

목 차

그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2장 OECD 회원국의 소득세 통계

[그림 Ⅰ-1] OECD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 ····· 38
[그림 Ⅰ-2]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 40
[그림 Ⅰ-3]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율 변화(2011년 대비 2017년) ····· 43

[제2편 조사대상 국가별 개인소득세 제도]

제1장 미국

[그림 Ⅵ-1] 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표 일부 ····· 96

제2장 일본

[그림 Ⅶ-1]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세액표(월간표) ····· 162

제3장 호주

[그림 Ⅳ-1]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정의 ····· 186

[그림 Ⅴ-1] 연방소득세 과세체계 ····· 201

제4장 영국

[그림 Ⅲ-1] 거주자 심사제도의 기본 구조 ····· 240

[그림 Ⅵ-1] 연도별 WTC 및 CTC 혜택 가구 수 ····· 270
[그림 Ⅵ-2] 연도별 WTC 및 CTC 금액 ····· 271

제5장 독일

[그림 Ⅵ-1] 1990년 독일의 소득세 세율제도 개혁 ····· 322

제6장 프랑스

[그림 Ⅲ-1] 가족단위 과세제도 구성도 ····· 355

제1편 총 론

제1장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제도 비교
제2장 OECD 회원국의 소득세 통계

제1장 |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제도 비교

Ⅰ 소득세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과세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방법과 주법에 규정된 세목에 따라 과세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뉴욕, 워싱턴 DC 등 일부 지방정부는 연방소득세 및 주세에 더불어 지방소득세(local income taxes)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소득세 과세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세 중에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도부현민세(동경도민세, 시정촌민세, 특별구민세) 등의 과세권은 지방정부가 행사하고 있다. 호주는 중앙정부(federal government)가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며, 개인소득세수는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에 배분된다. 영국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존재하지 않아 모든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개인소득세가 연방(Bund)과 주(Land)의 공동세이다. 연방과 주가 모두 입법권을 갖고 있으나 연방이 먼저 입법을 하는 경우 주는 입법권을 가지지 못한다. 입법은 연방하원에서 이뤄지지만 주대표로 구성된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개정이 가능하다. 조세의 부과징수행정은 대부분 주 행정기관인 Finanzamt[1]에서 담당하며, 징수된 세수는 연방과 주에 같은 비율로 배분된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권이 중앙정부에 있으며, 부과와 징수는 예산부(Ministère du Budget)의 소관이다. 프랑스에는 소득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를 따르는 국가로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와 규칙 및 조약이다. 미국 연방세법의 법원은 헌법, 조세조약, 내국세법, 재무부 시행규칙, 국세청 통칙, 법원의 판례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헌법, 조세조약,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이 법원이 되고 있다. 영미법 국가인 호주의 법원은 헌법, 법률, 시행령, 판례로 형성된 관습법, 국세청 지침이다. 조약의 경우 호주 의회에서 조약의 내용을 입법해야만 법원에 포함된다.

1) 우리나라의 세무서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헌법(Grundgesetz)을 정점으로 연방의회에서 제 · 개정하는 법률인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과 연방재무부에서 제 · 개정하는 소득세 시행령(Einkommen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이 있다. 소득세 시행령은 법규명령에 해당되며, 소득세 지침(Einkommensteuer-Richtlinien, 약자 'EStR')은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성문법 국가인 프랑스에는 소득세의 법원과 관련이 있는 법률로 헌법, 조약, 세법, 법규명령(Décret) 및 부령(Arrêté)이 있다. 프랑스 헌법 제55조는 특별법 우선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국내법률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행정재판은 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하여 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etat)에서 최종심 역할을 한다. 국사원의 판례 역시 중요한 법원을 구성한다.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전 세계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영국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국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국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적용하는 속지주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고(속인주의), 프랑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속지주의).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과세에 대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의 일부 소득항목에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세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비과세소득이라고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일본은 소득세법에서 개인소득을 총 10가지 소득유형을 구분하고 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모두 잡소득으로 보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는 개인소득세 과세에 대해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에 규정된 소득 및 과거 판례 및 국세청 지침을 통해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영국은 개인 소득세 과세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은 부동산 관련 소득, 저축과 투자 소득, 사업소득, 근로와 연금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독일은 개인소득의 유형을 총 7가지로 나누고, 이 7가지 소득유형을 다시 이익소득(Gewinneinkünfte)유형과 잉여소득(Überschusseinkünfte)유형으로 나눈다. 이익소득에 대해서는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잉여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에 기초하여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8가지(근로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자본소득, 산업 및 상업소득, 이사의 소득, 농업소득, 비상업소득)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과세한다. 비상업소득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분류과세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인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과세기간도 기본적으로 달력연도(calendar year)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fiscal year)를 선택할 수 있다. 호주의 개인소득세 과세기간은 당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호주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회계기간에 따라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 종료일은 늦어도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의 마지막 날로 해야 한다. 영국의 개인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4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5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회계기간이 원칙적인 과세기간과 다르면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독일 소득세의 과세연도는 조사기간(Ermittlungszeitraum)과 부과기간(Veranlagungszeitraum)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조사기간은 소득세 부과를 위한 이익의 조사기간이고, 부과기간은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이익의 귀속기간이다. 과세대상 소득의 조사기간(Ermittlungszeitraum)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지만 농림업소득과 영업소득에 있어서 이익은 역년(Kalenderjahr)이 아니고 다른 회계연도(Wirtschaftsjahr)를 적용하여 조사한다(ermitteln). 소득세 부과기간(Veranlagungszeitraum)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프랑스는 과세기간을 역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상업 및 산업소득과 농업소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역년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표 Ⅰ-1〉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과세권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입법권: 중앙정부 수익권: 연방과 주 공동 행정권: 주	중앙정부
법원(法源)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 조약	헌법, 내국세법, 조세조약, 재무부 시행규칙, 국세청 통칙, 판례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헌법, 법률, 시행령, 판례, 국세청지침	법률, 시행령, 판례, 조약, EU법	헌법,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헌법, 법률, 조세조약, 법규명령, 부령
과세범위	전세계소득	전세계소득	전세계소득	전세계소득	전세계소득	전세계소득	전세계소득
열거 vs 포괄	원칙적 열거주의 (일부 소득 유형별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열거주의	이익소득유형: 포괄주의 (순자산증가설) 잉여소득유형: 열거주의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단, 일부소득은 포괄주의)
과세기간	1.1.~12.31	1.1~12.31 단, 사업소득자는 회계연도를 선택할 수 있음	1.1~12.31	7.1~익년 6.30 사업소득은 국세청이 승인하는 경우 회계연도로 할 수 있음	4.6~익년 4.5 일정 사업소득 등은 회계연도로 할 수 있음	1.1.~12.31.* 조사기간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 산업 및 상업소득과 농업소득 사업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Ⅱ 납세의무자

우리나라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로 보고, 거주자 이외의 자를 비거주자라고 정의한다.[2)]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의무를 가진다,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경우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주 외국인은 영주권자 또는 당해연도 거주일수가 31일 이상이고 당해연도와 직전 2개연도의 가중평균 거주일수가 총 183일 이상인자를 말하며,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의무를 가진다. 이 외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의무를 가진다.

일본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거주자는 다시 비영주자와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는 일본에 주소가 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을 의미한다. 비영주자는 거주자이면서 일본 국적이 없지만 지난 10년간 일본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을 의미한다. 비영주자의 과세소득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한 소득만 해당되어, 일반적인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와 구분된다.

호주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호주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호주 체류목적, 호주 내 주택구입, 계좌개설 등 생활기반 요인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주심사(residence test)' 기준에 따라 거주자를 판단한다. 거주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호주 국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호주에 주소를 두고 생활기반을 호주에 두었는지 여부로 거주자를 판단하는 '주소심사(domicile test)', 해외 국적을 가진 자가 호주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지 여부 및 기타 요소에 따라 거주자를 판단하는 '183일 체류 심사', 정부 공무원의 해외파견 근무 시 호주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 여부에 따라 거주자를 판단하는 '퇴직연금심사' 기준에 따라 거주자를 판단한다.

영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영국 거주자인 개인 또는 신탁(trust) 및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신탁으로서 영국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다. 거주자인지 판단 여부는 영국 내 체류일

2)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수를 바탕으로 기타 직업 및 생활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는데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보면서 이외의 경우에도 국외거주심사, 영국거주 심사 및 영국 관계 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거주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은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분기준을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통칙법(Abgabenordnung)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거주자는 독일 국내에 주소(Wohnsitz)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Gewohnlicher Aufenthalt)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독일 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장소는 일상적 체류장소로 본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 EU 회원국 소속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있다.

프랑스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격 없는 법인이 해당된다. 거주자란 프랑스 내에 '세법상 주소'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세법상 주소란 거주기준[3], 직업기준, 경제활동지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공무원 중 해외파견자의 경우, 해외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프랑스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 과세의 인적단위는 개인단위와 가구단위가 있다. 우리나라, 일본, 영국, 호주의 경우 개인단위로 과세한다. 미국은 결혼 상태에 대한 여부 및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납세자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다. 부부합산신고, 세대주 신고, 개인 단독신고, 부부별도신고로 납세자는 본인의 결혼 상태를 고려한 후 납세액이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독일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과세제도와 개인별 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과세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foyer fiscal)로 한다. 가족이란 개인 또는 배우자로 구성하고 여기에 미성년 자녀가 추가된다. 가족에는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lité)을 포함하나 동거 중인 자는 제외한다.

3)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표 Ⅱ-1〉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납세 의무자		거주자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거주자 (영주자, 비영주자)	·거주자	·거주자	·거주자	·거주자 (법인격 없는 법인포함)
		비거주자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기준	기본요건 및 거주기간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영주권 심사 ·실질적 거주심사 (당해연도 거주일수가 31일 이상이며, 당해연도와 직전2개연도의 가중평균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인자)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일본 국적 없이 과거 10년 중 5년 이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1) 거주심사 2) 주소심사, 183일 체류심사, 공무원퇴직연금 심사 (1)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1)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 유형에 맞게 선택)	체류기간 183일 이상 및 순차적 실질 심사	국내에 주소 또는 일상적 체류장소를 둔 자.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장소를 일상적 체류장소로 봄.	국내에 주소가 6개월 이상을 둔 자, 직업기준, 경제활동지 기준
납세자 단위	개인	개인	·개인 ·세대주 ·부부별도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없음
	가족단위	없음	·부부합산	없음	없음	없음	부부합산	가족단위

자료: 저자 작성

Ⅲ 과세대상 소득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는 소득의 원천 및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며, 분류과세는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소득종류별로 별도의 과세기준 및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분리과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 지급 시마다 특정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4] 이 중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며, 퇴직 ·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종합과세대상 소득 중 일부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은 분리과세하는데 주로 특정 정책목적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한다. 이자 · 배당소득의 경우 실질귀속자 확인이 불가하거나 세금우대저축이자,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자, 7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채권이자와 같이 주로 조세혜택 부여 목적인 경우 분리과세한다. 그 외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과 같은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제외)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분리과세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선택에 의해 분리과세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한다. 연금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 앞에 언급된 2개의 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한다.[5]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한다.[6]

미국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개념은 총포괄소득 개념(all-inclusive income concept)이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이 외 장기자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4)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8』, p.46, 2018.
5) 「소득세법 집행기준」 14-0-1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6) 「소득세법」 제121조,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과세하고,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국내원천 부동산, 토지, 부동산권리, 사업용고정자산, 이용권 · 회원권,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시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한다.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거주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을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합소득 과세대상 중 공사채, 예적금의 이자소득, 특정목적신탁 수익분배 등의 소득, 일정 선물거래 관련 소득, 5년 이하의 일시불 손해보험 소득 등은 분리과세하며, 산림소득과 퇴직소득, 토지나 건물 등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고 있다.

영국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당해 과세연도 중 발생한 각종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산출한다. 과세대상 종합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각종 원천으로부터의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는데 그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 등의 투자소득,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배당 등의 투자소득은 이자소득, 사용료, 부동산 소득 및 신탁 소득을 포함한다. 자산의 처분 등으로부터 수취한 자본이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되며,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이기는 하나 일반세율에 비해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되어 사실상 분류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통상소득과 법정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통상소득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에 부합하는 소득으로 구체적인 정의 없이 과거 판례를 통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i) 주기적, 반복적,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ii)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거나, iii) 취미가 아닌 사업을 수행하고 얻는 소득이거나, v) 자본에 투자하고 얻은 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법정소득은 소득세법에 과세하도록 명시된 소득으로 주요 법정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60세 이전에 조기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있다. 퇴직 · 양도소득을 분류과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며,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조기수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분류과세한다. 또한, 호주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한다.

독일은 소득을 ① 농업 및 산림업 소득(Einkünfte aus Land- und Forstwirtschaft), ②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 ③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 ④ 근로소득(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⑤ 자본소득(Einfünfte aus Kapitalvermögen), ⑥ 임대소득(Einkü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 ⑦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 중 앞의 3개가 이익소득유형이고, 나머지 4개가 잉여소득유형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유형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비슷한 형태로

과세를 한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분류과세를 하지 않는다.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도 여러 소득유형에 나누어 귀속된다. 예컨대, 영업소득자가 영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프랑스는 소득을 근로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자본소득, 산업 및 상업소득, 이사의 소득, 농업소득 및 비상업소득으로 구분한 뒤, 이를 종합하여 과세한다. 양도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 내에서만 공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분류과세와 유사한 성격도 있다. 원칙적으로 분류과세나 분리과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프랑스 국내원천소득으로는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예술인소득, 체육인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다.

〈표 Ⅲ-1〉 주요국의 과세대상 소득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종합과세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총포괄소득 개념(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양도소득(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 제외) · 일시소득 · 잡소득 * 각 소득별 원천분리과세, 분류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 통상소득: – 판례에 따른 소득으로 포괄주의 과세[2)] · 법정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임대소득 – 양도소득 – 연금형태로 조기수령하는 퇴직연금[3)]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배당 등의 투자소득 · 기타소득	· 농림업소득 · 영업소득 · 자유직업소득 · 근로소득 · 자본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양도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자본소득 · 산업 및 상업소득 · 이사소득 · 농업소득 · 비상업소득
분류과세 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	· 장기자본소득	· 산림소득 · 퇴직소득 ·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 · 일정한 선물거래에 의한 사업소득, 잡소득 등	· 일시금으로 조기수령하는 퇴직연금[4)]	· 자본소득 · 배당소득		없음
분리과세 소득	[거주자 소득] · 금융소득: –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금융소득 – 조세혜택 부여 목적의 이자·배당소득 – 연간 금융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 제외)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1)]	–	·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자 등(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제외) · 사모의 특정 목적 신탁 중 채권으로 수익권의 수익분배에 관한 배당 · 사모 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의 수익분배에 관한 배당 · 특정 할인채의 상환차익 등 · 보험·공제기간이 5년 이하의 일정 일시불 양로보험이나 일시불 손해보험의 소득 등	–	–	자산소득	없음

〈표 Ⅲ-1〉의 계속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 주택임대소득: 연간 종합소득금액(주택임대소득 제외)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특정연금소득: -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 - 의료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납입액 - 위의 2개 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 인적용역소득 · 사업소득, 선박·항공기등임대소득 · 근로, 연금소득 · 유가증권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등과 같은 자본소득(passive income)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 인적용역소득, 부동산 등의 임대료, 퇴직수당, 급여, 상금, 연금 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이자, 배당, 사용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투자소득		·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사용료소득 · 예술인 소득 · 체육인 소득 · 근로소득

주: 1)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중 선택이 가능함
2) 판례를 통한 통상소득의 특징으로 i) 주기적, 반복적, 규칙적으로 얻는 소득, ii)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iii) 취미가 아닌 사업을 수행하고 얻는 소득, v) 자본투자소득 등이 있음
3) 퇴직연금을 60세 미만에 연금형태로 조기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함
4) 퇴직연금을 일시금형태로 조기 수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17%(55~59세 수령 시) 또는 22%(55세 미만 수령 시)보다 높은 경우 종합과세하고, 낮은 경우 분류과세함

자료: 본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Ⅳ 소득공제제도

우리나라의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형제자매, 입양아동 등과 같은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경로자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납세자 본인이 부녀자 또는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경로자공제는 100만원의 공제를 허용하며, 장애인공제는 200만원, 부녀자공제는 50만원, 한부모공제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인적공제 항목 외에 특정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항목별 공제가 있다. 항목별 공제로는 연금보험료 납입액, 건강보험료 납입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월세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같은 주택자금관련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지출액의 공제가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부 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소득세 산출과정은 공제와 관련하여 2단계 과정을 거친다. 하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조정하는 i)조정된 총수입금액(AGI) 전 공제이며, 다른 하나는 조정된 총수입금액 이후 공제하는 ii) 조정된 총수입금액(AGI) 후 공제이다. 실제 우리나라 소득공제 개념과 비슷한(종합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공제는 상기 ii)의 조정된 총수입금액(AGI) 후 공제를 말한다. 조정된 총수입금액 후 공제는 ① 납세자 신고 유형별로 일정금액을 공제받는 표준공제와 ② 의료비 및 교육비 등 일정 항목별로 해당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 외 ③ 납세자와 적격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해주었으나 현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Tax Cut and Jobs Act, TCJA)을 통해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인적공제를 폐지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각종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소득공제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일본의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로 구분된다. 인적공제에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 경로 · 장애에 대한 추가공제, 근로학생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다. 항목별 공제에는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근로학생공제 등이 있다.

영국의 소득공제는 크게 (i) 특정한 형태의 비용 공제 및 (ii) 일반적 · 개괄적 성격의 공제

로 구분된다. 특정한 형태의 비용 공제는 납세자가 특정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들 중 소득세법에서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한 항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자비용, 연금납부금, 사업손실, 특정단체 납부금, 특허권 비용,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된다. 일반적 · 개괄적 성격의 공제는 기본인적공제, 시각장애인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인적공제는 성별 또는 기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총소득에서 일괄적으로 11,850파운드를 공제하는 것으로, 10만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부분 2파운드당 1파운드의 비율로 소득공제 금액을 인하한다.

호주는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성격의 비용과 기부금, 세무신고비용과 같은 일부 특정 지출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제도는 여러 단계에 나누어져 있다. 우선 소득금액 합산액에서 6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한 감면공제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공제, 농림업종사자에 대한 공제를 차감하여 총소득을 산출한다. 총소득에서 특별공제와 손실공제, 보험료공제, 비통상적인 부담에 대한 공제, 자가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을 산출하고, 소득에서 자녀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기본공제제도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가족단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의 제도는 없다. 다만,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비용으로 공제를 받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자는 이를 소득금액으로 추가하되,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표 Ⅳ-1〉 주요국의 소득공제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2018~2025년 한시적 폐지)	기초공제	본인: · 소득금액별로 차등 (16만엔, 32만엔, 48만엔) · 주민세분 기초 공제도 소득금액 별로 차등(15만엔, 29만엔, 43만엔)	-3)	일괄적으로 11,850파운드 (소득금액 10만 파운드 초과 시 감소)	본인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인정. 9,168유로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그 2배)	없음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 : 연100만원 · 장애인공제: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부양공제(일반 및 특정 부양친족, 노인부양친족)	-3)	-	· 65세 이상 노령자공제 ·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공제 · 농림업종사자에 대한 공제 · 자녀소득공제	없음
항목별 공제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주택자금[1)] · 신용카드사용액 · 기타	· 의료비 공제 · 지방세 공제 · 이자비용공제 · 기부금공제 · 재해손실도난공제 · 기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편부공제 ·근로학생공제		· 기부금 · 세무신고비용	· 이자비용 · 보험료 납부금 · 기부금	· 보험료 · 자가주택 · 특별공제 · 손실공제 · 비통상적 부담	이혼으로 인해 받은 자녀양육수당 중 10% 금액

〈표 Ⅳ-1〉의 계속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표준공제	-	표준공제 · 부부합산 : $24,000 · 부양자 : $18,000 · 개인단독 : $12,000 · 부부별도 : $12,000	-	-	-	-	-
공제 한도	2,500만원[2)]	기타잡공제, 고소득자 항목별공제 제한규정 (단, 2018~2025년 한시적 폐지)	· 각 항목별 한도 · 소득별 체감구간 · 소득별 한도 차등	-	각 항목별 한도 또는 소득별 체감구간 존재함		없음

주: 1) 주택자금 공제항목으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음
2) 특정 소득공제 항목의 합산액이 2,5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소득공제는 허용하지 않음
3) 호주는 인적공제를 세액공제형태로 운영하며, 기존의 인적세액공제 또한 2012년 조세제도 간소화 목적으로 보조금 제도로 통합 및 폐지함
자료: 저자 작성

Ⅴ 소득세율 및 세액공제제도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요국의 소득세율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7개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두어 1,200만원 이하 구간은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은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7)]

미국은 7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납세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 단독 신고 기준으로 살펴볼 때, 9,525달러 이하 구간은 10%, 9,525달러 초과 38,700달러 이하 구간은 12%, 38,700달러 초과 82,500달러 이하 구간은 22%, 82,500달러 초과 157,500달러 이하 구간은 24%, 157,500달러 초과 20만달러 이하 구간은 32%, 20만달러 초과 ~ 50만달러 이하 구간은 35%, 50만달러 초과 구간은 37%의 세율로 과세된다.

일본은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에 대해 5%에서 45%의 7단계 초과누진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195만엔 이하는 5%, 195만엔 초과 333만엔 이하는 10%, 333만엔 초과 693만엔 이하는 20%,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는 23%,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는 33%, 1,800만엔 초과 4천만엔 이하는 40%, 4천만엔 초과는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 외에 2037년까지 일시적으로 소득세의 2.1%가 부과되는 부흥특별소득세가 있다.

호주의 개인소득세율은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2017/18년 기준 18,200호주달러까지는 비과세하며, 18,201~37,200호주달러 구간은 18,2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19%, 37,001~ 90,000호주달러 구간은 37,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32.5%, 90,001~180,000호주달러 구간은 9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37%, 18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3구간으로 나누어진다. 2018/19년 현재 34,500파운드 미만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이 적용되며, 34,500~150,000파운드까지는 중간세율(higher rate, 40%)이 적용된다. 150,000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적용

7) 2018년 이전까지는 6단계(6%,15%,24%,35%,38%,40%)로 1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초과 구간을 38% 세율, 5억원 초과 구간을 40% 세율로 과세하였음

된다. 스코틀랜드 지역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독일의 개인소득세 세율은 총 5개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단계는 세금이 0이 되는 기본공제(Grundfreibetrag)구간이다. 0유로부터 9,168유로(부부합산과세의 경우 그 2배)까지의 구간이다. 이는 납세자 본인 또는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의 최저생계비를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단계는 과세대상 소득금액 9,169유로부터 14,254유로까지로 거의 수직형태의 누진구조로 세율부담이 14%부터 23.97%까지의 구간이다. 셋째 단계는 과세대상 소득금액 14,255유로부터 55,960유로까지로 완만한 누진구조 형태를 취하며 세부담은 23.97%부터 42%까지이다. 넷째 구간은 과세대상 소득금액 55,961유로부터 265,326유로까지로 증가하는 소득에 대해 42%의 비례세율로 과세가 되는 구간이다. 다섯째 구간은 소위 '부유세'(reichensteuer)라고도 불리는 구간으로 과세대상 소득금액 265,327유로부터로서 증가하는 소득에 대해 45%의 비례세율로 과세되는 구간이다.

프랑스의 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 체계(0~45%)다.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 25만유로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정상세율 이외에 3~4%까지 2단계 세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소득세법」에서는 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할 경우 한도 100만원까지 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 ③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한도 100만원까지 공제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8]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 ⑤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자산이 상실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만큼 공제해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 ⑥ 근로자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만큼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⑦ 공제대상 자녀당 또는 출산, 입양 시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 ⑧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액을 공제해주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⑨ 항목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 등 또는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특별세액공제가 있다. 이 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및 연구 ·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이 세금납부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와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로 나뉠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로는 자녀 세액공제(child

8) 2018.12.31.까지 발급분에 한함. 「소득세법」 제56조의 3.

credit)[9]와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있다.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로는 부양자 위탁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부양가족지원세액공제, 납세자가 경로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경로자 및 장애인 지원세액공제, 납세자가 입양 시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해주는 입양세액공제, 납세자 및 그의 부양자의 고등(대학)교육비에 대해 지원해주는 교육비세액공제, 사업소득자에게 주는 일반사업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 인정 NPO법인 등 기부금 특별공제, 공익사단법인 등 기부금 특별공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등이다.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배당소득금액의 10% 또는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연말잔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거주용으로 제공한 연도에 따라 세액공제 계산법이 다르며, 공제한도도 차등을 두고 있다.

호주는 60개 이상의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며 크게 인적 상황에 따른 인적세액공제, 특정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세액공제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중 병상자 및 병상자를 간병하는 자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병상자 및 간병인 세액공제', 벽지 거주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특정지역 거주자 세액공제', 해외 특정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는 군인에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복무군인 세액공제'가 있다. 또한, 의료비, 보험료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저소득 세액공제', 사회보장법 및 퇴역군인보장법에 따른 연금수령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고령 연금수령자 세액공제', 각종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사회보장 수혜자 세액공제'가 있다.

영국의 세액공제에는 소규모 기업들에 자본투자 목적으로 주식가액의 30%의 감면이 적용되는 기업투자기구 세액공제,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발행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식가액의 50%에 상당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초기기업투자기구 세액공제 등이 있다.

프랑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29개 항목의 세액공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각기 공제한도를 두고 있어서 환급되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9) 자녀 1명당 환급이 가능한 공제액은 1,400달러로, 일정금액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며, 국세청은 신청기간 경과 후 3월 내(매년 8월 말까지) 장려금을 결정 후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미국의 근로장려세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공제액이 세금납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전액 환급해주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이다. 동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25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19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세액공제액은 납세자의 근로소득 금액과 납세자의 적격 자녀 명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일본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조세지출로 운영하지 않고 재정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주택부조, 복지부금 등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제도는 16세 미만 자녀양육 시 가구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조세지출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로 미취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위한 working credit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자녀양육비용 지원을 위해 가족세제혜택, 양육수당, 자녀양육보조금과 같은 보조금 지원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모의 소득, 자산, 자녀 수, 자녀 나이 등 각 보조금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이 상이하다.

영국은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ren tax credit)의 자격 요건으로 연령에 따른 자녀 여부와 주당 업무시간과 소득요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본요소인 연간 1,960파운드와 더불어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의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상황에 따라 연간 또는 주당 금액으로 다양하게 지급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근로소득장려세제(prime pour l'emploi)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이전에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으로 지급되었고, 2016년 이후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prime d'activité)으로 대체되었다.

최저한세는 납세자가 소득공제, 비과세, 손실,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그의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별도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소득에 대해 최저한세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소득세 산출과정에

따라 계산된 해당 소득세액이 특정 준비금 및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배제하고 있다.[10] 미국의 경우 일반 개인납세자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일반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조정항목 등과 공제액을 재가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최저한세율은 26%와 2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프랑스의 경우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최저한세가 차별과세금지원칙에 따라 2015년 폐지되었다. 일본, 호주, 영국, 독일은 개인소득세에 대해 최저한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표 Ⅴ-1〉 주요국의 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세율		7단계 누진세율 · 6% · 15% · 24% · 35% · 38% · 40% · 42%	7단계 누진세율 · 10% · 12% · 22% · 24% · 32% · 35% · 37%	7단계 누진세율 · 5% · 10% · 20% · 23% · 33% · 40% · 45%	4단계 누진세율 · 19% · 32.5% · 37% · 45%	3단계 누진세율 · 20% · 40% · 45%	5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과세 · 0~9,168유로: 0% · 9,169~14,254 유로: 14%부터 23.97%까지. · 14,255~55,960 유로: 23.97% 부터 42%까지 · 55,961~265,326 유로:42% · 265,327유로 부터: 45%	4단계 누진세율 · 14% · 30% · 41% · 45% (단, 초고소득자 25만유로 이상은 3%, 50만유로 이상은 4% 추가로 부담)
세액공제	환급가능	-	·자녀세액공제[1)]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	-	·보험료세액공제	·기업투자기구 ·초기기업투자기구 ·벤처자본신탁 ·사회적기업	-	없음
	환급불가능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부양가족지원세액공제 ·경로자및장애인 지원세액공제 ·입양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미국인기회세액공제 -평생교육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 ·인정 NPO법인 등 기부금 특별공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인적공제 -병상자 및 간병인 부양가족 세액공제 -특정지역 거주자 세액공제 -해외복무군인 세액공제	-	-	대부분 공제한도액을 두고 있고, 초과분은 소멸됨

〈표 Ⅴ-1〉의 계속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일반사업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등)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별공제** – 의료비세액 공제 – 보험료세액 공제 **·저소득지원세제** –저소득세액 공제 – 고령연금수령자 세액공제 – 사회보장수혜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	–	
근로소득 장려세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절차에 따라 지급되며, 가구원구성현황과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환급형세액공제 형식으로 납세자의 소득금액 및 자녀 명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짐	조세지출이 아닌 재정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조세지출로 운영하지 않음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형식으로 근로여부, 시간,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2016년 이전에는 세액공제 방식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인센티브 지급방식으로 변경됨
최저한세제도		있음	있음	–	조세지출로 운영하지 않음	–	–	–

주: 1) 일정 한도까지만 환급이 가능함
자료: 저자 작성

Ⅵ 신고·납부제도

우리나라「소득세법」제70조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신고기한까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1)]

미국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 중 일정 소득금액 이상인 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인 IRS Form 1040과 기타 부속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이며, 신고기한 연장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신고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완납되어야 한다.

일본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당해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며, 납세자는 이 기간의 소득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근거하여 자진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액은 제출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호주는 자진신고(self assessment system)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와 달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도 납세자가 별도로 종합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단, 소득이 18,200호주달러 미만으로 면세점 이하인 자와 비거주자로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자는 별도의 소득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신고서 제출기한은 매년 10월 31일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소득세액은 신고서 제출기한 또는 과세당국의 결정세액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개인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과세제도(self assessment system)가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저축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원천징수시스템에 의해 종결되어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다. 근로, 연금 및 저축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개인과 사업자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

11)「소득세법」제76조 제1항

은 서면신고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신고의 경우 1월 31일까지이다. 중간예납을 제외한 최종적인 납부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이다.

독일의 소득세는 신고주의 조세가 아니고 부과주의 조세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납세고지서(Steuerbescheid)를 받고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독일 소득세법은 납세자에게 협력의무의 일종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만, 납세자는 신고 시 세액을 계산하지도 않고 신고와 동시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다만, 납세자는 과세연도 중간에 과세당국이 발부한 사전납부결정서에 기재된 세액에 대해 사전납부(Einkommensteuer-Vorauszahlung)를 해야 한다. 독일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통칙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과세연도의 그다음 해 5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3월 20일 이전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는 무신고가산세(20%),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10%) 등이 부과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40% 세율로 가산세율이 중과된다.

미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할 시 신고의무불이행가산세(월 5%, 최대 25%), 납부의무불이행가산세(월 0.5%)를 부과한다. 또한, 소득세 누락금액이 중대하거나 고의로 과소신고하였다면 고의 및 중대누락 가산세(20%)를 추가로 부과한다.

일본의 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국세통칙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신고가산세 15%, 과소신고가산세(10%)가 있다. 다만, 은폐, 가장행위 등에 대해서 무신고는 40%, 과소신고는 35%로 중과세하고 있다.

호주의 가산세 제도는 신고관련 가산세, 납부관련 가산세,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련 가산세로 구분된다. 신고관련 가산세는 지연신고, 과소신고, 무신고에 따라 가산세율이 상이하다. 지연신고는 28일마다 가산세 점수 1점을 부과하며, 1점당 가산세는 210호주달러이다. 부과되는 가산세 점수는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되며 총 500점을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부주의로 과소신고했는지 여부,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과소신고세액의 25%, 50%, 7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무신고 시에도 무신고세액의 7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관련 가산세는 분기마다 발표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경과일수만큼 부과하며, 과소납부의 경우 과세당국에서 세액경정 시까지 과소납부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납부 및 지연납부 시보다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록 및 유지하지 않은 경우 자료유형에 따라 5~20점의 가산세 점수를 적용하며, 1점당 가산세액은 210호주달러이다.

영국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는 오류세액의 30%가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0~30%), 미납세액의 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 등이 있다. 가산세는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된다.

프랑스는 무신고나 지연신고의 경우에는 10%, 고의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 법의 남용을 이용한 탈세의 경우에는 8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국외전출세 제도는 국내 거주자(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시민권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한 시점에 특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적 포기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마치 국적 포기 당일 보유한 재산이 공정가치 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본은 2018년 7월부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국외 전출 시(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는 경우)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주식 등을 보유한 채로 외국으로 이주할 때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미실현 자본이득에 15.315%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해외로 출국하여 호주 거주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개인납세자에 대해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출국세 과세대상은 호주 거주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자로 거주자 지위가 상실되는 날 기준으로 과거 10년 중 5년간 호주에 거주한 자이다. 출국세 과세대상 자산으로는 주로 호주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호주 소재 부동산, 호주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자산, 지분율 10% 이상의 호주 소재부동산에 대한 간접지분 등이 있다. 과세대상 자산을 호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한 날에 공정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영국은 국외전출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는 출국일 15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또는 주식의 시가가 80만유로 이상을 보유한 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당시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국세를 부과한다. 이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12.8%이며 여기에 사회보장부담금 17.2%가 추가된다.

〈표 Ⅵ-1〉 주요국의 신고납부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신고·납부 기한	다음연도 5월말 (성실신고자 6월말)	·달력연도 : 다음연도 4월 15일 ·회계연도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4번째 달의 15일	다음연도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신고기한: 매년 10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납부기한: 신고서 제출기한 또는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결정세액 통지서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서면신고: 10월 31일 ·전자신고: 1월 31일 ·최종납부기한: 1월 31일	·신고: 그 다음 해 5월말까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가산세	·무신고(20%)[1)2)] ·과소신고(10%)[1)] ·초과환급신고1) ·납부불성실(3%) ·무기장(20%) ·원천징수납부불성실(3%) ·지급명세서보고 불성실(1%,0.5%)	·신고의무불이행 (매월 5%) ·납부의무불이행 (매월 0.5%) ·지연이자 (6%) ·고의 및 중대누락 (20%) ·예정세액과소납부(6%) ·과오환급(20%)	·무신고15%(은폐·가장행위 40%) ·과소신고 10% (은폐·가장행위 35%) ·납부불성실 10% (은폐·가장행위 35%) ·연체세(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은 연7.5% 정도, 2개월 경과 후 연 14.6% 정도)	**·신고관련 가산세** 지연신고: 28일마다 가산세점수 1점 부과 (기업규모에 따라 가산세 점수 할증) 과소신고 : 과소신고 세액의 25%, 50%, 75% 무신고 : 무신고세액의 75% **·납부관련 가산세** 분기마다 가산세율 검토 과소납부시의 가산세율이 미납부 및 지연납부 시보다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됨	·무신고(30%)[3)] ·과소신고(0~30%)[3)] ·납부불성실(5%)[4)]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신고지연가산금: 부과세액의 0.25%로 하되 한 달에 최소한 25유로를 부과하는 것으로 함 25,000유로를 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가능. ·납부의무위반자에 납부지연가산금: 매월 납부세액의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면규정이 없음.	· 무신고(10%) · 지연신고(10%) · 고의로 과소신고 (40%) · 법의남용 및 탈세 (80%)

〈표 Ⅵ-1〉의 계속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기록 및 유지관련 가산세:** 기록 및 유지하지 않은 자료유형별로 5~20점의 가산세점수 부과			
출국세	대상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거주자인 대주주	·5개년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국적포기자의 순자산액이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5개년 동안 납세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가지고 있던 기간 합계가 5년 초과 ·유가증권 등의 시가합계액이 1억엔 이상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호주 거주자 ·주로 호주 내 부동산에 대한 미실현소득에 과세	-	-	출국일 15년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 거주자이면서 주식수 1% 또는 80만유로 이상인 거주자
	과세방법	주식을 시가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20%) 부과	거주자가 국적을 포기한 시점에 보유재산이 시가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시점에 보유하는 유가증권 등에 대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15.315%)	거주자 지위가 상실되는 날 기준으로 공정가치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본이득을 종합과세함		-	(양도소득세 12.8% + 사회보장부담금 17.2%) 부과

주: 1) 부정의 경우 40%
2)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Max(①무신고납부세액 ×20%, ②수입금액 × 0.07%), 부정의 목적인 경우 Max(①무신고납부세액 ×40%, ②수입금액 × 0.14%)
3) 고의 등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차별적인 세율로 중과됨
4) 기간 경과에 따라 추가 부과됨

자료: 저자 작성

Ⅶ 국가별 시사점

1. 미국

첫째, 동일한 과세항목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조세부과와 징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작업(소득공제)[12]을 거치지만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위험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에서 과세하는 연방소득세만 다루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도에 대한 과세 영향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별로 세율뿐 아니라 과세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납세자의 경우 결혼 여부에 따라 납세자 신고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합산신고, 세대주 신고, 개인 단독신고, 부부별도 신고의 4가지 납세자 유형이 존재하며, 납세자 유형별로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이 상이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개인단위 유형보다는 조세 형평성 측면과 실질과세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소득세제에서 큰 변화는 소득공제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2018년부터 복잡한 인적공제를 완전 폐지하였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적공제 폐지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는 세법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납세비용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2. 일본

일본의 소득세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와 유사하지만 과세소득 규정 방식, 소득수준별 기본공제금액의 차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일본은 일부 소득유형을 구분하되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최근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포괄위임규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열거주의(일부 소득항목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문제이다.

둘째, 일본은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기초공제 금액을 차등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기초 인적공제 금액 수준도 인상하였다. 공제받는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12) 연방소득세 산출 시 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를 소득공제로 반영하여 이중과세 위험을 제거하려고 하나, 소득공제는 일정한도까지만 허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배우자공제 금액도 다르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일본의 소득수준별 기초공제금액 차등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은 부녀자공제와 함께 편부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양가족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공제제도를 검토하거나 한부모공제로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본은 최근 부양공제제도 중에서 16세 미만 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조세지원을 아동수당제도로 일원화하였다. 아동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양자녀의 경우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 부양친족공제와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 특정부양 친족 소득공제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은 근로소득의 경우 특정지출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특정 비용의 합계금액이 급여소득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호주

첫째, 호주의 소득세 과세권은 연방정부에 있으며 소득세수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배분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호주는 영미법계 국가로 세목별로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크게 소득세 과세, 소득세율, 조세행정으로 나누어 각 법에는 주요 사항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과세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례 및 국세청 지침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호주 소득세 제도는 포괄주의 과세체계로 소득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금액은 법에서 비과세하도록 명시하지 않는 한 모두 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법에서 과세하도록 명시한 소득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체계인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 또한 공제가능한 비용항목을 열거하거나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공제하지 않고 과세대상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이를 모두 공제하고 있다.

넷째, 호주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인적공제와 같은 형태의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최근의 호주 소득세 개정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고,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호주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조정하여 2013년부터는 소득세

면세점이 6,000호주달러 미만에서 18,200호주달러 미만으로 크게 인상되었으며, 중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조정하여 2024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이 9만호주달러 초과 12만호주달러 미만인 자의 소득세 적용세율이 4.5~12.5%로 인하될 예정이다.

4. 영국

영국은 세계 최초로 소득세를 도입한 국가로서 의의를 가지지만 다른 EU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과세대상 소득의 열거주의 채택, 가족이 아닌 개인별 과세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과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영미법 체계의 국가 특성 등으로 인해 몇 가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소득세의 과세권은 모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과세권이 전혀 없다. 과거 여러 차례 지방소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영미법 국가의 특성에 따라 판례법이 법원(法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영국에 성문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성문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법원의 판례는 과거 많은 사례의 축적을 통해 세법의 형성과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영국의 세율구조는 1990년대 이후에 다소 복잡해졌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소득공제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세율 적용 납세자 규모는 지난 30여 년 동안에 약 70만명에서 약 50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납세자 단위에서도 1990년 이전까지 부부를 소득세 목적상 단일 과세단위로 간주하다가 그 이후부터 부부를 독립된 납세 개체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세주의(皆稅主義)를 취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성직자도 포함되어 일반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성직자에 대한 과세제도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영국은 일반 공제항목에서 모든 장애인이 공제대상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추가공제로서 장애인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좀 더 장애인 친화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 독일

첫째, 공동세와 관련하여, 독일은 소득세를 연방과 주의 공동세로 활용하고 있다.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도 통일되어 있고, 과세행정도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되, 다만 세수만 연방과 주에 배분된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보다 법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행정비용이 적게 들며, 납세자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둘째, 거주자 · 비거주자와 관련한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독일은 거주자 · 비거주자와 관련한 법적 규율을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통칙법」에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소득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증세 등 다른 법령에서도 중요하고, 그 각각에 대해 공통적인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독일은 현재 부부합산과세제도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생활공동체라는 부부의 현실에 부합하는 조세제도라고 판단된다. 다만, 단순합산과세로 인해 부부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분이승법을 채택하고 있다.

넷째, 세율제도와 관련하여, 독일은 세율체계에서 누진유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일단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시키되 그렇게 하여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비과세소득에 대해 최소한 누진율에 의한 소득세부담은 유지토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섯째,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와 아동수당의 통합적 운영과 관련하여, 독일은 아동수당제도를 사회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아동수당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6. 프랑스

프랑스 소득세 제도의 특징은 가족단위 과세제도,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 및 납세자의 절세권을 보장하는 추계과세제도에 있다.

첫째, 가족단위 과세제도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소득을 얻는 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과세표준및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자녀의 수가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유리한 제도이다.

둘째,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에 이르고 있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42%의 세율이 적용되나, 그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즉, 10억원이나 200억원이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합리적인지는 의심이 든다.

셋째, 납세자의 절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산출하면서 법령이 정한 추계과세 또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실제경비지출액 중 납세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추계신고는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과세관청에서 실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근거로 과세를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납세자의 절세권 행사가 제한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소득세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하다고 본다.

넷째, 소득불균형 해소 및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분담금을 소득세에 부가하여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모델로서 프랑스 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2장 | OECD 회원국의 소득세 통계

Ⅰ 개인소득세 부담률 및 총 세수 대비 비중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개인소득세 세수 비중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때 개인소득세 세수는 OECD 세수 통계(OECD Tax revenue statistics) 내 개인의 소득, 이익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자료를 사용하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9.9%에서 7.6%로 낮아졌으나, 2010년대에 다시 상승하여 2016년에는 8.2%까지 증가하였다 (〈표 Ⅰ-1〉 참고). 2017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24.6%)고,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1.9%)다. 한국의 2017년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4.8%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2011년에 비해 1.3%p 증가한 것이며,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와 함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6개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미국이 10.5%, 영국 9.1%, 일본 5.7%, 호주 11.3%[13], 독일 10.2%, 프랑스는 8.6%로 나타났다. 영국을 제외한 5개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0.6~1.4%p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Ⅰ-1〉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 변화

(단위 :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11.5	12.1	11.5	9.8	10.2	10.6	10.7	11.3	11.6	11.3	-
오스트리아	8.9	8.2	9.3	9.2	9.2	9.5	9.7	10.0	10.4	9.1	9.1
벨기에	14.7	13.2	13.7	12.0	12.2	12.3	12.9	13.0	12.6	12.2	12.1
캐나다	10.4	14.4	12.8	10.9	11.1	11.4	11.3	11.4	12.0	11.9	11.6
칠레	-	0.9	1.4	1.3	1.4	1.5	1.4	1.4	2.0	1.8	1.9

13) 호주의 경우 2017년 수치가 없어 2016년 수치를 기재함

〈표 Ⅰ-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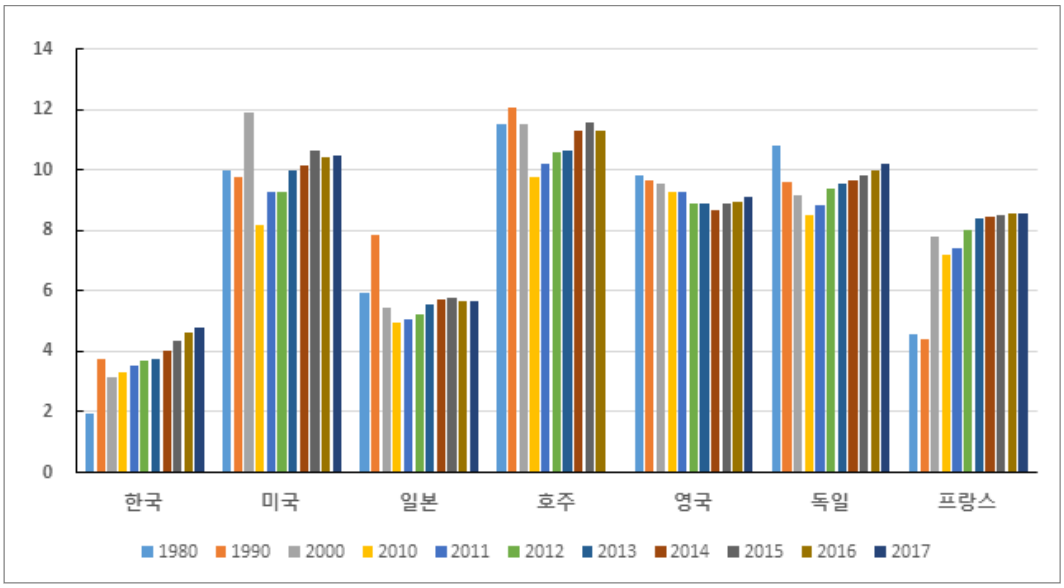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체코	-	-	4.2	3.3	3.5	3.6	3.7	3.6	3.6	3.8	4.0
덴마크	21.6	24.0	24.7	23.3	23.2	23.3	25.1	26.3	25.5	24.7	24.6
에스토니아	-	-	6.8	5.3	5.1	5.2	5.4	5.7	5.7	5.8	5.7
핀란드	12.6	14.9	14.0	12.1	12.3	12.5	12.8	13.4	13.3	13.0	12.6
프랑스	4.6	4.4	7.8	7.2	7.4	8.0	8.4	8.5	8.5	8.6	8.6
독일	10.8	9.6	9.2	8.5	8.8	9.4	9.6	9.6	9.8	10.0	10.2
그리스	3.1	3.6	4.8	4.0	4.8	7.0	6.0	5.9	5.8	5.9	-
헝가리	-	-	7.2	6.5	5.0	5.6	5.3	5.2	5.3	5.2	5.0
아이슬란드	6.8	8.3	12.6	12.1	12.9	13.1	13.6	13.4	13.3	13.8	14.5
아일랜드	9.6	10.7	9.8	8.1	8.5	8.9	9.0	9.1	7.3	7.4	7.2
이스라엘	-	-	10.1	5.5	5.5	5.4	5.5	5.7	6.1	6.2	6.8
이탈리아	6.6	9.6	10.1	11.2	11.0	11.6	11.6	11.2	11.2	11.0	10.9
일본	6.0	7.8	5.4	4.9	5.1	5.2	5.6	5.7	5.8	5.7	5.7
한국	**1.9**	**3.8**	**3.1**	**3.3**	**3.5**	**3.7**	**3.7**	**4.0**	**4.3**	**4.6**	**4.8**
라트비아	-	-	5.5	6.2	5.6	5.7	5.8	5.9	5.9	6.4	6.6
리투아니아	-	-	7.6	3.6	3.5	3.5	3.6	3.6	3.8	4.0	3.9
룩셈부르크	9.2	8.1	6.8	7.9	8.2	8.4	8.7	8.7	9.1	9.4	9.1
멕시코	-	-	-	2.3	2.4	2.5	2.6	2.9	3.3	3.4	3.5
네덜란드	10.4	9.8	5.6	7.7	7.4	6.9	6.8	6.9	7.6	7.1	8.4
뉴질랜드	19.5	17.4	14.0	11.4	10.8	11.7	11.2	11.7	11.7	11.6	12.1
노르웨이	11.9	10.5	10.1	9.9	9.7	9.7	9.9	9.8	10.8	10.7	10.0
폴란드	-	-	4.3	4.4	4.3	4.5	4.5	4.6	4.7	4.8	5.0
포르투갈	-	4.2	5.4	5.4	6.0	5.8	7.7	7.7	7.3	6.8	6.5
슬로바키아	-	-	3.3	2.6	2.8	2.9	2.9	3.0	3.1	3.3	3.4
슬로베니아	-	-	5.5	5.6	5.6	5.7	5.1	5.1	5.1	5.2	5.1
스페인	4.5	6.9	6.4	6.8	7.1	7.4	7.5	7.5	7.2	7.1	7.4
스웨덴	18.0	19.1	16.3	12.0	11.7	11.9	12.2	12.2	12.5	13.1	13.1
스위스	9.1	7.7	8.2	8.4	8.3	8.4	8.3	8.3	8.5	8.6	8.7
터키	5.7	3.9	5.2	3.5	3.5	3.6	3.5	3.6	3.7	3.7	3.6
영국	9.8	9.7	9.6	9.3	9.3	8.9	8.9	8.7	8.9	9.0	9.1
미국	10.0	9.8	11.9	8.2	9.3	9.3	10.0	10.2	10.6	10.4	10.5
OECD평균	9.9	9.7	8.7	7.6	7.7	7.9	8.1	8.2	8.3	8.2	8.3[1)]

주: 1) 2017년 수치가 공시되지 않은 호주, 그리스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자료: OECD Statistics, Revenue Statistics - OECD Member Countries: Table 3.7 Taxes as % of GDP and % of Total tax revenue: 1100 Taxes on income, profit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19.3.11.

[그림 Ⅰ-1] OECD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p.222
OECD Statistics, Revenue Statistics - OECD Member Countries: Table 3.7 Taxes as % of GDP and % of Total tax revenue : 1100 Taxes on income, profit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표 Ⅰ-1〉의 자료원과 동일함)

OECD 회원국의 총세수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의 평균은 1980년 31.3%에서 2010년 22.9%까지 낮아졌으나, 2011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2017년 평균은 23.9%[14]에 이르고 있다(〈표 Ⅰ-2〉 참고). 2011년 이후 2017년까지[15] 36개국 중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25개국, 감소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소득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2017년 기준으로 53.4%에 달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이 38.6% 수준이며, 호주 역시 2016년 기준으로는 40.8%에 이른다. 이외에도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등에서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30%를 넘는다. 총세수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인 칠레는 2016년 기준으로 8.8%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슬로바키아(10.3%)와 체코(11.6%)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4) 2017년 수치가 결측치인 호주, 그리스, 일본, 멕시코는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
15) 호주, 그리스, 일본, 멕시코는 2017년 수치가 없어 2016년 수치로 비교함

한국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17.9%로 OECD 평균보다 6%p 낮으며, 회원국 중에서도 10번째로 낮은 수준이다.[16] 그러나 2011년 이후 증가폭은 3.2%p로, 노르웨이, 칠레와 함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 다룰 6개국의 경우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18.5%와 18.6%[17]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독일이 27.2%, 영국이 27.4%, 미국이 38.6%, 호주가 40.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2〉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1] 비중 (총세수 기준)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7년)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44.0	43.0	37.7	38.6	39.4	39.3	39.2	41.3	41.4	40.8	-
오스트리아	23.2	21.0	22.0	22.4	22.4	22.8	22.8	23.5	24.1	21.6	21.7
벨기에	36.4	32.0	31.4	28.2	28.2	27.8	28.5	28.8	28.2	27.7	27.2
캐나다	34.1	40.8	36.8	35.0	36.1	36.4	36.1	36.3	36.9	36.3	35.9
칠레	-	5.6	7.6	6.8	6.6	6.8	7.2	7.3	9.8	8.8	9.7
체코	-	-	12.9	10.2	10.6	10.6	10.7	10.8	10.7	11.2	11.6
덴마크	52.4	54.1	52.7	52.0	51.8	51.2	54.7	54.3	55.2	53.5	53.4
에스토니아	-	-	22.0	15.9	16.1	16.4	17.2	17.5	17.2	17.2	17.3
핀란드	35.7	34.7	30.6	29.5	29.2	29.3	29.3	30.6	30.2	29.6	29.1
프랑스	11.6	10.7	17.9	17.0	17.1	18.1	18.6	18.7	18.8	18.8	18.5
독일	29.6	27.6	25.3	24.3	24.7	25.8	26.0	26.3	26.6	26.6	27.2
그리스	14.9	14.1	14.5	12.4	14.2	19.6	16.8	16.5	15.7	15.2	-
헝가리	-	-	18.6	17.4	13.9	14.7	14.0	13.8	13.7	13.3	13.3
아이슬란드	23.1	26.9	34.8	36.5	37.6	37.4	38.3	34.9	36.7	26.7[2]	38.5
아일랜드	32.0	33.1	31.9	30.0	31.1	32.4	31.9	31.9	31.6	31.6	31.4
이스라엘	-	-	29.1	18.0	17.9	18.0	17.7	18.3	19.4	19.8	20.7
이탈리아	23.1	26.3	24.8	26.8	26.3	26.4	26.3	25.8	26.0	25.8	25.7
일본	24.3	27.8	21.1	18.6	18.4	18.6	19.2	18.9	18.9	18.6	-
한국	**11.5**	**20.0**	**14.6**	**14.2**	**14.7**	**15.0**	**15.3**	**16.3**	**17.2**	**17.6**	**17.9**
라트비아	-	-	18.8	22.1	20.1	20.1	20.2	20.4	20.3	21.0	21.8
리투아니아	-	-	24.8	12.7	12.8	12.9	13.3	13.2	13.3	13.4	13.0
룩셈부르크	27.0	24.1	18.5	21.0	22.2	21.8	22.8	23.1	24.4	24.7	23.6
멕시코	-	-		18.3	18.8	19.9	19.7	21.5	20.6	20.4	-
네덜란드	26.3	24.7	15.1	21.5	20.8	19.4	18.8	18.7	20.5	18.5	21.6
뉴질랜드	61.6	48.0	43.1	37.7	36.1	36.9	36.8	37.5	37.2	36.8	37.7
노르웨이	28.5	26.2	24.1	23.6	23.1	23.4	24.8	25.4	28.0	27.6	26.3

16) 2017년 수치가 결측치인 호주, 그리스, 일본, 멕시코는 제외하고 산정한 순위임
17) 일본은 2017년 수치가 없어 2016년 수치로 비교함
18) 호주는 2017년 수치가 없어 2016년 수치로 비교함

〈표 Ⅰ-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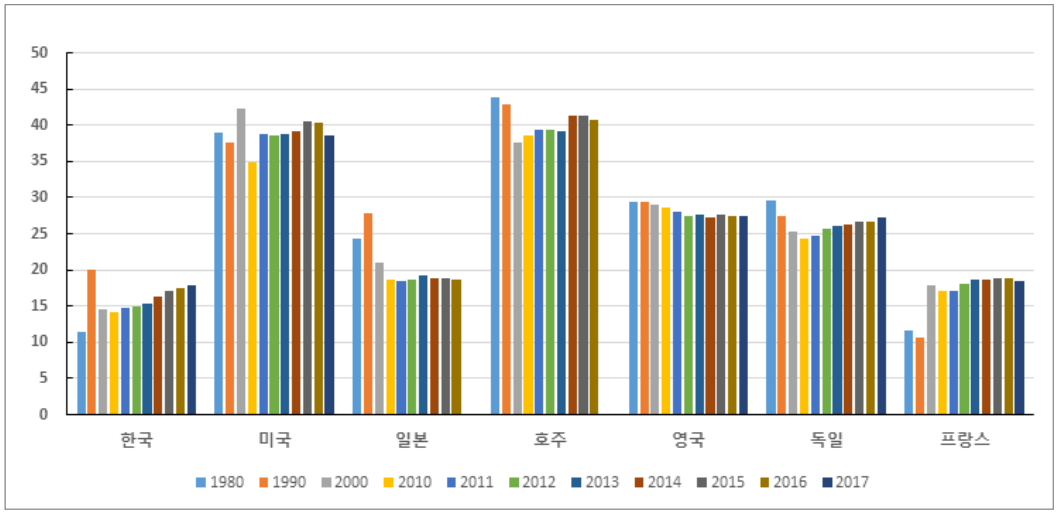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폴란드	-	-	13.2	13.9	13.6	13.9	14.0	14.4	14.4	14.5	14.7
포르투갈	-	15.9	17.4	17.6	18.4	18.3	22.6	22.5	21.2	19.8	18.8
슬로바키아	-	-	9.9	9.4	9.9	10.3	9.6	9.6	9.7	10.2	10.3
슬로베니아	-	-	15.0	15.1	15.3	15.4	14.0	14.0	14.0	14.4	14.2
스페인	20.4	21.7	19.1	21.7	22.8	23.1	22.7	22.5	21.4	21.4	21.9
스웨덴	41.0	38.5	33.2	27.9	27.5	28.0	28.4	28.6	29.1	29.8	29.9
스위스	38.9	32.5	29.6	31.7	31.0	31.4	30.9	30.9	31.0	31.0	30.7
터키	43.5	26.8	22.2	14.0	13.5	14.4	13.9	14.7	14.6	14.6	14.5
영국	29.4	29.4	29.0	28.7	28.0	27.5	27.6	27.3	27.7	27.4	27.4
미국	39.1	37.7	42.2	34.8	38.8	38.5	38.9	39.1	40.5	40.3	38.6
OECD평균	31.3	28.6	24.6	22.9	23.0	23.4	23.6	23.7	24.1	23.8	23.9

주: 1) OECD Statistics의 '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을 기준으로 한 값임
2) 2016년 아이슬란드는 폐업한 상업 혹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일회성 안정화 기부금을 받아 총세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3)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자료: OECD Statistics, Revenue Statistics - OECD Member Countries: Table 3.7 Taxes as % of GDP and % of Total tax revenue : 1100 Taxes on income, profit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19.3.11.

[그림 Ⅰ-2]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p.258
OECD Statistics, Revenue Statistics - OECD Member Countries: Table 3.7 Taxes as % of GDP and % of Total tax revenue: 1100 Taxes on income, profit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표 Ⅰ-2〉의 자료원과 동일함)

Ⅱ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수

〈표 Ⅱ-1〉은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top marginal tax rate, 이하 개인소득세율) 변화를 보여준다.[19] 1981년에서 2010년까지 30년간은 라트비아와 스위스를 제외한 33개국에서 개인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1981년 57.01%이던 OECD 회원국의 평균 개인소득세율[20]은 2010년에는 17.98%p 낮아진 35.08%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개인 소득세율 변화가 국가별로 다른 추이를 보인다. 개인소득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13개국[21], 유지한 국가가 12개국[22], 인하한 국가가 10개국[23]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이후 본문에서 다룰 6개 국가들의 경우 영국만 개인소득세율을 5%p 인하하였으며, 호주와 독일은 개인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4~5%p 인상되었다.

〈표 Ⅱ-1〉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변화

(단위: %)

국가	1981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17변동[1]
호주	60	47	47	45	45	45	45	45	45	45	45	유지
오스트리아	62	50	50	50	50	50	50	50	50	55	55	인상
벨기에	67.5	55	55	50	50	50	50	50	50	50	50	유지
캐나다	43	29	29	29	29	29	29	29	29	33	33	인상
칠레	-	-	45	40	40	40	40	40	40	40	35.5	인하
체코	-	-	32	15	15	15	15	15	15	15	15	유지
덴마크	40.04	40	28	18.67	18.64	19.65	20.83	21.83	23.08	24.08	25.08	인상
에스토니아	-	-	26	21	21	21	21	21	20	20	20	인하
핀란드	51	43	37.5	30	30	29.75	31.75	31.75	31.75	31.75	31.50	인상
프랑스	60	56.8	53.25	41	41	45	45	45	45	45	45	인상
독일	60	53	51	45	45	45	45	45	45	45	45	유지
그리스	-	50	45	45	45	45	42	42	42	45	45	유지

19)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이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공제 및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최고세율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소득세율은 단일 납세자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20) 연도별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각국의 개인소득세율의 단순 평균치이다.

21)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미국

22) 호주, 벨기에, 체코,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터키

23) 칠레,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영국

〈표 Ⅱ-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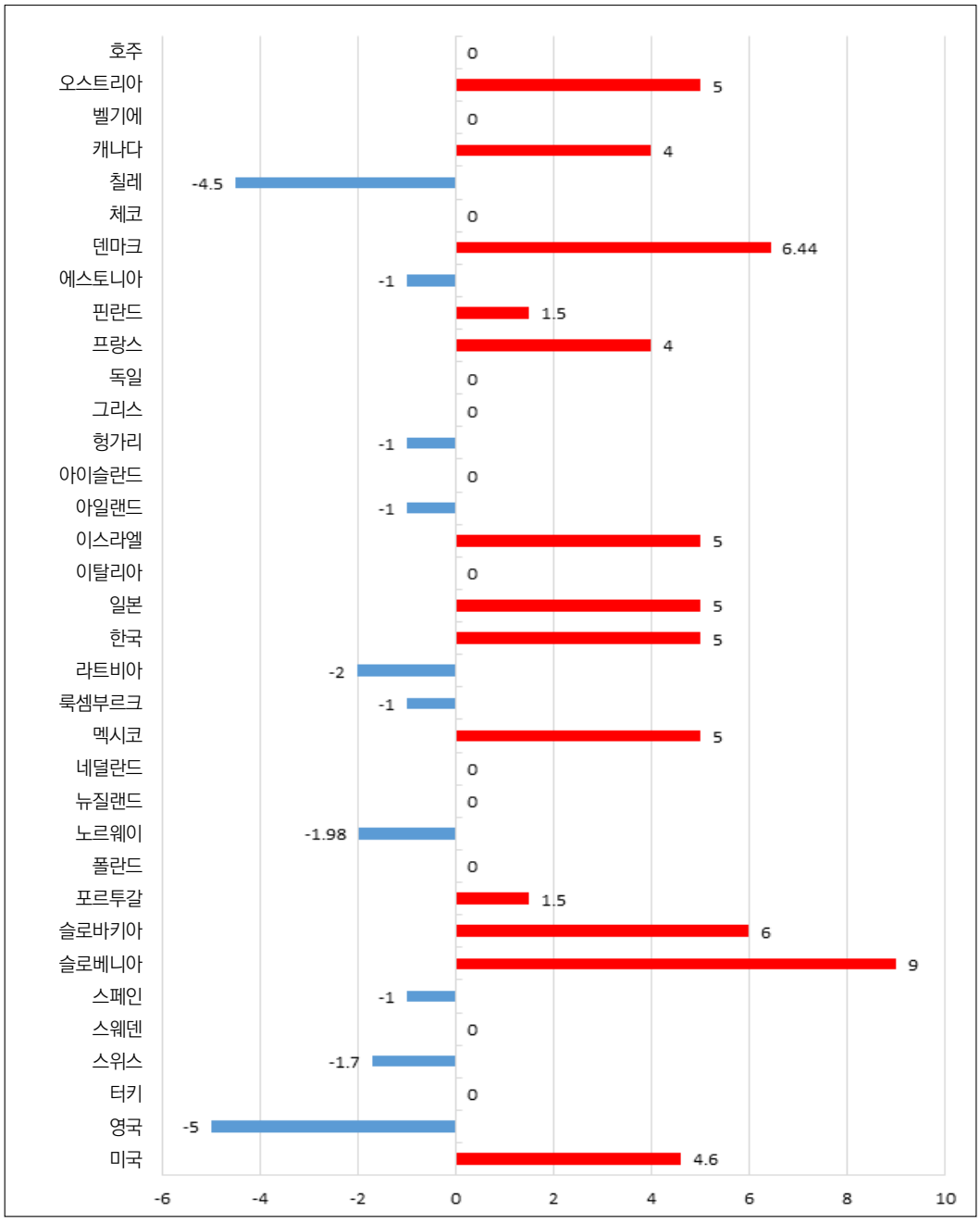
국가	1981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17변동[1)]
헝가리	-	50	40	32	16	16	16	16	16	15	15	인하
아이슬란드	-	-	33.41	33	31.8	31.8	31.8	31.8	31.8	31.8	31.8	유지
아일랜드	60	53	44	41	41	41	41	41	40	40	40	인하
이스라엘	-	-	50	45	45	48	50	50	50	50	50	인상
이탈리아	72	50	45.5	43	43	43	43	43	43	43	43	유지
일본	75	50	37	40	40	40	40	40	45	45	45	인상
한국	**-**	**-**	**40**	**35**	**35**	**38**	**38**	**38**	**38**	**38**	**40**	**인상**
라트비아	-	-	25	26	25	25	24	24	23	23	23	인하
룩셈부르크	57	56	46	38	39	39	40	40	40	40	38	인하
멕시코	55	35	40	30	30	30	30	35	35	35	35	인상
네덜란드	72	60	60	52	52	52	52	52	52	52	52	유지
뉴질랜드	60	33	39	35.5	33	33	33	33	33	33	33	유지
노르웨이	38	17	29.85	24.55	26.05	25.75	25.75	24.95	25.15	24.25	24.07	인하
폴란드	-	-	40	32	32	32	32	32	32	32	32	유지
포르투갈	84.4	40	40	45.88	46.5	46.5	48	48	48	48	48	인상
슬로바키아	-	-	42	19	19	19	25	25	25	25	25	인상
슬로베니아	-	-	50	41	41	41	50	50	50	50	50	인상
스페인	65.09	56	39.6	27.13	23.5	30.5	30.5	30.5	22.5	22.5	22.5	인하
스웨덴	29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유지
스위스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1.5	인하
터키	-	-	40	35	35	35	35	35	35	35	35	유지
영국	60	40	40	50	50	50	45	45	45	45	45	인하
미국	70	28	39.6	35	35	35	39.6	39.6	39.6	39.6	39.6	인상
OECD평균	57.01	42.92	39.94	35.08	34.48	34.98	35.50	35.65	35.52	35.83	35.67	인상

주: 1) 2011년 대비 2017년에 세율이 인상, 유지, 인하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함
2)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2017, pp.31~32(1981~2016년 값)
OECD Tax Database Table Ⅰ.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자료 활용(2017년 값),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검색일자: 2019.3.12.

[그림 Ⅰ-3]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율 변화(2011년 대비 2017년)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2017, pp.34
OECD Tax Database Table Ⅰ.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표 Ⅱ-1〉 자료원과 동일함)

〈표 Ⅱ-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정 최고세율(top statutory) 변화를 보여준다. 개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의 OECD 평균은 2000년 45.76%, 2011년 41.23%, 2017년 43.27%로, 개인소득세율의 추이와 유사하게 2010년 초반까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인상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2017년 법정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이외에도 11개국[24]이 50% 이상의 법정 최고세율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코를 비롯하여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30% 이하의 낮은 법정 최고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세율 역시 2011년 이후 영국은 인하, 독일은 유지, 프랑스, 한국, 일본, 미국은 인상되는 추이를 보인다. 호주는 예외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은 유지된 반면 법정 최고세율은 인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Ⅱ-2〉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 변화

(단위: %)

국가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48.5	46.5	46.5	47.5	46.5	46.5	49	49	49
오스트리아	43.7	43.7	43.7	43.7	50	50	50	48	48
벨기에	60.5	53.7	53.7	53.7	53.7	53.75	53.8	53.3	52.9
캐나다	47.9	46.4	46.4	48.0	49.5	49.5	49.5	53.5	53.5
칠레	45	40	40	40	40	40	40	40	35
체코공화국	32	15	15	15	15	15	15	15	15
덴마크	59	55.38	55.38	55.38	55.56	55.56	55.79	55.79	55.79
에스토니아	26	21	21	21	21	21	20	20	20
핀란드	55.2	49.0	49.2	49	51.1	51.5	51.6	51.6	51.4
프랑스	58.3	46.7	50.5	54.4	54.5	54.5	54.5	54.5	54.5
독일	53.8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그리스	45	45	49	49	46	46	50	54	54
헝가리	40	32	16	16	16	16	16	15	15
아이슬란드	45.4	46.1	46.2	46.2	46.2	46.2	46.2	46.3	46.2
아일랜드	46	52	48	48	48	48	48	48	48
이스라엘	50	45	45	48	50	50	50	50	50
이탈리아	46.4	45.2	47.26	47.26	47.26	47.84	48.81	48.81	47.2
일본	50	50	50	50	50.84	50.84	55.95	55.95	55.95
한국	44	38.5	38.5	41.8	41.8	41.8	41.8	41.8	44[1]
라트비아	25	26	25	25	24	24	23	23	23

24)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스웨덴

〈표 Ⅱ-2〉의 계속

국가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룩셈부르크	47.15	38.95	41.34	41.34	43.6	43.6	43.6	43.6	41.4
멕시코	40	30	30	30	30	35	35	35	35
네덜란드	60	52	52	52	52	52	52	52	52
뉴질랜드	39	35.5	33	33	33	33	33	33	33
노르웨이	47.5	40	40	40	40	39	39	38.7	38.5
폴란드	40	32	32	32	32	32	32	32	32
포르투갈	40	45.88	50	49	56.5	56.5	56.5	56.5	56.2
슬로바키아	42	19	19	19	25	25	25	25	25
슬로베니아	50	41	41	41	50	50	50	50	50
스페인	48	43	45	52	52	52	45	45	43.5
스웨덴	55.38	56.56	56.55	56.6	56.73	56.86	56.99	57.1	57.1
스위스	43.75	41.67	41.67	41.67	41.67	41.67	41.67	41.67	41.67
터키	40.6	35.66	35.66	35.66	35.76	35.76	35.76	35.76	35.76
영국	40	50	50	50	45	45	45	45	45
미국	46.65	41.85	41.85	41.78	46.25	46.25	46.25	46.25	46.25
OECD평균	45.76	41.37	41.23	41.76	42.69	42.83	42.95	43.27	43.27

주: 1) 한국의 수치는 2017년 세율로 재계산하여 저자가 작성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pp.35~36 (1981~2016년 값)
OECD Tax Database Table Ⅰ.7. 중 Top statutory personal income tax rates 자료 활용 (2017년 값),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7, 검색일자: 2019.3.12.

〈표 Ⅱ-3〉은 OECD 회원국의 과세표준 구간 수 변화를 보여준다. 과세표준 구간 수는 소득상위계층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간적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25] OECD 회원국의 과세표준 구간 수 평균은 2000년 5.4개에서 2017년 4.9개로 감소하였다. 체코는 4단계에서 1단계, 슬로바키아는 7단계에서 2단계로 감소하는 등 다수의 국가에서 과세표준 구간 수가 감소한 반면,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4개국은 10단계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요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 독일은 2000년 이후로 과세표준을 4개에서 각각 7개, 6개, 5개로 인상하였으며, 미국도 과세표준을 5개에서 7개로 인상하였다.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p.31

〈표 Ⅱ-3〉 OECD 회원국의 과세표준 구간 수 변화

(단위: 개)

국가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5	5	5	5	5	5	5	5	5
오스트리아	12	4	4	4	4	4	4	7	7
벨기에	7	5	5	5	5	5	5	5	5
캐나다	7	4	4	4	4	4	4	5	5
칠레	7	8	8	8	8	8	8	8	7
체코	4	1	1	1	1	1	1	1	1
덴마크	3	2	2	2	2	2	2	2	2
에스토니아	1	1	1	1	1	1	1	1	1
핀란드	7	5	5	5	6	6	6	5	5
프랑스	7	5	5	6	6	5	5	5	5
독일	4	5	5	5	5	5	5	5	5
그리스	6	9	8	8	3	3	3	4	4
헝가리	3	2	1	1	1	1	1	1	1
아이슬란드	2	3	3	3	3	3	3	3	2
아일랜드	2	2	2	2	2	2	2	2	2
이스라엘	5	6	6	6	7	7	7	7	7
이탈리아	5	5	5	5	5	5	5	5	5
일본	4	6	6	6	6	6	7	7	7
한국	4	4	4	5	5	5	5	5	6
라트비아	1	1	1	1	1	1	1	1	1
룩셈부르크	18	17	18	18	19	19	19	19	19
멕시코	10	8	8	8	8	11	11	11	11
네덜란드	4	4	4	4	4	4	4	4	4
뉴질랜드	4	4	4	4	4	4	4	4	4
노르웨이	3	3	3	3	3	3	3	5	5
폴란드	2	2	2	2	2	2	2	2	2
포르투갈	5	8	8	8	5	5	5	5	5
슬로바키아	7	1	1	1	2	2	2	2	2
슬로베니아	6	3	3	3	4	4	4	4	5
스페인	6	4	6	7	7	7	5	5	5
스웨덴	3	3	3	3	3	3	3	3	3
스위스	11	11	11	11	11	11	11	11	11
터키	6	4	4	4	4	4	4	4	4
영국	3	3	3	3	3	3	3	3	3
미국	5	6	6	7	7	7	7	7	7
OECD평균	5.4	4.7	4.7	4.8	4.7	4.8	4.8	4.9	4.9

자료: OECD Tax Database Table Ⅰ.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함.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검색일자: 2019.3.12.

Ⅲ 개인소득세 세수입구조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세수 내 국세 및 지방세 구조를 살펴보자(〈표 Ⅲ-1〉 참고). 국세는 연방 및 지방정부(federal of central government), 국가 공동체(supranational)[26]의 개인소득세 항목을 합산하였으며, 지방세는 주 및 지방 정부의 개인소득세 항목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국세 비중은 74.3%이다.

단일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인소득세 세수에서 국세의 비중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28개국 중 13개국[27]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0%였다. 한국 역시 지방세의 비중이 2000년대 이후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17년 국세의 비중이 90.4%이다. 그러나 단일 국가 중에서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페인의 6개국에서는 지방세의 비중이 국세 비중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가에서도 대체로 국세가 지방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호주, 캐나다, 멕시코는 개인소득세수 내 지방세 비중이 0%였고, 미국(20%), 벨기에(25.6%), 캐나다(40%) 역시 지방세의 비중이 낮았다. 연방국가 중 독일(56.7%), 스위스(80.1%) 2개국에서는 지방세 비중이 국세 비중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6) EU를 대신하여 EU 회원국이 징수한 관세는 OECD 통계에서 supranational로 분류됨(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p.3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p.243에서 재인용)

27) 칠레, 체코, 프랑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영국

〈표 Ⅲ-1〉 OECD 회원국의 국세·지방세 구조 변화 추이[1)]

(단위: %)

	1980		1990		2000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연방국가																		
호주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	-
오스트리아	63.8	36.2	61.8	38.2	97.3	2.7	97.1	2.9	97.2	2.8	97.3	2.7	97.4	2.6	96.9	3.1	97.0	3.0
벨기에	92.6	7.4	90.6	9.4	90.7	9.3	93.3	6.7	94.2	5.8	94.9	5.1	85.6	14.4	74.2	25.8	74.4	25.6
캐나다	61.6	38.4	60.4	39.6	63.1	36.9	60.4	39.6	59.6	40.4	59.4	40.6	59.6	40.4	59.1	40.9	60.0	40.0
독일	40.1	59.9	39.9	60.1	42.9	57.1	43.3	56.7	43.3	56.7	43.3	56.7	43.3	56.7	43.2	56.8	43.3	56.7
멕시코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스위스	21.6	78.4	16.5	83.5	15.6	84.4	19.5	80.5	18.3	81.7	17.9	82.1	18.8	81.2	18.8	81.2	19.9	80.1
미국	85.5	14.5	81.3	18.7	82.3	17.7	78.2	21.8	79.4	20.6	80.3	19.7	80.6	19.4	80.3	19.7	80.0	20.0
단일국가																		
칠레	-	-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체코	-	-	-	-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덴마크	48.8	51.2	47.0	53.0	45.7	54.3	54.2	45.8	56.8	43.2	59.0	41.0	57.3	42.7	55.1	44.9	55.4	44.6
에스토니아	-	-	-	-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핀란드	43.7	56.3	43.9	56.1	47.7	52.3	29.6	70.4	31.2	68.8	33.8	66.2	33.2	66.8	33.4	66.6	32.4	67.6
프랑스	100.0	0.0	100.0	0.0	100.0	0.0	99.9	0.1	99.9	0.1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그리스	98.4	1.6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	-
헝가리	-	-	-	-	99.8	0.2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아이슬란드	53.7	46.3	55.7	44.3	48.1	51.9	45.9	54.1	43.1	56.9	42.3	57.7	42.8	57.2	44.1	55.9	44.2	55.8
아일랜드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이스라엘	-	-	-	-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이탈리아	98.9	1.1	98.8	1.2	90.9	9.1	86.9	13.1	85.7	14.3	85.1	14.9	84.7	15.3	84.3	15.7	84.3	15.7
일본	71.1	28.9	71.4	28.6	65.5	34.5	52.6	47.4	56.4	43.6	57.8	42.2	58.9	41.1	58.6	41.4	58.8	41.2
한국	-	-	95.4	4.6	88.5	11.5	89.4	10.6	89.9	10.1	89.9	10.1	90.0	10.0	90.6	9.4	90.4	9.6
라트비아	-	-	-	-	28.1	71.9	19.8	80.2	20.1	79.9	19.8	80.2	20.0	80.0	22.1	77.9	22.8	77.2
리투아니아	-	-	-	-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룩셈부르크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네덜란드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뉴질랜드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노르웨이	33.4	66.6	35.6	64.4	43.6	56.4	48.8	51.2	53.0	47.0	52.1	47.9	52.1	47.9	49.1	50.9	48.5	51.5
폴란드	-	-	-	-	71.2	28.8	56.9	43.1	55.8	44.2	55.0	45.0	54.1	45.9	54.0	46.0	53.9	46.1
포르투갈	-	-	96.6	3.4	97.1	2.9	92.9	7.1	93.9	6.1	94.1	5.9	93.7	6.3	93.7	6.3	93.9	6.1
슬로바키아	-	-	-	-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슬로베니아	-	-	-	-	64.9	35.1	43.5	56.5	38.8	61.2	40.9	59.1	48.5	51.5	50.1	49.9	50.5	49.5
스페인	90.4	9.6	92.4	7.6	81.0	19.0	57.0	43.0	51.9	48.1	53.3	46.7	49.6	50.4	46.8	53.2	45.7	54.3
스웨덴	26.5	73.5	24.4	75.6	13.2	86.8	-23.3	123.3	-26.8	126.8	-25.7	125.7	-20.9	120.9	-15.8	115.8	-15.7	115.7
터키	95.1	4.9	88.2	11.8	88.8	11.2	89.0	11.0	89.9	10.1	88.6	11.4	88.0	12.0	87.8	12.2	88.0	12.0
영국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OECD평균	75.0	25.0	76.9	23.1	79.0	21.0	76.0	24.0	75.9	24.1	76.1	23.9	76.0	24.0	75.7	24.3	74.3	25.7

주: 1) 국세는 OECD 통계에서 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in national currency의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와 Supranational의 데이터를 합산하였으며, 지방세는 동일 항목의 State/Regional, Local Government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산출함

2)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자료: OECD Statistics,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19.3.12.

제2편

조사대상 국가별 개인소득세 제도

제1장 미국
제2장 일본
제3장 호주
제4장 영국
제5장 독일
제6장 프랑스
참고문헌

제1장 | 미국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28)]

미국 연방의회는 1789년 최초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헌법」 제1조 제8항에 "의회는 미국의 부채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소득세법」은 남북전쟁 발발 직후인 1861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인한 재정 위기로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어 새롭고 과감한 재정 및 조세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는 토지세, 상속세 및 소득세 등 다양한 과세방안이 제안되었으나 형평성, 정의성, 공정성 측면에서 소득세 징수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861년 8월 5일 링컨 대통령의 승인으로 최초의 「소득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연간 수입소득에 800달러의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3%의 고정세율을 적용하였고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자소득에는 이보다 낮은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소득에 대해 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전쟁 피해의 부담을 나누고자 했다. 800달러[29)]의 높은 인적공제로 인해 대부분 국민들의 세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의회는 신고기한 몇 달 전에 최초의 「소득세법」 시행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보다 많은 소득세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포괄적인 소득세 징수 방법을 고안하기로 했다. 다음해 소득세법은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배당, 급여 등 미국 내 자산에서 비롯된 모든 연간 소득에 대해 600달러의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1만달러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3%, 그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

28) SHELDON D.POLLACK(2014), pp.1-20.
29) 1861년의 800달러는 오늘날 30,000 ~ 40,000달러로 추정된다.

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및 이자, 배당 등 일부 소득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1862년 7월 1일 링컨 대통령이 개정된 소득세법을 승인하였고 이것이 미국 최초로 시행된 「소득세법」이 되었다. 또한,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의회는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 부서를 개설하였으며 '조지 스웰 부트웰(George Sewall Boutwell)[30]'이 초대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다.

최초 소득세 과세연도의 총징수 금액은 270만달러에 불과했다. 1864년 의회는 1만달러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5%, 1만달러 이상 2만 5천달러 미만 구간에서는 7.5%, 그리고 2만 5천달러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남북전쟁이 종료된 후 1872년 소득세는 폐지되었다.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소득세가 폐지된 이 후에도 소득세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892년 파퓰리스트당(Populist Party)이 소득세 누진제도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다수의 사회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회는 1894년 소득세를 부활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소득세법은 4,0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들(당시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 일괄적인 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31]

그러나 이 소득세법은 제정 즉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우려한 주 대표들은 개별 주의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직접세를 금지하였는데(「헌법」 제1조 제9항 4절)[32],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주당 인구별(among the states by population)로 할당하는 인두세와 토지세만이 직접세로 유효하며, 개인소득세는 주당 인구별로 할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13년 개인소득세가 주당 인구별에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제16차 헌법 수정안이 비준되어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 제도가 재편성되었다. 1916년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폐지되었고 1917년에는 기부금공제와 자녀공제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1921년에는 입양공제와 장기 자

30) 조지 스웰 부트웰(George Sewall Boutwell, 1818~1905), 매사추세츠 주 전 주지사이며 매사추세츠 주의 공화당 설립에 기여하였고 이후 율리시스 S. 그랜트 미국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 대통령 시절 초대 국세청장을 지냈다.

31) Daniel Q. Posin & Donald B.Tobin(2003), pp.13~17.

32) 장근호(2009), p.196.

본이익에 대한 세율상의 우대조항이 도입되었고 1939년에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이 만들어지면서 산재해 있던 소득세법(revenue laws)이 내국세법으로 통합되었다.[33]

이후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시기는 1940년대 초기다. 당시 노동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소득세 의무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였다. 1948년 부부합산 시 소득분할(income splitting)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혼한 부부들에게 더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34] 과거에는 결혼 여부가 인적공제 한도액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후에는 세율에 있어서 미혼자와 기혼자 간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마련하였다.[35] 1960년대를 기점으로 소득세법 개정은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건강저축계좌공제 등과 같이 재정 수요와 더불어 사회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행되었다.[36]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1981년 경제회복법(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에 따라 소득세법 최고세율을 75%에서 50%로 인하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라 과세구간을 조정하였다. 또한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을 통해 내국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28%로 인하하였지만 다양한 공제, 면제제도를 폐지 혹은 제한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세법을 간소화하였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충원하기 위해 세법개정 「1993년 수입조정법(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3)」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하는 등 증세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평생교육공제제도와 비과세 개인연금제도(Roth IRA)를 도입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2000년부터 시작된 경기하강 및 9·11테러 회복을 위해 조세감면정책 법안인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 조정법률(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ation Act of 2001, EGTRA)」을 시행하였다. 이는 소득세율 구조의 개편 및 세율인하(개인소득세율을 15%, 28%, 31%, 36%, 39.6%에서 10%, 15%, 25%, 28%, 33%, 35%로 인하), 맞벌이 부부와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37], 상속 · 증여세율의 인하와 상속세의 폐지, 퇴직연금규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1981년 이래 가장 큰 감세규모인 10년간 약 1조 3,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이었다.[38]

33) Hollenbeck S and Kahr M.K.(2007), p.2.
34) 1948년 이전에는 결혼한 부부는 각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 수입만을 별도로 신고하였다.
35) Lawrence Howard Selzer(1968), pp.43~44.
36) Hollenbeck S and Kahr M.K.(2007), p.2.
37) 자녀공제를 600달러에서 700달러(2005년), 800달러(2009년), 1,000달러(2010년)로 확대하였다.

〈표 Ⅰ-1〉 2001년 EGTRA법에 따른 상위소득자 소득세율 인하계획

(단위:%)

시행연도	과세표준 구간(부부합산신고)			
	$45,200 - 109,250	$109,250 - 166,340	$166,340 - 297,300	$297,300 초과
당초세율	28	31	36	39.6
2001~2003년	27	30	35	38.6
2004~2005년	26	29	34	37.6
2006년	25	28	33	35

주: 최저세율 15%는 유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10% 세율을 새로 도입함
자료: 미국 경제연구회, https://www.nber.org/papers/w10415.pdf, 검색일자: 2018.11.30.

이 법은 2001년부터 10년간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일자리 및 성장을 위한 조세감면 조정법률(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 JGTRRA)」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최대세율 감소 부분이 2003년도에 소급 적용되었고, 최저한세 면제한도 확대 및 배당금과 자본이득소득에 대한 감세를 강화하였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비롯한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2008년 2월 13일 부시는 2008년 「경기 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을 시행하였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납세자에 대한 세금 환급,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이 법에 따라서 2007년 및 2008년 세금을 신고한 자는 세금환급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는데, 연방소득세액을 약 5% 감액시켰으며, 유효세율을 19.6%에서 18.6%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2008년과 2009년 회계연도의 연방수입을 1,200억 달러만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였다.[39]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2,880억달러 규모의 조세감면 정책이 포함된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세감면 정책은 주로 중산층 소득자를 위한 것 이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MVP 근로소득 세액공제(Making Work Pay Credit)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의 6.2%를 환급하였으며

38) CATO INSTITUTE,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tax-policy-under-president-bush, 검색일자: 2019.1.15.

39) 2001년 EGTRA법, 2003년 JGTRRA법, 2009년 ARRA법은 2010년 말까지 모든 감면이 만료되는 일몰조항이었으나, 2010년에 「세금감면, 실업보험 재승인 및 일자리 창출법(The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을 통하여 2012년까지 연장시켰다.

(단독신고 기준 400달러 한도), 이 외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AOTC, 희망장학금세액공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중산층은 이전 60년의 기간 중(1950년 이후) 가장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40]

반면에, 고소득층에는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하였고 「오바마 의료법(Affordable Health Care Act of 2010)」을 제정하여 추가 의료세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Ⅰ-2〉 소득세법의 주요 연혁(1943~2017)

연도	주요연혁
1943	소득세 원천징수 재도입(1913년 도입 후 1916년 폐지)
1944	표준공제와 인적공제($600) 도입
1948	부부합산시 소득 분할(income splitting)도입
1954	내국세법의 완전개정: 세율조정, 퇴직소득공제, 배당공제, 부분 면세이자소득공제, 상세공제와 조정된 총소득(AGI)의 정의 개정
1960	의료 및 치과비용 공제 자유화
1963	자영업자 퇴직플랜 기여금 공제 허용
1964	피고용인 이사비용과 사업비용 조정제도, 평균소득과세제도, 비과세 배당소득 한도 인상, 최소표준공제 도입
1965	세율 인하
1966	원천징수 임금에 대한 누진율 도입
1967	의료보험료 일부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불허(약품비 조정 총소득의 1%, 의료 및 치과비 조정 총소득의 3%)
1968	10% 추가 소득세율 부과(surcharge), 자영업자 퇴직플랜 기여금 공제제도 자유화
1969	개인에 대한 최저한세 도입, 10% 추가세율 연장
1970	세금신고 요건 완화, 원천징수제도 개정, 특정 과세상 우대조항(tax preference)에 대한 세금 도입, 양도소득세 인상과 양도손실 공제제한
1971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한도 설정, 인적 공제한도 인상($675)
1972	인적 공제한도 인상($750), 근로유인공제(WIN)제도, 대선기금 기여제도 도입
1974	연금과 근로자 혜택플랜규정 완전 개정 및 세금 환급
1975	표준공제 인상, 인적공제의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액공제, 주택구입세액공제, 개인은퇴연금(IRA) 기여금 소득공제 도입
1976	표준공제 변경, 자녀부양, 노인, 일반 세액공제 도입, 근로장려공제 연장
1977	영세율 구간 도입, 신규고용 공제, 신체장애 지급금 면세
1978	양도소득세 과세조정, 주택 및 사업에너지 투자세액공제, 해외 근로소득 과세제도 변경
1979	정치 기부금과 비사업용 지방정부 휘발유세 공제 폐지, 인적공제, 영세율 구간 및 정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증대, 과세구간 확대 및 일부세율 인하, 일부 실업수당 과세, 일반 세액공제제도 종료, 사전 근로소득공제 및 최저한세 도입

40) 미국 오바마 백악관,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issues/taxes, 검색일자: 2019.1.16.

〈표 Ⅰ-2〉의 계속

연도	주요연혁
1981	3년에 걸쳐서 한계세율 23% 인하, 양도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도입,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1982	가속상각제도에 대한 상향 조정 폐지, 개인에 대한 배당 및 이자소득 10% 원천징수 도입, 의료비 공제 허용기준을 조정된 총소득의 3%에서 5%로 인상
1983	일부 사회보장 및 철도연금 소득 과세(1984년 이후)
1984	장기보유 양도소득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
1986	최고세율 28%로 인하, 부부합산 표준공제($5,000)와 인적공제($2,000) 및 근로소득장려세제 인상, 맞벌이부부소득공제 폐지, 장기보유 양도소득 면제, 지방정부 판매세 공제, 실업수당 면제 및 평균소득제도 폐지, 이자비용, 은퇴연금(IRA), 의료비, 접대비, 연금 및 기타비용 공제 제한
1990	최고 한계세율(31%)과 최저한세 세율(24%) 인상, 양도소득세율 28% 제한, 고소득층 상세공제금액 제한, 근로장려세액공제 확대, 저소득층 의료보험비 세액공제
1993	최고세율 인상(36%, 39.6%), 인적 공제와 최저한세 세율 인상, 소득 $9,000 이하 무자녀 독신자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1997	자녀세액공제($500), 평생교육공제 도입, 양도소득세율 인하(20%,10%), 최초 주택구입자금 인출 비과세 허용, 비과세 개인연금제도 도입
2001	세율인하 및 10% 세율 도입, 자녀세액공제 확대($1,000), 부부 표준공제와 15% 세율 구간을 독신자 2배로 확대
2003	2001년 세법 개정안 조기 시행: 2006년 세율인하계획을 2003년 이행, 부부합산 시 표준공제 인상을 2009년까지 점진 시행하지 않고 2003년 조기 시행, 최저한세 면제 확대, 조정된 순양도소득세율 인하 및 배당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2005	최저한세 면제 확대
2008	경기부양법 시행,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납세자에게 세금환급 실시
2010	MVP근로세액공제 실시, 근로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희망장학금세액공제, 생애 첫 주택구입자 세액공제, 자동차에 대한 판매세 세액공제 실시, 고소득자 추가 의료세 부과
2013	최고세율 39.6% 인상, 고소득층 자본이익 세율 20% 추가, 최저한세 면제한도 인상

자료: 1943~2005년까지는 Hollenbeck S and Kahr M.K.(2007) pp.3~4; 장근호(2009), pp.198~199; 2005년 이후는 저자 작성

3.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41)]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Tax Cut and Jobs Act)」(이하 "2018년 세법개정")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는 감세규모 5.5조달러로,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 감세이면서 미국 조세제도에 대한 전면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2018년도에서부터 2025년까지 유효하며, 법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5년에 이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경우, 2026년부터는 다시 2017년까지 유효했던 과거의

4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p5307.pdf, 검색일자: 2019.1.28

세법이 적용된다.[42] 2018년 세법개정에 대한 주요 네 가지 목표는 ① 중산층 조세 경감 ② 세제 간소화 ③ 경제성장 ④ 해외소득의 본국(미국) 송환으로 주요 개정세법의 내용과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43]

중산층 조세감면의 일환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인하되었다. 개정 이전 개인 단독신고 기준 소득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로 7단계 누진세율 구조였으나, 개정 후에는 10%, 12%, 24%, 32%, 35%, 37%로 전반적으로 3%p 정도의 세율이 인하되었다. 특히 50만달러가 넘는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의 경우 과거에는 39.6%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37%를 적용받게 되어 납세액 절감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그러나 개인 단독신고 기준 20만달러~40만달러의 소득자의 경우 개정 전에는 33%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개정 이후 35% 세율을 적용받아 오히려 2%p 정도의 세율이 상승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Ⅰ-3〉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율 변화(개인 단독신고 기준)

(단위: 달러, %)

개정 전 세율 (2017년 기준)			개정된 세율 (2018~2025년 기준)		
이상	이하	세율	이상	이하	세율
0	9,325	10	0	9,525	10
9,326	37,950	15	9,526	38,700	12
37,951	91,900	25	38,701	82,500	22
91,901	191,650	28	82,501	157,500	24
191,651	416,700	33	157,501	200,000	32
416,701	418,400	35	200,001	500,000	35
418,401	-	39.6	500,001	-	37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p5307.pdf 검색일자: 2019.1.28.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이번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부분이 크게 변경되었다. 우선 표준공제부터 살펴보면, 소득공제 시 항목별 공제 합계액(의료비공제, 주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기부금공제, 기타공제)과 표준공제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데, 이 후자에 해당하는 표준공제액을 약 두 배 정도 증가시켜(개인단독신고의 경우 6,350달러 → 12,000달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항목별 공제액을 적용받는 대신에 표준공제액을 적용받도록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42) 그러나 2018 세법개정(TCJA)을 영구화하자는 "Protecting family and small business tax cut and Act of 2018" 법안이 2018년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보고서 출판일 현재는 상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밝혀둔다. 보고서(미국편)는 보고서 출판일 현재 유효한 법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기에, 이후 법안의 최종시행 여부에 따라 효력 및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3)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2/WH_CuttingTaxesForAmericanWorkers_Feb2018.pdf, 검색일자: 2019.1.28

〈표 Ⅰ-4〉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표준공제 한도액 변화

(단위: 달러)

유형	개정 전 표준공제 한도 (2017년 기준)	개정 후 표준공제 한도 (2018년-2025년 기준)
개인단독신고	6,350	12,000
부부개별신고	6,350	12,000
세대주신고	9,350	18,000
부부합산신고	12,700	24,000

자료: 미국 국세청 : https://www.irs.gov/pub/irs-pdf/p5307.pdf 검색일자: 2019.1.28.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이유는 세법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납세비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세금납부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44] 미국 조세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표준공제액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 항목별 소득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수가 2017년 4,650만명에서 2018년 1,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감소한 약 3천만명의 신고자들이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표준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에, 항목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Ⅰ-5〉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2017년 ~ 2026년의 소득수준별 항목별 공제적용 예상 납세자수

(단위: 천명)

소득수준	2017	2018	2024	2026
10,000달러 미만	178	65	80	264
10,000달러 ~ 20,000달러	517	154	149	611
20,000달러 ~ 30,000달러	933	237	255	1,038
30,000달러 ~ 40,000달러	1,595	410	460	1,765
40,000달러 ~ 50,000달러	2,222	635	698	2,330
50,000달러 ~ 75,000달러	6,683	2,163	2,495	7,354
75,000달러 ~ 100,000달러	6,622	2,442	2,850	7,567
100,000달러 ~ 200,000달러	17,959	6,513	7,732	21,467
200,000달러 ~ 500,000달러	8,207	4,185	4,940	9,937
500,000달러 ~ 1백만달러	1,089	791	878	1,896
1백만달러 초과	509	444	472	592
평균 납세자 수준	46,514	18,072	21,009	54,221

자료: 미국 조세합동위원회, https://www.jct.gov/publications.html?func=startdown&id=5093 검색일자: 2019.1.28.

44) 2016년 국세청 세금 신고를 위한 소요 시간은 총 26억시간이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개인소득세 납세비용은 99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한편, 항목별 공제와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존 납세자의 조정된 총수입금액(AGI)의 7.5%를 초과하는 분만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시키던 것을 2019년부터는 10%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지방세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를 전액 공제하였으나, 개인 단독기준으로 5,000달러(부부합산의 경우 10,000달러)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입할 시 대출금 100만달러의 융자금까지는 전액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대출원금 75만달러(부부별도신고의 경우 37.5만달러)에 대한 이자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출금과 별도로 홈 에퀴티(home equity)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주택 외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이자는 전액 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조세자문수수료 및 업무비용 공제 등 일부 기타공제 항목을 폐지하였으며, 재해 도난손실 공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45]으로부터의 손실만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부금공제의 경우 그 한도를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50%에서 60%로 인상하였다.

〈표 Ⅰ-6〉 2018년 세법개정 - 항목별공제 관련 개정내용 요약

항목별 공제	개정 전 공제금액 (2017년 기준)	개정 후 공제금액 (2018년~2025년 기준)
의료비공제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7.5% 초과분	2018년: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7.5% 초과분 2019~2025년: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10% 초과분
지방세 공제	전액공제	개인: 5,000달러 한도 부부합산: 10,000달러 한도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주택담보대출액 1백만달러 제한 (홈 에퀴티 대출금 가능)	주택담보대출액 750,000달러 제한 (주택 이외 사용된 홈 에퀴티 대출금 불가능)
기타공제 (조세자문수수료, 업무관련비용공제)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2% 초과분	도박비용, 장애인고용업무비용, 퇴직자연금손실 제외한 모든 기타공제항목은 공제 불가능
재해도난손실공제	전액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손실만 인정
기부금공제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50% 한도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60% 한도
고소득자 항목별 공제 제한규정	유지	폐지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p5307.pdf; 주 휴스턴 총영사관http://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5649/view.do?seq=13091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19.1.28. 참고하여 저자 작성

45) 「스태포드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상태로 선포한 재난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배제하였다. 기존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4,050달러를 공제하는 인적공제를 추가로 공제해주었으나 2018년도부터 이러한 인적공제가 한시적으로 사라짐으로써 부양자가 많은 납세자가 많이 불리하게 되었다. 인적공제를 적용배제하는 대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현재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2,000달러로 인상)하였고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적공제제도 적용배제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고용인이 부담한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포함시켰으며, 위자료 소득은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위자료 소득을 지급한 자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조세합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유효한계세율이 2017년 29.1%에서 개정 후 예상 평균유효세율은 27.4%로 1.7%p 감소하였고,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2026년 이후에는 30.9%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2017년 평균유효한계세율이 24.7%에서 개정 후 20.6%로 감소하며 법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시 26.3%로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개혁은 모든 소득수준의 납세자에게 조세감면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Ⅰ-7〉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2017 ~ 2026년 근로소득자의 추정 평균한계세율

(단위: %)

소득수준	2017	2018	2020	2022	2024	2026
10,000달러 미만	6.1	6.0	6.0	5.8	5.7	6.1
10,000달러 ~ 20,000달러	13.8	12.2	13.0	13.3	14.0	16.8
20,000달러 ~ 30,000달러	23.9	22.0	22.1	22.7	23.3	26.6
30,000달러 ~ 40,000달러	28.1	25.8	26.2	26.7	27.0	29.5
40,000달러 ~ 50,000달러	29.8	27.6	27.8	28.1	28.8	30.6
50,000달러 ~ 75,000달러	31.9	29.4	29.4	30.6	31.6	32.9
75,000달러 ~ 100,000달러	31.9	29.4	30.0	29.8	30.0	33.9
100,000달러 ~ 200,000달러	34.5	31.7	31.8	32.1	32.4	35.4
200,000달러 ~ 500,000달러	38.5	33.9	34.0	34.3	34.6	39.4
500,000달러 ~ 1백만달러	41.7	41.2	41.1	41.2	41.2	41.0
1백만달러 초과	44.4	41.7	41.8	41.9	42.0	44.7
평균 납세자 수준	29.1	26.7	27.1	27.6	28.1	30.9

자료: 미국 조세합동위원회, https://www.jct.gov/publications.html?func=startdown&id=5093 검색일자: 2019.1.28.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1. 과세권자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카운티, 시/군, 타운십, 학교구, 특별구) 구조로 이루어진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46]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두고 있는데 조세부과 및 징수와 관련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 규정한 세목에 따라 과세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연방주의 특성상 주정부를 매개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가 가능하다.[47] 연방헌법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헌법에 헌장을 통해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뉴욕시와 워싱턴DC 등의 일부 카운티, 시, 빌리지, 타운 등의 지방정부에서는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에 더불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 법령 체계

미국은 역사적으로 영국 법제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로 판례법 체계(common law system)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 보다 안정적인 법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성문법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원칙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8]

미국 법령체계를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주요 법원(primary source)과 부수적 법원(secondary source)이다.[49] 주요 법원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원으로서 헌법, 법률, 시행령, 판례 등을 의미하며,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요 법원에 근거한 법률 조사를 하여야 한다.[50] 세법과 관련하여 주요 법원(法源)은 헌법, 조세조약, 내국세

46) 윤인숙, 2018, p.37.
47) 윤인숙, 2018, p.47.
48) 홍완식·김수용·최혜선, 2010, pp.5~6.
49) 김재원, 2008, p.691.
50) 김재원, 2008, p.691.

법, 재무부 시행령, 국세청 통칙, 판례를 말한다.

부수적 법원은 주요 법원을 적용 또는 이해하기 위한 해설로, 그 주요 역할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을 안내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택스 서비스(tax service)[51], 판례해설(citators)[52]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텍스트북, 저널, 사설 등도 기타 부수적 법원에 포함되며, 부수적 법원은 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도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 헌법

헌법(U.S. Constitution) 제1조 제8항은 연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헌법 조항에 "의회는 미국의 부채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의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 내국세법

연방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걸쳐 비로소 연방법률이 된다. 연방법률은 연방헌법보다 하위에 있고 조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연방정부의 시행령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규범이다.[53] 이러한 연방법률이 주제별로 구분되어 법전화(codification)된 것이 바로 연방법전(U.S. code)인데, 내국세법은 이 연방법전 총 54편 중 26편에 규정되어 있다(Title 26 of the United States Code: 26 U.S.C.).[54]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미국 세법의 기준이 되는 법이며,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고용 및 소비세 규정뿐만 아니라, 납세절차 및 행정관리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내국세법은 11개의 부제(sub-title)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제(sub-title) → 장(chapter) → 부장(sub-chapter) → 편(part)→ 조(section) → 부조(sub-section) → 항(paragraph) → 부항

51) 출판사가 제공하는 주요 법원에 대한 주제별, 코드별 해설서를 일컫으며, CCH사의 Standard Federal Tax Report 및 RIA사의 United States Tax Reporter가 대표적이다.

52) 판례해설(Citators)은 사법적 판단에 대한 역사적 결정사례 및 후속상황 및 어떻게 그 결정이 기각되고, 인용되었는지에 대한 해설 혹은 다른 법원에서 결정된 사례에 대한 견해 등을 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IA사의 Federal Tax Citators 와 CCH사의 Citators가 있다.

53) 홍완식·김수용·최혜선, 2010, p.7.

54) 연방법전이 인용될 경우에는 'Title 번호, 법률명칭, Section 번호'를 적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법이다. 후술하는 소득세 법조항 각주들은 '26 U.S.C. § 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26 U.S.C'는 연방법전 중 26편인 내국세법을 나타낸다.

(sub-paragraph) → 조(clauses) 순으로 구분된다. 내국세법은 일반적으로 조(section)의 숫자를 일컫는다. 그 중 소득세법의 경우 6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개인소득세는 내국세법 제1조에, 법인소득세는 내국세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표 Ⅱ-1〉 내국세법(IRC)의 소득세 관련 구성 내용

sub-title	내용	장	내용	시작 조문
A	소득세(income tax)	1	소득세와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surtax)	sec.1
		2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세	sec.1401
		3	비거주자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sec.1441
		4	폐지됨	-
		5	소득세 회피에 대한 이전 세	sec.1491
		6	연결납세	sec.1501
B	상속 및 증여세	..	...	sec.2001
C	고용세	..	...	sec.3101
D	기타소비세	..	...	sec.4001
E	주세, 담배세	..	...	sec.5001
F	절차 및 행정	..	...	sec.6001
G	조세위원회	..	...	sec.8001
H	대통령 선거자금(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	...	sec.9001
I	신탁기금법(trust fund code)	..	...	sec.9501
J	석탄산업의료혜택(coal industry health benefits)	..	...	sec.9701
K	단체 건강보험(group health insurance plan requirements)	..	...	sec.9801

자료: Kevin E. Murphy and Mark Higgins(2019), pp.16.5~16.6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소득이 있는 이중국적자의 세법상 거주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법이다. 특히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기업에 특히 중요하며, 이들의 다양성, 복잡성, 특정 조세조약상의 세부 내용이 내국세법에서 다루는 범위를 초월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내국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라. 재무부 시행규칙

연방법률을 집행하고, 연방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입법할 행정입법권은 대통령과 연방행정기관에 부여되어 있으며[54], 내국세법에 관한 행정입법권한은 전반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행정기관인 재무부(treasury department)가 갖고 있다. 재무부는 재무부 시행규칙 treasury regulations)을 통해 공식적으로 내국세법의 조항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다. 재무부 시행규칙은 연방행정명령법전(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중 제26편에 규정되어 있다.[55]

재무부 시행규칙은 최종본으로 공포되기 전까지 철저한 검토절차와 대중의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법적 성격에 따라 입법적 시행규칙(legislative regulation)과 해설적 시행규칙(interpretative regulation) 2가지로 구분된다. 입법적 시행규칙은 입법부인 의회에서 특정 내국세법 법령의 세부규정을 재무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재무부로 위임한 규정을 말하며, 해설적 시행규칙은 내국세법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규칙을 말한다. 과거에는 해설적 시행규칙보다 입법적 시행규칙이 상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1 대법원 예규에 따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재무부 시행규칙은 입안(立案) 단계에 따라 ① 제안된 시행규칙(proposed regulations) ② 임시 시행규칙(temporary regulations) ③ 최종 시행규칙(final regulations)으로 나뉜다. 먼저 ① 제안된 시행규칙은 최종 시행규칙이 공표되기 전에 관련 국세청이 입안하고자 하는 법안이 「내국세법」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묻는 단계의 법안이다. ② 임시 시행규칙은 납세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국세청이 최종 시행규칙을 공표하기 직전 단계의 법안을 말한다. 「내국세법」 제7805조 (e)항에 따르면 모든 임시 시행규칙은 제안된 시행규칙 단계를 거쳐서 공표되어야 하며, 해당 임시 시행규칙이 3년 안에 최종 시행규칙으로 수정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면 만료된다. 마지막으로, ③ 최종 시행규칙은 재무부의 공식적인 해석서로 공표되며, 이는 이전 제안된 시행규칙과 임시 시행규칙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마. 국세청 통칙

세법에 대한 해석, 행정 및 집행은 재무부 산하 부서인 국세청에서 수행된다. 비록 재무부

55) 연방 행정명령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과 연방행정명령법전(Code of Federal Regulation)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연방행정명령법전도 연방법전(U.S. Code)와 같이 Title로 분류 및 편제되어 있다. 홍완식·김수용·최혜선, 2010, P.25

시행규칙이 유용한 해석 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는 오로지 일반적인 세법 문안(statements of general principles)만을 포함하며, 법령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룰 수는 없기에 국세청은 국세청 통칙(Revenue Rulings)을 공포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한다. 또한 이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신하며, 해당 법안이 폐지, 수정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규정의 취지가 내국세법 및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과 다툼이 생길 경우 내국세법 및 시행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 행정절차(Revenue Procedures)를 통해 국세청의 행정상 관례와 절차(세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원천징수 및 전자신고 등)를 보충적으로 설명한다.

바. 판례

납세자와 국세청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다툴 경우, 법원(Court)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은 사법부가 판단하는 내국세법의 공식적인 해석과 지침사례이기에 주요 법원이 된다.

조세법원의 경우, 정규판정(regular decisions)과 메모판정(memorandum decisions) 형식의 결정을 내린다. 정규판정의 경우 선례로 간주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례 또는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없는 사례에 대한 최초 결정을 말하며, 이 외의 경우는 메모판정 형식으로 일컬어진다.

미국 국세청은 조세법원 및 하급연방법원의 판정에 대해 그 인정 여부를 공표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묵인제도(Acquiescence policy)'라 한다. 국세청이 법원의 판정에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납세 여부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정에 국세청이 따라야 하나 법원의 결정 부분이 소위 회색지대(grey area)인 경우 양측의 결정 근거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 완전히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일 뿐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56]

56) 장덕렬, 1993, p.12.

3. 열거주의·포괄주의

미국은 열거주의(Schedular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포괄주의(Comprehensive System)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미국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개념은 총포괄소득 개념(all-inclusive income concept)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비과세소득이라고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현금, 동산 및 부동산, 서비스 등 소득의 형태를 불문한다.

4. 과세권 범위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되며,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 미국이 소유권과 영토에 대해 국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미국령 지역은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과세기간[57)]

납세자는 과세연도(tax year)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연도는 장부를 기록하고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도록 구분하는 일 년의 회계기간을 말한다. 납세자는 달력연도(calendar year)와 회계연도(fiscal year)를 사용할 수 있다. 달력연도는 1월 1일을 시작으로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속되는 12개월을 말하며, 회계연도는 12월을 제외한 달(1월~11월) 말을 종료일로 하는 연속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첫 번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특정 회계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단지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a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정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특정 회계연도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달력연도를 과세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7)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tax-years, 검색일자: 2018.12.27.

-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현재 과세기간이 회계연도로서 적정하지 못한 경우 또는
- 내국세법 및 재무부 시행규칙에서 달력연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경우

만약 납세자가 최초 소득세 신고 시 달력연도를 선택하여 신고하였고 그 이후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 파트너십 사업체의 파트너, S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IRS의 승인이 없는 한 회계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납세자가 회계기간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Form 1128 서식을 이용하여 변경을 원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는 실제 미국 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경우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미국 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주로 급여, 임금, 기타용역대가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사업소득의 경우는 서비스가 수행되는 장소, 물건이 판매되거나 물건의 제조가 할당된 장소, 이자의 경우 지급자의 거주지 등으로 판단된다.

미국 원천소득은 ① 미국에서 사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②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등과 같은 자본소득(passive income)으로 구분되며, ①과 같은 소득(사업 또는 근로)에 대해서는 미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며, ②와 같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의 세율로 과세된다. 비거주 외국인은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1040NR-EZ (부양자가 없는 특정 비거주 외국인용) 신고양식을 사용하여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58]

2. 거주자 판정요건

미국은 세법상 거주자 판단 시 거주자의 개념을 실제 법률상 거주지에 근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장소(centre of vital interest)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의도는 거주자 요건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 심사(lawful permanent residence test)와 실질적 거주 심사(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심사 중 하나 이상의 심사에 부합되면 세법상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된다.

5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taxation-of-nonresident-aliens-1,검색일자: 2018.12.27.

가. 영주권 심사[59]

미국에 영주권을 가진 자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을 부여받은 연도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60]

나. 실질적 거주 심사

미국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실질적 거주 심사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로 구분된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① 당해 연도의 경우 체류일수가 31일 이상이고, ② 당해 연도와 직전 2개 연도를 가중평균한 일수의 합이 183일 이상인 경우 실질적 거주 심사 요건에 부합하여 그 해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61]

1) 체류일수 판정 세부 내역

당해 연도와 직전 2개 연도를 가중평균한 일수의 합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당해 연도에 거주했던 일수 + 직전 1개연도 거주하였던 일수의 1/3 + 직전 2개연도 거주했던 일수의 1/6 ≧ 183일

계산된 일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계산하지 않고, 183일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된다.[62]

[거주일수 계산예시][63]

한 외국인이 당해연도에 18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직전 1개연도와 직전 2개연도 각각 90일씩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3년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 거주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59)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 발급하는 시민권 등록카드의 색상이 초록색이므로 소위 그린카드테스트(green card test)로 불린다.
60) 26 U.S.C. §7701 (b)
61) 26 U.S.C. § 7701(b)(1)(A)(ii) and (b)(3); 26 C.F.R. § 301.7701(b)-1(c)
62) 26 C.F.R. § 301.7701(b)-1(c)(1)
63) J.G. Rienstra,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검색일자: 2018.11.30.

(단위: 일)

당해연도	140 × 1	140
직전 1개연도	90 × 1/3	30
직전 2개연도	90 × 1/6	15
		185

이 외국인은 당해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고 당해 연도와 그 직전 2개연도 동안 거주한 가중평균 일수가 183일 이상이기에 실질적 거주 심사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 만약 이 외국인이 직전 2개 연도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 기준([140×1] + [90×1/3] = 170 일)과 직전 1개연도 기준([90×1] = 90일)으로 계산한 가중평균 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임에 따라 실질적 거주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64]

또한, 어느 외국인이 7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하였다면 해당 외국인은 당해 연도 거주일수 부족으로 실질적 거주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외국인이 과거 2년 전에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가중평균 거주일수를 따져 실질적 거주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출국했을지라도 출국 후 2년 안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2) 예외규정

당해 연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였고 미국 외의 국가에 납세 거주지(tax home)를 둔 외국인은 실질적 거주심사 요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비거주자 신분을 선택할 수 있다.[65] 이를 긴밀한 관계 예외규정(closer connection exception)이라 하는데, 긴밀한 관계란 거주지로 지정한 장소와 W-9 등의 신고서 그리고 가족, 개인물품, 사회적 교제, 사업활동 등 다양한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납세 거주지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고용활동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66]

긴밀한 관계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당해 연도 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여야 함
- 당해 연도 납세거주지를 외국에 유지해야 함

64) 가중평균 거주일수 계산공식에 따르면 실질적 거주 심사에 충족되지 않을 기준치는 연간 121일이다.
65) 26 U.S.C. § 7701(b)(3)(B); 26 C.F.R. § 301.7701(b)-2
66) 장근호, 2009, p.216.

- 당해 연도 납세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 국가와 (미국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함

개인의 납세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정기적으로 거주한 장소 또는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장소로 정해진다.[67] 만약 개인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정기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납세거주지는 그 개인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정해진다. 이 납세 거주지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 동안 현존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68] 긴밀한 관계를 가진 국가를 납세 거주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테스트는 납세자가 미국보다 다른 국가와 더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69]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고려된다.

〈표 Ⅲ-1〉 납세 거주지 판단을 위한 고려 사항

• 개인이 오랫 동안 거주한 집(permanent home)의 위치
• 개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장소
• 개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나, 가구, 의류, 보석류 등의 장소
• 개인이 현재 속한 사회적·정치적·문화·종교기관들의 장소
• 개인이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행장소(납세 거주지를 결정하는 행동 외의 사업행위)
• 개인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의 관할권 장소
• 개인의 투표권의 관할권 장소
• 개인의 신고서류상 기재된 거주 국가
• 개인이 제출한 각종 공식적인 제출 자료상 구분(미국 국세청 신고서식인 IRS Form 1078, IRS Form W-8, IRS Form W-9)

자료: 26 C.F.R. §§ 301.7701(b)-1(d)

또한, 외국 정부기관 공무원, 교사와 수습직원, 학생, 스포츠선수와 같이 특정 자격을 가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실질적 거주심사를 위한 물리적 거주를 요구하지 않는다.[70]

다음은 거주자판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적용 사례이다.[71]

67) 26 C.F.R. § 301.7701(b)-2(c)(1)
68) 26 C.F.R. § 301.7701(b)-2(c)(2)
69) 26 C.F.R. § 301.7701(b)-1(d)
70) 26 U.S.C. § 7701(b)(5)
7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검색일자: 2019.1.29.

사실관계 1

- Wei Wu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자 거주자였으며, 2011년 8월 15일 입국함
- 그는 일시적으로 F-1비자(학생비자)로 클리블랜드의 한 대학에서 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
- 그는 미국에 입국한 이래로 이민 신분을 변경하지 않았음

분석

- 미국 입국일은 2011년 8월 15일이나 실질적 거주 제외조항에 따라 F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음.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실질적 거주 심사 183일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됨
- 2016년 366일 거주하였다면, 가중평균 거주일수는 366일이 됨
  당해연도(2016) : 366일 × 1 = 366
  직전1차연도(2015) : 0 × ⅓ = 0
  직전2차연도(2014) : 0 × ⅙ = 0
- Wei wu는 2016년 7월 1일 실질적 거주심사를 통과하였으며(2016년의 183일째), 26 U.S.C. § 7701(b) 규정에 따라 거주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이 됨(실질적 거주 심사를 통과한 해의 거주한 첫 번째 날)

사실관계 2

- Wei wu의 아내 Li Chen은 Wei wu와 함께 동반 입국하였으며, 그녀는 F-2비자(F-1 비자를 받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에 대한 비자)를 받음
- 그녀는 2013년 6월 15일 미국 이민국에 F-2비자 지위를 변경하고 근로를 허가받았으며, 그녀를 고용한 고용주는 그녀의 영주권을 신청함
- 2014년 9월 15일 미국 이민국은 이를 승인함

분석

- 미국입국일인 2011년 8월 15일부터 F-2 비자 변경일 전날 2013년 6월 14일까지는 거주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음.
- 따라서 2013년 6월 15일이 실질적 거주심사 기산일이며, 가중평균 거주일수는 200일임
  당해연도(2013) : 200일 × 1 = 200
  직전1차연도(2012) : 0 × ⅓ = 0
  직전2차연도(2011) : 0 × ⅙ = 0
- Li Chen은 2013년 12월 14일 실질적 거주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13년 6월 14일 이후 183일째일), 26 U.S.C. § 7701(b) 규정에 따라 거주 기산일은 2013년 6월 15일이 됨(실질적 거주 심사를 통과한 해의 거주한 첫 번째 날)
-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시, 그녀가 실제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2014년 9월 15일은 중요하지 않음 (그녀는 이미 2013년 12월 14일 실질적 거주심사를 통과하였기 때문임)

상기 사례의 경우 2015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Wei Wu는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을 제출하며(부부별도신고), Li Chen은 세법상 거주자 외

국인으로서 Form 1040 또는 1040A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부부별도신고). 또는, 26 U.S.C. §6013 (g) 비거주자 외국인의 미국 거주자로의 선택규정에 따라 Li Chen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이용하여 부부합산신고(Form 1040 또는 1040A)할 수 있다. 2016년 소득세 신고는 Wei Wu와 Li Chen이 모두 미국 세법상 거주자임에 따라 부부합산신고와 부부별도신고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3. 납세자 단위

미국의 소득세는 결혼한 개인을 별도의 납세자 단위로 취급한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과 공제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배우자와 각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혼자의 경우 세금납부 측면에서 합산신고가 더 유리한지 개별신고가 유리한지는 표준공제액 또는 항목별 공제한도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납세자 단위별로 세율과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의 소득과 공제액을 비교해서 합산신고 혹은 별도신고를 선택해야 한다.[72]

결혼 상태에 대한 여부는 과세 종료일 현재 상태로 결정된다. 만일 한 사람이 12월 31일 전에 결혼하였다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기혼자로 취급된다.[73]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약 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결혼 상태에 대한 여부는 사망일로 결정된다. 또한 별거중이거나 1명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별도소득신고를 선택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기혼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74]

미국 소득세는 결혼 상태에 대한 여부 및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납세자의 단위를 4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부부합산신고(married individuals filing joint returns)이다. 이는 부부가 그들의 소득과 공제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배우자 일방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유형을 적용할 수 없다.[75] 또한 생존배우자(surviving spouse) 특별규정으로, 배우자 타방이 사망한 경우 그 다른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자녀와 거주하는 가정을 유지한다면 사망 당시 당해 과세기간과 그 후 2개년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있다.[76]

둘째, 세대주신고(heads of households)이다. 이는 과세 신고기간의 절반 이상 함께 거주

72) 만약 배우자 일방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보다 크게 많으면 별도신고가 불리하고, 공제가 배우자 일방에게 치우쳐 있으면 별도신고가 유리하다. 장근호(2009), p.390.
73) 26 U.S.C. § 7703(a); 26 C.F.R. § 1.7703-1(a)
74) 26 U.S.C. §§ 2(c) and 7703(b); 26 C.F.R. § 1.7703-1(b)
75) 26 U.S.C. §§ 1(a) and 6013(a); 26 C.F.R. §§ 1.2-1 and 301.6013-1
76) 26 U.S.C. § 2(a); 26 C.F.R. § 1.2-2(a)

한 부양자녀 혹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가정의 세대주 본인이 신고하는 방법이다.[77] 셋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결혼하지 않은 자가 그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개인단독신고(unmarried individuals)방법이다.[78] 또한, 생존배우자 부부합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와 부양자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단독신고에 해당한다. 넷째, 부부개별신고(married individuals filing separate returns) 방법은 부부가 각각의 소득과 공제액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다.[79]

〈표 Ⅲ-2〉 납세자 단위

납세자 단위	내용
부부합산신고 (Married individuals filing joint returns)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소득과 공제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세대주신고 (Heads of households)	과세기간의 절반 이상 거주한 피부양자가 딸린 가정의 부양자의 신고방법
개인단독신고 (Unmarried individuals)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미혼자가 그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방법
부부개별신고 (Married individuals filing separate returns)	부부가 각각의 소득과 공제액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방법

자료: 26 U.S.C. §1 (a)~(d)

77) 26 U.S.C. §§ 1(b) and 2(b); 26 C.F.R. § 1.2-2(b) to -2(d)
78) 26 U.S.C. § 1(c)
79) 26 U.S.C. § 1(d)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1.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은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첫 출발점이다. 또한 총수입금액은 어떠한 원천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으로 정의되며, 이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한다.[80]

〈표 Ⅳ-1〉 총수입금액으로 포함되는 항목별 범주

- 수수료, 커미션, 부가급여 및 유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
- 사업으로부터 파생된 소득
- 재산 거래차익
- 이자
- 임대료
- 로열티
- 배당금
- 위자료 및 별도의 유지 보수
- 연금
- 채무 면제로부터 발생한 소득
- 파트너십 총수입의 배분된 지분
- 사망자에 대한 소득
- 부동산 또는 신탁에 대한 이자소득

자료: 26 U.S.C. § 61; 26 C.F.R. §§ 1.61-1 to -22

그러나 상기 〈표 Ⅳ-1〉과 같이 내국세법과 재무부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총수입금액의 항목별 범주는 예시에 불과하다. 현금, 부동산, 서비스, 식사, 숙박, 주식 또는 기타 부동산 등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81] 재무부 시행규칙에서는 일정 손해배상금[82], 징벌적 손해배상, 법적 의무가 없는 타 납세자를 위한 소득세 대납분, 불법적 이익, 발견한 보물을 화폐가치로 교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3]

80) 26 U.S.C. § 61; 26 C.F.R. §§ 1.61-1 to -22
81) 26 C.F.R. § 1.61-1 (a)
82) 공정거래 소송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특정 수입은 위자료 및 별도의 유지 보수료(26 U.S.C. § 71), 연금 및 생명보험 계약의 특정 수익금(26 U.S.C. § 72), 상금(26 U.S.C. § 74), 회사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생명보험 납입분(26 U.S.C. § 79), 이사경비 상환액(26 U.S.C. § 82), 실업수당(26 U.S.C. § 85) 사회보장제도 혜택(26 U.S.C. § 86)이 있다.

동 총수입금액의 정의는 포괄적 소득개념을 담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소득세 신고 시 사용되는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의 개념과 다르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소득 내지 과세표준을 구한다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보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84]

2. 비과세소득

특정 부류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며, 그 결과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게 납세자가 접하게 되는 비과세소득은 아래와 같다.[85]

〈표 Ⅳ-2〉 비과세소득

구분	내용
종업원을 위한 단체 정기생명보험 고용인 납부분	연간 보상한도액 5만달러 보험에 적용되며, 5만달러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대납분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생명보험수익금	생명보험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의 사망 시 일시금 또는 분할 형태로 받은 금액
증여, 상속	증여 및 상속재산가액[1)]
주정부 및 지방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금	신체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 및 소송이나 합의로 인해 받은 법적 손해액
의료보험으로 받은 금액	본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 보상으로 의료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수령한 금액
산재보험 고용인 납부분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 고용인 납부분

83) 26 C.F.R. § 1.61-14
84) 이창희, 2018, p.11.
85) 26 U.S.C. §§ 79,101,102,103,104,105,106,108(a)(1),117,119,120,121,127,129,137

〈표 Ⅳ-2〉의 계속

구분	내용
채무면제이익	미국 연방법 규정 제11호에 해당하는 파산 또는 납세자가 파산한 경우 그 채무 면제이익(2017년 1월 1일 이전 적격 주요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면제이익도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학생 대출금의 상환으로 인한 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학금	적격 장학금 또는 적격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금액
종업원 식사 및 숙박비	편의를 위해 종업원, 종업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식사 또는 숙박비. 식사 또는 숙박은 종업원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업원법률서비스 고용인 납부분	종업원을 위한 단체 법률 서비스 제도 고용인 납부분(연간한도액 70달러)
주 거주 부동산 양도 소득	양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납세자의 주요 거주 부동산 양도소득(한도는 25만달러,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50만달러)
종업원 교육비	교육 지원 프로그램. 종업원 교육지원 목적으로 적격 교육프로그램에 지출한 고용인 부담의 지출분 또는 발생비용(연간한도액 5,250달러)
종업원의 부양자 지원비용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 부양자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종업원의 부양자 지원을 위해 고용인 부담으로 지급하거나 발생할 비용
종업원의 입양비용	입양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종업원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고용인 부담으로 지급하거나 발생할 비용
종업원 부가급여(fringe benefits)	근로조건 부가급여 또는 적격 직원 할인 및 서비스 -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서비스 - 사원할인 - 근무조건 부가급여(ex. 회사자동차 제공 등) -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부가급여 - 통근비용[2)] - 이사비용[2)] - 퇴직계획서비스(ex.연금 등)

주: 1)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과세됨
2)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중단됨
자료: 26 U.S.C. §§ 79,101,102,103,104,105,106,108(a)(1),117,119,120,121,127,129,137,132

상기 표 마지막 항목에서처럼 종업원 특정 부가급여(fringe benefits)는 비과세된다.[86] 그러나 이 중 통근비용과 이사비용은 세법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중단된다. 이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해외소득과 해외 주택거주비용에 대해 일정부분이 비과세된다.

86) 26 U.S.C. § 132; 26 C.F.R. §§ 1.132-1 to -9

3. 분류과세 대상소득

분류과세는 소득세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합과세방법에 비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가 용이하며,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할 수 있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도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소득세법에서는 자본자산에 관련 소득에 대해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본자산(Capital Assets)이라 함은 개인적 이용 또는 투자를 위하여 소유한 자산을 말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사업용 자산 등은 제외한다. 자본자산의 처분 또는 교환으로 실현되는 손익을 자본손익(Capital Gains or Loss)이라 하는데, 이러한 자본손익은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다.

처분된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처분손익은 단기자본손익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자본손익으로 구분되며, 2단계 합산 과정을 통해 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이 단기자본소득금액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자본소득금액일 경우에는 0%, 15%, 20% 세율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법 1250조에 따른 미환수상각자산 관련 이익(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s), 수집품[87] 및 적격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자본이익은 장기자본손익과 합산될 수 있으며, 장기자본손실을 초과하여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25% 또는 28%로 분류과세된다.

〈표 Ⅳ-3〉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유형	내용
단기자본소득금액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
장기자본소득금액	0%, 15%, 20% 분류과세
법 1250조에 따른 미환수 상각자산 관련 자본소득금액	25% 분류과세
수집품자본소득금액	28% 분류과세
적격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자본소득금액	이익의 50%는 면세,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28%로 과세

자료: Kevin E. Murphy and Mark Higgins(2019), pp.3~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87) 예술작품, 양탄자, 골동품, 금속품, 보석, 우표, 동전 및 알코올 음료와 재무부 규정(26 U.S.C. § 1(h)(5), 408(m)에 명시된 기타 유형의 개인 재산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재무부 규정에서 열거한 목록에는 악기 및 역사적 물체(문서, 의류 등)이 포함된다. (26 C.F.R. § 1.408-10) 특정 유형의 동전 및 금화(금, 은, 백금 등)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수집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4. 분리과세 대상소득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 시마다 원천징수로 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 체계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진다.[88] 즉 미국 내외에서 발생된 급료, 월급,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이 중 분류과세 대상소득인 자본이득(capital gains) 등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된다.[89]

종합과세 대상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필요경비 성격인 일정 공제액을 차감하여 조정된 총수입금액(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산정한다. 이 조정된 총수입금액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정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결정한다.[90]

아래의 〈표 Ⅴ-1〉에서 조정된 총수입금액(AGI)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필요경비 성격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조정된 총수입금액 전 소득공제(above the line)라 하고 실제 우리나라 소득공제 개념과 비슷한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는 조정된 총수입금액 후 소득공제(below the line)라 말한다.

조정된 총수입금액에서 항목별 공제 또는 표준공제 중 큰 금액과 인적공제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납세자 신고단위에 따라 동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후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예정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에 이르게 된다.

88) 26 C.F.R. § 1.1-1 (b)

89) 미국 소득세 계산은 '총포괄소득개념(all-inclusive income concept)'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분류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과세되고 있기에, 우리나라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종합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90) 미국 소득세 용어 중 'taxable income'은 직역하면 과세소득이지만, 의미상 우리나라의 과세표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으로 의역하였다.

〈표 Ⅴ-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개괄

총수입금액(Gross receipts)[1]
(-)
AGI 산정을 위한 공제액(deduction for AGI)[2]
(=)
조정된 총수입금액(AGI)[3]
(-)
AGI로부터의 공제(deduction from AGI) • 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 • 인적공제[4]
(=)
종합소득과세표준(taxable income)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credits)
(-)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세액납부액
(=)
납부세액(환급세액)

주: 1) 비과세수입을 제외한 대가를 수령한 모든 소득금액을 포함
2) 필요경비공제
3)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과 비슷한 개념임
4)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인적공제는 폐지됨
자료: Kevin E. Murphy and Mark Higgins(2019), pp.8-12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가. 조정된 총수입금액 전 공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이후,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다음 절차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로써 조정된 총수입

금액이 산정되는데, 참고로 조정된 총수입금액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금액과 비슷한 개념이다. 조정된 총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공제항목은 제시된 〈표 V-2〉와 같다.

〈표 V-2〉 조정된 총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공제항목

- 거래 및 사업비용
-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업비용(특정 지출 경비 - 예술가, 공무원, 학교교사, 군인)
- 재산 판매 또는 교환 손실
- 소득 창출 자산을 위한 유지 비용
- 자영업자의 연금, 이익배분제 납입분
- 개인 퇴직 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납입분
- 위자료 및 별도의 유지보수 지급액
- 이사비용
- 등록금 및 교육 관련 비용
- 건강 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 납입분

자료 :26 U.S.C. § 62; C.F.R.§§ 1.62-1T and -2

나. 조정된 총수입금액 후 공제

앞서 조정된 총수입금액 전 공제가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성격에 대한 공제라면,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조정된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는 대부분 개인적 지출(personal expenditures)을 위한 공제액에 해당된다. 또한, 조정된 총수입금액 전 공제에서는 사업적 필요경비 성격으로 지출된 비용을 전액 공제받았다면, 조정된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는 법에 명시된 한도에 따라서 공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그 지출된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조정된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는 납세자 신고 단위별로 일정금액을 공제받는 ① 표준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등 일정 항목별로 해당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②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납세자,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4,050달러를 공제하는 인적공제를 추가로 공제해주었으나 현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Tax Cut and Jobs Act, TCJA)을 통해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인적공제를 배제하였다.

1) 인적공제

전술한 바와 같이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인적공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이 배제되었다.[91] 그러나 본 개정법은 한시적 규정(sunset provision)으로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26년부터는 2017년의 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2017

년 기준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납세자가 그의 배우자 및 부양자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납세자는 그들에 대한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는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정규학기를 등록한 대학생인 경우 24세까지 가능하다.[92]

2017년 기준 인적공제액은 1인당 4,050달러(2017년 기준)이나, 조정된 총수입금액이 허용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초과금액의 2,500달러당 2%씩 감면된다. 인적공제액과 조정된 총수입금액 허용한도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93]

〈표 V-3〉 2017년도 소득세 인적공제금액이 감면되는 소득구간

(단위: 달러)

납세자 단위	감면이 적용되는 AGI	완전 감면되는 AG(공제금액 없음)
부부합산신고	313,800	436,300
세대주신고	287,650	410,150
개인단독신고	261,500	384,000
부부개별신고	159,600	218,150

자료: Rev. Proc. 2016-55, 2016-45 I.R.B. 707

2) 표준공제

모든 납세자는 표준공제 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이 표준공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표준공제 적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공제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되며[94], 납세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결정된다.[95] 2018년도 기준 납세자 단위별 표준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91) 26 U.S.C. § 151(d)(5); Rev. Proc. 2018-18, 2018-10 I.R.B. 392
92) 26 U.S.C. §§ 151-152
93) 26 U.S.C. §§ 1(f)(3), 151(d)(4)
94) 26 U.S.C.§1(f)(3) ; 26 U.S.C.§63(c)(4)
95) 26 U.S.C. §63 (c)

〈표 V-4〉 2018년도 소득세 표준공제

(단위: 달러)

납세자 단위	표준공제 한도
부부합산신고	24,000
세대주신고	18,000
개인단독신고	12,000
부부개별신고	12,000

자료: 26 U.S.C.§ 63(c)(7); Rev. Proc. 2018-57, 2018-49 I.R.B. 82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의 경로자이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표준공제(additional standard deduction)가 인정된다.[96] 2018년 기준으로 추가표준공제액은 개인의 경우 1,600달러이며, 다른 납세자 유형의 경우 1,300달러이다. 만약 경로자와 시각장애인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두 가지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상에 부양자로 신고된 자는 본인의 신고서상에 2018년도 기준으로 ① 1,050달러 또는 ② 부양자가 직접 일하여 번 수입 + 350달러 중 큰 금액을 표준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항목별 공제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이 표준공제액보다 클 경우에는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 소득세법에서 정한 항목별 공제 유형으로는 의료비 공제, 지방세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재해도난손실공제, 기부금공제, 기타공제가 있다.

기존에는 기타공제와 고소득자 항목별 공제의 공제금액 제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2018년도 세법개정(Tax Cut and Jobs Act, TCJA)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96) 26 U.S.C. §63 (f)

〈표 V-5〉 항목별 공제

공제 종류	내용	공제액
의료비공제	의료보험에서 변제되지 않은 의료비 -의사, 치과의사, 검안사, 안경, 보청기, 의료보험료, 관련교통비를 포함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7.5%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지방세공제	주 및 지방정부 납부세금, 재산세	한도: 개인기준 5,000달러 (부부합산의 경우 10,000달러)
이자비용공제	• 적격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자	주택인수대출금: 750,000달러 미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 (홈 에퀴티 대출의 경우, 주택 관련한 대출일 경우만 공제 가능)
	• 투자 관련 이자	순투자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함
기부금공제	적격 교육, 종교, 자선, 과학, 문화단체에 기부한 현금 및 재산기부금	현금의 경우: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60%까지 공제 가능 장기보유한 자본재산 경우: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30%까지 공제 가능
재해도난손실공제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으로 인해 개인용 재산 피해손실	손실액 - 각 손실별 100달러씩 차감 -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10%
기타공제	도박손실, 장애인고용비용, 투자관련비용	전액 공제

자료: Kevin E. Murphy and Mark Higgins(2019), pp.8~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의료비공제

납세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97]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질병의 진단비, 치료비, 또는 질병의 예방,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목적의 행위를 위해 지급된 금액 등을 말하며, 관련 교통비 및 장기요양서비스 및 관련보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비, 인슐린 등을 포함한다.[98] 의료비공제액은 당해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용[99]에서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10%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나) 지방세공제

납세자는 과세기간 동안 납부하거나 납부 예정된 특정 유형의 세금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100] 주로 미국 주(state)정부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부동산세 및 재산

97) 26 U.S.C. §213 (a)
98) 26 U.S.C. § 213(b); 26 C.F.R. § 1.213-1(e)(2)), 26 U.S.C. § 213(d), 26 C.F.R. § 1.213-1(e)(1)
99) 의료보험사에서 배상한 금액을 제외한다.

세와 외국납부세액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지방세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이다.

납세자는 또한 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공제 대신 판매세(sales taxes)에 대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101]

2018년도 세법개정(Tax Cut and Jobs Act, TCJA)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전반적인 지방세공제 한도액이 개인의 경우 5,000달러(부부합산의 경우 10,000달러)로 설정되어 있다.[102]

다) 이자비용공제

미국에서는 최근 이자비용공제의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개인대출 관련이자(예를 들어 신용카드 및 자동차 구매론)는 공제되지 않으며, 오직 ① 적격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② 투자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항목별 공제의 대상이 된다.

① 주택담보대출

주택관련 담보대출금은 납세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말하며 그 사용용도에 따라 인수대출(acquisition indebtedness)과 홈 에퀴티 대출(Home Equity Indebtedness)로 구분된다. 인수대출(Acquisition Indebtedness)은 주택의 취득 또는 건설 등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말하며, 동 대출원금이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100만달러를 한도로 하여(개인의 경우 50만달러) 이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원금 75만달러(개인의 경우 37만 5천달러)를 한도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103]

홈 에퀴티 대출은 인수대출 이외의 주택담보 대출금을 말하며, 기존에는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① 10만달러 대출금(개인의 경우 5만달러), ② 담보된 주택의 시가-인수대출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담보되는 주택의 취득(buy), 건축(build) 또는 상당한 개조(substantially improve) 등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104]

---

100) 26 U.S.C. § 164

101) 26 U.S.C. § 164(b)(5), 참고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텍사스, 워싱턴, 테네시, 뉴햄프셔, 플로리다, 와이오밍,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납세자에 해당될 것이다.

102) 26 U.S.C. § 164(b)(6)

103) 26 U.S.C. § 163(h)(3)(F)

104)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newsroom/interest-on-home-equity-loans-often-still-deductible-under-new-law, 검색일자: 2019.1.28.

② 투자 관련 차입금

투자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자산 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해당 이자는 당해 발생한 순투자소득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105]

라) 재해도난손실공제

납세자는 과세기간 중에 화재, 폭풍, 조난사고 또는 기타 재해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106] 공제받고자 하는 재해도난손실은 납세자의 사업성 및 거래이익성과 관련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107]으로부터의 손실만 공제가 가능하다.

마) 기부금공제

당해 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교육,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단체 등 적격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108] 이는 당해 연도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한도는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기부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공공자선단체와 정부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하였으며, 다른 적격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세법개정(Tax Cut and Jobs Act, TCJA)에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공공자선단체 등 대한 기부금공제한도를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60%까지 상향하였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5개 과세사업연도까지 이월가능하다.

바) 기타공제

기타공제는 크게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도박손실비용,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업무관련비용, 퇴직연금손실 비용 등과 조정된 총수입금액의 2%를 초과하는 비용만 공제

105) 26 U.S.C. § 163(d)
106) 26 U.S.C. § 165(a); 26 C.F.R. § 1.165-7
107) 「스태포드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상태로 선포한 재난이어야 한다.
108) 26 U.S.C. § 170; 26 C.F.R. § 1.170A-1

받을 수 있는 기타 업무관련 비용(기타 종업원 관련비용 및 세무신고 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세법개정((Tax Cut and Jobs Act, TCJA)을 통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후자의 한도규정을 적용받는 기타업무관련 비용 등을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의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능한 부류인 도박손실비용,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업무관련비용, 퇴직연금 손실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 고소득자의 항목별 공제 제한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 일부 항목별 공제에 대한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다.[109] 최초 이 법을 발의한 Donald Pease의 이름을 따서 일명 피스 제한(Pease limitation)이라고도 불린다. 납세자의 조정된 총수입금액이 해당되는 신고유형별 한도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① (조정된 총수입금액 – 납세자 해당 신고유형별 한도금액) × 3% ② 항목별 공제 합계액의 80% 중 작은 금액으로 공제금액이 제한된다.

그러나 2018년 세법개정((Tax Cut and Jobs Act, TCJA)을 통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동 고소득자 항목별 공제 제한 규정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었다.[110] 동법이 시행되기 전 2017년의 항목별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 납세자 신고유형별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Ⅴ-6〉 2017년도 항목별 공제제한 적용한도

(단위: 달러)

납세자 단위	조정된 총수입금액 기준
부부합산신고	313,800
세대주신고	287,650
개인단독신고	261,500
부부개별신고	156,900

자료: Rev. Proc. 2016-55, 2016-45 I.R.B. 707

109) 26 U.S.C. § 68
110) 26 U.S.C. § 68(f); Rev. Proc. 2018-18, 2018-10 I.R.B. 392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 체계

1.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납세자 신고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납세자 신고유형은 부부합산신고, 부양자신고, 개인단독신고, 부부개별신고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신고유형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2018년 기준 10%, 12%, 22%, 24%, 32%, 35%, 37%의 한계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표 Ⅵ-1〉 2018년 기준 납세자 유형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납세자 단위		세율
개인단독신고	부부합산신고	
~9,525달러 미만	~19,050달러 미만	10%
9,525달러 초과~38,700달러 미만	19,050달러 초과~77,400달러 미만	12%
38,700달러 초과~82,5000달러 미만	77,400달러 초과~165,000달러 미만	22%
82,500달러 초과~157,500달러 미만	165,000달러 초과~315,000달러 미만	24%
157,500달러 초과~200,000달러 미만	315,000달러 초과~400,000달러 미만	32%
200,000달러 초과~500,000달러 미만	400,000달러 초과~600,000달러 미만	35%
500,000달러 초과~	600,000달러 초과 ~	37%

납세자 단위		세율
세대주신고	부부별도신고	
~13,600달러 미만	~9,525달러 미만	10%
13,600달러 초과~51,800달러 미만	9,525달러 초과~38,700달러 미만	12%
51,800달러 초과~82,5000달러 미만	38,700달러 초과~82,5000달러 미만	22%
82,500달러 초과~157,500달러 미만	82,500달러 초과~157,500달러 미만	24%
157,500달러 초과~200,000달러 미만	157,500달러 초과~200,000달러 미만	32%
200,000달러 초과~500,000달러 미만	200,000달러 초과~300,000달러 미만	35%
500,000달러 초과~	300,000달러 초과 ~	37%

자료: 26 U.S.C. § 1(j); Rev. Proc. 2018-18, 2018-10 I.R.B. 392

5개연도 과거 주요 세율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변동한 연도는 2018년도이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과세표준 구간에서만 약간의 조정이 있었을 뿐 세율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2018년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개정(Tax Cut and Jobs Act, TCJA)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3% 정도의 세율이 인하되었다.[111] 특히 50만달러가 넘는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의 경우 과거에는 39.6%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37%를 적용받게 되어 납세액 절감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표 Ⅵ-2〉 5개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4~2018년)

(단위: 달러, %)

유형	2014		2015		2016		2017		2018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부부 합산 신고	~ 18,150	10	~ 18,450	10	~ 18,550	10	~ 18,650	10	~ 19,050	10
	~ 73,800	15	~ 74,900	15	~ 75,300	15	~ 75,900	15	~ 77,400	12
	~ 148,850	25	~ 151,200	25	~ 151,900	25	~ 153,100	25	~ 165,000	22
	~ 226,850	28	~ 230,450	28	~ 231,450	28	~ 233,350	28	~ 315,000	24
	~ 405,100	33	~ 411,500	33	~ 413,350	33	~ 416,700	33	~ 400,000	32
	~ 457,600	35	~ 464,850	35	~ 466,950	35	~ 470,700	35	~ 600,000	35
	457,600 ~	39.6	464,850 ~	39.6	466,950 ~	39.6	470,700 ~	39.6	600,000 ~	37
세대주 신고	~ 12,950	10	~ 13,150	10	~ 13,250	10	~ 13,350	10	~ 13,600	10
	~ 49,400	15	~ 50,200	15	~ 50,400	15	~ 50,800	15	~ 51,800	12
	~ 127,550	25	~ 129,600	25	~ 130,150	25	~ 131,200	25	~ 82,500	22
	~ 206,600	28	~ 209,850	28	~ 210,800	28	~ 212,500	28	~ 157,500	24
	~ 405,100	33	~ 411,500	33	~ 413,350	33	~ 416,700	33	~ 200,000	32
	~ 432,200	35	~ 439,000	35	~ 441,000	35	~ 444,550	35	~ 500,000	35
	432,200 ~	39.6	439,000 ~	39.6	441,000 ~	39.6	444,550 ~	39.6	500,000 ~	37
개인 단독 신고	~ 9,075	10	~ 9,225	10	~ 9,275	10	~ 9,325	10	~ 9,525	10
	~ 36,900	15	~ 37,450	15	~ 37,650	15	~ 37,950	15	~ 38,700	12
	~ 89,350	25	~ 90,750	25	~ 91,150	25	~ 91,900	25	~ 82,500	22
	~ 186,350	28	~ 189,300	28	~ 190,150	28	~ 191,650	28	~ 157,500	24
	~ 405,100	33	~ 411,500	33	~ 413,350	33	~ 416,700	33	~ 200,000	32
	~ 406,750	35	~ 413,200	35	~ 415,050	35	~ 418,400	35	~ 500,000	35
	406,750 ~	39.6	413,200 ~	39.6	415,050 ~	39.6	418,400 ~	39.6	500,000 ~	37
부부 개별 신고	~ 9,075	10	~ 9,225	10	~ 9,275	10	~ 9,325	10	~ 9,525	10
	~ 36,900	15	~ 37,450	15	~ 37,650	15	~ 37,950	15	~ 38,700	12
	~ 74,425	25	~ 75,600	25	~ 75,950	25	~ 76,550	25	~ 82,500	22
	~ 113,425	28	~ 115,250	28	~ 115,725	28	~ 116,675	28	~ 157,500	24
	~ 202,550	33	~ 205,750	33	~ 206,675	33	~ 208,350	33	~ 200,000	32
	~ 228,800	35	~ 232,425	35	~ 233,475	35	~ 235,350	35	~ 300,000	35
	228,800 ~	39.6	232,425 ~	39.6	233,475 ~	39.6	235,350 ~	39.6	300,000 ~	37

자료: 2018년 : IRC § 1(j); Rev. Proc. 2018-18, 2018-10 I.R.B. 392), 2017년:Rev. Proc. 2016-55, 2016-45 I.R.B. 707, 2016년 : Rev. Proc. 2015-53, 2015-44 I.R.B. 615, 2015년 : Rev. Proc. 2014-61, 2014-47 I.R.B. 860, 2014년 : Rev. Proc. 2013-35, 2013-47 I.R.B. 53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11) 그러나 개인 단독신고 기준 20만달러~40만달러의 소득자의 경우 개정 전에는 33%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개정 이후 35% 세율을 적용받아 오히려 2%p 정도의 세율이 상승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세액공제

납세자는 세액공제(credits)를 받음으로써 납부할 세액의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납세자의 소득구간별 한계세율이 결정된 이후에 고려되기 때문에 100달러의 세액공제는 1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특정 활동 장려, 납세자 간 공평과세 실현, 저소득층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며, 납세자의 신고유형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이지만, 자녀세액공제(child credit)와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만약 납세자의 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액이 세금납부액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초과공제액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표 Ⅵ-3〉 세액공제 항목 및 유형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환급 불가능한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Child credit)[1)] ·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	· 부양가족지원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care credit) · 경로자 및 장애인세액공제 (Tax credit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 입양세액공제(Adoption credit) · 교육비세액공제 – 미국인기회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 평생교육세액공제(Life Learning Tax credit) · 일반사업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credit) – 고용기회세액공제(Work Opportunity credit) – 대체연료생산세액공제(Alternative Fuel Production credit) – 연구개발세액공제(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 저소득주택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credit) – 장애인시설세액공제(Disabled Access credit) – 석유회수증진세액공제(Enhanced Oil Recovery credit) – 근로복지세액공제(Welfare-to-work credit) – 특정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장세 세액공제 (Credit for Employe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2)]

주: 1) 자녀세액공제액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함
2)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한 방식을 선택하여 공제받음
자료: Kevin E.Murphy and Mark Higgins(2019), pp.8~2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child credit)는 17세 미만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녀당 2천달러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격 요건은 세대주 신고 시 적용한 자녀 요건과 동일하나, 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7세 미만의 나이 요건과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동 세액공제와 관련한 환급금액은 근로소득 금액(earned income)의 15%까지 가능하며, 자녀 1명당 환급이 가능한 공제액은 1,400달러이다.

2018년도 세법개정(Tax Cut and Jobs Act, TCJA)에서는 상기 조건을 충족한 자녀에 대해서 500달러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8년에서 2025년 사이만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은 불가능하다.

2)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세금감면 조치로,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환불이 전액 가능하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5.3에 후술하기로 한다.

나.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

1) 부양가족지원세액공제

부양가족지원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care credit)는 자녀가 있고 직장에 근무하는 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납세자는 부양자 위탁관련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112] 위탁관련비용으로는 부양자(12세 미만 자녀, 배우자, 장애인) 돌봄 비용과 가사서비스 비용을 말하며, 가정 외 적격 부양센터 지출비용도 포함된다.

세액공제액은 부양자의 위탁관련비용(employment-related expenses)의 35%이나, 과세기간 중 납세자의 조정된 총수입금액이 1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천달러당 1%를 감면하여 계산된다[113]. 최대 공제액은 부양자당 3천달러이며, 6천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114]

112) 26 U.S.C. § 21; 26 C.F.R. §§ 1.21-1 to -4
113) 26 U.S.C. § 21(a)(2)

2) 경로자 및 장애인세액공제

경로자 및 장애인 세액공제(tax credit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는 납세자가 경로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115], 이는 미국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세액공제금액은 납세자 신고유형별로 상이하며, 개인단독신고와 부부합산신고 시 1인 배우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5,000달러, 두 배우자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7,500달러, 부부별도신고 시에는 3,750달러의 공제액이 적용된다.[116]

그러나 납세자가 「미국 사회보장법(US 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받게 되는 수당 및 비과세 연금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액이 감소되며[117], 납세자의 조정된 총수입금액이 허용된 최대금액[118]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절반만큼 감소된다.

3) 입양세액공제

납세자는 입양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입양세액공제(adoption credit)를 신청할 수 있다.[119] 이는 18세 미만 또는 혼자 자립할 수 없는 18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120] 2018년 기준, 공제한도액은 13,810달러이다.

4) 교육비공제

납세자는 고등교육(대학교육)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121]와 평생교육세액공제(life learning tax credit)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두 공제 모두 과세기간에 반일제(half-time) 이상의 학기에 등록한 학생의 교

114) 26 U.S.C. § 21(c); 26 C.F.R. § 1.21-2(a)
115) 26 U.S.C. § 22
116) 26 U.S.C. § 22(c)(2)
117) 26 U.S.C. § 22(c)(3)
118) 조정된 총수입금액 기준은 개인단독신고 납세자의 경우 7,500달러,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0,000달러,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5,000달러이다. 26 U.S.C. § 22(d)
119) 26 U.S.C. § 23
120) 26 U.S.C. § 23(b)(1)
121) 2017년까지 존재하던 희망장학금세액공제(Hope scholarship credit)의 명칭이 AOTC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교재비, 학업용품 관련 비용 등을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한다.

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기혼 납세자의 경우 반드시 부부합산신고 유형으로 신고하였을 시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AOTC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 수업료, 관련 납부금 및 교재비가 포함되나, 평생교육세액공제의 경우 교재비(course materials)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된다.

AOTC는 대학 첫 4년 동안 학생당 적격 교육비 지출액 중 2천달러에 대해서는 100% 공제가 가능하며, 그 후 2천달러 구간 (2천달러~4천달러)에 대해서는 25%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당 연간 최대 공제가능 금액은 2,500달러[($2,000 × 100%) + ($2,000 × 25%)]이다.

평생교육세액공제는 적격 고등교육 비용 중 1만달러까지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따라서 최대 공제가능금액은 2천달러이며, 부양가족 중 요건을 갖춘 학생 수와 상관이 없다. 다만, 평생교육세액공제는 대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의 등록금을 포함하며, 반일제(half-time) 미만의 과정에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하다.

5) 일반사업 세액공제[122)]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세액공제가 추가로 인정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일반사업 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라 한다. 일반사업 세액공제는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이나, 소급공제 1년 및 이월 공제 20년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자 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credit), 고용기회세액공제(work opportunity credit), 대체연료생산세액공제(alternative fuel production credit), 연구개발세액공제(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저소득주택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credit), 장애인시설세액공제(disabled access credit), 석유회수증진세액공제(enhanced oil recovery credit), 근로복지세액공제(welfare-to-work credit)가 있으며, 종업원 팁 등에 대해 고용주가 부담한 사회보장세액공제(credit for employe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를 포함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Ⅱ권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123)]

납세자는 당해 외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국 납부세액을

122) 26 U.S.C. § 38
123) 26 U.S.C. § 27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 계산은 소득의 유형별로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3. 근로소득장려세제

저소득층 개인납세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다.[124] 이는 납세자가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에 근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개인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조정된 총수입금액 또는 근로소득이 일정 임계치를 초과하면, 공제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녀를 둔 납세자 또는 납세자 본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125] 적격자녀의 요건은 납세자와 가족관계가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과세기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와 거주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는 24세 미만까지 해당된다. 납세자 본인의 요건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25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 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추가로 기혼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 않은 이상, 부부합산신고를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126] 또한, 납세자의 투자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2018년 기준, 투자소득 금액이 3,500달러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표 Ⅵ-4〉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납세자의 근로소득 한계점

(단위: 달러)

납세자 단위	자녀 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개인, 세대주신고	15,270	40,320	45,802	49,194
부부합산신고	20,950	46,010	51,492	54,884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itc-income-limits-maximum-credit-amounts, 검색일자: 2019.1.31

124) 26 U.S.C. § 32; 26 C.F.R. §§ 1.32-2 and -3
125) 26 U.S.C. § 32(c)(1) and (c)(3)
126) 26 U.S.C. § 32(d); 26 C.F.R. § 1.32-2(b)(2)

세액공제액은 납세자의 근로소득 금액(혹은 조정된 총수입금액)과 납세자의 적격 자녀 명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표(earned income tax credit table, EIC Table)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공제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은 2018년 국세청에서 제시한 근로소득세액공제표의 일부를 나타낸다.

[그림 Ⅵ-1] 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표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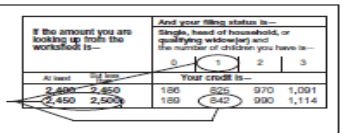
2018 Earned Income Credit (EIC) Table

Caution. This is **not** a tax table.

1. To find your credit, read down the "At least - But less than" columns and find the line that includes the amount you were told to look up from your EIC Worksheet.

2. Then, go to the column that includes your filing status and the number of qualifying children you have. Enter the credit from that column on your EIC Worksheet.

Example. If your filing status is single, you have one qualifying child, and the amount you are looking up from your EIC Worksheet is $2,455, you would enter $842.



If the amount you are looking up from the worksheet is...		And your filing status is... Single,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er) and the number of children you have is...				And your filing status is... Married filing jointly and the number of children you have is...			
		0	1	2	3	0	1	2	3
At least	But less than	Your credit is...				Your credit is...			
$1	$50	$2	$9	$10	$11	$2	$9	$10	$11
50	100	6	26	30	34	6	26	30	34
100	150	10	43	50	56	10	43	50	56
150	200	13	60	70	79	13	60	70	79
200	250	17	77	90	101	17	77	90	101
250	300	21	94	110	124	21	94	110	124
300	350	25	111	130	146	25	111	130	146
350	400	29	128	150	169	29	128	150	169
400	450	33	145	170	191	33	145	170	191
450	500	36	162	190	214	36	162	190	214
500	550	40	179	210	236	40	179	210	236
550	600	44	196	230	259	44	196	230	259
600	650	48	213	250	281	48	213	250	281
650	700	52	230	270	304	52	230	270	304
700	750	55	247	290	326	55	247	290	326
750	800	59	264	310	349	59	264	310	349
800	850	63	281	330	371	63	281	330	371
850	900	67	298	350	394	67	298	350	394
900	950	71	315	370	416	71	315	370	416
950	1,000	75	332	390	439	75	332	390	439
1,000	1,050	78	349	410	461	78	349	410	461
1,050	1,100	82	366	430	484	82	366	430	484
1,100	1,150	86	383	450	506	86	383	450	506
1,150	1,200	90	400	470	529	90	400	470	529
1,200	1,250	94	417	490	551	94	417	490	551
1,250	1,300	98	434	510	574	98	434	510	574
1,300	1,350	101	451	530	596	101	451	530	596
1,350	1,400	105	468	550	619	105	468	550	619
1,400	1,450	109	485	570	641	109	485	570	641
1,450	1,500	113	502	590	664	113	502	590	664
1,500	1,550	117	519	610	686	117	519	610	686
1,550	1,600	120	536	630	709	120	536	630	709
1,600	1,650	124	553	650	731	124	553	650	731
1,650	1,700	128	570	670	754	128	570	670	754
1,700	1,750	132	587	690	776	132	587	690	776
1,750	1,800	136	604	710	799	136	604	710	799
1,800	1,850	140	621	730	821	140	621	730	821
1,850	1,900	143	638	750	844	143	638	750	844
1,900	1,950	147	655	770	866	147	655	770	866
1,950	2,000	151	672	790	889	151	672	790	889
2,000	2,050	155	689	810	911	155	689	810	911
2,050	2,100	159	706	830	934	159	706	830	934
2,100	2,150	163	723	850	956	163	723	850	956
2,150	2,200	166	740	870	979	166	740	870	979
2,200	2,250	170	757	890	1,001	170	757	890	1,001
2,250	2,300	174	774	910	1,024	174	774	910	1,024
2,300	2,350	178	791	930	1,046	178	791	930	1,046
2,350	2,400	182	808	950	1,069	182	808	950	1,069
2,400	2,450	186	825	970	1,091	186	825	970	1,091
2,450	2,500	189	842	990	1,114	189	842	990	1,114
2,500	2,550	193	859	1,010	1,136	193	859	1,010	1,136
2,550	2,600	197	876	1,030	1,159	197	876	1,030	1,159
2,600	2,650	201	893	1,050	1,181	201	893	1,050	1,181
2,650	2,700	205	910	1,070	1,204	205	910	1,070	1,204
2,700	2,750	208	927	1,090	1,226	208	927	1,090	1,226
2,750	2,800	212	944	1,110	1,249	212	944	1,110	1,249

If the amount you are looking up from the worksheet is...		And your filing status is... Single,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er) and the number of children you have is...				And your filing status is... Married filing jointly and the number of children you have is...			
		0	1	2	3	0	1	2	3
At least	But less than	Your credit is...				Your credit is...			
2,800	2,850	216	961	1,130	1,271	216	961	1,130	1,271
2,850	2,900	220	978	1,150	1,294	220	978	1,150	1,294
2,900	2,950	224	995	1,170	1,316	224	995	1,170	1,316
2,950	3,000	228	1,012	1,190	1,339	228	1,012	1,190	1,339
3,000	3,050	231	1,029	1,210	1,361	231	1,029	1,210	1,361
3,050	3,100	235	1,046	1,230	1,384	235	1,046	1,230	1,384
3,100	3,150	239	1,063	1,250	1,406	239	1,063	1,250	1,406
3,150	3,200	243	1,080	1,270	1,429	243	1,080	1,270	1,429
3,200	3,250	247	1,097	1,290	1,451	247	1,097	1,290	1,451
3,250	3,300	251	1,114	1,310	1,474	251	1,114	1,310	1,474
3,300	3,350	254	1,131	1,330	1,496	254	1,131	1,330	1,496
3,350	3,400	258	1,148	1,350	1,519	258	1,148	1,350	1,519
3,400	3,450	262	1,165	1,370	1,541	262	1,165	1,370	1,541
3,450	3,500	266	1,182	1,390	1,564	266	1,182	1,390	1,564
3,500	3,550	270	1,199	1,410	1,586	270	1,199	1,410	1,586
3,550	3,600	273	1,216	1,430	1,609	273	1,216	1,430	1,609
3,600	3,650	277	1,233	1,450	1,631	277	1,233	1,450	1,631
3,650	3,700	281	1,250	1,470	1,654	281	1,250	1,470	1,654
3,700	3,750	285	1,267	1,490	1,676	285	1,267	1,490	1,676
3,750	3,800	289	1,284	1,510	1,699	289	1,284	1,510	1,699
3,800	3,850	293	1,301	1,530	1,721	293	1,301	1,530	1,721
3,850	3,900	296	1,318	1,550	1,744	296	1,318	1,550	1,744
3,900	3,950	300	1,335	1,570	1,766	300	1,335	1,570	1,766
3,950	4,000	304	1,352	1,590	1,789	304	1,352	1,590	1,799
4,000	4,050	308	1,369	1,610	1,811	308	1,369	1,610	1,811
4,050	4,100	312	1,386	1,630	1,834	312	1,386	1,630	1,834
4,100	4,150	316	1,403	1,650	1,856	316	1,403	1,650	1,856
4,150	4,200	319	1,420	1,670	1,879	319	1,420	1,670	1,879
4,200	4,250	323	1,437	1,690	1,901	323	1,437	1,690	1,901
4,250	4,300	327	1,454	1,710	1,924	327	1,454	1,710	1,924
4,300	4,350	331	1,471	1,730	1,946	331	1,471	1,730	1,946
4,350	4,400	335	1,488	1,750	1,969	335	1,488	1,750	1,969
4,400	4,450	339	1,505	1,770	1,991	339	1,505	1,770	1,991
4,450	4,500	342	1,522	1,790	2,014	342	1,522	1,790	2,014
4,500	4,550	346	1,539	1,810	2,036	346	1,539	1,810	2,036
4,550	4,600	350	1,556	1,830	2,059	350	1,556	1,830	2,059
4,600	4,650	354	1,573	1,850	2,081	354	1,573	1,850	2,081
4,650	4,700	358	1,590	1,870	2,104	358	1,590	1,870	2,104
4,700	4,750	361	1,607	1,890	2,126	361	1,607	1,890	2,126
4,750	4,800	365	1,624	1,910	2,149	365	1,624	1,910	2,149
4,800	4,850	369	1,641	1,930	2,171	369	1,641	1,930	2,171
4,850	4,900	373	1,658	1,950	2,194	373	1,658	1,950	2,194
4,900	4,950	377	1,675	1,970	2,216	377	1,675	1,970	2,216
4,950	5,000	381	1,692	1,990	2,239	381	1,692	1,990	2,239
5,000	5,050	384	1,709	2,010	2,261	384	1,709	2,010	2,261
5,050	5,100	388	1,726	2,030	2,284	388	1,726	2,030	2,284
5,100	5,150	392	1,743	2,050	2,306	392	1,743	2,050	2,306
5,150	5,200	396	1,760	2,070	2,329	396	1,760	2,070	2,329
5,200	5,250	400	1,777	2,090	2,351	400	1,777	2,090	2,351
5,250	5,300	404	1,794	2,110	2,374	404	1,794	2,110	2,374
5,300	5,350	407	1,811	2,130	2,396	407	1,811	2,130	2,396
5,350	5,400	411	1,828	2,150	2,419	411	1,828	2,150	2,419
5,400	5,450	415	1,845	2,170	2,441	415	1,845	2,170	2,441
5,450	5,500	419	1,862	2,190	2,464	419	1,862	2,190	2,464
5,500	5,550	423	1,879	2,210	2,486	423	1,879	2,210	2,486
5,550	5,600	426	1,896	2,230	2,509	426	1,896	2,230	2,509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taxmap.irs.gov/taxmap/ts0/eitctable_o_72abc335.htm, 검색일자: 2019. 1. 31.

4. 최저한세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는 납세자가 소득공제, 비과세, 손실,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그의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별도의 방법이다. 납세자가 최저한세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잠정적인 최저한세가 일반적으로 계산한 방식에 의해 산정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127]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조정항목과 특정 소득세 감면 특례액을 가감하여 잠정 최저한세 과세표준(tentative 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을 구한다.[128] 이에 납세자 유형별로 공제액을 일괄적으로 차감하여 최저한세 과세표준(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조정항목과 특정 소득세 감면 특례로 인해 일반 소득세액을 상당히 감면받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적은 최저한세 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감면효과를 일정부분 제거하기 위함이다.[129]

〈표 Ⅵ-5〉 최저한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과세표준(regular taxable income) ± 조정항목 + 소득세 감면 특례(tax preference) 조정
잠정 최저한세 과세표준(tentative 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 - 공제액(exemption)
최저한세 과세표준(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 × 세율(26% 또는 28%)
세액공제 차감 전 잠정 최저한세 - 세액공제
잠정 최저한세(tentative AMT) - 일반 소득세 (regular tax liability)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자료: Kevin E. Murphy and Mark Higgins(2019), pp.15~2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최저한세 공제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납세자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공제액이 적용된다.[130] 그러나 잠정 최저한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액의 25% 만큼 공

127) 26 U.S.C. § 55
128) 26 U.S.C. §§ 56-59
129) 조정항목에는 일반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반영된 공제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소득세 감면 특례에는 일반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제외된 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권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금액에서 감액되어[131], 잠정 최저한세 과세표준금액이 부부합산신고 및 개인 신고 시 각각 1,437,600달러 및 781,200달러를 초과한다면 공제금액은 0원이 된다.

〈표 Ⅵ-6〉 2018년도 최저한세 공제액

(단위: 달러)

납세자 단위	최초 공제액	잠정최저한세 과세표준	
		25% 감액 시작구간	전체 감액 시작구간
부부합산신고	109,400	1,000,000	1,437,600
세대주신고	70,300	500,000	781,200
개인단독신고	70,300	500,000	781,200
부부개별신고	54,700	500,000	18,700

자료: 26 U.S.C. § 55(d); Rev. Proc. 2018-22, 2018-18 I.R.B. 524

최저한세 세율은 26%와 28%의 누진세율 구조로, 한계 과세표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2018년 기준 최저한세 과세표준이 191,100달러(부부 개별신고의 경우 95,500달러)로 동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이 적용된다.[132] 이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개인납세자의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133]를 고려한 잠정 최저한세(Tentative AMT)가 일반 소득세액보다 크다면 최종적으로 납세자는 최저한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소득세와 최저한세의 조정항목 간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세액공제(AMT minimum tax credit)를 두어 향후 일반 소득세 금액이 최저한세를 초과할 경우에 과거에 납부한 최저한세를 일반소득세에서 조정해준다.[134]

5. 사회보장세

가. FICA세와 SECA세

종업원과 고용주는 「연방 보험분담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에

130) 26 U.S.C. § 55(d)(1)
131) 26 U.S.C. § 55(d)(3)
132)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i6251.pdf, 검색일자 : 2018.3.13.
133) 자녀세액공제, 부양자세액공제, 입양자 세액공제, 경로자 및 장애인 세액공제, 고등교육세액공제를 말한다.
134) 26 U.S.C. § 53

따라 경로자, 생존배우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장세(medicare tax)를 부담하여야 한다.[135] 2018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 세율은 고용주와 종업원 각각 6.2%로 총 12.4%이며, 의료보장세 세율은 각각 1.45%로 총 2.9%이다.[136] 사회보장세는 급여의 128,400달러[137]까지 부과되며, 의료보장세는 이와 달리 한도 없이 급여에 해당 비율만큼 부과된다. 또한,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고소득 급여소득자에게 0.9%의 의료보장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138] 다만, 추가 의료보장세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은 없다.

또한, 자영업자는 「자영업분담법(Self-Employement Contribution Act, SECA)」에 따라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부담한다.[139] SECA세는 FICA세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SECA세 차감 전 자영업자의 순이익의 50%에[140], FICA세의 총세율(사회보장세 12.4%, 의료보장세 2.9%)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와 과세 부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0.9%의 의료보장세를 추가로 징수하며 소득 한도기준은 FICA세와 동일하다.

다만 신고방법에 있어서 FICA세는 원천징수로 신고납부하며, SECA세는 자체적으로 결산일 신고기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FUTA세

「연방 실업세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에 따라 고용주는 실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41] FUTA세는 종업원의 급여 소득에 대해 6%의 세율로 부과되며 최대 7,000달러의 급여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종업원당 최대 FUTA세 부담액은 420달러(7,000달러 × 6%)가 된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상기 연방 실업세와 함께 주정부에도 실업세를 납부하며, 두 세입원은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로 제공된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이기에, 종업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Form 940을 이용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전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35) 26 U.S.C. §§ 3101 and 3111
136) 26 U.S.C. §§ 3101(b)(1) and 3111(b)
137) 2018년 기준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 한도금액이 조정된다. 26 U.S.C. §§ 3101(a) and 3111(a)
138) 26 U.S.C. § 3101(b)(2)
139) 26 U.S.C. §§ 1401-1402
140) 26 U.S.C. § 1402(a); 26 C.F.R. §§ 1.1402(a) to (h)
141) 26 U.S.C. § 3301

6. 계산사례[142]

가. 근로소득자 계산사례

사실관계
- Michael과 Sophia는 부부이며, 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부부는 모두 근로소득자이며, Michael의 연 급여총액은 120,000달러이며, Sophia의 연 급여총액은 80,000달러다.
- 그들은 은행으로부터 10,000달러의 이자수입을 얻었다.
- 또한, 미국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 10,000달러를 수취하였으며, 장기 보유한 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10,000달러의 처분이익을 실현하였다(배당금과 주식처분이익은 분류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함).
- 부부는 각각 IRA 계좌에 5,500달러씩 납입하였다.

Michael과 Sophia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예정이며,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 2018년도의 연방소득세 산출과정을 나타낸다면 〈표 Ⅵ-7〉과 같다.

〈표 Ⅵ-7〉 2018년도 급여소득자 소득세 산출과정

(단위: 달러)

구분		금액
수입내역 :	Michael 급여총액	$120,000
	Sophia 급여총액	$80,000
	이자수입	$10,000
	배당수입	$10,000
	장기보유 주식처분이익	$10,000
총수입금액		$230,000
AGI 전 공제	IRA 계좌 납입금	($110,000)
조정된 총수입금액(AGI)		$219,000
AGI 후 공제	표준공제	($24,000)
	인적공제[1)]	($0)
과세소득		$195,000
분리과세대상 소득	배당수입, 장기보유주식처분이익	($20,000)
종합과세대상 소득		$175,000
세율		
분리과세대상 소득	20,000 × 15%	$3,000
종합과세대상 소득	175,000 × 24%(누진세율)	$30,579
소득세 산출세액		$33,579

주: 1) 인적공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됨
자료: J.G. Rienstra,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sec. 4., Country Analyses IBFD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42) J.G. Rienstra,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sec. 4., Country Analyses IBFD, 검색일자 : 2019.3.15.

나. 자영업자 계산사례

사실관계
- Jason과 Susan은 부부이며, 그들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 부부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동일한 비율(50:50)로 배분하고 부담한다.
- 부부의 총사업수입액은 200,000달러이며, 총사업경비로 28,000달러를 지출하였다(임대료, 일반관리비 등 포함). 이 외에도 식대 및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4,000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50%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 또한, 주택담보 대출이자 11,000달러와 2,000달러의 재산세 납부액(지방정부), 4,000달러의 기부금(적격기부금단체) 및 주정부 소득세 납부액 8,000달러를 지출하였다.
- 부부는 각각 IRA 계좌에 5,500달러씩 납입하였다.

Jason과 Susan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예정이며,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2018년도의 연방소득세액 산출과정을 나타낸다면 〈표 Ⅵ-8〉과 같다.

〈표 Ⅵ-8〉 2018년도 사업소득자 소득세 산출과정

(단위: 달러)

구분		금액	
총사업수입금액			**$200,000**
AGI 전 공제	일반 사업경비	$28,000	
	식대 및 복리후생비	$2,000	
		$30,000	($30,000)
사업소득금액			**$170,000**
AGI 전 공제	SETA세[1]		($12,010)
조정된 총수입금액(AGI)			**$157,990**
AGI 후 공제	항목별공제[2]		
	이자비용공제	$11,000	
	지방세공제[3] (재산세 및 주정부소득세)	$10,000	
	기부금공제	$4,000	
		$25,000	($25,000)
	인적공제[4]		($0)
과세소득			**$132,990**
세율	누진세율		× 22%
소득세 산출세액			**$21,137**

주: 1) 부부가 자영업자임에 따라 SETA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SETA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됨. 그러나 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는 금액은 최종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 한함[143]
2) 항목별 공제 합계액이 25,000달러로 표준공제액 24,000달러보다 크기에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함
3)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와 소득세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10,000달러가 한도 적용됨
4) 인적공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됨

자료: 저자 작성

Ⅶ 신고, 납부 및 징수 체계

1. 신고납부 제도

가. 신고

미국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인 IRS Form 1040과 기타 부속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고유형, 연령을 고려하여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 Ⅶ-1〉의 일정 면세점 이하인 경우와 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금액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표 Ⅶ-1〉 2018년도 납세신고의무 면세점

(단위: 달러)

신고유형	연령	총소득금액
부부합산신고	부부 모두 65세 미만인 경우	24,000
	배우자 일방이 65세 이상인 경우	25,300
	부부 모두 65세 이상 인 경우	26,600
세대주신고	65세 미만인 경우	18,000
	65세 이상인 경우	19,600
개인단독신고	65세 미만인 경우	12,000
	65세 이상인 경우	13,600
부부별도신고	전 연령	5

자료: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p17.pdf, 검색일자 :2019.3.11

또한, 부모(또는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결혼 유무, 나이 및 소득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 〈표 Ⅶ-2〉 부양자 납세신고기준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별도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43) SETA세 산출과정은 제Ⅱ권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나, 간략하게 설명하면
1단계: 조정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SETA세 13,005달러($170,000 × ½ ×(12.4% + 2.9%) =$13,005)를 차감하여 최종 사업소득금액 156,995달러($170,000-$13,005)를 산출함.
2단계: 이후 최종사업소득금액 156,995달러를 Jason(50%)과 Susan(50%)로 안분함
3단계: Jason SETA세(사회보장세 및 의료보장세): $78,498 × 50% × (12.4%+2.9%) = $6,005
Susan SETA세(사회보장세 및 의료보장세): $78,498 × 50% × (12.4%+2.9%) = $6,005
따라서, 총 SETA세 공제금액은 $12,010임

〈표 Ⅶ-2〉 2018년도 부양자 납세신고의무 기준

(단위: 달러)

	65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인 여부	
	부	여
미혼	· 불로소득이 $1,050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이 $12,000 이상인 경우 · 총소득금액이 둘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1,050 - 근로소득금액($11,650한도)+$350달러	· 불로소득이 $2,650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4,250) · 근로소득이 $13,600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15,200) · 총소득금액이 둘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2,650(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4,250) - 근로소득금액($11,650한도)+$1,950달러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3,550)
기혼	· 불로소득이 $1,050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이 $12,000 이상인 경우 · 총소득금액이 둘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1,050 - 근로소득금액($11,650한도)+$350달러	· 불로소득이 $2,350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3,650) · 근로소득이 $13,300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14,600) · 총소득금액이 둘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2,350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3,650) - 근로소득금액($11,650 한도)+$1,950달러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인 경우 $2,950)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p17.pdf, 검색일자: 2019.3.11.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이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4번째 달의 15일 전까지 이다.[144]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 개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전자 파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서상 추가납부세액은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정 세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신해서 소득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이는 ①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작성된 신고서상에 서명을 한 경우 또는 ②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서명한 경우에 해당된다.[145]

144) 26 U.S.C. § 6072(a); 26 C.F.R. § 1.6072-1(a)(1)
145) 26 U.S.C. § 6020(a), 26 U.S.C. § 6020(b)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기한 자동연장신청서인 IRS Form 4868을 원래의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신고기한이 6개월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추계한 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46] 따라서, 소득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나. 납부 및 환급

1) 중간 예정세액 납부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과세기간 동안 연방소득세를 추정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예정세액을 제외한 잔여분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47]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당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자영업자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투자소득(이자 및 배당 등)을 가진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예정세액은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되어야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해 1월 15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48] 또한, ①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서상 결정세액의 90% 또는 ② 직전과세기간 신고서상 결정세액의 100%의 둘 중 적은 금액과 같아야 하며[149], 조정된 총수입금액이 15만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②의 비율이 직전 과세기간 신고서상 결정세액의 110%로 인상된다.

납부기한까지 예정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자는 과소납부된 금액에 연방단기이자율(federal short-term rate AFR) + 3%의 과소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150] 다만, 최종 소득세 신고서상 추가납부세액이(원천징수 후 금액) 1천달러보다 작거나,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 납부액이 없는 자는 본 가산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151]

2) 추가납부세액 납부

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최종

146) 26 U.S.C. § 6081; 26 C.F.R. § 1.6081-4
147) 26 U.S.C. § 6654; 26 C.F.R. §§ 1.6654-1 to -7
148) 다른 과세기간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종료일자의 다음 달 15일에 납부하면 된다.
149) 26 U.S.C. § 6654(d)
150) 26 U.S.C. § 6654(a)
151) 26 U.S.C. § 6654(e)

적으로 완납되어야 한다.[152] 예정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이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고, 과세기간의 최종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6.2.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에 후술하기로 한다.

3) 환급

만일 예정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의 최종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초과 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준다.[153] 그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줄 경우에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된다.[154]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연방 단기이자율(AFR)에 3%를 가산한 율로 계산된다.[155]

2.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미국의 가산세는 법 위반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인 민사상 처벌(civil penalty)의 일환이다.[156]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신고 의무 불이행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신고기한 1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에는 미납부한 세액의 5%이며, 그 이후에는 매월 5%씩 가산되어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기한의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205달러[157]와 미신고세액의 100% 중 작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58] 가산세액은 원천징수세액과 예정납부세액을 차감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계산된다.[159]

---

152) 26 U.S.C. § 6151; 26 C.F.R. § 1.6151-1
153) 26 U.S.C. § 6611; 26 C.F.R. § 301.6611-1
154) 실제 소득세 신고가 신고 기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45일 이후에 환급해준 경우에도 환급금에 대한 가산이자 규정도 면제된다.
155) 26 U.S.C. § 6621(a)(1)
156) 東京大學(1991), p.147.
157) 2018년 기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158) 26 U.S.C. § 6651(a)
159) 26 U.S.C. § 6651(b)

그러나 사기(fraud)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진 무신고의 경우에는 15%에서 75%까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160]

나. 납부 의무 불이행 가산세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161] 이는 매월 0.5%로 부과되며, 세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납세 고지한 이후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의 세율로 인상된다.[162]

만약 납세자가 지연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 가산세와 납부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데, 납부의무 불이행 가산세 0.5% 만큼을 신고의무 불이행가산세 5%에서 차감하여 총가산세를 5% 적용받도록 한다.[163] 그러나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신고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국세청에서 추가세액을 고지한 경우에는 해당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164]

다.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방 단기이자율에 3%를 더한 율로 부과된다.[165]이 이자율은 분기별로 조정되며, 2018년도 이자율은 5%이다.[166] 지연이자 기산일은 납부기한이 되며, 신고기한의 연장과는 관계없이 국세청이 관련 세액을 수취한 날까지 이자는 부과된다. 또한, 이자의 계산은 매일 복리(compounded) 계산된다.[167]

라. 고의 및 중대 누락 가산세

고의 및 중과실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168]는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한 과소신고,

160) 26 U.S.C. § 6651(f)
161) 26 U.S.C. § 6651(a)(2)
162) 26 U.S.C. § 6651(d)
163) 26 U.S.C. § 6651(c)(1)
164) 26 U.S.C. § 6651(i)
165) 26 U.S.C. § 6621(a)(2)
166)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율은 5%이며, 2019년도 이자율은 6%이다.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n746.pdf, 검색일자: 2019.3.15.
167) 26 U.S.C. § 6601, 6622

소득세의 중대한 누락, 자산의 중대한 허위 평가, 연금 납부액의 중대한 과대신고,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한 자산의 중대한 과소평가,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 특정 상속세 과세 보고 의무 불이행 시 과소신고금액의 20% 세율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한다.[169] 또한, 비공개 한 해외 경제적 자산을 과소신고할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사기 등의 이유로 과소신고되었다면, 과소신고금액의 75%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 및 중대누락 가산세는 신고의무 불이행 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소득세 신고가 제출되지 않으면 동 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단, 국세청 당국에서 26 U.S.C.§6020(b) 조항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170]

마. 예정세액의 과소납부

예정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납세자가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소 납부된 금액에 연방 단기이자율(federal short-term rate AFR) + 3%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171] 다만, 최종 소득세 신고서상 추가납부세액이(원천징수 후 금액) 1천달러보다 작거나,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 납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본 가산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172]

바. 과오 환급

납세자가 소득세액 계산을 잘못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초과 환급된 금액에 대해

168) 고의 및 중과실 가산세는(accuracy-related penalty)는 직역하면 정확성 관련 가산세를 말하지만, 가산세 부과사유가 고의 혹은 법 규정에 태만, 비용 과대계상, 자산 과소 평가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과소신고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한 가산세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와는 가산세 부과 목적은 비슷할 수 있으나, 적용 범주가 상이하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국세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69) 26 U.S.C. § 6662
170) 26 U.S.C. § 6664(b)
171) 26 U.S.C. § 6654(a)
172) 26 U.S.C. § 6654(e)

서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173] 그러나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와 관련된 환급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기에 해당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신고, 장부 보관, 자료 요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세금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경우 등에는 형법상 처벌(criminal penalties)이 부과된다. 이는 상기 서술한 민사상 처벌인 가산세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된다.[174]

3. 원천징수제도

미국의 원천징수(withholding tax)는 지급자가 수급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액의 세액을 떼어서 국가에 납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175] 거주자의 경우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특정 배당 및 이자, 로열티 수익 등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거주자 중 과거에 납세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개인 납세자에 한해서는 자본소득(임대소득, 자본이익, 비투자소득, 비근로소득, 비연금소득)에 대해서 2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지원제도(backup withhold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가. 거주자의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 등(wages)을 지급할 시에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방소득세, 주정부세 또는 지방소득세 및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분을 차감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176] 급여 등이라 함은 종업원이 고용주를 위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수를 말하며, 급여, 사례금, 성과금, 커미션, 고용관련 보험납부금, 복리후생비(비과세 제외), 연금 및 퇴직연금[177]이 해당된다. 또한,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에 대해서도 급여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178], 정규 급여와 별도로

173) 26 U.S.C. § 6676
174) 26 U.S.C. § 7201~7212
175) 최원, 2011, pp.20-21.
176) 26 U.S.C. § 3401~3404
177)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분은 제외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에 한한다. 일시불 형태의 비정기적 연금의 경우에는 10%로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정기적 및 비정기적 연금 모두, 연금 수령인이 원천징수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26 U.S.C. § 3405).
178) 26 U.S.C. § 3401(a)(16)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등의 부가 급여(supplemental wages)는 특별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179]

국세청은 매년 IRS Publication 15을 통해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계산방법들을 공시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이전에 종업원이 작성한 서류(W-4 Form)를 통해 종업원의 과세정보 등을 고려한 후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원천징수제도는 종업원의 임금과 관련된 소득세액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인 세금부담액이 아니며, 종업원은 급여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원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신고서(IRS Form 1040)를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80] 또한, 최종 소득세 신고 시 고용주가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181],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고용주는 IRS Form 941을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급여, 종업원이 수령한 팁, 원천징수한 소득세, 사회보장세(종업원납부 포함), 단체정기보험 납부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기 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182] 원천징수세액은 월별 혹은 일주일에 2회별(semiweekly basis)로 전자 연방세 납부시스템(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EFTPS)을 통하여 온라인 계좌 예치되어야 하며, 세액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15%까지 가산세(failure-to-deposit penalty)를 추징당할 수 있다.[183]

근로소득 이외에도 5천달러 이상의 경마, 복권 등 도박 상금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한 자가 25%로 원천징수하며[184], 이 경우 Form W-2G 양식을 이용하여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해당 소득이 미국 내 사업(trade and business)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185] 미국 내

179) 26 C.F.R. § 31.3402(g)-1
180) 26 U.S.C. § 6012; 26 C.F.R. § 1.6012-1(b)(1)
181) 26 U.S.C. § 31(a); 26 C.F.R. § 1.31-1
182) 26 C.F.R. § 31.6071-(a)-1
183) 26 U.S.C. § 6656
184) 단, bingo, kino, 또는 슬롯머신 등에 대한 상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26 U.S.C. § 3402(q)).
185) 안종석·구자은(2008), p.21.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소득은 일부를 공제한 후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로 누진과세되고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미국 내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소득은 배당, 이자, 로열티 등과 같은 투자소득을 말하며, 소득을 지급한 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 또는 조세조약상의 우대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86] 그 후, 신고서(Form 1042 또는 1042-S)를 작성하여 지급한 해의 다음 해의 3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87]

4. 국외전출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의 지위를 포기하고 미국 이외의 국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외전출세(expatriation tax) 신고납부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188] 국외전출세 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의 출국일자에 따라 법령과 과세방식이 상이하여[189], 2008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내국세법」 제877조를 적용받으며,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는 동법 제877A조를 적용받는다. 또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과세요건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편의상 2008년 6월 17일 이후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시민권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Long-term US permanent residents)로, 장기 영주권자라 함은 영주권을 포기한 연도를 포함한 직전 15년 중 8개년 이상 영주권의 지위를 유지한 자를 말한다.[190] 그러나 이들 중 이중 국적자 또는 특정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시민권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한 시점에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세 납부 대상이 된다.[191]

186) 안종석·구자은(2008), p.25.
187) 안종석·구자은(2008), p.31.
188) 실질적 거주 심사(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 외국인은 출국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189) 최초에 출국세가 도입된 시기는 1966년이며, 대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시민권 등을 포기함으로써 소득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설되었다. 당시에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과세되었으나, 2004년 개정을 통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출국일 이후 10년 동안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8년에 출국일 10년 이후 이익실현 시 과세회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시점에 즉시 시가(mark-to-market regime)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김기영(2013), pp.196~203.
190) 26 U.S.C. §§ 877(e) and 877A(g)(2)(B) and (g)(5)
19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i8854.pdf, 검색일자: 2019.3.4.

- 국적을 포기한 연도를 포함한 5개년 과세연도의 순소득세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192]
- 국적 포기 시점의 납세자의 순자산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
- 국적을 포기하는 날 이전의 5개의 과세기간 동안 납세 보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마치 국적 포기일에 보유한 재산이 공정가치 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과세표준액은 미실현이익에 일정 한도의 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공제액은 711,000달러이며, 이 역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납세자는 국외전출세 신고서(IRS Form 8854)를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193] 사후 10년 동안 매년 보고해야 한다. 국적포기 신고서가 신고기한까지 미제출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다면 1만달러의 벌금이 적용되며,[194]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된다.

192) 2018년 기준으로 $165,000이며, 기준 대상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193) 26 U.S.C. § 6039G
194) 26 U.S.C. § 6039G(c)

제2장 | 일본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

일본은 「소득세법」을 제정하기 위해 1872년에 영국, 프로이센, 프랑스, 벨기에 등 주요 외국 세제의 번역서를 바탕으로 입법안을 작성하였다. 일본 대장성은 영국 세제를 모범으로 한 초안인 「소득세칙」을 작성하였고, 재정지출이 증가하자 소득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소득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일본 헌법 제정 그룹이 소득세법 제정 준비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독일인 고문 칼 루돌프가 프로이센의 「1851년 계급세 및 계층별 소득세법」을 토대로 일본 정부에 자문하면서 영국의 소득세칙이 폐기되고 프로이센형 소득세제가 정부의 소득세제 확정안이 되었다.[195] 따라서 일본 최초의 소득세법인 1887년 메이지 「소득세법」은 프로이센 소득세법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1887년에 도입된 소득세는 소득구간을 5개로 구분하고, 소득최고구간에 해당하는 300엔 이상의 경우에 3%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명예세」라고도 불렸다.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소득금액은 군구장(현재의 세무서장에 해당)이 조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는 부과과세제도 형태였다.[19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행 조세제도의 기초를 제공한 것은 Shoup 사절단 일본세제 보고서(Shoup使節團 日本稅制報告書)로 1949년 5월 일본을 방문한 미국 경제학자 칼 슈프(Carl Shoup) 박사 등이 작성한 세제권고였다.[197] 본 보고서는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지적하며 청색신고제도의 신설 등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세무행정의 정비, 부유세, 자산재평가법의 신설,

195) 황남석(2013), pp.12~16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함.
196) 오윤(2018), p.228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함.
197) 일본 국세청, 「シャウプ권고의 재고」,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kenkyu/backnumber/journal/09/pdf/09_05.pdf, 검색일자: 2018.12.3.

지방세 체계의 확립, 지방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체계를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포괄적 소득세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이득의 전액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선택과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198] 일본이 이와 같이 직접세 중심의 조세국가가 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미국 점령군의 영향이 크며, 포괄적인 소득세는 맥아더의 후원 아래 강력하게 추진되었다.[199] Shoup 사절단 일본세제 보고서(Shoup 使節團 日本稅制報告書) 권고안에 따라 세제가 성립되고 이후 1953년 이자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원천분리과세의 도입과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 비과세를 시행하였다.[200] 법인세의 경우 3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법인의제설의 관점에서 1948년에 신설된 배당세액공제를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입장에서 배당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201]

1951년부터 자본축적을 고려한 소득세, 법인세의 본질적인 개혁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세금보다는 저축을 통해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메이지시대 이후 조세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던 일본 특유의 재정체계의 특징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202] 권고안이 제시한 포괄적 소득세는 3년 만에 다시 분리과세로 되돌아갔다. 모든 소득을 누진세율로 합계하는 대신 일부 소득(예: 자본이익 혹은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거나 낮은 정률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한 것이다. 1953년 이자소득의 경우 10% 세율로 인하되었으며, 주식에 대해서는 1952년 주식거래의 이익과 손실이 소득에서 제외되고 주식거래세로 대체되었다.[203]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 쇼와 60년대(1985년)에는 조세체계가 소득과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소득세의 누진도가 강한 가운데 부담감이 컸지만,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 확보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소득세의 세율 구조의 누진 완화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1989년에는 소비세가 신설되었다.

2011년 세제개정의 기본방침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고용을 위한 경제 활성화, 소득격차 확대 및 고정화의 시정,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혁이었다.[204] 법인세율은 2011년

198) 국중호(2009), p.47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함.
199) 은민수(2015), p.130.
200) Ibid., p.48 두 번째 문단 인용.
201) 국중호(2009), p.47.
202) 은민수(2015), p.142 두 번째 문단 인용.
203) Ibid., p.142 세 번째 문단 요약 정리.

4월 1일부터 30%에서 25.5%로 인하하고, 중소법인은 18%에서 15%로 인하하였다. 고용촉진세제를 신설하여 고용을 확대하는 성장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다.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 및 축소되었고 16세 미만의 자녀양육 시 아동수당제도(子ども手当)로 일원화되었다.[205]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2010년부터 16세 이상 19세 이하 자녀에 대해 25만엔의 추가 인적소득공제를 폐지하였다.[206]

2012년에 사회 보장의 충실 · 안정화와 재정 건전화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 개혁(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보장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세율(국가 · 지방)을 5%에서 8%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2015년 10월 1일 소비세율을 10%로 다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경제 및 정치 등의 문제로 인상시기를 2017년 4월 1일로 재차 연기하였고, 현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다시 연기되었다.[207]

2013년에는 '계층의 격차 고정화 방지(格差固定化の防止)' 및 재분배 기능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세 및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상 등이 시행되어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토 등으로 최근에는 소득세와 소비세 규모가 대체로 동일한 정도의 세수 규모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는 기업 활동의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세율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208] 2014년에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촉진세제와 벤처투자촉진세제를 신설하고 급여소득공제 한도를 인하하였다. 2015년 세제개정에서는 국외 출국자에 대한 출국세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15% 경감세율 적용기한을 2017년 4월 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로 연장하였다. 2016년에는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조정하였고, 다국적 기업의 정보보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OECD BEPS Action 13에 따라 이전가격 관련 국가별 보고, 마스터파일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보고의무를 도입하였다.[209] 2017년에는 배우자공제와 배우자특별공제가 개정되었다. 급여소득자의 총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204)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 10-2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EC%9D%BC%EB%B3%B8-2011%EB%85%84-%EC%84%B8%EB%B2%95%EA%B0%9C%EC%A0%95%EB%8C%80%EA%B0%95-%EB%B0%9C%ED%91%9C/203956, 검색일자: 2018.12.3.

205) 일본 세제조사회,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9/1222zeiseitaikou.pdf, 검색일자: 2018.12.3.

206)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7a.htm, 검색일자: 2018.12.3.

207)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comprehensive_reform/, 검색일자: 2018.12.3.

208) 일본 국세청, https://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3006/02.htm#a03, 검색일자: 2018.11.9.

209)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6/28taikou_gaiyou.htm, 검색일자: 2018.12.3.

되었고, 배우자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기준이 3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로 개정되었다.[210]

2018년 세제개정은 디플레이션을 종식하고 경제 회생을 위해 임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로, 고소득 급여소득자 공제 축소, 임금인상·설비투자 기업의 법인세 인하, 담뱃세 증세, 세목(국제관광여객세, 산림환경세)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11]

2019년 세제개정은 주택에 대한 조세지원책 마련과 지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제 개편, 개인사업자의 사업승계세제 신설, 연구개발세제의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표 Ⅰ-1〉 연도별 주요 세제개정

연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타
1887	- 소득세법 도입(명예세)	-	-
1899	-	- 법인과세 실시	-
1920	- 원천징수제도 도입	-	-
1940	- 급여소득자 원천징수제도 도입	- 소득세와 법인세 분리	-
1949	- Shoup 권고에 따라 세제 정비	-	-
1953	- 세액공제제도 도입, 25%의 배당공제	-	- 부유세 폐지
1955	-	-	- 미일 조세조약 발효
1984	- 최고세율 인하(75%→70%)	-	-
1987	- 최고세율 인하(70%→60%)	-	-
1989	- 소득세 감세(세율인하)	-	- 소비세 3% 도입
1995	- 과세소득구간 상향조정	-	-
1997	-	-	- 소비세 5% (지방소비세 1% 포함)
1999	- 최고세율 인하	-	-
2007	- 지방정부로 세원이양 (소득세→주민세)	-	-
2008	- 상장주식 등에 관한 배당 등의 7% 경감세율 폐지	- 특정 중소기업 출자시 기부금공제 적용	- 사업승계세제 신설
2009	-	- 중소법인 경감세율 인하 (22%→18%)	-
2010	- 부양공제 폐지(아동수당 신설, 고등학교 무상화 실시)	-	-

21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users/gensen/haigusya/index.htm,. 검색일자: 2018.12.3.
211)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1호, 2018.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137.

〈표 Ⅰ-1〉의 계속

연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타
2011	- 급여소득공제 축소, 퇴직소득공제 축소 - 기부관련 세제혜택 확대	- 법인세율 인하 (대기업 30%→25.5%, 중소법인 18%→15%)	-
2014	- 급여소득공제 축소	- 벤처투자촉진세제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촉진세제 신설	- 소비세 8%(지방소비세 1.7% 포함)
2015	- 국외전출세 신설	-	-
2016	- 국립대학 개인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법인세율 인하 (대기업 23.9%→23.4%)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신설
2017	- 배우자공제와 배우자특별공제 인상	- 지역핵심기업 설비투자 촉진세제 신설	- 주세(맥주, 양주, 등 세율 일원화)
2018	- 고소득 급여소득자 공제 축소 - 기초공제 확대	- 임금인상·설비투자 기업의 법인세 인하	- 담뱃세 증세 - 국제관광여객세 신설
2019	- 주택담보대출금 특별세액공제 기간 연장	- 시험연구비 총액형 세액공제 확대	- 산림환경세 신설

자료: 국중호(2009), p.79;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kids/hatten/page16.htm, 검색일자 2018.11.5.;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index.html, 검색일자 2018.11.7 및 참조하여 작성함.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1. 과세권자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자라고도 하며 정부,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 및 특별구)를 의미한다. 과세권의 소재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 행정기구로 구분된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각각 세목에 따른 권한이 있다.

국세는 재무성의 외청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그 산하의 전국 11개 국세국과 오키나와 국세사무소 및 524개 세무서에서 과세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지방세 세무를 총괄하는 행정조직은 총무성 자치세무국이며, 도부현세, 시정촌세 등 지방세 기획 입안, 과세권 귀속에 대한 결정 등을 담당한다. 실질적인 신고 또는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는 과세권을 가지는 각 지방공공단체가 담당한다.[212] 지방공공단체의 과세권은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행사된다. 일본 「헌법」 제92조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입각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3조에서는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지방세 조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213]

2. 소득세 법령 체계

일본의 소득세법은 광의의 소득에 대한 조세 중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총 6편 2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총칙으로 납세의무, 과세소득 범위, 납세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편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로 과세표준, 각종 소득금액 계산,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있고, 제3편은 비거주자 및 법인의 납세의무, 제4편은 원천징수, 제5편은 잡칙, 제6편은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12) 일본 도쿄세리사회(2017), p.2.
213) 국중호(2012), pp.36~37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Ⅱ-1〉 소득세법 편제

편	장	절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과세소득의 범위	
	제4장 소득의 귀속에 관한 통칙	
	제5장 납세지	
제2편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통칙	
	제2장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계산 및 소득공제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각종 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 제4절 소득공제
	제3장 세액계산	제1절 세율 제2절 세액공제
	제4장 세액계산의 특례	
	제5장 신고, 납부 및 환부	제1절 예정납세 제2절 확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 및 환부 제3절 청색신고
	제6장 경정청구의 특례	
	제7장 경정 및 결정	
제3편 비거주자 및 법인의 납세의무	제1장 국내원천소득	
	제2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통칙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종합과세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분리과세
	제3장 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제2절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편 원천징수	제1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2장 급여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의무 및 징수세액 제2절 연말조정 제3절 급여소득자의 원천징수와 관한 신고
	제3장 퇴직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3장의 2 공적연금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4장 보수, 요금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1절 보수, 요금, 계약금 또는 상금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2절 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한 연금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3절 정기적금의 급부보전금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4절 익명조합계약 등의 이익 배분과 관련된 원천징수

〈표 Ⅱ-1〉의 계속

편	장	절
	제5장 비거주자 또는 법인 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6장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 납기의 특례 제7장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의 납부 및 징수	
제5편 잡칙	제1장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 의무 제2장 기타 잡칙	
제6편 벌칙		

자료: 일본의 e-Gov 법령에서 「소득세법」 정리

일본의 경우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정령(또는 성령)으로 정할 수 없으며(법률의 유보), 두 규범이 충돌할 경우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는(법률의 우위)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214] 일본은 헌법을 포함하여, 조세조약,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이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과세요건 등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법규성을 가지고 있다.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 내부명령 형식으로 존재하면 법규성이 부인된다. 일본에서 동일한 취지에서 재무대신이나 국세청장의 '고시'가 법규보충적일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한다.[215] 일본의 '사전조회에 대한 문서회답의 실시에 대하여(사무운영지침)'은 그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납세자에게는 신의칙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이 높고 다른 납세자에게는 선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16]

3. 과세권 범위

거주자와 비영주자, 비거주자는 각각 부담하는 납세의무도 다르다.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국내와 국외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217] 반면, 비영주자는 일본에서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과 일본으로 송금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

214) 오윤(2009), pp.122~123.
215) Ibid., p.124.
216) Ibid., p.130.
217) 「소득세법」 §5①, §7①.

담한다.[218]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의무자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219]

4. 열거주의·포괄주의

일본 소득세법은 성격에 따라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등으로 구분한다.[220]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9가지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모두 잡소득(「소득세법」 제35조)으로 본다.[221] 따라서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5. 과세기간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금액과 그에 대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218) 「소득세법」 §7①.
219) 「소득세법」 §7①.
22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00.htm, 검색일자: 2018.12.04
221) 「소득세법」 §35.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일본에서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거주자는 비영주자와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로 구분한다.[222] 거주자는 거주지가 있거나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거주자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 10년간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적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비영주자로 분류된다.

〈표 Ⅲ-1〉 과세소득 범위

구분		과세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지불	국외지불	국내지불	국외지불
거주자	비영주자	전액과세	전액과세	전액과세	국외에서 지불되는 소득 중에 국내에 송금되었다고 판단되는 금액만 과세(국외에서 지불되는 소득 중 국외에 보유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영주자	전액과세	전액과세	전액과세	전액과세
비거주자		과세		비과세	

자료: 일본 도쿄세리사회, 「외국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의 세금과 세리사제도」, http://www.tokyozeirishikai.or.jp/common/pdf/f_han.pdf, 검색일자: 2019.1.9.

2. 거주자 판정 요건

가. 기본 요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판단한다.[223]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을 의미한다.[224] 비영주자는 거주자 중에서 자국 국적 없이 과거 10년 동안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을 의미한다.[225]

222) 「소득세법」 §5①,②, § 7①.
223) 「소득세법」 §2①,③.
224) 「소득세법」 §2①.
225) 「소득세법」 §2①.

비영주자는 일본 내에 영주할 의사가 없지만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어 거주자로 분류된 경우로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와는 구분된다. 비영주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과세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정의를 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비영주자의 요건은 영주의 의사가 없는지와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지로 판단하였으나 국적요건을 추가하고 기간 요건도 좀 더 상세히 규정하였다.

나. 판정기준

일본에서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 판정기준은 안종석·김정아·구자은·정경화(2011, pp.48~51)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표 Ⅲ-2〉 거주자 판정기준 관련 법령

구분	내용
「소득세법」	제2조(정의) 거주자, 비거주자, 영주자의 개념
	제3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공무원의 예외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하는 공무원에서 제외하는 자)에서 「소득세법」 제3조의 예외규정
	제14조(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제15조(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거주자 판정 규정 없음
「소득세법 통칙」	2-2(주소의 의의)에서 주소의 의미를 제시함 2-3(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비영주자 등의 구분)에서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자나 비영주자가 되는 시기를 제시함 2-4(거주기간 계산의 기산일)에서 거주자를 판정할 때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서 '1년 이상'의 기산일을 제시함 2-4(과거 10년 이내의 계산)에서 비영주자를 판정할 때 '과거 10년 이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함 2-4(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함

자료: 일본 e-Gov 법령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저자 작성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 없이 거주자가 되고, 거소를 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된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소득세법상은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예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226]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 현재 국외에서 거주하고 다른 곳에 영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주소 및 거소의 개념이 중요한데, 「소득세법」에서는 '주소' 및 '거소'를 정의하지는 않고, 통달 및 판례에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주소의 의미는 「민법」 제21조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의 '주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는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민법」 제21조에서 주소는 '개인생활의 본거'를 말하는데, 이때 '어디가 생활의 본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상으로 '정주의 의사(定住의 意思)'와 '객관적 사실'로 결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정주의 의사'에 따르게 되면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과세 결과가 변화되어 과세의 안정성, 객관성의 확보라는 문제가 남게 되어 세법상 '주소'는 '객관주의'에 따르고 있다.[227] 통달에 의하면 주소는 '각 개인의 생활의 본거'이고 생활의 본거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228] '주소'는 생활의 중심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의 체류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직무내용이나 계약 등에 기초한 '주소의 추정'이 이루어진다.

선원의 경우는 배우자 기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거주하거나 또는 그 자가 근무 외의 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체류하는 곳이 주소에 해당한다. 체류일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183일 이상을 체류한 경우에도 일본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1년 동안 거주지를 여러 국가에 걸쳐 이동하는 자(Perpetual Traveler, Permanent Traveler)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생활의 본거가 일본에 있다면, 일본 거주자가 될 수 있다. 거소는 '생활의 본거라고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현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정방법은 「소득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 정한 것으로, 시행령에서는 일본 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와 일본 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추정이기 때문에 간주와는 차이가 있어서 개인의 개별적 사정을 입증하면 거주자 여부를 달리 판정할 수 있다.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자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본 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229] 일본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있거나 직업이나 자산의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일본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

226) 「소득세법」 §3①.
227) 「소득세법 통칙」 2-1.
228) 「소득세법 통칙」 2-1.
229) 「소득세법 시행령」 §14.

할 것으로 추측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본 내에 주소지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230] 국외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외국 국적이 있거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외국에 영주하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일본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없거나 직업이나 자산의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주로 일본 내에 거주할 것으로 추측할 만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일본 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들이 부양하는 친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들도 일본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231]

다. 체류일수 판정 세부사항

거주자 판정 시 체류일수 기준은 안종석·김정아·구자은·정경화(2011, pp.51~52)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거주기간은 거소를 가진 거주자와 비영주자를 구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232] 납세자가 주소가 아닌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1년'이 중요하다. 또한 거주자 중 영주자와 비영주자를 구별함에 있어서도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 중 5년 이하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국한 날은 1년의 기간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산일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
- 과거 10년을 판단할 때는 판정하는 날의 전 날부터 10년을 기준
- 거주기간을 누적할 때 연수, 월수, 일수를 합쳐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하고 12개월을 1년으로 계산
- 일수의 계산에서 거주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일시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체류기간도 국내에 거처를 가진 것으로 판단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를 가진 날이며,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233]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가진 날이며, 입국 후에도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다음 날부터

230) 「소득세법 시행령」 §15.
231) 「소득세법 시행령」 §15②.
232) 「소득세법 통칙」 2-2, 2-4의2, 2-4의3.
233) 「소득세법 통칙」 2-3.

거주자가 된다. 비영주자가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라. 특례규정 및 사례

1) 해외 파견 관련 거주자 판정 특례규정

일반기업에 소속된 임 · 직원 등의 해외 파견과 관련된 거주자 판정은 일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국적을 가진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은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기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34]

2) 사례[235]

1: 국세불복심판소(2006년 5월 29일 결정)-판결사례집No.71(p.97)

□ 사실관계:
① 원고는 F국 기타 제 외국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내국법인 관계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고 F국을 거점으로 상당기간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음
② 그러나, 원고는 일본에서도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에 거주할 필요가 있음
③ F국 체제 중에는 F국의 맨션에 거주하였으나, 일본에도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
④ 국외체류기간은 2001년 194일, 2002년 122일이며, 이 중 F국에 체제한 일수는 2001년 92일, 2002년 71일이며 일본체류기간은 2001년은 171일, 2002년은 247일임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2001년과 2002년에 원고가 일본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 일본 국세불복심판소는 직업 및 체류일수, 자산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일본 거주자로 판정함
○ 청구인이 생활의 본거지라고 주장하는 F국의 체류일수가 일본의 체재일수보다 훨씬 적음
○ 상대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직업 또는 사생활상의 필요성이 우위에 있다고 인정됨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일본에 생활의 본거지를 가짐
○ 청구인이 일본에 자택 및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한편, F국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점이 인정됨

234) 「소득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13.
235)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http://www.kfs.go.jp/introduction/index.html, 검색일자: 2018.11.7.

2: 국세불복심판소(1987년 1월 14일 결정)-판결사례집 No.33(p.49)

□ 사실관계:
① 원고는 일본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
② 일본 내에 토지, 가옥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일본 내 주택에서 영구적인 거주
③ 원고는 기업의 총수(總帥)로서 영구적으로 일본 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
④ 일본의 본점소재지 외의 장소에 대한 근무를 출장으로 취급하여 출장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음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시행령의 주소 추정 규정이 주소가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규정인지를 해석하는 것임

□ 일본 조세불복심판소는 원고는 주소의 추정 규정에 의할 것도 없이,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3: 국세불복심판소(1983년 12월 13일 결정)-판결사례집 No.26(p.25)

□ 사실관계:
① 원고는 외국에 주소를 등록하였지만, 해당 국가의 체류일수는 연간 10일 정도에 불과함
② 원고는 일본 내에서 대표이사라는 직무에 종사하며, 외국을 거점으로 시장조사, 계약의 확보 등을 위해 세계 각지에 출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함
③ 일본 내에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일본에 소유한 건물에 배우자와 자녀를 거주시킴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외국에 주소를 등록한 원고가 일본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 일본 국세불복심판소는 원고가 외국에 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자이지만,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국내에 생활의 본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하고 생활의 본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석함
○ '생활의 본거'는 주소등록 여부와 관련없이 자산보유상황, 동거가족의 상태, 직업, 주소를 등록한 장소에서의 체재일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3. 납세자 단위

과세단위는 과세대상의 귀속주체가 되는 인적단위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를 갖는 조세로 과세단위가 문제가 된다. 일본은 1887년에 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호주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1947년 「민법」의 친

족편이 전부개정되어 종래의 가족제도가 폐지되어 소득세법상의 가족단위주의는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1950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가족단위주의를 폐지하고 각 납세의무자가 독립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는 개인단위주의가 채택되었다. 1957년부터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에 한하여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특례로서 다시 부활되었지만 19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세액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36]

현재 일본은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는 별도의 과세대상이며, 가족단위과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236) 오윤(2018), pp.458~459 첫 번째 단락을 참조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1. 종합과세 대상 소득[237)]

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① 이자소득(원천분리과세되는 것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특정 공사채 등의 이자 등은 제외) ② 배당소득(원천분리과세되는 것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받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에 대한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것 제외) ③ 부동산소득 ④ 사업소득(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사업소득을 제외) ⑤ 근로소득 ⑥ 양도소득(토지·건물 등 및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 제외) ⑦ 일시소득(원천분리과세되는 것은 제외) ⑧ 잡소득(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잡소득,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은 제외)이다. 위의 소득 중 ④ 사업소득 ⑥ 양도소득 ⑧ 잡소득에 따른 소득의 계산에서 일정한 선물거래에 의한 사업소득, 양도소득 및 잡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신고분리(분류) 과세방법에 의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표 Ⅳ-1〉 소득 종류 및 과세방법

종 류		개 요	과세방법
사업소득 (영업 등·농업)		상·공업이나 어업, 자유업 등의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합
		사업규모로 행해지는 주식양도소득이나 일정 선물거래 관련 소득	신고분리
부동산소득		토지나 건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합
이자소득		공사채나 예·적금의 이자 등의 소득	원천분리
		일본 국외의 은행 등에 예금한 이자 등의 소득	종합
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공모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 등의 소득	종합
		특정목적신탁의 사채적수익증권의 수익분배 등의 소득	원천분리
근로소득		봉급이나 급료, 임금, 상여, 세비 등의 소득	종합
잡소득	공적연금 등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 공무원의 공제연금, 연금 등의 소득	
	기타	원고료·강연료, 생명보험계약에 의한 연금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업으로 하면서(사업규모는 제외), 주식양도소득이나 일정 선물거래 관련 소득	신고분리
		공사채의 상환차익 중 일정 할인채의 상환차익 등의 소득	원천분리

237)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20.htm, 검색일자: 2018.11.22.

〈표 Ⅳ-1〉의 계속

종 류	개 요	과세방법
양도소득	골프회원권과 금지금,기계 등을 양도하여서 발생하는 소득	종합
	토지나 건물, 차지권, 주식 등을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사업·잡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신고분리
일시소득	생명보험 일시금, 상금, 현상당첨금 등의 소득	종합
	보험·공제기간이 5년 이하의 일정 일시불 양로보험이나 일시불 손해보험의 소득 등	원천분리
산림소득	산림(입목)의 벌채 후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고분리
퇴직소득	퇴직금, 일시연금, 확정지급기업연금법 등 확정각출연금법에 의한 일시불 노령지급금 등의 소득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20.htm, 검색일자: 2018.11.22.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소득 종류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및 상여금 및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에 관련된 소득을 의미한다.[238] '급여'는 고용계약과 이에 준하는 계약에 근거하여 고용주에게 속해 비독립적으로 제공했던 노무대가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소득세법」 제28조는 예시규정으로 명목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급여소득이 된다. 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식사 현물과 제품가격 인하판매,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 등 물건 또는 권리, 기타 경제적 이익을 통해 지급될 수도 있다.[239] 일본은 근로자가 지출한 업무 관련 특정비용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40] 업무 관련 특정비용에는 통근비용, 전근비용,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자격취득비용(업무수행과 관련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업무수행 관련 도서 · 의복구입비 · 업무관련 접대 등을 위한 지출액(단, 총합계 기준 65만엔 한도)이 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9조 등에 열거되어 있으며 비과세소득 이외의 근로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전부 급여로 과세된다.

238) 「소득세법」 §28①
239) Japan Master Tax Guide 2017/2018, p.141.
240) IBFD - Japa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3.1., 검색일자: 2018.11.20.

〈표 Ⅳ-2〉 근로소득 관련 비과세소득

구분	비과세소득의 항목·내용
여비, 통근수당 등	급여소득자의 출장경비, 전근여비 등(소득세법 9①4호)
	급여소득자의 통근수당(최고한도액 월 10만엔까지)(「소득세법」 9①5호, 「소득세법 시행령」 20의2) : 통근수당 중 월 1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소득에 포함
	급여소득자가 받는 직무상 필요한 급부(「소득세법」 9①6호, 「소득세법 시행령」 21)
식사 등	사용자가 식사의 가액의 50% 이상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하고, 사용자 부담이 인당 월 4,000엔 이하인 경우/잔업 또는 숙직, 일직을 한 자에게 지급하는 식사(「소득세 기본통칙」 36-24)
주거용주택(회사보유, 임대, 독신자기숙사)	종업원:사용자가 통상의 임대료의 50% 이상을 징수하고 있는 경우 임원: 사용자가 통상의 임대료 이상을 징수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기준통칙」 36-40,41,45 등)
주택구입융자 등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본인의 주거를 위한 주택 등의 취득에 대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종업원이 이율 3%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이자는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29,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19②)
보험료	사용자를 계약자로 하고, 임원 또는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사용자 또는 고용인의 유족을 수취인으로 하는 양로보험, 정기보험 등인 경우(「소득세 기본통칙」 36-31)
저리대출 등	사용자가 임원 또는 고용인에 대해 저리대출로서 재해나 질병 등에 대한 대출인 경우, 일반대출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연 5,000엔 이하인 경우(「소득세 기본통칙」 36-28)
학자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교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수학비용에 충당하는 금품으로 일반적인 비용으로서 적정하고,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소득세 기본통칙」 9-14, 9-16)
제복, 사무복, 작업복 등	급여소득자가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그 직무의 성질상 착용해야 하는 경우(「소득세법」 9, 「소득세법 시행령」 21②, 「소득세 기본통칙」 9-8)
가정도우미 이용료 보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고액이 아니고,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소득세 기본통칙」 36-29, 36-38)
의료시설, 치과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고액이 아니고,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소득세 기본통칙」 36-29)
회사소유의 운동시설, 콘도 등의 이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소득세 기본통칙」 36-29)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05/03.htm, e-Gov 법령에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별조치법」,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사업소득[241]

사업소득은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241) 「소득세법」 §27.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 대부와 산림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득 또는 산림소득이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액 이외에 물건 또는 권리, 기타 경제적 이익금액도 포함된다. 제품을 자가소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그 상품가격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제품 등의 재고자산에 대한 손실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 및 손해배상금과 매입할인 등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242]

3) 이자소득[243]

이자소득은 공사채의 이자(국채, 지방채, 사채의 이자), 예적금의 이자(은행, 신용금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예적금의 이자), 합동운용신탁 수익의 분배금(대출신탁, 지정금전신탁 수익의 분배금), 공사채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의 수익 분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등의 수입금액(원천징수 전의 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된다.[244]

이자소득 비과세는 장애인 등의 소액저축 비과세와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 및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 이자 비과세 등이 있다.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는 원금 350만엔까지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근로자 재산 형성 촉진법」에 근거한 이른바 재형주택저축, 재형연금저축에 대해 모두 저축원금의 합계가 550만엔까지의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된다. 납세저축조합예금의 이자와 어린이 은행의 예금 등의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되고 있다.

이자 등의 수입금액(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지불을 받을 때 이자소득금액에 일률적으로 15.31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세 · 부흥특별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완결하는 원천분리과세의 대상이다.

242)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50.htm, 검색일자: 2019.2.25.
243) 「소득세법」 §23.
244)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0.htm, 검색일자: 2018.11.22.

4) 배당소득[245]

배당소득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에서 받는 잉여금과 이익의 배당(결산배당, 중간배당금), 잉여금의 분배(농협 등으로부터 받는 출자에 대한 잉여금의 배당금), 투자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의 분배 또는 투자신탁(공사채 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제외) 및 특정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분배 등에 관한 소득을 의미한다.[246]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잉여금과 이익의 배당 및 잉여금의 분배는 잉여금 또는 이익의 처분으로 인하여 배당 또는 분배와 법인이 주주 등에 대하여 주주 등 인적 지위에 따라 수여한 경제적 이익을 포함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주주 우대 승차권 등
- 호텔, 여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주주 우대 시설이용권 등
- 법인 설립 기념, 증자 기념 등에 교부하는 기념품

배당소득금액은 수입금액(원천징수세액 공제 전 금액)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뺀 금액이다.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차입금 이자, 주식 등 배당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차입금이자는 당해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5) 부동산소득[247]

부동산소득은 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상의 권리 ② 지상권 등의 설정 등 ③ 선박이나 항공기의 대여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물, 구축물, 기타 토지에 정착하는 유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계, 자동차 등 동산의 대여에 의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에 해당된다. 선박(20톤 이상)과 항공기는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 등이 부동산과 같아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본다.

245) 「소득세법」 §24.
246)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검색일자: 2018.11.22.
247) 「소득세법」 §26.

6) 양도소득[248]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주식, 골프 회원권, 금괴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업용 상품 등의 재고자산과 산림의 양도,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의 감가상각자산과 취득가액이 1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과 장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단기양도소득은 소유기간이 5년 이하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기의 연구 성과인 특허권 등은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양도소득이다. 장기양도소득은 소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49]

양도소득 중 토지, 건물 및 주식 등 이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 = 단기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 (취득원가 + 양도비용) + 장기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 (취득원가 + 양도비용) - 특별공제(최대 50만엔)

특별공제액은 단기양도소득 및 장기양도소득의 합계 50만엔을 단기양도소득의 양도차익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장기양도소득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양도일의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자산의 취득원가는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을 때 구입대금과 수수료 등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지출한 개량비용, 시설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보유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알 수 없거나,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5%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5%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7) 일시소득[250]

일시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서의 성질이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지 않는 일시적인 성질의 소득

248) 「소득세법」 §33.
249)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0.htm, 검색일자: 2018.11.22.
250) 「소득세법」 §34.

을 의미한다.

일시소득에는 경품, 복권상품, 경마와 경륜의 반환금, 생명보험 일시금 및 손해보험의 만기환급금, 법인으로부터 증여된 금품 등이 해당된다.[251]

일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일시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에 지출한 금액 - 특별공제(최고 50만엔)

소득에 지출한 금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다라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8) 잡소득[252]

잡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산림 및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하며, 공적연금, 비영업대금이자, 저술가와 작가 이외의 자가 수령하는 원고료 및 인세, 강연료 등이 있다.

9) 퇴직소득[253]

퇴직소득은 퇴직수당, 일시연금(恩給), 기타 퇴직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는 급여로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급여에 대한 소득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등의 사회보험제도, 퇴직금공제제도에 근거하는 일시금 등은 퇴직수당으로 간주된다. 퇴직급여를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그 물건이나 권리의 시가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퇴직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2로 나누어 계산한다.

10) 산림소득[254]

산림소득은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소득을 의미한다. 산림을 취득한 날 이후 5년 이내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한다. 산림의 양도가 사업적 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는

251)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90.htm, 검색일자: 2018.11.22.
252) 「소득세법」 §35.
253) 「소득세법」 §30.
254) 「소득세법」 §32.

잡소득이 된다. 산림은 입목을 의미하며 산림을 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부분은 산림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이 된다.[255]

2. 분류과세 대상 소득

가. 분류과세 적용 소득 종류

소득세는 각종 소득금액을 합산한 총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시 그 세금을 납부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소득은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에 따라 그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을 신고분류과세제도라고 한다.[256] 분류과세되는 소득은 산림소득, 퇴직소득,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특정 공사채 등의 이자 등에 따른 이자소득 및 일정 선물거래에 의한 잡소득 등이 있다. 또한 2009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2016년 1월 1일 이후는 특정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나. 분류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산림소득은 산림을 벌채해 양도하거나 입목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림을 취득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벌채 또는 양도한 경우, 산림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이 된다. 또한 산림을 산마다 양도하는 경우 토지 부분은 양도소득이다.

산림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특별공제액(최고 50만엔)]으로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은 양도의 대가가 수입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조림비용 등의 취득비용 이외에 육성비용,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관리비, 벌채비용, 반출비용, 중개 수수료 등의 양도비용이다. 산림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계하지 않고, 5분 5승방식[(과세산림소득금액×1/5×소득세 세율)×5]으로 하여 계산한다.

퇴직소득금액은 [(수입금액-퇴직소득공제액)÷2]로 계산하며,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 20년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다르다. 퇴직금 등의 지급금액의 20.42%의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다.[257]

255)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04/06.htm, 검색일자: 2019.2.20.
256)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40.htm, 검색일자: 2018.11.22.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소득의 장기성이나 퇴직 후 생활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다.[258]

- 근속연수 20년 이하: 퇴직소득공제액=40만엔×근속연수(8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80만엔)
- 근속연수 20년 초과: 퇴직소득공제액=800만엔+70만엔×(근속연수-20년)

〈퇴직소득 계산 예시〉

① 근속연수가 10년 2개월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계산: 근속연수는 11년으로 간주하여 40만엔×11년=440만엔
② 근속연수가 30년인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계산: 800만엔+70만엔(30년-20년)=1,500만엔

3. 분리과세 대상 소득

가. 분리과세 적용 소득 종류

원천분리과세제도는 다른 소득과 완전히 분리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 시에 일정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세함으로써 원래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①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자 등(종합과세 또는 신고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 ② 사모의 특정 목적 신탁 중 채권으로 수익권의 수익분배에 관한 배당 ③ 사모 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의 수익분배에 관한 배당 ④ 특정 할인채의 상환차익 등이다.[259]

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원천분리과세의 세액계산은 ①~③은 수입금액 등의 20.315%(소득세 15.315%, 지방세 5%)가 원천징수되고, ④ 특정 할인채의 상환차익의 18.378%로 원천징수된다. 동 소득의 경우 2037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소득세액에 2.1%의 세율을 곱해 부흥특별소득세도 원천징수된다.

257)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20.htm, 검색일자: 2019.3.12.
258) 국중호(2009), p.62.
259)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30.htm, 검색일자: 2018.11.22.

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 체계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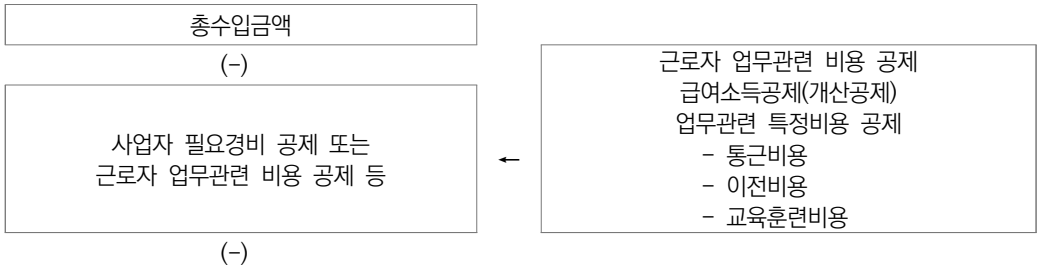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나머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013년부터 2037년까지는 매년 부흥특별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흥특별소득세는 매년 소득세액의 2.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할 때 부흥특별소득세가 함께 징수된다.[260]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10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에 대한 수입과 필요경비의 범위 또는 소득계산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과세소득금액은 그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소득공제는 공제대상 부양친족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초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다. 소득세는 과세소득금액에 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져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인 초과누진세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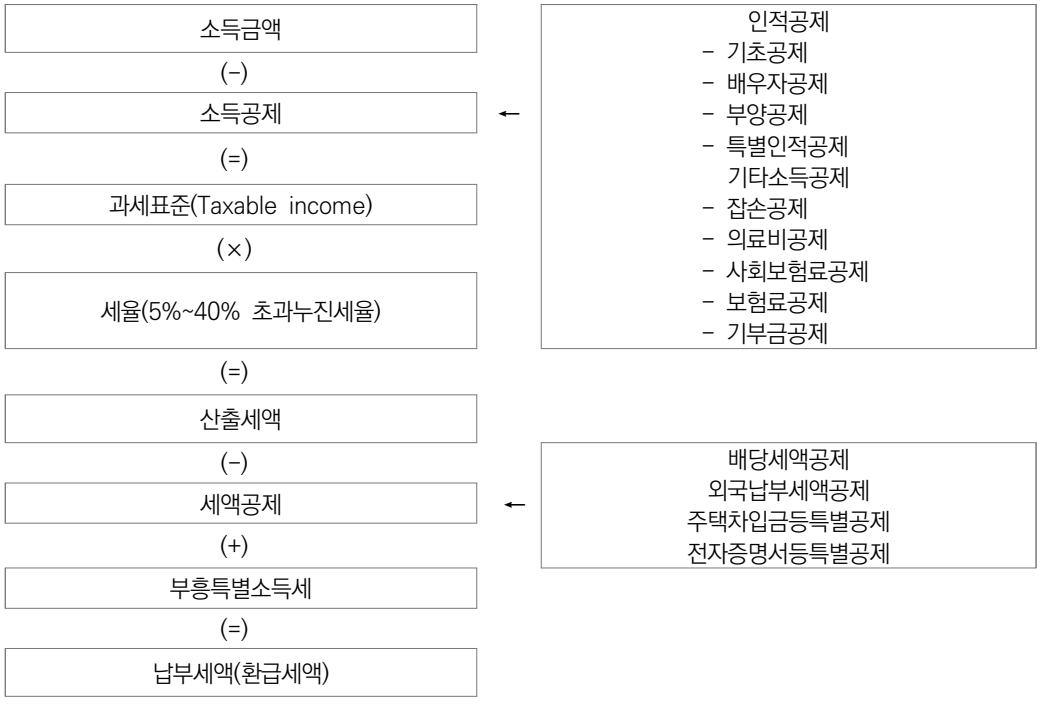
소득세액에서 배당공제 등 세액공제를 한 후, 동 금액을 기준소득세액으로 하여 그 금액에 2.1%를 곱하여 부흥특별소득세액을 산출한다. 산출한 소득세액과 부흥특별소득세액을 더하여 납부세액을 도출한다.

〈표 Ⅴ-1〉 소득세 산출체계



26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1.htm, 검색일자: 2019.1.7.

〈표 Ⅴ-1〉의 계속



자료: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1.htm, 검색일자: 2018.12.5.와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1.htm#sanshiki01, 검색일자: 2018.12.5.를 참조하여 작성.

2. 필요경비

1) 근로소득

가) 급여소득공제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로 개산공제인 급여소득공제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주고 있다. 급여소득공제는 급여수입금액 구간별로 최고 40%에서 최저 5%의 공제율이 적용된 금액을 급여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합계가 급여소득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공제가 허용된다.

급여소득공제는 급여수입금액에 따라서 최고 40%의 공제율로 개산공제하는 방식으로 급여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10%씩 인상되어 최고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4단계 방식이다.[261]

급여수입금액이 65만엔 이하인 경우 65만엔을 공제하고, 급여수입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220만엔을 한도로 공제하여, 최저금액과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표 V-2〉 급여소득공제

급여수입금액(2018년도)	급여소득공제액
180만엔 이하	수입금액×40% 65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65만엔
180만엔 초과~360만엔 이하	수입금액×30% + 18만엔
360만엔 초과~660만엔 이하	수입금액×20% + 54만엔
660만엔 초과~1,000만엔 이하	수입금액×10% + 120만엔
1,000만엔 초과	220만엔(상한금액)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10.htm, 검색일자: 2019. 1. 3.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근로자가 근로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특정 비용의 합계액이 급여소득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지출공제'라고 한다.[262] 1987년 특정지출공제 규정 도입 당시에는 최소지출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특정지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2012년 세법개정 시 급여소득공제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특정지출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1987년 도입 시 공제가 허용되는 특정지출액의 최소기준은 급여소득공제액 전액이었고, 특정지출의 범위는 통근비용, 이사비용, 교육비용, 자격취득비용(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비용은 제외), 귀가여비였다. 2012년 세법개정 시 최소지출기준을 급여소득공제액의 50%로 하향조정하고, 대상 지출의 범위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비용과 도서구입비, 의복비, 교제비 등 근로필요경비를 추가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급여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공제한도를 125만엔으로 규정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공제한도를 폐지하였다. 특정지출공제 대상비용은 고용주나 국가 교육보조금을 통해 보전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 증빙서류의 구비와 실제 회사에서 보전하지 않았다는 고용주의 확인이 필요하다.[263]

현행 일본 소득세법상 근로 관련 특정지출항목은 6개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264]

261) 「소득세법」 §28③.
262) 「소득세법」 §57의2①.
263) 「소득세법」 §57의2③, ④.

〈표 Ⅴ-3〉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 항목

항목	내용
통근비용	일반적인 통근자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근을 위한 지출비용 * 비과세소득인 통근수당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이사비용	전근에 따른 이사비용
교육비	직무에 직접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자격취득비	직무에 직접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귀가여비	단신 부임 등의 경우 근무지 또는 거소와 주거지 사이의 이동을 위한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출비용
근무필요경비 (2013년 이후 지출한 비용)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임 ① 도서, 정기간행물, 기타 도서에서 직무 관련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도서 구입비) ② 유니폼, 사무의류, 작업복, 기타 근무 장소에서 착용하기 위해 지출(의복비) ③ 교제비, 접대비, 기타 비용으로 고용주의 고객, 업무상 관계있는 자에 대한 접대, 향응, 선물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위한 지출(교제비 등) *총합계액 65만엔 한도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m/taxanswer/1415.htm, 검색일자: 2018.12.11.

급여소득자가 특정지출공제 항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특정지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지출공제의 적용 판정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급여소득공제 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표 Ⅴ-4〉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 금액

급여 등의 수입금액		특정지출공제의 적용 판정 기준 금액
2016년 이후	일률	그해 급여소득공제액×1/2
2013년~2015년	1,500만엔 이하	그해 급여소득공제액×1/2
	1,500만엔 초과	125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m/taxanswer/1415.htm, 검색일자: 2018.12.11.

264) 「소득세법」 §57의2②.

2) 사업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소득에 직접 필요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 관리비 기타 비용을 말하며, 예를 들면, 매출원가, 급여 및 임금, 임대료,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또한 가사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비용 중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필요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응하는 경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특례에는 가내노동자 소득계산 특례(최대 65만엔)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의 친족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청색신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장부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자가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관련 법정장부인 경우에는 7년, 그 외 결산 관련 장부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65]

3)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는 부동산소득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가사경비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고정재산세, 손해보험료, 감가상각비, 부동산 수선비 등이 포함된다.

4) 잡소득

잡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을 계산한다. 공적연금 등 이외의 잡소득의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 잡소득금액이다.[266]

5) 산림소득

산림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액(최대 50만엔)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265)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html/01_2.htm., 검색일자: 2019.2.25.
결산 관련 장부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법정 장부 이외의 장부(임의 장부), 결산 및 재고 관련 서류, 업무 관련 서류 및 청구서,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의미한다.

266)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00.htm, 검색일자: 2019.1.15.

산림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소득이므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소득과는 분리하여 과세된다. 총수입금액은 양도대가 수입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조림비용 등의 취득비용, 벌채비용, 관리비, 식림비용,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필요경비는 개산경비공제 특례도 있다. 벌채 또는 양도한 해의 15년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던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벌채비용 등의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도 있다.[267]

3. 소득공제

소득세 공제제도는 각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소득공제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인적공제,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 경로 · 장애에 대한 추가공제, 근로학생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다. 의료비 공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생명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재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등 항목별 공제규정도 운영하고 있다.[268] 또한 일본 국내에 주소 등이 없는 이른바 비거주자의 소득공제는 잡손공제, 기부금공제, 기초공제가 적용된다.

가. 기본 인적공제

〈표 V-5〉 기본 인적공제

	제정연도	대상자	공제액		본인의 소득요건
			소득세	개인주민세	
기초공제	1947	본인	최고 48만엔	최고 43만엔	합계소득금액 2,500만엔 이하(2,400만엔 초과에서 공제액 체감)[1)]
배우자공제	1961	생계를 같이하고 합계소득금액이 38(48)만엔 이하인 배우자(공제대상 배우자)를 가진 자			합계소득금액 1,000만엔 이하(900만엔 이상에서 공제액 체감)

267)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80.htm, 검색일자: 2019.1.15.
268)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00.htm, 검색일자: 2018. 11. 6.

〈표 V-5〉의 계속

	제정연도	대상자	공제액		본인의 소득요건
			소득세	개인주민세	
일반공제대상 배우자	1961	나이가 70세 미만의 공제대상 배우자를 가진 자	최고 38만엔	최고 33만엔	
노인공제대상 배우자	1977	나이가 70세 이상의 공제대상 배우자를 가진 자	최고 48만엔	최고 38만엔	
배우자 특별공제	1987	생계를 같이하고 합계소득금액이 38(48)만엔 초과 123(133)만엔 이하인 배우자를 가진 자	최고 38만엔	최고 33만엔	합계소득금액 1,000만엔 이하(900만엔 이상에서 공제액 체감)
부양공제	1950	생계를 같이하고 합계소득금액이 38(48)만엔 이하인 친족 등(부양 친족)을 가진 자	-	-	-
일반부양친족	1950	나이가 16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23세 이상 70세 미만의 부양 친족이 있는 자	38만엔	33만엔	-
특정부양친족	1989	나이가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부양 친족이 있는 자	63만엔	45만엔	-
노인부양친족 (동거노인 등 추가)	1972	나이가 70세 이상의 부양 친족이 있는 자	48만엔	38만엔	-
	1979	직계존속인 노인 부양 친족과 동거를 항상 같이 한 자	+10만엔	+7만엔	-

주: 1) ( ) 안의 금액은 2020년 이후의 소득세(2021년도 이후의 주민세)에 대해 적용함
자료: 일본 재무부, 「인적공제 개요」,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3.htm, 검색일: 2018. 11. 10.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의 계산을 위해 총소득금액 등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이며, 다른 공제와 달리 일정요건 없이 일률적으로 38만엔이 적용된다.

2018년 세제개정을 통해 38만엔에서 10만엔이 인상되어 48만엔이 기초공제금액이다. 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의 소득금액인 자는 32만엔의 기초공제가 허용되고, 2,500만엔 초과의 고소득자는 기초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표 Ⅴ-6〉 기초공제금액(2018년)

소득금액합계액	기초공제금액(소득세)	기초공제금액(주민세)
2,400만엔 이하	48만엔	43만엔
2,400만엔 초과~2,450만엔 이하	32만원	29만엔
2,450만엔 초과~2,500만엔 이하	16만엔	15만엔
2,500만엔 초과	-	-

자료: 「소득세법」 §86 및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410.htm, 검색일자: 2018. 11. 10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배우자공제[269]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 배우자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① 민법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②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③ 연간 총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급여만 있는 경우 급여소득이 103만엔 이하)

④ 청색신고자의 사업전담자로서 당해 연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백색신고자의 사업전담자가 아니어야 함[270]

배우자공제금액은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 및 공제대상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표 Ⅴ-7〉 배우자공제금액

공제받을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	공제액	
	일반공제대상 배우자	노인공제대상 배우자
900만엔 이하	38만엔	48만엔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26만엔	32만엔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13만엔	16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1.htm, 검색일자: 2018.12.11.

269)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1.htm, 검색일자: 2018. 11.23.

270) 청색신고는 기장방식으로 장부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특별공제, 청색사업 전임자 급여를 통해 배우자 등 가족직원에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등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반면, 백색신고는 장부 서류 작성 등의 의무사항이 없다.

노인공제대상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 중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된다. 또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외에 장애인공제 27만엔(특별 장애인의 경우 40만엔, 동거 특별 장애인의 경우는 75만엔)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배우자특별공제[271]

배우자가 38만엔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와 같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특별공제가 있다.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이고,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이 3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인 자는 배우자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다음의 5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272]

① 민법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②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③ 청색신고자의 사업전담자로서 당해 연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백색신고자의 사업전담자가 아니어야 함
④ 다른 사람의 부양친족이 아닐 것
⑤ 연간 총소득금액이 3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

배우자특별공제액은 최고 38만엔이며,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 및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배우자 특별공제는 부부간에 서로 받을 수는 없다.

〈표 Ⅴ-8〉 배우자 특별공제금액

배우자 합계소득금액	공제받을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		
	900만엔 이하	900만엔 이상 950만엔 이하	950만엔 이상 1,000만엔 이하
38만엔 초과 85만엔 이하	38만엔	26만엔	13만엔
85만엔 초과 90만엔 이하	36만엔	24만엔	12만엔
90만엔 초과 95만엔 이하	31만엔	21만엔	11만엔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	26만엔	18만엔	9만엔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	21만엔	14만엔	7만엔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	16만엔	11만엔	6만엔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	11만엔	8만엔	4만엔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	6만엔	4만엔	2만엔
120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	3만엔	2만엔	1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5.htm, 검색일자: 2018.12.11.

271)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5.htm, 검색일자: 2018.11.28.
272) 「소득세법」 §2, §83의2, §120.

4) 부양공제[273]

부양공제는 납세자에게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부양친족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부양친족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16세 이상인 자만 대상이 된다. 부양친족은 당해 연도 12월 31일(납세자가 중간에 사망 또는 출국할 경우에는 그 사망 또는 출국 시)[274]의 현황에서 다음의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275]

① 배우자 이외의 친족(6촌의 혈족 및 3촌의 인척) 또는 도도부 현지에서 위탁된 아동 및 시읍면장에서 위탁받은 노인
②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것
③ 연간 총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일 것(급여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소득이 103만엔 이하)
④ 청색신고자로서 당해 연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백색신고자가 아니어야 함

〈표 V-9〉 부양공제금액

구분		공제액
일반공제대상 부양친족[1]		38만엔
특정 부양친족[2]		63만엔
노인 부양친족[3]	동거 노인 등 이외의 자	48만엔
	동거 노인 등[4]	58만엔

주: 1) 공제대상 부양친족: 부양친족 중 그해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16세 이상인 자
2) 특정 부양친족: 공제대상 부양친족 중 그해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
3) 노인 부양친족: 공제대상 부양친족 중 그해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
4) 동거노인 등: 노인부양친족 중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등)에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와 평소 동거하고 있는 자
1. 동거: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납세자 등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의 경우에도 동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함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0.htm, 검색일자: 2018.12.11.

나. 특별 인적공제

경로·장애, 학생 또는 한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 경로자인 경우에는 10만엔 또는 20만엔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동거직계존속의 경우에는 20만엔, 동거직계존속 외의 경우에는 10만엔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부양친족이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에는 25만엔을 추가적으로 소

273)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0.htm, 검색일자: 2018. 11.23.
274) 출국은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75) 「소득세법」 §79, §84, §85.

득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근로학생인 경우에는 27만엔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자인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65만엔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30만엔 이하)이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10만엔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학교교육법」 등 교육기관에 의해 일정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276]

납세자 본인이 배우자와 사별·이혼하였거나 배우자의 생존이 불분명하며 한부모(寡婦·寡夫)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7만엔을 공제한다.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친족이 장애인인 경우 27만엔을 추가공제할 수 있고, 납세자 본인이 특별장애인인 경우 총 40만엔을 추가공제하고, 특별장애인인 배우자, 부양친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총 75만엔을 추가공제한다.

〈표 Ⅴ-10〉 특별 인적공제

	제정연도	대상자	공제액		본인의 소득요건
			소득세	개인주민세	
장애인공제	1950	· 장애인인 자 · 장애인인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자	27만엔	26만엔	-
특별장애인공제	1968	· 특별장애인인 자 · 특별장애인인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자	40만엔	30만엔	-
동거 특별장애인 공제	1982	· 특별장애인인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과 동거를 항상 같이 하는 자	75만엔	53만엔	-
부녀자공제	1951	· 남편과 사별한 자 ·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하고 부양친족이 있는 자	27만엔	26만엔	남편과 사별한 자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
특별부녀자공제	1989	부양친족인 직계비속이 있는 자	+8만엔	+4만엔	합계소득금액 500만엔 이하
편부공제	1981	아내와 사별 또는 이혼하고 부양친족인 직계비속이 있는 자	27만엔	26만엔	합계소득금액 500만엔 이하
근로학생공제	1951	본인이 학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의 학생 등인 자	27만엔	26만엔	합계소득금액 65(75)만엔 이하이고 급여소득 등 이외 10만엔 이하

자료: 일본 재무부, 「인적공제의 개요」,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3.htm, 검색일자: 2018. 11. 10.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76) 근로학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고등전문학교,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등으로 설치된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거나,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인정되는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 법인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어야 한다(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 ku/1175.htm, 검색일자: 2018. 12. 4)

1) 장애인공제[277]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합계소득금액 38만엔 이하인 자) 또는 부양 친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부양공제의 적용이 없는 16세 미만의 부양친족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장애인은 27만엔, 특별장애인은 40만엔, 동거 특별장애인은 75만엔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장애인은 원자폭탄피폭자, 6개월 이상 신체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2) 부녀자공제 및 특별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는 남편과 사별 또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인을 하지 않은 부녀자 또는 남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일정한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부녀자공제는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한 후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있고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부녀자공제는 27만엔, 특별부녀자공제는 35만엔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78]

3) 편부공제

아내와 사별 또는 이혼하고 혼인을 하지 않거나, 아내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으로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이며 부양친족인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27만엔의 편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279]

4) 근로학생공제

납세자 본인이 근로학생인 경우 27만엔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 등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학생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에서 근로학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소득금액이 65만엔 이하(근로에 따른 소득 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직업

277) 「소득세법」 §79, 「소득세법 시행령」§10.
278) 「소득세법」 §83의2, §120, §190.
279) 「소득세법」 §81,§85.

능력개발촉진법」의 직접훈련 과정 등의 학생이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금액이 130만엔 이하이며 급여소득공제 65만엔을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65만엔 이하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학생공제를 받을 수 있다.[280]

다.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공제인 특별소득공제는 손실재해공제, 의료비공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 보험료 공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 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린이 수당제도(子ども手当)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V-11〉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공제 종류	내용	공제액의 계산방식
손실재해공제	주택 등에 대해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해 관련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①(재해손실금액+재해관련 지출금액)-연간소득금액×10% ②재해관련 지출금액-5만엔
의료비공제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의 친족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의료비금액)-(다음 중 적은 금액 ① 10만엔, ②연간소득금액×5%)= 의료비공제액(최고 한도액 200만엔)
사회보험료공제	사회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사회보험료 금액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공제	소규모기업공제 부금, 확정기여연금에 관한 기업형 연금 가입자 부금, 개인형 연금가입자 부금, 심신 장애자 부양공제부금을 지불한 경우	지불한 부금 금액
생명보험료공제	일반 생명보험료, 의료보험료와 개인연금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1.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 계약 등 (신계약)에 따른 생명보험료 공제 ① 일반 생명보험료(최고 한도액 4만엔) ② 유료 개호의료보험료(최고 한도액 4만엔) ③ 개인연금보험료(최고 한도액 4만엔) 2.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험 계약 등(구계약)에 따른 생명보험료 공제 ① 일반 생명보험료(최고 한도액 5만엔) ② 개인 연금보험료(최고 한도액 5만엔) ※ 각 보험료 공제의 합계 적용 한도액은 12만엔

280) 「소득세법」 §82,§194.

〈표 Ⅴ-11〉의 계속

공제 종류	내용	공제액의 계산방식
지진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진보험료의 전액을 공제(최고 한도액 5만엔)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장기 손해보험 계약 등(지진보험료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것 제외)에 따른 보험료 등은 종전대로 적용(최고 한도액 1 만 5천엔) ②지진보험료 공제와 위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합계 최대 5만엔 적용
기부금공제	특정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 ①특정기부금 합계액②연간소득금액×40%)-2천엔=기부금공제

자료: 일본 재무부, 「기타소득공제제도의 개요」,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3.htm, 검색일자: 2018. 11. 10.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 재해손실공제

재해 및 도난에 의해 손해를 입었거나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해를 입은 자산의 소유자는 납세자,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기타 친족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 등이 38만엔 이하인 자여야 한다. 재고자산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해당되는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재해손실공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한다.[281]

① (재해손실금액+재해관련 지출금액)*-연간소득금액×10%

* 손해금액+재해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② 재해관련 지출금액*-5만엔

* 재해에 의해 손실된 주택 등을 제거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손실액이 크고 그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이후 3년을 한도로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친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

281) 「소득세법」 §62, §71, §72.

불한 경우에 최대 200만엔을 한도로 소득공제할 수 있다.[282] 의사와 치과의사 진료비, 치료·요양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및 의료서비스 비용 등이 공제대상 의료비이며, 최대 200만엔을 한도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험보전금액)-10만엔(단, 총소득금액이 2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총소득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83]

3) 사회보험료공제

사회보장보험료 공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납부하거나 부담한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할 수 있다.

4)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공제

납세자가 「소규모 기업공제법」에 따른 부금, 「확정기여연금법」에서 규정하는 기업형 연금 가입자 부금 또는 개인형 연금 가입자 부금 등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부금 전액이 공제된다.[284]

5) 생명보험료공제

생명보험료공제는 생명보험 또는 개인연금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수준에 따라 최대 4만엔을 한도로 공제한다.

6) 지진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공제는 지진 등에 의한 자산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납세자가 지출한 지진 및 재해보험료에 대해 최대 5만엔을 한도로 전액을 공제한다.

7) 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는 2천엔을 초과하는 특정기부금은 총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285]

282)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120.htm, 검색일자: 2017. 12. 10.
283) 「소득세법」 §73.
284)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35.htm, 검색일자: 2017. 12. 10.
285) 「소득세법」 §78.

정당, 정치자금단체, 기타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286] 이 경우 2천엔을 초과하는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287]

286) 「조세특별조치법」 §41조의18①.
287) 「조세특별조치법」 §41조의18②.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체계

1. 세율[288]

일본의 소득세 세율은 분리과세에 대한 소득 등을 제외하고, 5%에서 45%의 7단계 초과누진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5%에서 40%의 6단계 구조였다.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 2037년까지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부흥특별소득세는 국세의 2.1%가 부과된다. 과세되는 소득금액(1,000엔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후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금액은 다음 세율표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표 Ⅵ-1〉 개인소득세 세율(2018년도)

(단위: %, 엔)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950,000 이하	5	0
~3,330,000 이하	10	97,500
~6,950,000 이하	20	427,500
~9,000,000 이하	23	636,000
~18,000,000 이하	33	1,536,000
~40,000,000 이하	40	2,796,000
40,000,000 초과	45	4,796,000

자료: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25kyuyoshotoku.pdf, 검색일자: 2018.12.6. 자료와 IBFD, Japan - 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검색일자: 2018.12.6.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예를 들어, 과세되는 금액이 700만엔의 경우에는 700만엔×0.23-63만 6천엔=97만 4천엔으로 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매년 확정신고시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과세연도 기준 소득세액의 2.1%)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한때 70%(과세소득 8천만엔 초과 부분)이었지만, 근로자 가구의 세금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점차 인하되어 왔다. 재분배 기능의 회복을 위해 2015년 이후 과세소득 4천만엔 초과 부분에 대해 45%의 세율이 신설되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88) 일본 국세청, 「No.2260 소득세의 세율」,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검색일자: 2018.12.5.

〈표 Ⅵ-2〉 개인소득세 세율(2007~2014년도)

(단위: %, 엔)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950,000 이하	5	0
~3,330,000 이하	10	97,500
~6,950,000 이하	20	427,500
~9,000,000 이하	23	636,000
~18,000,000 이하	33	1,536,000
18,000,000 초과	40	2,796,000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검색일자: 2018.12.6.

2. 세액공제

가. 세액공제 종류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 인정 NPO법인 등 기부금 특별공제, 공익사단법인 등 기부금 특별공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등이다.

나. 세액공제별 요건 및 한도[289]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배당소득금액의 10% 또는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상장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본에서 과세되는 소득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하여 그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 일정액을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다.

정당 또는 정치자금단체에 정치활동에 대해 일정의 기부금을 지불한 경우 기부금공제(소득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액을 공제하는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가 있다.

289)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00.htm, 검색일자: 2019.1.10.

인정 NPO 법인 등 기부금 특별공제는 인정 NPO 법인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부금을 지불한 경우 기부금공제(소득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액을 공제한다. 공익사단법인 등 기부금 특별공제는 특정 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일정한 기부금 중 기부금공제(소득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신축, 취득 또는 증개축 등을 한 경우 그 취득 등에 관한 모기지 등 연말 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일정 기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연말잔액의 합계액(주택의 취득 등의 금액 또는 비용금액이 모기지 등 연말잔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취득 등의 금액 또는 비용금액으로 이하 '연말 잔액 등'이라고 함)을 바탕으로 거주용으로 제공한 연도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표 Ⅵ-3〉 주택차입금 등 세액공제의 계산

거주용으로 제공된 연도	공제기간	매년 공제액의 계산 (공제한도)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5년	1~10년째 연말 잔액 등 × 0.6 % (15만엔)	11~15년째 연말 잔액 등 × 0.4 % (10만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5년	1~10년째 연말 잔액 등 × 0.6 % (12만엔)	11~15년째 연말 잔액 등 × 0.4 % (8만원)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0년	1~10년째 연말 잔액 등 × 1 % (50만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0년	1~10년째 연말 잔액 등 × 1 % (40만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0년	1~10년째 연말 잔액 등 × 1 % (30만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년	1~10년째 연말 잔액 등 × 1 % (20만엔)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년	1~10년째 연말 잔액 등 × 1 % (40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13.htm, 검색일자: 2019.1.7.

3. EITC, CTC

일본은 「소득세법」상에서 근로소득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조세지출로 운영하지 않고 재정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주택부조, 복지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부양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정정책인 아동수당(子ども手当)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부양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290] 2010년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수당으로의 전환'이라는 조세·재정정책 개편 방향에 따라 16세 미만 자녀 양육지원은 아동수당제도로 일원화하고, 관련 조세지원은 폐지·축소하였다.[291] 다만, 아동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양자녀의 경우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 부양친족공제와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 특정부양친족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2012년부터 일본은 중학교 졸업 전까지 아동 1인당 매월 1만 5천엔 또는 1만엔을 매년 6월(2월분~5월분), 10월(6월분~9월분), 2월(10월분~1월분)에 지급한다. 단,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인 자에게는 아동 1인당 월 5천엔을 지급한다.[292] 지급대상아동이 0~3세미만은 일률적으로 15,000엔, 3세~초등학교 수료전까지는 아동 1인당 10,000엔(셋째 자녀 이후는 15,000엔), 중학생은 아동 1인당 10,000엔을 지급하고 있다.[293]

4. 최저한세

일본은 「소득세법」상에서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5. 계산사례

연 700만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공제를 비롯하여 공제금액과 과세소득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자가 사회보험료, 배우자(연간 총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가 있고 16세 이상인 부양친족(연간 총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 2명, 의료비 20만엔을 지출한 상황으

290) 일본 세제조사회,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9/1222zeiseitaikou.pdf, 검색일자: 2018.12.3.
291) 일본 민주당, 「세제개정과정의 개혁」, http://www1.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10.html, 검색일자: 2019. 3.14.; 일본 재무부, 「부양공제의 재검토에 대해서」,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7a.htm, 검색일자: 2019. 3. 14.
292) 부양친족 등의 수와 소득금액 등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293) 일본 내각부, 「아동수당 Q&A」, 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ippan.html, 검색일자: 2019.3.12.

로 과세소득을 계산한 것이다.

〈사례〉

총수입금액	
= 급여	700만엔
(-) 급여소득공제	
= 700만엔×10%+120만엔	(190)만엔
소득금액	510만엔
기초공제	
= 700만엔×10%+120만엔	(48)만엔
배우자공제	
= 연간 총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	(38)만엔
부양공제	
= 38만엔(연간 총소득금액 38만엔 이하)×2=76만엔	(76)만엔
사회보험료공제	
= 사회보험료는 전액 공제	(70)만엔
의료비공제	
= 20만엔-10만엔	(10)만엔
= 과세표준	268만엔
(×) 세율	10%[1)]
= 산출세액	170,500엔

주: 1) 과세표준 ~3,330,000엔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Ⅶ 신고, 납부 및 징수체계

1. 신고납부제도

조세의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및 부과과세방식 이외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다. 신고납세방식은 납부할 세액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되는 방식이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및 소비세 등 대부분의 주요한 조세는 이 방식을 따른다. 부과과세방식이란 납부할 세액이 세무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국세의 부가세, 지방세의 고정자산세 및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 원천소득세나 인지세 등은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된다. 이처럼 일본의 조세는 신고납세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본 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하는 신고납세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소득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근거하여 자진납부한다. 소득세의 납세지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주소지이며, 국내에 주소가 없고 거소가 있는 경우는 거소지이다. 일본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항구적 시설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소득세 납세지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급여자의 사무소, 사업소 등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정소득세액은 제출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294]

소득세는 예정납부제도가 있다. 확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자로 직전연도 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가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아 그해 세금을 미리 분할납부하는 제도이다.[295] 예정납부는 2회 실시되며, 첫 번째 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31일이며, 두 번째 납부기한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2.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국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 또는 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고 또는 결정이 있은 후, 수정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증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세액 또는 증가세액의 15%

294) 「소득세법」 §120①., 128.
295) 5월 15일을 기준으로 예정납부금액이 15만엔 이상인 자

의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296] 납부할 세액이 5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20%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의 면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경정 또는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경감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할 때 해당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기한 내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이루어져서 당초의 신고세액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된 경우에 그 증가한 세액의 10%의 금액이 가산세로 과세된다.[297]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성립한다.[298] 증가세액이 기한 내 신고납부 또는 50만엔 중 어느 것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15%의 금액이 추가된다.

원천징수 등에 따라 징수해서 납부해야만 하는 국세가 그 법정기간 내에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미납부가산세(不納付加算税)가 부과된다.[299] 원천징수 등에 대한 국세가 그 법정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율은 10%이다.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연체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납부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에 의해 납부할 국세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기한 후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정과 결정을 받은 경우에 납부할 국세가 있을 때 부과된다.[300] 연체세액은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국세를 완납하는 날까지의 기간일수에 따라 그 미납세액에 연 14.6%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납부기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고 7.3%의 연체세 경감률이 적용된다. 연체세 경감률은 재무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평균 단기우량채권금리에 4%를 가산한 비율이며, 그 비율이 7.3%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된다.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나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수정신고를 제출한 날 및 경정통지서를 발행한 날까지의 기간은 연체세 산정기간에서 차감하며, 무신고나 중가산세 적용대상은 산정기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301]

296) 「국세통칙법」 §66①.
297) 「국세통칙법」 §65①.
298) 「국세통칙법」 §15②.
299) 「국세통칙법」 §67①.
300) 「국세통칙법」 §60①.
301) 「국세통칙법」 §61①.

〈표 Ⅶ-1〉 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

구분	무신고가산세[1]	과소신고가산세[2]	미납부가산세[3]	연체세[4]
가산세율	• 15%(단, 50만엔 초과분은 20%) • 은폐·가장행위: 40%	• 10%(단, 증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과 50만엔 중 큰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15%) • 은폐·가장행위: 35%	• 10% • 은폐·가장행위: 35%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연 7.3%[5]와 경감률 중 낮은 비율 • 2개월 경과 후: 14.6%와 경감률 중 낮은 비율 * 경감률('17.12.31까지) • 납부기한 다음날~2개월: 2.7%(특례기준비율6)+연1%)[5] • 2월 경과후: 9%(특례기준비율6)+연7.3%)
산정기준	• 국세통칙법 제66조, 제68조	• 국세통칙법 제65조, 제68조	• 국세통칙법 제67조, 제68조	• 국세통칙법 제60조 • 조세특별조치법 제93조, 제94조
특이사항	• 기한 후 신고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월 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기한 내 신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면제 • 국세조사가 있어 경정 또는 결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신고가 아닌 경우로서, – 조사통지 전 자진 신고시: 5% – 조사 사전 통지 후 신고한 경우[6]: 50만엔까지 10%, 초과분은 15%	• 국세조사가 있어 경정 또는 결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신고가 아닌 경우로서, – 조사통지 전 자발적으로 신고시 : 면제 – 조사 사전 통지 후 신고한 경우[2]: 50만엔까지 5%, 초과분은 10%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배제 • 국세조사가 있어 경정 또는 결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신고가 아닌 경우로서, 조사통지 전 자진 신고시: 5%	• 신고납부방식 국세의 경우 기한내 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서의 제출 후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수정신고를 제출한 날 및 경정통지서를 발행한 날까지의 기간은 차감

주: 1)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024.htm, 검색일자: 2019.1.10.
2)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026.htm, 검색일자: 2019.1.10.
3)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tins/n04_3.pdf, 검색일자: 2019.1.10.
4)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osirase/9205.htm, 검색일자: 2019.1.10. (연 7.3%는 1일당 2/10,000에 해당하는 이율임), 납부기한은 ① 납부기한 내에 신고된 경우는 법정납부기한, ② 납부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의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③ 경정·결정의 경우 경정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후의 날임
5) 특례기준비율은 매년 전전년 10월부터 전년 9월까지 각 월의 은행 신규 단기대출약정 평균금리의 합계를 12로 나누어 전년 12월 15일까지 재무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연1%를 가산한 금리로 산정되며, 헤세이 29년 1월 1일부터 2017.12.31.까지의 특례기준비율은 연 1.7%로 추정됨(참고자료: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3/explanation/pdf/p0384_0406.pdf)
6) 2017.1.1.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일 것

자료: 국세통칙법(http://law.e-gov.go.jp/htmldata/S37/S37HO066.html),
조세특별조치법(http://law.e- gov.go.jp/htmldata/S32/S32HO026.html)

3.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급여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 등의 이자소득, 상장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 상금, 배당소득 등이 있다.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이처럼 특정 소득이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는 연말조정제도가 있어 그 해 마지막 급여를 받는 단계에서 정산한다.

〈표 Ⅶ-2〉 원천소득세의 개요

지불받은 자, 세율 / 소득종류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공사채 예금 등의 이자	○	○
대출이자		○
배당	○	○
부동산 등의 임대료		○
급여, 임금, 상여금	○	○
퇴직수당	○	○
전문가에 대한 보수	○	○
사용료	○	○
임대료		○
상금	○	○
연금	○	○

주: ○는 지불자가 원천과세 필요
자료: John W Darcy, *Japan Master Tax Guide*, Wolters Kluwer, 2017/18, pp.193~216.

가. 근로소득 관련 원천징수

급여소득자의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는 직장에서 월급과 보너스에서 원천징수하고 그 해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302] 연말정산은 마지막 급여를 지불할 때 실시하므로 일반적으로 12월에 실시하고 다음 해 1월 또는 2월에 환급 및 추가납부가 이루어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시 또는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302) 일본 국세청, 「급여소득자와 세금」,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2_1.htm, 검색일자: 2019.1.18.

- 과세연도 중도에 사망으로 퇴직한 자의 경우: 퇴직 시
- 현저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사람으로 그 퇴직으로 보아 올해 안에 재취업할 수 없다고 전망되는 자의 경우: 퇴직 시
- 12월 중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급여의 지불을 받은 후 퇴직한 자의 경우: 퇴직 시
- 과세연도 중도에 해외 지사에 전근한 것 등의 이유로 비거주자가 된 자의 경우: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월급과 보너스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액은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세액표」에 의하여 급여지급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한다.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납세가 진행되므로 확정신고는 필요 없다. 연말정산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90조~19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의 연말정산은 e-Tax를 통해 다음의 2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 (1단계) 부양공제 등(변경) 신고서, 배우자 특별공제 신고, 보험료 공제 신고서, (특정 증개축 등)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의 접수 및 내용 확인(각종 공제금액의 확인)
- (2단계) 급여(근로)소득공제 후 급여 등의 금액 계산 → 과세급여 소득금액 계산 → 세액계산 → 과부족금액 정산(세액의 징수 납부 또는 환급)

[그림 Ⅶ-1]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세액표(월간표)

給与所得の源泉徴収税額表 （平成31年（2019年）分）

（一） **月 額 表** （平成24年３月31日財務省告示第115号別表第一（平成29年３月31日財務省告示第95号改正））（一166,999円）

その月の社会保険料等控除後の給与等の金額		甲								乙
		扶養親族等の数								
		0人	1人	2人	3人	4人	5人	6人	7人	
以上	未満	税額								税額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88,000	円未満	0	0	0	0	0	0	0	0	その月の社会保険料等控除後の給与等の金額の3.063%に相当する金額
88,000	89,000	130	0	0	0	0	0	0	0	3,200
89,000	90,000	180	0	0	0	0	0	0	0	3,200
90,000	91,000	230	0	0	0	0	0	0	0	3,200
91,000	92,000	290	0	0	0	0	0	0	0	3,200
92,000	93,000	340	0	0	0	0	0	0	0	3,300
93,000	94,000	390	0	0	0	0	0	0	0	3,300
94,000	95,000	440	0	0	0	0	0	0	0	3,300
95,000	96,000	490	0	0	0	0	0	0	0	3,400
96,000	97,000	540	0	0	0	0	0	0	0	3,400
97,000	98,000	590	0	0	0	0	0	0	0	3,500
98,000	99,000	640	0	0	0	0	0	0	0	3,500
99,000	101,000	720	0	0	0	0	0	0	0	3,600
101,000	103,000	830	0	0	0	0	0	0	0	3,600
103,000	105,000	930	0	0	0	0	0	0	0	3,700
105,000	107,000	1,030	0	0	0	0	0	0	0	3,800
107,000	109,000	1,130	0	0	0	0	0	0	0	3,800
109,000	111,000	1,240	0	0	0	0	0	0	0	3,900
111,000	113,000	1,340	0	0	0	0	0	0	0	4,000
113,000	115,000	1,440	0	0	0	0	0	0	0	4,100
115,000	117,000	1,540	0	0	0	0	0	0	0	4,100
117,000	119,000	1,640	0	0	0	0	0	0	0	4,200
119,000	121,000	1,750	120	0	0	0	0	0	0	4,300
121,000	123,000	1,850	220	0	0	0	0	0	0	4,500
123,000	125,000	1,950	330	0	0	0	0	0	0	4,800
125,000	127,000	2,050	430	0	0	0	0	0	0	5,100
127,000	129,000	2,150	530	0	0	0	0	0	0	5,400
129,000	131,000	2,260	630	0	0	0	0	0	0	5,700
131,000	133,000	2,360	740	0	0	0	0	0	0	6,000
133,000	135,000	2,460	840	0	0	0	0	0	0	6,300
135,000	137,000	2,550	930	0	0	0	0	0	0	6,600

자료: 일본 국세청,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표(월간표)」,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zeigakuhyo2018/01.htm, 검색일자: 2019.1.18.

나. 기타 원천징수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는 공적연금 등을 수령할 때에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그 연금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정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이 원천징수된다.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은 연금지급 첫 해는 전액 비과세, 2년째 이후에는 과세부분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금액에서 연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21%를 곱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연금연액에서 해당 보험료 또는 부금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25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303]

정기적금의 급부보전금, 저당증권의 이자 등 금융유사상품의 수입금액은 수령시 일률적으로 20.315%(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15.315%, 지방세 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304]

4. 국외전출세

일본의 국외전출세는 '국외 전출 시 과세제도'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국외 전출(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갖지 않을 때) 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주식 등을 보유한 채로 외국으로 이주할 때 출국시점에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미실현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한다.[305] 또한, 거주자가 국외전출을 하지 않아도, 증여,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비거주자에게 대상자산 등을 이전한 경우에도 대상자산을 양도 등을 한 것으로 보아 대상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306]

비거주자 전환 시 국외전출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자는 대상자산 금액과 국내에서의 거주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적용 요건은 ① 대상자산의 시가 합계액이 1억엔 이상일 것 ② 국외 전출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할 것이다. 대상자산이란 ① 국외 전출 시 보유하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익명조합계약의 출자지분의 가액 ② 국외 전출 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상자산 미결제 파생상품거래 · 신용거래 · 발행일거래의 간주결제손익 금액이다. 국외 전출일이란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303)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615.htm, 검색일자: 2019.3.5.
304)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00.htm, 검색일자: 2019.3.5.
305) 「소득세법」 §60 ②.
306) 「소득세법」 §60 ③.

시세 차익이 있는 주식 등을 증여,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비거주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증여 등이 이루어진 때에 주식 등과 관련한 미실현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적용대상자는 대상자산을 증여 등에 의해 비거주자에게 이전하는 거주자로서 ① 증여 등의 시점에 보유하는 대상자산 합계액이 1억엔 이상일 것 ② 증여 등의 날 이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다. 대상자산은 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② 익명조합계약의 출자지분 ③ 미결제 신용거래 · 발행일거래 ④ 미결제 파생상품거래이며, 출국세 대상이 아닌 자산은 예·적금, 부동산, 생명보험에 관한 권리, 대부금 등의 금전신탁 등이다.[307]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시점에 보유하는 유가증권 등에 대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출국시점에 납세관리인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는 국외전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지만 납세관리인의 신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출국일 3개월 전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납세관리인의 신고 없이 출국(국내에 주소도 거소도 없게 되는 것)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 시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308]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과세되고 파생상품의 결제손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분리과세(선물거래의 경우는 잡소득)가 적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과세대상 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분리과세하고 있다. 적용세율은 15.315%(소득세 15% + 부흥특별소득세 0.315%)의 세율을 적용한다.

307) 홍범교 · 송은주 · 정경화(2015), p.12
308) 「소득세법」 §§126,127.

제3장 | 호주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309]

호주는 1901년 1월 1일 6개의 주가 연맹하여 건국된 연방국가로 연방국가 설립 이전까지는 6개의 주가 별개의 경제체제 및 과세제도를 유지하였다. 18세기 말부터 연방정부 설립 때까지 대부분 주정부의 세수는 관세와 소비세 비중이 컸는데 이는 간접세가 행정적 측면에서 간편하고,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부터 도시 및 농촌의 인구 증가, 부의 증가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각 주정부는 토지와 소득에 누진성 과세를 하는 직접세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1884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안(South Australian) 주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1895년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wales), 1899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1902년 퀸즈랜드에서 개인 소득에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연방정부는 1915년까지 별도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 소비세만으로도 정부 수입을 충분이 충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연방정부에서 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915년으로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비용 충당 목적으로 연방소득세가 처음 도입되었다. 따라서 1915년부터 1942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 통합 전까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당시 각 주정부별로 과세소득 범위 및 세율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 소득금액이어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동일 과세표준에 대해 2개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복잡성과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정부의 장관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소득세 과세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1917년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를 연방소득

309) 호주 국세청, *A Brief History of Australia's tax system*, 2016,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economic-roundup-winter-2006/a-brief-history-of-australias-tax-system/, 검색일자: 2018. 9. 21.; CCH(2018), ¶1-010, 1-100.

세 하나로 통합하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발표하였으나 몇몇 주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되었다. 1923년에는 소득세 행정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대신해 세수를 징수하였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 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1930년 대공황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분리된 소득세 과세체계로 인한 세부담 차이 문제는 가속되었으며, 1932년 국세청장을 임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각 주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과세체계 차이로 인한 세부담 차이는 더 확대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초반 연방정부는 전쟁에 필요한 비용 충당 목적으로 연방소득세를 인상하였다. 실제로 1938~39년과 1941~42년 사이에 연방정부의 소득세수는 총연방세수의 16%에서 44%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1917년 부결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 과세제도 통합안인 'Uniform Tax Scheme'을 통과시켰다. 'Uniform Tax Scheme'에 따르면 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를 연방정부 소득세로 통합하며 세율은 호주 전반에 걸쳐 과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과세한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율로 하고, ② 주정부가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과세로 발생하였을 세수를 연방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주정부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가 소득세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각 주정부는 별도로 소득세 과세를 할 수 있었으나 이는 거주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또한, 주정부 소득세를 폐지하여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다른 주와 비교 시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실제 각 주정부가 별도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1942년 연방소득세와 주정부의 소득세제도 통합 이후 호주에서는 현재까지 개인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만 부과되고 있다.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310]

1915년 호주 연방정부의 소득세 과세제도 도입 당시 높은 면세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과세되지 않았고, 최고 소득분위에 속하는 납세자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까지는 세수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초점을 두었다.

310) 호주 국세청, *A Brief History of Australia's tax system*, 2.3, 2016.

세수기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1930년 속지주의 과세체계에서 호주 거주자의 해외소득까지도 과세하는 속인주의 과세체계로 개정하였고, 1942년에는 원천징수시스템(Pays-As-You-Earn)이 보편화되어 그동안 과세가 잘 되지 않던 저소득 급여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수기반 확대 노력에 따라 최고 소득분위에 속하는 납세자의 세수비중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까지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호주는 조세개혁을 위해 조세위원회를 설립하여 호주의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검토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75년에는 Asprey를 의장으로 하는 조세검토위원회(tax review committee)를 설립하였고, 조세검토위원회는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및 세수기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조세검토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은 향후 호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시행되었다. 호주 정부는 세제개혁안(Draft White Paper)에 1975년 Asprey가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1985년에는 자본이득세를, 1986년에는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를 도입하였다.[311] 호주는 1985년 자본이득세 도입 이전까지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세제개혁안에서는 자본이득은 급여, 이자, 배당의 증가와 같이 구매력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이득에도 과세하게 되었다. 부가급여의 경우 소득세 도입 초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었으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과세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소득층에 현금 급여를 대신해 비현금 급여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여 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 정부의 세제개혁안에서는 이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고, 1986년 부가급여에 과세하는 부가급여세를 도입하였다.

1990년대 말에는 부가가치세 도입, 법인과세제도 개혁 및 국제조세협약에 대한 검토 등 다른 세목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Howard정부의 장기집권 및 호주의 경제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개혁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7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롭게 들어선 Rudd정부는 조세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세개혁을 하고자 하였다. 이때 설립된 조세위원회는 2009년 향후 호주 세법개정방향을 제시한 'Australia's Future Tax System Review'를 발표하였고, 세수 증대와 부의 재분배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세제도로의 개편안 138

311) 호주 재무부,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economic-roundup-issue-2-2013-2/economic-roundup-issue-2-2013/tax-policy-formulation-in-australia/, 검색일자: 2019.1.29.

개를 제시하였다.[312]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과세제도 및 과세행정 간소화, 개인의 노동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의 조세혜택 개정 등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으로 소득세 면세점 인상, 소득공제 항목 간소화, 연금소득의 비과세 전환, 소득세법상 비용항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비용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과세 누진성 확대를 위해 개인소득에 복리후생비 및 고용주 퇴직부담금 포함 등을 제안하였다.[313]

최근에는 가구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상황을 고려한 공제제도 운영 및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의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한 세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에는 주로 호주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예산확충 목적의 부가세 폐지, 창업회사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2016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호주 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매입자가 자본이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천징수대상 자산은 2017년 7월 1일 이전 체결된 거래의 경우 20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이며,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75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가 원천징수한다.

또한, 호주 정부가 해외개발원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해외근무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91일 이상 근무하고 얻은 근로소득은 비과세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였다.

신규 창업회사에 대한 투자지원 목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창업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지분취득금액(20만호주달러 한도)의 20%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도 신설하였다.

2014년 7월 1일부터 예산확충 목적으로 과세소득이 18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2%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예산재정비 부담금(Budget Repair Levy)'이 2017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호주 단기취업비자(working holiday)를 가진 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3만 7천호주달러까지는 1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단기취업비자 소지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단기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호주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할 수 있게 되었으며, 3만 7천호주달러까지는 저율의 소득

312) Richard Eccleston, "The Tax Reform Agenda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013.
313) 김재진, 「Henry Tax Review – Australia's Future Tax System-」, 2013.11.

세율인 15%로 과세하고, 3만 7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2018년에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세율구간을 조정하고,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저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소득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중산층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개정하였다.[314] 또한, 현재 4단계 누진세율(19%, 32%, 37%, 45%) 중 19%와 32%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는 37%의 세율을 폐지하고 19%, 32%, 45%의 3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표 Ⅰ-1〉 소득세제 주요 개정 연혁

연도	내용
1915	높은 면세점으로 인해 면세자 비중이 높았고, 최고 소득분위에 속하는 자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납부함
1930	세수기반 확대 노력으로 속지주의 과세체계에서 속인주의 과세체계로 전환
1942	연방소득세와 주정부소득세 통합, 급여소득 원천징수제도 도입
1975	Asprey를 의장으로 하는 조세검토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세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및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개혁안 발표
1985	조세검토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자본이득세 도입
1986	조세검토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부가급여세 도입
1990년대	부가가치세 도입, 법인과세제도 개혁 및 국제조세협약에 대한 검토 등 다른 세목에 대한 개정 진행
2000년대	2008년 Henry를 의장으로 하는 조세위원회를 설립하고 세수 증대와 부의 재분배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세제도로의 개편안(Australia's Future Tax System Review)을 발표
2017~2018	• 2017년: – 비거주자가 호주 내 자산양도 시 구매자가 자본이득 원천징수하는 제도 도입 – 예산확충 목적으로 고소득자에 2%의 세율로 한시적 추가 과세하는 '예산정비부담금'종료 • 2018년: –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및 세율 적용 소득구간 조정

자료: 1. 호주 국세청, A Brief History of Australia's tax system, 2.3, 2016.
2. 호주 재무부,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economic-roundup-issue-2-2013-2/economic-roundup-issue-2-2013/tax-policy-formulation-in-australia/, 검색일자: 2019.1.29.
3. Richard Eccleston, "The Tax Reform Agenda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013.
4. 김재진, 「Henry Tax Review – Australia's Future Tax System-」, 2013.11.

3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5.3 세액공제'참고.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1. 과세권자

호주의 소득세 과세권자는 연방정부이며, 1942년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 통합 이후 주정부에서는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에서 걷어들인 소득세수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배분한다.[315]

호주 헌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 입법권은 호주 연방정부 의회가 가지며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만 세법 제 ·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상원(senate)이 세법개정을 원하는 경우 하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세법개정이 가능하다.[316]

2. 소득세 법령체계

호주는 영미법계 국가로서 조세법의 법원(法原)은 크게 의회가 입법하는 성문법 형태의 보통법(common law), 판례법(case law), 국세청 지침(practice of Australian Tax Offic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17][318]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는 조세법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세법, 시행령, 판례, 국세청 지침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319] 즉, 호주의 조세법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회가 입법한 법률을 기반으로 법률의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 및 국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판례가 모여 하나의 법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독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와 차이가 있다.[320]

호주의 세법은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세법(Taxation), 부가급여세(Fringe Tax Benefit), 연금(Superannuation), 물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소비세(Excise, 관세포함)로 구분하고 있다(〈표 Ⅱ-1〉 참조).

315) CCH(2018), ¶1-110.
316) CCH(2018), ¶1-020.
317) CCH(2012), ¶1-310.
318) 조세조약의 경우 조약 자체로 법원성이 있지 않으며, 의회가 입법하는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자료: CCH(2018), ¶1-180.)
31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Law/#Law/table-of-contents?category=A, 검색일자: 2019.3.13.
320)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 2012, p.39.

〈표 Ⅱ-1〉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법체계

Principal legislation and Principal regulations
조세법(Taxation)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연금(Superannuation)
물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소비세(Excise (Including Customs, Working Pages and By-laws))
Archived
Other
Amending legislation
Amending regulations
Legislative instruments
Extrinsic materials
Public rulings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s
Cases
Decision impact statements
ATO interpretative decisions
Law administration practice statements
Taxpayer alerts
SMSF Regulator's Bulletins
Other ATO documents
ATO law aids
Edited private advice
Archived document types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Law/#Law/table-of-contents?category=A, 검색일자: 2019. 3. 13.;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 2012, p.40 재인용

조세법에 포함된 법률 대부분은 소득세 과세에 대한 것이며, 소득세 과세 이외에 석유자원 렌트세, 원천징수 가산세, 이자소득 과세, 신탁과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표 Ⅱ-2〉 참조).

조세법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 일반규정, 세율, 조세행정 등으로 나뉘어 각각의 독립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나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법에 정하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 세목별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의 세법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조세법에 포함된 소득세법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판례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2〉 조세법(Taxation)의 구성항목

세법 (Principal legislation)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INCOME TAX(TRANSITIONAL PROVISIONS) ACT 1997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ACT 1953
AUSTRALIAN TAX TREATIES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INCOME TAX RATES ACT 1986
INCOME TAX ACT 1986
INCOME TAX(ATTRIBUTION MANAGED INVESTMENT TRUSTS - OFFSETS) ACT 2016
INCOME TAX(BEARER DEBENTURES) ACT 1971
INCOME TAX(DEFERRED INTEREST SECURITIES) (TAX FILE NUMBER WITHHOLDING TAX) ACT 1991
INCOME TAX(DIVERTED INCOME) ACT 1981
INCOME TAX(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WITHHOLDING TAX) ACT 1974
INCOME TAX(FORMER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 ACT 1994
INCOME TAX(FORMER NON-RESIDENT SUPERANNUATION FUNDS) ACT 1994
INCOME TAX(FUND CONTRIBUTIONS) ACT 1989
INCOME TAX(MANAGED INVESTMENT TRUST TRANSITIONAL) ACT 2008
INCOME TAX(MANAGED INVESTMENT TRUST WITHHOLDING TAX) ACT 2008
INCOME TAX(MINING WITHHOLDING TAX) ACT 1979
INCOME TAX(OFFSHORE BANKING UNITS) (WITHHOLDING TAX RECOUPMENT) ACT 1988
INCOME TAX(SEASONAL LABOUR MOBILITY PROGRAM WITHHOLDING TAX) ACT 2012
INCOME TAX(SECURITIES AND AGREEMENTS) (WITHHOLDING TAX RECOUPMENT) ACT 1986
INCOME TAX(TFN WITHHOLDING TAX (ESS)) ACT 2009
EXCESS EXPLORATION CREDIT TAX ACT 2015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표 Ⅱ-2〉의 계속

PETROLEUM RESOURCE RENT TAX(INTEREST ON UNDERPAYMENTS) ACT 1987
PETROLEUM RESOURCE RENT TAX ASSESSMENT ACT 1987
Petroleum Resource Rent Tax(Imposition - Customs) Act 2012 (19 of 2012)
Petroleum Resource Rent Tax(Imposition - Excise) Act 2012 (20 of 2012)
Petroleum Resource Rent Tax(Imposition - General) Act 2012 (21 of 2012)
TAXATION(INTEREST ON NON-RESIDENT TRUST DISTRIBUTIONS) ACT 1990
TAXATION(INTEREST ON OVERPAYMENTS AND EARLY PAYMENTS) ACT 1983
TAXATION(TRUSTEE BENEFICIARY NON-DISCLOSURE TAX) ACT (NO. 1) 2007
TAXATION(TRUSTEE BENEFICIARY NON-DISCLOSURE TAX) ACT (NO. 2) 2007
시행령 (Principal regulation)
INCOME TAX ASSESSMENT(1936 ACT) REGULATION 2015
INCOME TAX ASSESSMENT REGULATIONS 1997
INCOME TAX(TRANSITIONAL PROVISIONS) REGULATIONS 2010
TAXATION ADMINISTRATION REGULATIONS 2017
TAXATION(INTEREST ON OVERPAYMENTS AND EARLY PAYMENTS) REGULATIONS 2018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Law/#Law/table-of-contents?category=A, 검색일자: 2018. 10. 16.; 안종석(2012), pp. 42~43 재인용

소득과세를 위한 대부분의 사항은 소득세법 1936(Income Tax Assessment 1936, 이하 "소득세법(1936)"), 소득세법 1997(Income Tax Assessment 1997, 이하 "소득세법(1997)"), 소득세율법 1986(Income Tax Rate Act 1986, 이하 "소득세율법(1986)"), 소득세법 1986(Income Tax Act 1986), 이하 "소득세법(1986)"), 조세절차법 1983(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83, 이하 "조세절차법(1983)") 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법(1997)은 1936년 입법된 소득세법(1936)의 빈번한 수정으로 법률의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지자 법률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과거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다시 작성한 것으로 이전의 소득세법(1936)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소득세법(1936)과 소득세법(1997)은 현재 둘 다 유효한 법률이며 과세대상 소득, 각종 공제액 등과 같은 소득과세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321] 소득세법(1997)의 내용 중 소득세법(1936)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붙임표(예, 6-5)로 표시되어 있다.[322]

321) 호주 법률사이트,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282, 검색일자: 2018.12.03.
322) CCH(2018), ¶1-130.

소득세율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율법(198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1986)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323]

「조세절차법(1983)」은 소득세 원천징수(PAYE withholding)나 분할납부, 가산세, 조세불복절차, 기록유지의무, 납부 규정 등 과세행정 및 국세청의 권한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 법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324]

〈표 Ⅱ-3〉 소득세 관련 주요 법령 및 내용

구분	내용
Income Tax Assessment 1936 Income Tax Assessment 1997	과세대상 소득, 각종 공제액 등 소득과세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
Income Tax Rate Act 1986	납세의무자(개인, 법인, 신탁, 연금기금, 인적용역회사(PST) 등)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규정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과세행정 및 국세청의 권한 규정 (구체적으로 원천징수, 분할납부, 이의신청, 기록유지 및 보관의무, 세액납부에 대해 규정)

자료: CCH(2018) ¶1-130, 1-150, 1-170.

3. 과세권 범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호주 거주 여부와 소득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호주 소득세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는데 납세의무자가 호주 거주자인 경우 호주 국내 · 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과세하며, 호주 비거주자인 경우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과 소득세법에서 과세하도록 명시한 소득에 과세한다.[325]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소득세 과세권이 미치는 호주의 지정학적 범위에 뉴사우즈웨일즈, 빅토리아, 퀸즈랜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태즈매니아의 6개 주(states)와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Australia Capital Territory), 노던테리토리(Nothern Territory)인 2개의 본토 내 지역(internal territories), 노포크섬(Norfolk Island), 애쉬모어 및 카르티에 제도(the Territory of Ashmore and Cartier Islands), 크리스마스제도 등과 같은 본토 외 지역

323) CCH(2018), ¶1-130.
324) CCH(2018), ¶1-170.
325) ITAA 1997, s 6-5, 6-10.

(external territories) 및 호주 경제구역(Australia's exclusive economic zone)에 속하는 각종 섬 지역을 포함한다.[326]

4. 열거주의・포괄주의

호주는 열거주의(schedular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포괄주의(comprehensive system)를 채택하여 세법에서 비과세하도록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5. 과세기간

호주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과세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호주 국세청이 허용하는 경우 회계기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국세청은 사업체 성격과 변경하려고 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을 고려하여 대체과세기간(substituted accounting periods)을 허용한다. 단, 과세기간 변경 시 개인납세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은 최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의 마지막 날까지 허용한다.[327]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및 과세 범위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호주 거주자 및 호주에 소득이 있는 국외 거주자이다. 통상적으로 거주자라 하면 영구적으로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체류일수, 연금 납부 여부와 같은 다른 기준에 따라서도 거주자로 결정될 수 있다. 즉, 호주 국적이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호주 원천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 단,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91일 이상 해외에서 특정단체[328]에 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 소득에 비과세하며, 이민법

326) CCH(2018), ¶21-000.
32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Tax-professionals/Prepare-and-lodge/Tax-agent-lodgment-program/Tax-returns-by-client-type/Substituted-accounting-periods/, 검색일자: 2019.3.8.

(Migration Act 1958)에 따라 임시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일시적 거주자(temporary resident)의 경우 국내소득에만 과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329]

2. 거주자 판정 요건

호주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판정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는 호주 이민국 규정에 따른 거주자 기준과 상이하여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호주 입국 비자가 있는 경우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될 수 있다.[330]

「소득세법(1936)」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거주/주소지, 체류일수, 퇴직연금 납입 여부의 3가지 기준을 통해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호주 거주자로 판정한다.

거주/주소 기준에 따르면 호주에 살고 있거나, 호주에 주소(domicile)가 있는 자로 국세청장이 해외에 거주지가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체류일 기준에 따르면 1년 중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183일 이상 호주에 거주한 경우 거주자로 보나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해외에 주거주지가 있고, 호주에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인정된 자는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준에 따르면 호주 「퇴직연금법」(Superannuation Act 1976 또는 Superannuation Act 1990)을 적용받는 자 또는 퇴직연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 및 16세 미만 자녀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한다.

〈표 Ⅲ-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구분	내용
(1) 거주/주소 기준	호주에 살고 있는 자, 호주에 주소(domicile)가 있는 자로 국세청장이 해외에 거주지가 없다고 판정하는 납세자
(2) 체류일 기준	1년 중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183일 이상 호주에 거주한 자(국세청장이 해외에 주거주지가 있고, 호주에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인정한 자는 제외)
(3) 퇴직연금 기준	호주 「퇴직연금법(Superannuation Act 1976 또는 Superannuation Act 1990)」을 적용받는 자 또는 퇴직연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 및 16세 미만 자녀

자료: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s 6(1).

328) 개발도상국 원조기구, 공공재난 원조기구, 파견부대에 고용된 경우를 말함(자료: ITAA 1936, s 23AG, CCH(2018), ¶10-860 재인용)
329) CCH(2018), ¶21-000.
33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Work-out-your-tax-residency/, 검색일자: 2018.12.03.

국세청은 거주자 판정 시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한 세법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세기준은 ① 거주 기준(residence test) ② 주소 기준(domicile test) ③ 183일 체류 기준(183 day test) ④ 퇴직연금 납입 기준(super-annuation test)이며, 이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본다. 우선적으로 거주 기준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며,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거주자 판정기준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거주 기준[331]

거주(residence) 기준은 '거주'라는 통상적 의미[332]를 고려할 때 호주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거주 여부 판정 시 국적은 중요 고려요소가 아니며, 체류목적, 사업 및 고용 요인, 가족 동행 여부, 보유자산의 위치, 생활기반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거주 여부를 판정한다.

체류목적이 근로 또는 교육인 경우에도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사업 · 근로의 사유로 호주에 입국할 때 가족이 함께 왔는지 여부도 호주 거주 여부 판정 시 고려한다. 보통 사업 · 근로의 사유로 가족 모두가 함께 호주에 입국한 경우에는 호주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며, 가족 없이 혼자 입국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에 의해 거주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호주 거주자로 본다. 또한, 호주에 집, 자동차, 가구, 은행계좌를 소유하거나 호주에서 고지서 납부 및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에 의해 호주에 거주 목적이 있다고 판정될 수 있다. 이외에 지역 스포츠클럽 가입, 기타 지역 동아리 가입, 호주에서 우편물 수령, 자녀의 학교등록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호주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도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

호주 거주 여부 판정 시 체류기간도 함께 고려하는데 위에 기술한 기준에 따라 호주 거주 목적이 있고, 호주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 거주자로 판정된다. 거주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거주자 판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

33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Work-out-your-tax-residency/Residency-tests/, 검색일자: 2018.12.3.

332) '거주'의 사전적 의미는 '영구적 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호주에 주소(usual adobe)를 두거나, 특정장소에 사는 것이라 정의됨(자료: Shorter Oxford Dictionary, 호주 국세청 'Residency - the resides test' 인용)

〈보유 자산의 위치를 고려한 거주자 판정 사례〉

사실관계
Markus는 호주에 체류 의도가 없다고 하였으나, 호주에 은행계좌 보유, 12개월 동안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함

분석
Markus는 체류 의도가 없다고 하였으나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을 고려했을 때 호주에 장시간 동안 계속 체류할 의도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은 Markus를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함

〈체류의도를 고려한 거주자 판정 사례〉

사실관계
Juliette는 향후 10년간 호주에 거주할 것이라 진술하였으나 방문비자만 허용되어 실질적으로는 호주에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게 됨

분석
과세관청은 Juliette를 일시적인 단기 체류로 보아 Juliette를 비거주자로 판정함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resides-test/, 검색일자: 2018.12.4.

나. 주소 기준[333]

주소(domicile) 기준은 호주에 주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주소 기준은 주로 호주 거주자가 해외 취업의 사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호주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판정할 때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상황에서 주소 기준을 적용한다.

- 거주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 호주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지를 두고 상당기간 출국해 있는 경우
- 호주에서 상당기간 거주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 호주에 가족, 금융계좌가 남아있는 것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호주에 없는 경우

33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domicile-test/, 검색일자: 2018.12.4.

주소 기준은 2단계로 구성되며, 가장 중요한 판정요인은 해외에 영구적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가 있는지 여부이다. 1단계에서는 단순히 호주에 법률상 주소지(domicile)가 있는지 여부만 판정하며, 2단계에서는 호주에 법률상 주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가 영구적 거주지인지를 판정한다.

호주의 법률상 주소지는 본적(domicile by origin), 선택주소(domicile by choice), 법정주소(domicile by operation of law)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주소 기준 적용 시 이를 인용한다.[334] 본적은 출생 시 부여되는 주소를 말하며, 선택주소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는 성인이 영구적으로 변경한 거주지를 말하고, 법정주소는 법에 의해 정해진 주소로 미성년자 및 기혼여성의 주소를 말한다.

영구적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에서 "영구적(permanent)"이란 영원히 지속되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의 대조되는 의미로 "거주지(place of abode)"는 사람이 직접 생활하고 밤에 잠을 자는 물리적 장소로 볼 수 있다. 즉, 영구적 거주지는 일정기간 동안 사람이 직접 생활하고 잠을 자는 물리적 장소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구적 거주지가 호주에 있는 경우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되며, 해외에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된다.

영구적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 ① 해외 체류예정 기간 및 실제 체류기간 ② 해외로의 출국이 일시적인지 또는 호주로 귀국할 것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③ 해외에 납세자 또는 납세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주지(dwelling place)가 있는지 여부 ④ 해외체류로 호주에서의 거주지 처분 여부 ⑤ 해외 생활의 지속성 및 계속성이 있는지 여부(예, 해외 체류기간 중 호주 체류기간) ⑥ 호주에 생활 기반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예, 호주에 계좌 존재 여부, 가족 존재 여부 등)와 같은 다른 요소도 고려한다.[335] 하나의 요인만으로 거주자를 판정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거주자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호주 출국 시 호주에 돌아올 의도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에 의해 국세청장이 해외에 거주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 한 호주 거주자로 판정된다. 반면 호주 출국 시 호주로 돌아올 기한을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거주지를 둔 경우 해당 납세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보통 2년으로 본다. 반면, 해외 체류기간이 길고 생활하는 물리적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계속

334) 호주 국세청, Taxation Ruling, IT 2650, *Income tax: residency - permanent place of abode outside Australia,* 8.

335) 호주 국세청, Taxation Ruling, IT 2650, *Income tax: residency - permanent place of abode outside Australia,* 23.

이주하거나 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고 보아 주소 기준에 따라 호주 거주자로 판정한다.

사실관계 • A는 2년 동안 업무경험 확대 목적으로 해외 파견근무를 가게 되었으며, 2년 근무 후 호주로 돌아올 계획임 • 파견 초기에는 아내, 자식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였으나, 자식은 학업 사유로 호주로 복귀함 • A는 연말 연휴는 호주에서 보냈고,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호주 내 주택임대 및 호주 계좌를 계속 유지함 • 해외 근무로 받은 급여로 해외에 투자는 하지 않았으며, 해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호주 내 투자 목적으로 송금함 분석 A는 "거주"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했을 때는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거주의 확장된 의미인 주소 기준 적용 시 거주자로 간주됨
사실관계 • B는 최소 3~4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 임무로 인해 해외로 파견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동행함 • 예상과 달리 실제 프로젝트는 2년만에 종료되었고, 프로젝트 종료 후 호주로 복귀하였으며, B는 파견 당시부터 프로젝트 종료 시 호주로 복귀할 계획이었음 • 파견기간 동안 호주에 임대한 주택을 계속 유지하였고, 해외에서는 초기에는 호텔에 거주하다 나중에는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를 렌트하여 그곳에서 거주함 분석 B는 해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집을 렌트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영구적 거주지 개념을 적용했을 때 거주자로 간주됨

자료: 호주 국세청, IT 2650 '*Income tax: residency - permanent place of abode outside Australia*', 31~42,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ITR/IT2650/NAT/ATO/00001, 검색일자: 2018.12.4.

다. 183일 체류 기준[336]

183일 체류기준(183 day test)은 과세연도 중 호주에서 계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외 국적을 가진 자가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 호주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했던 주소 기준(domicile test)에서는 영구적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사항이었던 반면, 183일 체류 기준에서는 일상적 거주지(usual place of abode)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 거주지(usual place of abode)에서 "일상적(usual)"은 현재의(current), 보통의

336)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183-day-test/, 검색일자: 2018.12.4.

(ordinary), 습관적인(customary)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상적 거주지란 보통 한 나라에 체류하면서 거주하는 장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구적 거주지와 다르게 고정된 장소일 필요는 없으나 여행자들이 하루, 주간, 월간 숙박하는 장소와는 대조적인 거주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183일 체류기준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중에 호주에 183일 이상 체류하였고, 체류기간 동안 호주에 일상적 거주지를 가진 경우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 체류기간은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과세연도 기간 중 총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예외규정을 두어 183일 이상 호주에 체류하였더라도 해외에 주거주지가 있고, 호주에 체류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183일 미만 호주에 체류하였더라도 가족, 사업, 생활기반 등을 고려했을 때 거주자와 동일하게 생활하였다면 거주자로 판정된다.

사실관계
- Lars는 뮌헨에 살고 있으며, 호주의 12개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음
- 12개월 이후에는 뮌헨으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계속할 예정이며,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의 집은 임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예정임
- Lars는 호주 도착 후 12개월 동안 5개의 다른 직업을 가지며 호주 전역을 여행하였고, 한 장소에 2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음
- Lars는 12개월 중 7개월만 일을 하였으며, 주로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함

분석

Lars는 호주에 6개월 이상 호주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체류의사가 없고, 일상적 거주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판정함

사실관계
- Farriss는 엔지니어로 호주 엔지니어 전문가협회 회원이 됨
- 사업 마무리를 위해 영국에 복귀하여 약 7개월 정도 머물러야 함
- 영국에서는 영국 대학에 재학 중인 두 자녀와 함께 머무름
- Farriss의 주요 은행계좌는 호주에 있으며, 호주에 돌아온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함

분석

Farriss는 호주에 183일 미만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생활기반 요소를 고려했을 때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함

자료: 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183-day-test/, 검색일자: 2018.12.4.
2. 호주 국세청, IT 2681, Example 3,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locid=ITR/IT2681/NAT/ATO, 검색일자: 2018.12.4.

라. 퇴직연금 기준[337]

퇴직연금 기준(superannuation test)은 호주 외무부에 종사하는 외교관 및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호주 거주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퇴직연금 기준은 호주의 공무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여부로 호주 거주자를 판정한다. 호주의 공무원 퇴직연금 중 '공공부문 연금제도(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 PSS)' 또는 '연방연금제도(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 CSS)'에 가입한 자는 퇴직연금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공공부문 연금축적제도(Public Sector Superannuation Accumulation Plan; PSSAP)'에 가입한 자는 퇴직연금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338] 또한, 퇴직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호주 거주자로 판명된 자의 배우자와 16세 미만 자녀도 호주 거주자로 본다.

단, 호주 공무원 퇴직연금에 가입된 자라 하더라도 더 이상 호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 판정 사례〉

사실관계
- 외교통상부의 Delphi 장관은 태국에 3년간 파견근무하였으며, 호주의 연방연금(CSS)에 가입되어 있음

분석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퇴직연금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함

사실관계
- John은 호주 퇴직연금인 연방연금(CSS) 및 공적연금(P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에 10년간 거주함
- John의 아내는 호주 공무원이며, 연방연금(CSS)에 가입되어 있음

33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superannuation-test/, 검색일자: 2019.1.4.

338) 호주의 공무원 연금은 공공부문 연금제도(PSS), 연방연금제도(CSS), 공공부문 연금축적제도(PSSAP)으로 구분된다. 연방연금제도(CSS)는 1990년 7월 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 한해 가입이 허용되며, 공공부문 연금제도(PSS)는 2005년 7월 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공무원은 공공부문 연금축적제도(PSSAP)에 가입이 허용되며, 각 연금제도별로 연금부담률에 차이가 있다.
(자료: 호주 재무부, https://www.finance.gov.au/superannuation/arrangements-for-australian-government-employees/, 검색일자: 2019.1.4.)

분석
John의 아내가 호주 공무원이며, 연방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배우자도 거주자로 간주하는 퇴직연금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함

〈비거주자 판정 사례〉

사실관계
- Peter는 은퇴한 공무원이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 은퇴 후 가족 간호를 위해 3년간 해외로 이주함

분석
Peter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하므로 비거주자로 판정

사실관계
- Rachel은 공공부문 연금축적제도(PSSAP)에 가입한 자로 해외로 파견됨
- Rachel은 거주 기준, 주소 기준, 183일 체류기준에 따르면 호주 거주자가 아님

분석
Rachel은 공공부문 연금축적제도(PSSAP)에 가입한 자로 퇴직연금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정됨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superannuation-test/, 검색일자: 2019.1.4.

마. 거주자 판정기준 요약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을 요약하면 〈표 Ⅲ-2〉과 같다. 호주는 거주자 판정 시 모든 납세자에 대해 거주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주소 기준, 183일 체류 기준, 퇴직연금 납입기준을 통해 거주자를 판정한다.

거주 기준은 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호주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체류목적, 가족 동행 여부, 호주에 주택 및 금융계좌 등과 같은 생활기반 요인이 있는지 등을 판정해 거주 여부를 결정한다.

주소 기준의 경우 호주 국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주로 호주 국적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외에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주소 기준에서 고려하는 요인으로 체류기간, 체류기간의 연속성, 해외에 거주지 구입 여부, 해외 체류로 호주의 거주지 처분 여

부 등으로 해외로 출국한 자가 호주로 귀국할 시점이 명확하고, 해외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호주에 가족 또는 계좌 등 생활기반을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

183일 테스트 기준은 해외 국적을 가진 자가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데 활용되며, 과세연도 기간 중 호주에 183일 이상 일상적 거주지를 갖고 머무른 경우 거주자로 본다. 일상적 거주지는 여행자들이 하루, 주간, 월간 머무르는 장소와 대조되는 장소를 말한다.

퇴직연금 기준은 외부무 종사직원의 해외 파견근무 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호주의 공무원 연금 중 공공부문연금(PSS), 연방연금제도(CSS)에 가입하고 퇴직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된다.

〈표 Ⅲ-2〉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요약

거주자 판정기준	목적	주요 판정기준
거주 기준	거주자 판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호주 체류목적, 해외에 가족 동행 여부, 호주에 주택구입, 계좌보유 등 생활기반 요인이 있는지 여부로 거주자 판정
주소 기준	호주 국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함	해외로 출국한 자가 호주로 귀국할 시점이 명확하고, 해외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호주에 가족, 계좌 등 생활기반을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183일 체류 기준	해외 국적을 가진 자가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함	호주에 과세연도 기간 중 183일 이상 일시적 거주지에 머무른 경우 거주자로 판정 (단, 183일 거주만으로 거주자로 판정하지 않으며,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함)
퇴직연금 기준	외무부 종사 직원의 해외파견 근무 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함	호주의 공무원 연금 중 공적부문 연금(PSS), 연방연금제도(CSS)에 가입하고 퇴직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1)]

주: 1) 2005년 7월 이후 신규공무원은 공적부문 연금축적계획(PSSAP)에 가입하고 퇴직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기준 이외의 기준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 검색일자: 2019.1.4.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납세자 단위 : 개인, 가족 단위 과세

호주는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이 가족단위로 소득을 합산신고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신고제도만 운영하고 있다. 단, 특정 공제항목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비용을 고려하고 있다.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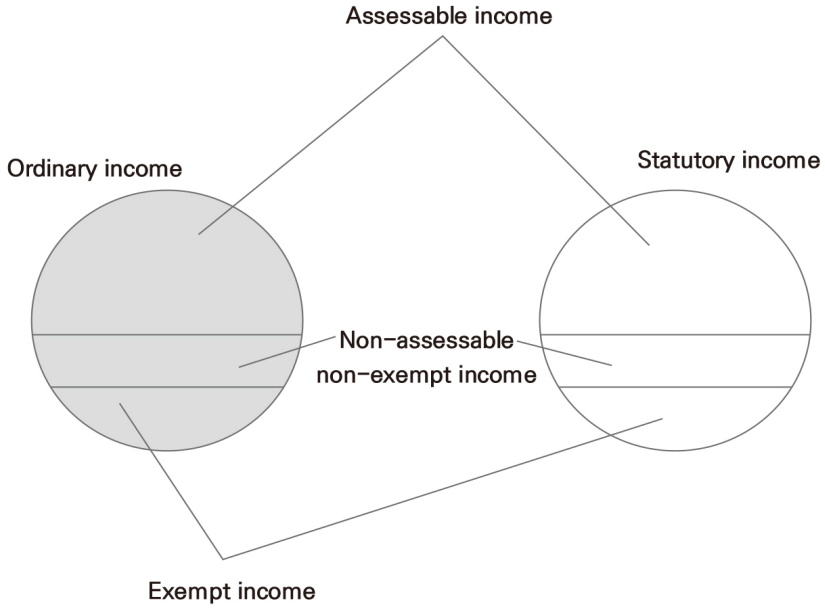
1. 종합과세대상 소득

호주는 포괄주의 과세체계로 과세목적상 소득의 정의에 부합하고, 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고 볼 수 있다. 호주의 과세목적상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 면제소득(exempt income), 비과세-비면제소득(non-assessable income non-exempt income)으로 구분하고 있다.[339] ([그림 Ⅳ-1] 참조)

- **과세대상 소득** :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개념인 통상소득(ordinary income)과 소득세법에 과세하도록 명시된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으로 구분된다.[340]
- **면제소득** :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특정 기관에 귀속되어 면제되는 소득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상관없이 소득 특성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으로 구분된다.[341]
- **비과세-비면제소득** :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면제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다.[342] 즉,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손실금액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343]

339) ITAA 1997, s 6-1.
340) ITAA 1997, s 6-1.
341) ITAA 1997, s 11-1.
342) ITAA 1997, s 6-23.
343) CCH(2018), ¶10-890.

[그림 Ⅳ-1]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정의



자료: ITAA 1977, s 6-1

가. 종합소득으로 포함하는 기준

1) 통상소득

호주 소득세법(1997)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을 통상소득(ordinary income)과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통상소득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개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344] 다만, 과거 판례를 통해 통상소득으로 보는 몇 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345]

판례에서는 ① 주기적, 반복적, 규칙적으로 얻는 소득 ②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③ 취미가 아닌 사업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소득[346] ④ 자본에 투자하고 얻는 수익소득

344) ITAA 1997, s 6-5(1).
345) CCH(2018), ¶10-010.
346) 호주 국세청은 2017년 4월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단순 취미 또는 재미로 하는 활동이 아닌 이상 통상소득으로 본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공유경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득은 통상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ATO fact sheet, *The Sharing economy and tax*, 2017; CCH(2018), ¶10-055 인용.

⑤ 불법행위로 얻는 소득[347] ⑥ 물물교환으로 얻는 소득 등을 통상소득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주기적 · 반복적 · 규칙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항상 통상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주기적 · 반복적 ·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예로, 개인 소득의 손실을 보상하는 목적의 보상금 수령액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상소득에 포함된다.[348]

또한, 도박상금, 메달·트로피 수령으로 얻은 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도박상금의 경우 도박을 소득창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금을 통상소득으로 보며[349], 메달·트로피 수령으로 얻은 소득 또한 상을 받기 위해 라디오나 TV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출연한 경우 또는 본인의 주 업무와 관련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350] 해당 소득을 통상소득에 포함한다.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주기적 · 반복적 · 규칙적으로 소득을 얻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다면 모두 통상소득에 포함된다.

자본에 투자하고 얻은 대표적인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으며 이들 소득은 통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별도로 비과세하도록 명시하지 않는 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예, 마약거래, 내부거래 등)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체계적으로 불법활동에 종사하고, 불법활동이 수익창출을 위해 주기적 · 반복적으로 수행된 경우 불법활동으로 얻은 소득도 통상소득에 포함한다.[351]

2) 법정소득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은 통상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소득세법(1936)과 소득세법(1997)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352] 주요 법정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회보장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료소득, 자본이득, 퇴직연금 등이 있으며, 이들 소득 중 일부는 통상소득에 해당되면서도 법정소득에 포함된다. 호주의「소득세법 (1997)」제10-5조에

347) 호주 국세청, Tax Ruling 93/25.
348) CCH(2018), ¶10-010.
349) CCH(2018), ¶10-450.
350) 예로, 작가가 자신의 작품으로 작가상을 수상하거나,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 선수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자료: CCH(2018), ¶10-440.)
351) 호주 국세청, Tax Ruling 93/25.
352) ITAA 1997, s 6-10.

서는 다양한 과세대상 소득이 정의되어 있다.[353]

따라서 호주에서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소득금액 외에 판례에 따라 납세자가 수령하는 금액 중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소득세법 및 판례에 따른 주요 과세대상 소득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종합소득 구성 소득 종류

1) 근로소득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이사보수(director's fee), 휴가수당, 성과급과 같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 금액을 말한다.[354]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지급받는 보상금도 근로소득으로 본다.[355]

2) 사업소득

통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사업 활동은 전문직(profession), 판매(trade), 성직자(vocation or calling), 고용(employment)활동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활동은 사업 활동에서 제외된다.[356] 통상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한 건의 거래라도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해당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본다.[357] 또한, 사업 활동과 연관되어 주기적으로 받는 포상금 및 보조금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358]

3) 사회보장금 및 연금

정부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사회보장금 및 「퇴역군인보장법(Veterans Entitlement Act 1986)」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과세대상 사회보장금으로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 사별수당(bereavement or partner allowance), 학생보조금(austudy allowance),

353) ITAA 1997, s 10-5.
354) ITAA 1936, s 26(e).
355) ITAA 1936, s 102AF (1).
356) ITAA 1997, s 995-1.
357) CCH(2018), ¶10-112.
358) ITAA 1997, s 15-10.

구직보조금(new start allowance), 병가수당(sickness allowance) 등이 있으며[359], 호주 소득세법에 면세소득(exempt income)으로 규정한 경우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360]

4) 자본이득

자본이득은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자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또한, 자산의 유실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보상금액이 자산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에도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361] 이외에 자본이득 과세대상 거래는 「소득세법(1997)」 제104-5조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1997)상 자본이득 과세대상 자산은 '각종 자산 및 영업권, 지분과 같은 법적 권리'라 정의하고 있으며, 예시로 토지 및 건물, 기업의 주식, 신탁의 지분, 옵션, 채무발생금액, 계약에 대한 권리, 외국화폐를 제시하고 있다.[362] 국세청 발표자료에서는 자본이득이 과세되는 자산으로 부동산, 주식, 투자펀드 지분, 암호화폐(crypto-currency), 수집품(collectables), 개인사용자산을 열거하고 있다.[363] 이 중 수집품과 개인사용자산의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규정이 존재한다.[364]

수집품에는 미술작품, 보석, 골동품, 주화, 희귀한 책·대본, 우표 등의 자산과 이들 자산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구입가격이 500호주달러 미만인 수집품은 자본이득에 비과세한다. 또한, 수집품의 자본이득은 수집품 양도로 발생한 자본손실과만 상계가 가능하다.[365]

개인사용자산은 수집품과 달리 본인이 사용하는 자산으로 구입가격이 1만호주달러 미만인 개인사용 물품은 자본이득에 비과세한다. 사업 활동 또는 소득창출 외의 목적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채금액도 자본이득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가 자식의 주택구입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해당 금액은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된다.[366]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자본이득은 보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제비용, 손실금액, 자본이득 공제액을 차감한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이다.

359) CCH(2018), ¶10-195.
360) 구체적인 면세소득은 본 보고서 〈표 Ⅳ-1〉참고.
361) CCH(2018), ¶11-240.
362) ITAA 1997, s 108.5.
363) ATO(2018), p. 254.
364) CCH(2018), ¶11-380.
365) CCH(2018), ¶11-390.
366) CCH(2018), ¶11-400.

취득가액 및 제비용은 자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인・평가사・회계사・법적자문가 등에게 지급한 서비스 비용, 인지세, 이전비용 등과 같은 부수비용, 자산취득을 위해 자금차입을 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 및 자산의 자본적 지출 비용 등 자산을 소유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367]

자본손실 공제는 당해 연도의 자본손실을 우선 공제하고, 작년에 미공제한 자본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수집품 및 개인사용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자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서로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368]

자본이득 공제액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개인납세자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제비용과 당해 연도 및 직전 연도의 손실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만큼 공제를 허용한다.[369] 과세대상 자본이득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제비용을 차감
2단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자본손실을 차감
3단계: 당해 연도의 자본이득과 자본손실 통산 후에도 자본이득이 더 큰 경우, 작년에 미공제한 자본손실을 차감
4단계: 1년 이상 보유한 자산 처분 시 취득가액 및 제비용,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 자본손실금액까지 차감한 금액의 50%만큼 공제

단, 특정 자산의 경우 자본이득에 비과세하는데 대표적인 항목으로 자동차・오토바이, 취득가액이 500호주달러 미만인 수집품, 취득가액이 1천호주달러 미만인 개인사용자산, 면제소득 및 비과세-비면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단, 이중과세 방지목적으로 '비과세-비면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한 자산은 자본이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370]

또한, 주거주지(main residence)를 처분한 경우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는데 주거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주기간, 납세자 가족의 거주장소, 납세자의 물품이 주거주지에 있는지 여부, 납세자가 우편물을 받는 주소, 전화・가스・전기 등 사용 여부, 거주지로 사용할 의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371]

367) CCH(2018), ¶11-550.
368) CCH(2018), ¶11-030, 11-390, 11-400.
369) CCH(2018), ¶11-036.
370) CCH(2018), ¶11-640.

5) 이자소득

거주자가 지급받은 각종 이자소득은 소득 원천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해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한다.[372]

6) 배당소득

기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또한, 상환우선주의 가치를 초과하는 기업의 상환금액 또한 배당소득에 포함한다.[373] 거주자가 호주 기업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7) 임대료소득

임차계약에 따라 집, 설비 등을 임대하고 얻는 소득을 임대소득으로 본다. 공동소유의 자산을 임대한 경우 법적 지분에 따른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단, '홈스테이'와 같이 소유주가 자신의 거주지를 세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음식, 전기 등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374]

8) 사용료소득(royalty)

사용료는 통상적인 의미의 사용료와 법적 정의에 따른 사용료로 구분된다. 통상적인 의미의 사용료는 사전적 의미에 따른 사용료를 말하며, 소득세 과세목적상 통상적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광산 임대자가 광산 채굴권리에 대한 대가로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 특허권 소유자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작가, 편집자, 작곡가 등에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71) CCH(2018), ¶11-730.
372) CCH(2018), ¶10-470.
373) ITAA 1936, s 6(1).
374) 호주 국세청, IT 2167 및 ATO Interpretative Decision ID 2001/381.

법적 정의에 따른 사용료는 「소득세법(1936)」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로 아래 ①~⑧과 같다. 대표적으로 노하우(know-how)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에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어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① 저작권, 특허(patent), 디자인 또는 설계도, 비밀 공식·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의 권리에 대한 대가
② 산업, 상업 또는 과학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③ 과학, 기술, 산업, 상업 관련 지식 및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
④ ①~③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보조적인 활동 제공에 대한 대가
⑤ 위성, 케이블, 광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시각적 이미지, 소리 등을 전송받을 권리에 대한 대가
⑥ 위성, 케이블, 광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통해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에 사용할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를 전송받을 권리에 대한 대가
⑦ 영화 필름,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방송하기 위한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용 권리에 대한 대가
⑧ 주파수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호주 예규(IT 2660)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저작권, 자산, 지식 등의 사용 및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권리가 주어진 경우 노하우의 제공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한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않는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모두 이전하고 받는 대가,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사용만 허용되는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 소프트웨어 생성 및 수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본다.[375]

9)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용주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종료지급금(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 정리해고지급금(genuine redundancy payment), 조기퇴직수당(early

375) CCH(2018), ¶10-510.

retirement scheme payment)과 근무기간 동안 고용주 및 납세자가 불입한 퇴직연금(superannu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종료지급금은 고용기간 종료 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정리해고지급금은 회사의 퇴직통보로 해고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조기퇴직수당은 '조기퇴직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이행으로 조기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고용종료지급금은 건강 사유로 원래 퇴직해야 하는 날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조기퇴직일수에 해당하는 고용종료지급금과 1983년 7월 1일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비과세-비면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정리해고지급금과 조기퇴직수당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기준금액[376]까지는 비과세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377]

퇴직연금의 경우 호주는 퇴직연금 납입단계에서 과세하고,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에서 비과세하는 'TEE(과세-면세-면세)' 형태의 과세제도를 운영 중이다. 퇴직연금 불입액은 고용주 불입분과 근로자 불입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자 불입분은 세전소득 중 일부를 사전에 불입하도록 약정한다. 세전소득에서 불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퇴직연금 납입액은 15%의 세율로 과세한다.

세후소득 중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불입이 가능하나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는 경우 초과 납입액의 미인출 시 추가 32%의 세율로 과세된다.[378]

수령단계에서는 수령나이 및 수령형태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데 60세 이상이 되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하지만 60세 미만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55세 미만인지 여부 및 수령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60세 미만에 연금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반면 일시금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거나 분류과세된다.

퇴직연금 과세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Ⅳ장 과세대상 소득 종류'의 '2. 분류과세대상 소득'에 기술되어 있다.

376) 기준금액은 '기초금액(base amount) + (근로소득 기준금액(service amount) × 근속연수)'의 식으로 계산하며, 2018/19년 기준 기초금액은 10,399호주달러,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2018/19년 기준 5,200호주달러로 이 금액들은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된다(자료: CCH(2018), 14-700, 14-710.).

377) CCH(2018), ¶14-600 - 14-710.

37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growing-your-super/adding-to-your-super/tax-on-contributions/, 검색일자: 2019.3.14.

10) 기타[379]

기타 소득의 과세대상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보험금 수령액: 사망, 사고, 질병, 장애 또는 몰수, 권리 박탈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본수령액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 보상금(recoupment and repayment):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보상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또한, 리베이트 금액 또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 위자료 지급액: 위자료 지급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나 세부담 회피목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분할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위자료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 각종 상금: 겜블링, 베팅 상금 또는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나 겜블링, 베팅, 복권 등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다. 면세소득

면세소득(exempt income)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호주 「소득세법(1997)」 제1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득 중 주요 면세소득으로 특정 이자 · 배당 소득, 정부 또는 학교가 지급하는 장학금 및 교육 보조금, 정부가 지급하는 자녀 지원금, 부가급여세가 비과세되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 및 소액의 비현금성 부가급여, 호주 장관이 수여하는 상금, 상해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있다(〈표 Ⅳ-1〉 참조).

〈표 Ⅳ-1〉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의 주요 면세소득

구분	면세소득	관련 조문
투자소득	소규모(small) 신용협동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ITAA 1936 23G
	중소기업 투자펀드인 'pooled development fund'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	ITAA 1936 124ZM
	중소기업 투자펀드인 'pooled development fund'에 투자한 지분 처분이득	ITAA 1936 124ZN

379) Tom Toryanic, "Country Analysis – Individual Taxation, Australia," 1.3., IBFD.; CCH(2018), ¶10-260

〈표 Ⅳ-1〉의 계속

구분	면세소득	관련 조문
교육 보조금	전일제 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scholarship) 및 학비보조금 (bursary), 교육지원금(educational assistance)	ITAA 1997 51-10
	Commonwealth Trade Learning Scholarship, Endeavour Awards, Australian Apprenticeships Incentives Program 등 법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장학금	ITAA 1997 51-10
자녀관련 보조금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자녀관련 보조금 - 자녀장려금(child card subsidy) -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 유산된 아기에 지급하는 보조금 (stillborn baby payment) - 학생인 자녀가 있는 경우 새학기에 지급하는 보조금(back to school bonus) 등	ITAA 1997 52-150
급여소득 관련	정부가 수주한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된 자의 근로소득	ITAA 1936 23AF
	특정 부가급여 - 부가급여세법(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 1986)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급여 - 비현금성 부가급여로 300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	ITAA 1936 23L(1A) ITAA 1936 23L(2)
상금	호주 장관이 수여하는 문학상(Prime Minister's Literary Awards), 역사상(Prime Minister's Prize for Australian History), 과학상(Prime Minister's Prize for Science)을 받고 수령하는 상금	ITAA 1997 51-60
사회 보장금	· 간병인 급여(carer payment) · 장애아동 돌봄비용 지원금(child disability assistance payment) · 재해복구 지원금 · 클린에너지 보조금(clean energy payment) · 경제보장전략(economic social security)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	ITAA 1997 52-10 ITAA 1997 Subdivision 52-A ITAA 1997 51-30 ITAA 1997 52-150 ITAA 1997 53-10

주: 1. 호주는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하나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 표에는 면제소득 중 개인소득에 한정하여 일부 항목을 제시함
자료: ITAA 1997, s 11-15.

라. 비과세-비면세 소득

비과세-비면세 소득(non-assessable income non-exempt income)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면세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다. 즉,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

으면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손실금액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380] 대부분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된 소득이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소득이다.[381]

비과세-비면세 대상 소득항목은 호주 「소득세법(1997)」 제11-5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표 Ⅳ-2〉에 제시된 항목 외에 다양한 비과세-비면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표 Ⅳ-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주요 비과세-비면세 소득

구분	관련 조문
•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alienated personal service income)**	
소득을 수취한 자가 조합(associate)에 지불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지급액	ITAA 1997 85-20(3)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단체의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되지 않는 금액	ITAA 1997 86-30
인적용역단체나 조합이 지급한 금액으로 이미 개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된 금액	ITAA 1997 86-35(1)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이익분배금액으로 이미 개인의 인적 용역소득에 포함된 금액	ITAA 1997 86-35(2)
• **퇴직소득**	
조기퇴직수당(early retirement scheme payment)중 비과세금액	ITAA 1997 83-170
고용종료지급금(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중 비과세금액	ITAA 1997 82-10
정리해고비용(genuine redundancy payment)중 비과세금액	ITAA 1997 83-170
• **연금소득(superannuation)**	
60세 이후 수령하는 퇴직연금	ITAA 1997 301-10
• **배당소득**	
기업분할 배당금(demerger dividends)	ITAA 1936 44-4
과세목적으로 이미 계상된 배당금을 상계하기 위해 나중에 수취하는 배당금	ITAA 1936 109ZC(3)
• **국제소득**	
비거주자에 지급한 이자, 배당, 사용료로 원천징수 과세가 된 금액	ITAA 1936 128D
일시적 거주자의 해외소득	ITAA 1936 768-910
일시적 거주자가 해외거주자에 지급한 이자비용	ITAA 1936 768-980
• **신탁**	
신탁의 수혜자에게 분배할 소득	ITAA 1936 99B
가족신탁분배세(family trust distribution tax) 과세대상 금액	ITAA 1936 Schedule 2F, 271-105(3)

주: 1. 호주는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하나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비과세-비면세 소득 또한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종합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 표에는 개인소득과 관련된 비과세-비면세 소득에 한정하여 일부 항목을 제시함

자료: ITAA 1997, Division 11-B, s 11-55; 안종석(2012), pp. 75~76 일부 인용.

380) CCH, https://iknow.cch.com.au/topic/tlp1703/overview/non-assessable-non-exempt-income, 검색일자: 2018. 12. 13.

381) 안종석(2012), p. 76.

2. 분류과세 대상 소득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382] 또는 퇴직소득 발생 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나타나 자본이득, 퇴직소득의 경우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며, 60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경우에 비과세하고, 조기에 수령하는 경우에만 수령형태에 따라 분류과세 또는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 및 퇴직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 분류과세한다고 보아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호주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고용기간 동안 고용주가 근로자 통상임금의 9.5%를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며[383],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보통 납입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하며, 호주는 일반적으로 납입단계와 운용수익단계에서 과세하고, 수령단계에서 비과세하는 'TTE(과세-과세-면세)' 형태의 과세제도를 운영 중이나 연금 수령시기에 따라'TEE(과세-면세-면세)'형태의 과세제도로 볼 수 있다.[384]

퇴직연금 수령 시 소득세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나이, 수령형태(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에 따라 다르다. 호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는 퇴직연금보험료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 과세하고, 수령단계에서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60세 이후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납입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60세 이전에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는 납입액뿐만 아니라 운용수익 및 연금수령액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과세는 적격납입액(concessional contributions)인지 비적격납입액(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적격납입액은 고용주의 의무납입액과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세전급여에서 불입되는 퇴직연금보험료(salary sacrifice arrangement)이며, 비적격납입액은 근로자의 세후급여에서 불입되는 퇴직연금보험료이다. 적격납입액은 연금운용 회사에서 15%의 세율로 과세하며, 연간 적격납입액 한도인 2만 5천호주달러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납입액은 종합과세한다. 이때 초

382) 부동산, 주식 등 각종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과 동일한 소득임.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이득으로 통칭한다.

383)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보험료 납입률은 2025년 7월 1일부터 현재 9.5%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384) 단, 고용주가 불입하는 금액은 이미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 불입분은 'ETE(면세-과세-면세)'형태로 볼 수 있다.

과금액 미인출 시 추가 32%의 세율이 가산되어 총 47%의 세율로 과세한다.[385] 비적격납입액은 연간 10만호주달러를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386], 비적격납입액은 세후소득에서 납입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입단계에서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2017년 7월 1일부터 총퇴직연금계좌 잔액이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160만호주달러(약 13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비적격납입액의 납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적격납입액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금액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며, 미인출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금액에 47%의 세율로 과세한다.[387]

〈표 Ⅳ-3〉 퇴직연금 납입단계 과세제도

구분	납입자	한도	과세제도	한도금액 초과납입 시
적격 납입액 (세전납입액)	고용주, 근로자	연간 25,000 호주달러	납입액 15%의 세율로 과세	· 초과납입금액에 대해 32%의 세율로 추가과세 (기존 15% + 추가 32%의 세율로 총 47%의 세율로 과세)
비적격 납입액 (세후납입액)	근로자	연간 100,000 호주달러	납입액 과세 안함	· 초과납입금액에 총 47%의 세율로 과세 (기존 15% + 32%의 추가세율)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growing-your-super/adding-to-your-super/tax-on-contributions/, 검색일자: 2019.1.8.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퇴직연금을 60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은 비과세-비면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하지 않는다. 단, 60세 이전에 조기 수령하는 경우 수령나이 및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상이하다.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조기 수령 시 수령나이가 55세에서 59세인 경우 조기 수령금액에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적격납입액의 15%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55세 미만에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하나 적격납입액의 15%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385)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growing-your-super/adding-to-your-super/tax-on-contributions/, 검색일자: 2019.1.8.

386) 2017년 7월 1일부터 비적격납입액 한도가 기존 18만호주달러에서 10만호주달러로 축소되었다. 단,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로 호주의 'Work Test'에 따라 현재 근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기존의 한도규정이 적용된다.

38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your-super/Super-contributions---too-much-can-mean-extra-tax/?page=3#Non_concessional_contributions, 검색일자: 2019.1.8.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조기 수령 시 수령나이가 55세에서 59세인 경우 수령액의 20만 5천호주달러[388]까지는 비과세하며, 20만 5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7%의 세율로 과세한다. 55세 미만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최대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표 Ⅳ-4〉 퇴직연금 수령 시 과세제도[1)]

수혜자 연령	연금		일시금	
	적격납입액	비적격납입액	적격납입액	비적격납입액
60세 이상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55~59세	일반소득세율[3)]	비과세	· 저율과세한도 내(low cap amount)[2)]: 0% · 초과분 : 일반소득세율과 17%중 낮은 세율	비과세
55세 미만	일반소득세율	비과세	일반소득세율 또는 22%중 낮은 세율	비과세

주: 1) 적격납입액(concessional contribution)은 고용주 의무적립금 및 개인이 사전약정한 금액만큼 세전급여에서 불입한 금액으로 퇴직연금계좌 납입 시 15%의 세율로 과세됨. 비적격납입액(non-concessional contribution)은 근로자가 세후급여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금액임
2) 저율과세 한도금액은 2018-19년 기준 20만 5천호주달러임
3) 과거 연금운영회사에서 15%의 세율로 과세한 금액(taxed amount)은 15%의 세액공제 허용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Withdrawing-and-using-your-super/Withdrawing-your-super-and-paying-tax/?anchor=Howtaxappliestoyoursuper, 검색일자: 2019.1.8.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분리과세 대상 소득

호주는 비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사용료(royalty)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반면 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과세한다. 단, 거주자의 경우 이자 · 배당소득과 같은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자번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번호를 소득지급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이자 ·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389)]

388) 2018~19년 기준 금액이며, 이 한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된다.

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체계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390]

종합소득세 계산 시 통상소득(ordinary income)과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을 합한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산출한다. 소득공제는 일반공제(general deduction)와 특별공제(specific deduction)로 구분되는데, 일반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공제는 일반공제 외에 소득세법에서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19~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tax liability)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의료부담금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최종납부세액을 산출한다([그림 Ⅴ-1] 참조).

2. 각종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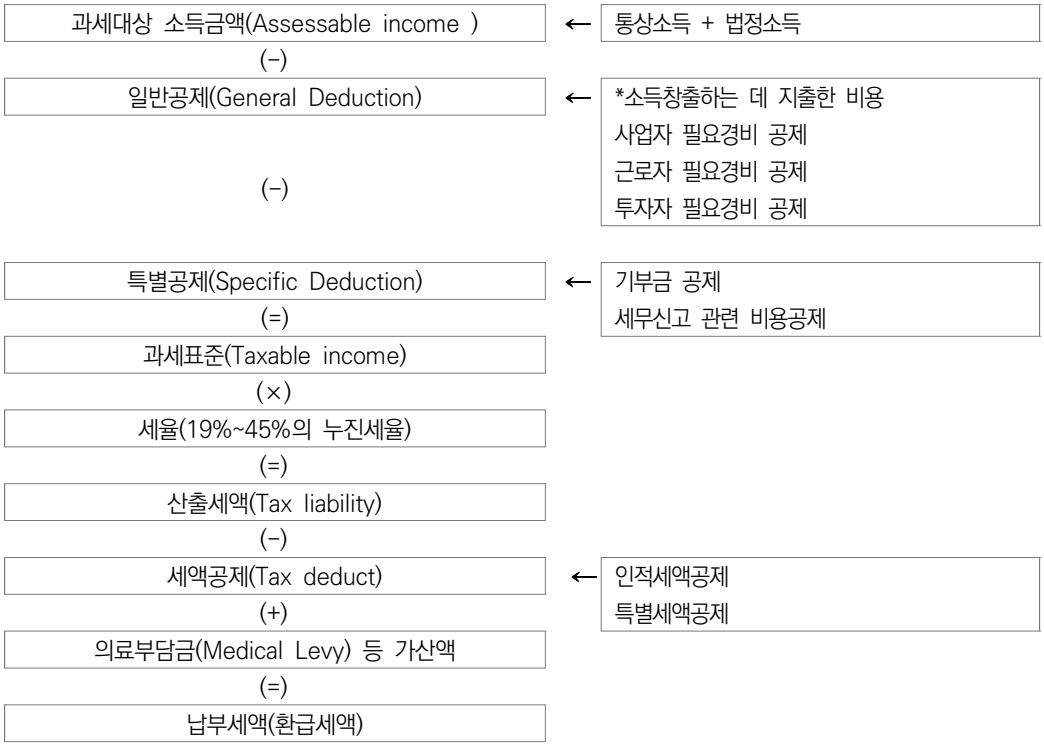
가. 일반소득공제

일반공제(general deduction)는 과세대상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손실금액 또는 소득창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손실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필요경비 공제와 동일한 공제항목이다.[391]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 개인사용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면세소득 및 비과세-비면세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기타 소득세법에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392]

389) Taxation Administration Act, Schedule 1, s 12-140; CCH(2018), 33-030.
390) CCH(2018), ¶1-240.
391) ITAA 1997, s 8-1(1).
392) ITAA 1997, s 8-1(2).

[그림 Ⅴ-1] 연방소득세 과세체계



자료: CCH(2018), ¶2-110 참조하여 저자 작성

소득공제 항목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1997)」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393],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자, 근로자,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을 중점으로 기술하였다.

1) 사업자 필요경비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으로 광고선전비, 접대비, 출장비, 임대료, 사용료 지급액, 자문비(counsel fee),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 등 각종 비용 등이 있다.[394] 반면, 공제

393) 소득공제와 관련 항목(소득공제가 허용되는 항목 또는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통합)과 각 항목의 조문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불가능한 비용으로는 뇌물, 벌금, 마약 · 밀수와 같은 불법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납세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있다.[395]

신규 사업 시작 전 지출한 비용의 경우 과거 판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비용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시작 전 실현가능성 조사를 위한 사전활동인지를 구분하여 사업 시작 전 사전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396] 단, 사전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도 광산과 관련한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지출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였다.[397]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업 시작 전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
- Softwood Pulp & Paper Case가 제지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실현가능성을 연구하고, 테스트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알루미늄 용광로 건설프로젝트 참여의 실현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단,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규직에 지급한 급여는 공제를 허용함)
- 신규사업 시작 전 수출시장 조사를 위한 출장비용도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자료: CCH(2018), ¶16-154.

또한, 지출한 비용이 개인사용 및 사업 수행에 동시에 사용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398]

2) 근로자 필요경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해당 비용을 고용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제공자료 및 판례를 통해 확인한 근로자의 대표적인 업무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다.[399]

- 업무관련 차량비용: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 외 유지비용 등
- 업무관련 출장비용: 숙박비, 식비, 교통비용 등

394) CCH(2018), ¶16-152.
395) CCH(2018), ¶16-152, 16-105,
396) CCH(2018), ¶16-154.
397) CCH(2018), ¶19-050.
39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income-and-deductions-for-business/deductions/, 검색일자: 2018.12.7.
399) ATO(2018), p.94.

- 업무관련 의류 및 세탁비 공제: 업무와 관련한 유니폼, 작업복, 보호장비 등 구매비용, 세탁비, 수선유지비용
- 업무관련 교육비용: 교육으로 인해 업무 관련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또는 이에 따른 소득 증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직 목적의 교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400]
- 기타 업무 관련 비용 공제[401]
  - 업무에 필요한 도구 구매비용(tools of trade): 건축가가 구매한 공구비용, 미용사가 구매한 빗, 펌롤러, 면도기 등의 비용, 기타 엔지니어・화가・의사 등이 구매한 도구비용
  - 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용(equipment): 업무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비용(예, 업무용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등 소액장비, 교사가 수업목적으로 구매한 장비, 경찰이 구매한 스쿠버다이빙용 시계 등, 기자・연예인・스포츠팀 감독이 구매한 TV, DVD플레이어 등의 고액장비로 개인사용 정도에 따라 공제가능금액을 조정함)
  - 업무관련 서적 구매비용
  - 광고비, 증정품 구매비용: 부동산업자가 광고 및 증정품 제공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 식사비, 스포츠경기 관람비용, 관광비용 등이 포함되며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공제를 허용함
  - 전화비, 질병보험료, 납세관련 비용(예, 세무사 수수료), 비서 고용비용 등
- 업무 관련 특정자산 상각비용 공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공제를 허용함[402]

3) 투자자 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투자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수수료, 투자포트폴리오 변경에 관한 전문가 자문비용[403], 투자목적의 자산 구입으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투자 관련 저널 구독비용의 공제를 허용한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404]

400) ATO(2018), p.108.
401) CCH(2018), ¶16-170.
402) CCH(2018), ¶17-010.
403) 투자자문비의 경우 새로운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자문을 한 비용은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나 기존에 있는 투자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자문비용은 공제를 허용한다(자료: CCH(2018), ¶16-660.).

나.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specific deduction)는 소득창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일반공제 항목 외에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405] 특정 지출액은 일반공제 및 특별공제에 해당될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이중공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공제와 특별공제 중 보다 더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를 한다.[406] 예를 들면, 대손상각비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면서 동시에 「소득세법(1997)」 제25-35조에 소득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득창출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대손인 경우 일반공제로 분류하여 소득공제한다.

특별공제항목은 「소득세법(1997)」 제12-5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특별공제 항목으로는 기부금 공제, 세무신고 관련 비용공제 등이 있다.[407]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2호주달러 이상 기부한 경우 또는 해당 자선단체의 기금마련 행사에 150호주달러 이상 기부한 경우, 등록된 정당 정치인에게 2호주달러 이상 후원한 경우 해당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호주에서 자선행위를 하는 펀드 및 단체, 해외원조펀드, 학교건물설립펀드, 환경 또는 문화단체로 「소득세법(1997)」 제30-B장(subdivision 30-B)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또한, 현금 외에 건물, 주식 등과 같은 자산으로 해당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 금액만큼 기부금 공제를 허용한다. 주식 이외 자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부일 기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실제 구매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를 허용하며, 주식의 경우 기부일 기준 시장가치(market value)만큼 공제를 허용한다. 하지만 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5천호주달러 이상이거나 기부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구매한 자산이 아닌 경우 국세청장이 별도로 평가한 금액을 공제한다.[408]

세무신고 관련 비용공제는 납세자의 세금신고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다. 세무신고 관련 비용으로 세무신고서 작성, 세무자문, 세액환급, 세무소송 등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 세무 관련 자료 구매비, 세금신고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세무자문을 얻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 등이 있다.

---

404) ATO(2018), pp.121-122.
405) ITAA 1997, s 8-5.
406) ITAA 1997, s 8-10.
407) 특별공제는 일반공제항목 외에 소득세법에서 공제하도록 명시한 항목으로 다양한 공제항목이 존재(「소득세법(1997)」 제12-5조에 규정되어 있음)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소득세 신고서 'Tax return for individuals, 2018'의 4p에 기입하는 공제항목을 대상으로 기술하였다.
408) ITAA 1997, s 30-15(2).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체계

1. 구간별 적용 세율 및 특칙

가. 구간별 적용 세율

호주 헌법은 개별 세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어[409] 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서 규정하고, 소득세율은 Income Tax Rates Act 1986에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구간을 5단계로 나누고 0~45%의 세율을 적용한다.[410] 2018/19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구간 및 적용세율은 〈표 Ⅵ-1〉과 같다.

〈표 Ⅵ-1〉 2018/19년도 소득세율

(단위: 호주달러)

과세표준	세율
0~18,200	0%
18,201~37,000	18,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37,001~90,000	37,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32.5%
90,001~180,000	9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37%
180,001~	18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자료: Income tax rates act 1986, Schedule 7.

최근 5년간 호주의 소득세율 및 소득구간 개정연혁은 〈표 Ⅵ-2〉와 같다. 최근 5년간 호주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및 소득구간은 개정하지 않고,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소득세율 구조를 개편하였다.

호주는 2013년 소득세 면세점을 6,000호주달러에서 18,200호주달러로 크게 인상함과 동시에 15% 세율을 19%로, 30%의 세율을 32.5%로 인상하였다. 이후 2017년 3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8만호주달러에서 8만 7천호주달러로 인상하였고, 2018년 8만 7천호주달러에서 9만호주달러로 한번 더 인상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409) CCH(2018), ¶1-050.
410) Income Tax Rates Act 1986, Schedule 7.

〈표 Ⅵ-2〉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2012~2018년)

(단위: 호주달러, %)

구분		2012	2013~16	2017	2018
1단계	적용세율	0	0	0	0
	소득기준	~6,000	~18,200	~18,200	~18,200
2단계	적용세율	15.0	19.0	19.0	19.0
	소득기준	~37,000	~37,000	~37,000	~37,000
3단계	적용세율	30.0	32.5	32.5	32.5
	소득기준	~80,000	~80,000	~87,000	~90,000
4단계	적용세율	37.0	37.0	37.0	37.0
	소득기준	~180,000	~180,000	~180,000	~180,000
5단계	적용세율	45.0	45.0	45.0	45.0
	소득기준	180,000~	180,000~	180,000~	180,000~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18.12.10.

호주는 2018년 세법개정 'Treasury Laws Amendment (Personal Income Tax Plan) Act 2018'을 통해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도록 개정하였다. 2022년 7월 1일부터 19%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 기준을 현재 3만 7천 호주달러에서 4만 1천호주달러로, 3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 기준을 현재 9만호주달러에서 12만호주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표 Ⅵ-3〉 참조).

2024년 7월 1일부터는 현행 5단계 누진세율(0%, 19%, 32.5%, 37%, 45%) 중 37% 세율을 폐지하고 4단계 누진세율 체계(0%, 19%, 32.5%, 45%)로 개정할 예정이다. 세율체계 개편과 동시에 32.5%의 세율이 적용되던 소득구간도 현행 12만호주달러에서 20만호주달러로 조정하여 기존에 37.5%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와 45%의 세율이 적용되던 일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411]

411) Income tax rate act 1986, Schedule 7.

〈표 Ⅵ-3〉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개정내용(2018~2024년)

(단위: 호주달러, %)

구분		현행 기준 (2018/19년)	2022.7.1. 부터	2024.7.1. 부터
1단계	적용세율	0	0	0
	소득기준	~18,200	~18,200	~18,200
2단계	적용세율	19.0	19.0	19.0
	소득기준	~37,000	~41,000	~41,000
3단계	적용세율	32.5	32.5	32.5
	소득기준	~90,000	~120,000	~200,000
4단계	적용세율	37.0	37.0	폐지
	소득기준	~180,000	~180,000	
5단계	적용세율	45.0	45.0	45.0
	소득기준	180,000~	180,000~	200,000~

자료: Income Tax Rates Act 1986, Schedule 7.

나. 세율 적용 특칙

소득세율은 당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득의 변화가 심한 업종에 종사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별도 기준에 따른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의 변화가 심한 업종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과세연도에는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는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평균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득의 변화가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의 변화가 큰 자는 호주 거주자이고, 「소득세법(1997)」 제405장(division 405)에서 규정한 전문직에 종사(special professional)하는 자로 작가, 발명가, 예술가(가수, 연극, 댄서, 전시예술 등), 영화 · TV · 라디오 방송 등의 제작자, 스포츠 선수를 말한다.[412] 소득의 변화가 큰 전문직 종사자의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전문용역소득이 2,500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지난 4년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며, 평균소득 계산방법 및 평균소득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다.[413]

412) ITAA 1997, Division 405, s 405-25.
413) CCH(2018), ¶2-144.

〈평균소득 계산방법〉

① 소득 변화가 큰 전문직 종사자의 총과세대상 소득(total assessable income)을 전문용역소득(professional income)과 기타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함

② 과세표준(total taxable income)을 전문용역소득의 과세표준과 기타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구분함

- 각 소득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③ 전문용역소득 과세표준의 과거 4년간 평균을 계산함

- 단, 소득 변화가 큰 전문직에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평균소득 계산 시 특별규정을 적용함
- 전문직 종사 2년차: 과거 1년간 전문용역소득의 1/3을 평균소득으로 함
  전문직 종사 3년차: 과거 2년간 전문용역소득의 1/4을 평균소득으로 함
  전문직 종사 4년차: 과거 3년간 전문용역소득의 1/4을 평균소득으로 함

④ 과세표준을 일반소득 과세표준(normal taxable income)과 평균을 초과하는 전문용역 과세표준으로 구분함

⑤ 일반소득은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⑥ ⑤에서 계산된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평균을 초과하는 전문용역소득 과세표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을 합산함

⑦ ⑤에서 계산된 일반소득에 대한 세액과 ⑥에서 계산된 전문용역소득에 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 5배수를 적용함. 이 세액을 전문용역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봄

⑧ ⑦에서 계산된 전문용역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⑤에서 계산된 일반소득세율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임

〈평균소득 계산 예시〉

A는 호주 거주자로 경마선수이며, 경마로 얻은 소득은 2015/16에는 1만 5천호주달러, 2016/17에는 2만호주달러이다. 2017/18에 총과세가능 소득은 6만호주달러로 이 중 2만호주달러는 웨이터로 일하며 얻은 소득이고, 4만호주달러는 경마선수로 얻은 소득이다. 말을 타기 위한 장비구입 목적으로 3천호주달러를 지출하였다. A의 2017/18년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표 Ⅵ-4〉 평균소득 계산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예시

(단위: 호주달러)

구분			계산식	금액
1	과세대상 소득 (assessable income)	a. 전문용역소득 (assessable professional income)		40,000
		b. 일반소득 (other assessable income)		20,000
2	과세표준 (taxable income)	a.전문용역소득 (taxable professional income)	40,000-3,000(필요경비 차감)	37,000
		b.일반소득(other taxable income)		20,000
3	평균 전문용역소득 과세표준 (average taxable professional income)		(15,000 (2015/16과세연도) + 20,000 (2016/17과세연도))÷4년	8,750
4	일반소득 과세표준 + 평균 전문용역소득 과세표준 ((2.b)+(3))		20,000+8,750	28,750
	평균을 초과하는 전문용역 과세표준		37,000-8,750	28,250
5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28,750-18,200)*19%	2,004.50
6	일반소득과 평균 초과하는 전문용역소득의 1/5을 합산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2004.5+[(28,250÷1/5)*19%]	3,078
7	평균 초과 전문용역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3,078-2,004.5)*5	5,367.50
8	최종 납부세액 ((5)+(7))		2004.5+5,367.5	7,372

자료: CCH(2018), ¶2-144.

호주는 고소득자가 세부담 회피목적으로 소득 분할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한다. 미성년자는 과세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연간 과세표준이 1,307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45%의 세율로 과세한다.[414] 단, 예외규정을 두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전일제 직업을 가진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고아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의 모든 초과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용료소득, 기타 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 등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상속으로 얻은 소득, 손해배상금, 복권당첨소득, 공적자금(public fund)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415]

414) ITAA 1936, Division 6AA, s 102AA - 102AGA, CCH(2018), ¶2-160.
415) ITAA 1936, s 102AE(2); CCH(2018), ¶2-180.

2. 세액공제

세액공제(tax offset)는 과세표준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호주는 60개 이상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416] 호주는 2012년부터 공정하고 간소화된 조세개편을 목적으로 세액공제제도를 통폐합하거나 보조금제도로 전환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 1일부터 기존 8개의 부양가족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하나의 세액공제인 '병상자 및 병상자를 간호하는 부양가족공제(Dependant Invalid and invalid carer credit; DICTO)'로 통합하였다.[417] 201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부양가족 교육비공제(education tax refund)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녀교육수당(school-kids bonus)'으로 전환하였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배우자의 근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세액공제를 폐지하였다.[418] 2015년 7월 1일부터는 노령근로자의 근로참여 유도를 위해 도입한 노령근로자인적공제(mature age workers tax offset)가 복잡하고 효과가 미미한 이유로 이를 폐지하였고, 이후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큰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였다.[419]

현재 호주에서 운영하는 세액공제는 크게 납세자 인적상황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정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정세액공제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인적공제

호주는 현재 인적공제 성격의 세액공제는 '병상자 및 간병인 부양가족 세액공제(DICTO)'만 운영하고 있다.

'병상자 및 간병인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중 병상자가 있거나 병상자를 간호하는 자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2,666호주달러(2017/18년 기준)를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병상자 또는 간병인의 소득이 282호주달러(2017/18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4호주달러당 1호주달러만큼 세액공제 한도를 감소시킨다. 즉, 병상자 또는 간병인의 소득이 10,946(2017/18년 기준)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420]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된다.[421]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병상자 또는 간병인은 배우자, 납세자

416) ITAA 1997, s 13.1.
417) CCH(2014), ¶15-100.
418) 호주 재무부, *Tax Reform: Road Map*, p. 10, 2012.05.; CCH(2015), ¶15-130.
419) 호주 재무부, *Tax Reform: Road Map*, p. 10, 2012.05.; CCH(2015), ¶15-365.
420) CCH(2018), ¶15-100.

또는 배우자의 부모, 16세 이상 자녀 및 형제·자매이며, 호주 거주자로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어야 한다.[422] 납세자 본인의 연간 조정된 과세소득이 10만호주달러 이상이면 해당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병상자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부양가족의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병상자 및 간병인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특별지출액 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 offset)는 총조정된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for offsets)이 8만 4천호주달러 미만이거나 가족합산 기준 총조정된 과세소득이 16만 8천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허용되며, 2,12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단, 의료비가 5,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여기에서 총조정된 과세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연금 수령액(개인연금 수령액 포함), 투자손실, 부가급여, 호주 세법에 의해 비과세된 해외소득을 반영한 금액에서 자녀양육에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의료비는 연간 납세자 및 부양가족이 호주 국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용의 공제를 허용하나 해당 비용을 보험 등을 통해 보전받는 경우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세액공제액은 환급되지 않는다.[423]

2)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private health insurance tax offset)는 납세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율은 과세소득 및 나이에 따라 상이하다(〈표 Ⅵ-5〉 참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환급이 가능하다.[424]

421) ITAA 1997, s 61-30.
422) ITAA 1997, s 61-10.
423)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8.3.2, Country Analyses IBFD.
424)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8.3.2, Country Analyses IBFD.

〈표 Ⅵ-5〉 보험료 세액공제율

(단위: 호주달러, %)

독신 소득 기준 (가족 소득 기준)	나이		
	65세 미만	65세~69세	70세 이상
0 ~ 90,000 (0~180,000)	25.42	29.65	33.89
90,001 ~ 105,000 (180,001 ~ 210,000)	16.94	21.18	25.42
105,001 ~ 140,000 (210,001 ~ 280,000)	8.47	12.71	16.94
140,001 ~ (280,001~)	0	0	0

자료: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8.3.6, Country Analyses IBFD.

다. 저소득·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저소득 세액공제

저소득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는 연간 과세소득이 67,667호주달러 미만인 자에 대해 445호주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단, 연간 과세소득이 37,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호주달러당 1.5센트씩 세액공제금액을 감소시킨다.[425]

호주 재무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른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low income and middle income offsets)는 연간 과세소득이 125,334호주달러 미만인 자에 한해 530호주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426] 세액공제액은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과세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액은 〈표 Ⅵ-6〉과 같다.

〈표 Ⅵ-6〉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액

(단위: 호주달러)

과세소득	2018/19 세액공제액
0~37,000	200
37,001~48,000	200 + (과세소득 - 37,000) × 3%
48,001~90,000	530
90,000~	530 - (과세소득 - 90,000) × 1.5%

자료: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8.3.2, Country Analyses IBFD.

425) ITAA 1936, s 159N.
426) ITAA 1997, s 61-105.

2) 고령 연금수령자 세액공제

고령 연금수령자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and pensioner tax offset; SAPTO)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 및 퇴역군인보장법(Veterans' Entitlement Act 1986)에 따라 연금을 받는 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독신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소득기준금액 및 한도금액이 상이하다. 기존에는 노년층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tax offset; SATO)와 연금수급자 세액공제(pension tax offset; PTO)를 각각 허용하였으나, 2012년 7월 1일부터 이를 하나의 공제항목으로 통합하였다.[427]

통합된 고령 연금수령자 세액공제에 따르면 독신자는 연간소득(rebate income)이 50,119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부부는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83,580호주달러인 경우, 질병 및 요양 등의 사유로 따로 사는 부부는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95,198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결정하는 연간소득 기준금액인 'rebate income'은 과세대상 소득에 연금소득, 투자손실, 부가급여를 반영한 금액이다.[428] 가구 유형별로 기준금액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 1호주달러당 12.5센트를 차감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독신의 경우 최대 2,230호주달러, 배우자가 있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 각각 1,602호주달러, 배우자가 있으나 질병 및 요양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 각각 2,040호주달러이다. 배우자가 미사용한 세액공제액은 다른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표 Ⅵ-7〉 참조).

〈표 Ⅵ-7〉 고령 연금수령자 세액공제액

(단위: 호주달러)

구분	공제한도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기준 소득금액 (기준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 1달러당 12.5센트 감소)
독신	2,230	32,279
배우자 있고, 함께 거주	각각 1,602	28,974
배우자 있고, 질병 및 요양의 사유로 별거	각각 2,040	31,279

자료: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8.3.4, Country Analyses IBFD 참고하여 저자 작성

427) ATO tax rate, https://atotaxrates.info/tax-offset/senior-australians-tax-offset/, 검색일자: 2019. 1. 28.
428) ATO(2018), pp. 142~143.

3) 사회보장 수혜자 세액공제

사회보장 수혜자 세액공제(beneficiary tax offset)는 구직수당(new start allowance), 병상자소득지원금(sickness allowance), 특별수당(special benefit), 미망인보조금(widow allowance) 등 사회보장금을 수령하거나 학업수당(AUSTUDY), 원주민 학업수당(ABSTUDY), 벽지 출신 학생지원금액 등 교육관련 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금 수령액에서 6천호주달러를 차감한 금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세액공제한다. 단, 사회보장금 수령액이 3만 7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사회보장금 수령액에서 3만 7천호주달러를 차감한 금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한다. 고령 연금수혜자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에 큰 금액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저소득 세액공제 및 저소득 및 중산층 추가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사회보장 수혜자 세액공제만 허용한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라. 기타 세액공제

특정 지역 거주자 세액공제(zone/overseas service rebates)는 벽지로 기후가 좋지 않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거주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상이하다. 지역을 Zone A, Zone B로 나누었으며, Zone A지역은 338호주달러에 병상자 및 간병인 부양가족 세액공제액(DICTO)과 기타 부양가족에 따른 기준금액 합산액(이하 "각종 부양가족공제액")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Zone B지역은 57호주달러에 각종 부양가족공제액의 20%를 합산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Zone A와 Zone B지역 중 생활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1,173호주달러에 각종 부양가족공제액의 50%를 합산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429]

해외복무 군인 세액공제(overseas defence forces rebate)는 6개월 이상 해외 또는 Zone A 또는 Zone B에서 군복무를 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338호주달러에 각종 부양가족공제액의 50%를 합산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한다.[430]

429) CCH(2018), ¶15-120.
430) CCH(2018), ¶15-180.

마.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소득이 호주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한다.[431] 총외국납부세액이 1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천호주달러까지만 세액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세액공제한도금액(offset cap)을 계산하여 1천호주달러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인 1천호주달러까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납세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한 호주의 소득세로 이중과세된 금액이다.[432]

바. 세액공제순서

소득세법(1997)에서는 세액공제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433]

① 고령연금 수령자 세액공제
② 사회보장 수혜자 세액공제
③ 저소득 세액공제
④ 병상자 및 간병인 세액공제, 특정 지역 거주자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⑤ 외국납부세액공제
⑥ 기타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예,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고령연금 수령자 세액공제액은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431) CCH(2018), ¶21-680.
432) CCH(2018), ¶21-710.
433) ITAA 1997, s 63-10(1).

3. 최저한세

호주는 소득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4. 근로소득장려세제 · 자녀장려세제

호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세액환급과 같은 조세지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금액을 감소시키거나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존재한다.[434]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로 미취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Working Credit 제도'를 운영 중이다. Working Credit 제도는 납세자 상황에 따라 공제액(credit)을 적립하고, 적립한 공제액(credit)은 납세자가 청년수당(youth allowance), 구직수당(new start allowance),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병상자소득지원금액(sickness allowance)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준 소득금액을 낮추거나 향후 소득 발생 시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435]

자녀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자녀양육보조금(child care subsidy) 지급제도를 운영 중이다.[436]

5.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을 위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34) Australian Human Service Departmen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enablers/working-credit/29721, 검색일자: 2019.3.12.;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8.3.9., Country Analyses IBFD.

435) Australia Human service Departmen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enablers/working-credit/29721#a3, 검색일자: 2018.12.11.

436) Australia Human service Departmen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ubjects/payments-families#a1, 검색일자: 2019.3.12.

〈표 Ⅵ-8〉 종합소득세 산출 예제

(단위: 호주달러)

〈사례〉

A는 호주 거주자로 미혼이며, 정부소속 공무원으로 법률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2017/18연도 급여소득은 $80,000이며, 이자소득 $264가 발생하였다. A가 1년간 사용한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병원비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환급받았다.

• 법률관련 잡지 구독비용	400
• 전문가협회 가입비	40
• 세무신고서 작성 비용	50
• 공익기관에 기부	20
• 병원비(환급 병원비)	2,250
과세대상소득 (Assessable Income)	
• 급여	80,000
• 이자소득	264
과세대상소득 합계	80,264
(-) 필요경비 공제	
• 구독비용	(400)
• 협회가입비	(40)
• 세무신고서 작성비용	(50)
• 기부금	(20)
= 과세표준 (Taxable Income)	79,754
(×) 세율	19%, 32.5%[1)]
= 산출세액	17,467.05
(+) Medicare Levy	1,595.08
= 총납부세액	19,036.13

주: 1) 과세표준 18,200 ~ 37,000호주달러까지는 19%의 세율을, 37,001 ~ 79,754호주달러까지는 32.5%의 세율을 적용함

자료: CCH(2018), ¶2-090.

Ⅶ 신고, 납부 및 징수 체계

1. 신고납부제도

호주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Tax Return for Individuals'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Tax Return for individuals'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 · 배당소득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 연금, 이자, 배당소득 외에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파트너십소득, 임대소득, 자본이득 및 사업손실, 양도손실 등이 있는 경우 'Tax return for individuals(supplementary section)'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437] 호주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와 달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도 납세자가 별도로 종합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단, 소득이 18,200호주달러 미만으로 면세점 이하인 자와 비거주자로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자는 별도의 소득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호주 과세관청은 매년 6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 요건 및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공지하며, 소득세 신고서 미제출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438] 과세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서 제출기한은 익년 10월 31일까지이다.[439] 단, 신고서 제출기한 내 신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440]

호주 비거주자의 경우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된 소득 이외에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441] 소득세 신고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TAX' 또는 'my TAX'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호주는 자진신고(self-assessment)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을 확정하고, 초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한 '결정세액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납세자에게 발급한다. 결정세액통지서는 통상적으로 온라인 신고 시 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되고,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발급된다.[442] 결정세액통지서를 발급했더라도 납세자 신고서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437) ATO(2018), pp.87-89.
438) CCH(2018), ¶2-000.
439)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11.1., Country Analyses IBFD.
440) CCH(2018), ¶2-060.
441) CCH(2018), ¶2-010.

여지가 존재한다.[443]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결정세액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만약 납세자가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세액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에 서면으로 통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납세자의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이 결정세액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444]

결정세액의 납부기한은 신고서 제출기한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세액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445] 여기에서 21일은 최소기한이며, 과세관청은 자연재해,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어려운 상황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21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줄 수도 있다.[446]

2.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호주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 세법에 산재된 가산세 규정을 하나의 통합된 규정으로 개편하였으며, 신고 및 납부지연 시 부과하는 가산세 관련 규정은 「조세절차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제284장(division 284)에 규정되어 있다. 호주의 가산세는 크게 신고관련 가산세, 납부관련 가산세, 기록 및 유지 관련 가산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신고관련 가산세

1) 지연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신고서 또는 과세관청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연신고 가산세(late lodgement penalty)가 부과된다.[447] 지연신고 가산세는 28일마다 가산세 점수

442)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in-detail/your-notice-of-assessment/?page=3, 검색일자: 2019.3.13.
443) CCH(2018), ¶25-10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d/self-assessment-and-the-taxpayer/, 검색일자: 2019.1.10.
444) CCH(2018), ¶25-110.
445) CCH(2018), ¶25-400.
446) CCH(2018), ¶25-410.
44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interest-and-penalties/penalties/failure-to-lodge-on-time-penalty/, 검색일자: 2018.12.11.

(penalty unit)를 1점씩 부과한다. 2017년 7월 1일부터 가산세 점수 1점당 210호주달러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연신고 가산세는 총 500점을 한도로 부과된다.[448]

2)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shortfall penalty)가 부과된다.[449] 과소신고는 납세자가 작성한 신고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소신고액의 2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450] 예외규정을 두어 납세자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세법 및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과소신고 세액이 1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소신고 세액의 2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할증되는데 다른 납세자는 과소신고 여부를 인지했을 상황임에도 불구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경우(recklessness)에는 과소신고 세액의 5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액의 7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 무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세액의 7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451] 호주의 신고 관련 가산세 제도를 종합하면 〈표 Ⅶ-1〉와 같다.

448) CCH(2018), ¶29-100.
449)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 284-90.
450)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 의문이 가는 과세상황에 대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과세상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한다(자료: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263.).
451)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 284-75.

〈표 Ⅶ-1〉 신고 관련 가산세

(단위: 호주달러)

구분		가산세
지연신고		1점(28일마다 증가)당 210달러 (기업규모에 따라 가산세 점수 할증, 500점 한도로 부과)
과소신고	신고서 작성 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25%
	신고서 작성 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나 과소신고세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25%
	다른 납세자는 과소신고 상황을 인지했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50%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75%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75%

자료: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 284-90(1).

나. 납부관련 가산금

납부세액 및 가산세의 미납부 또는 지연납부 시 일반 가산금(general interest charge)이 부과된다. 일반 가산금은 미납부세액에 일반 가산금리(general interest charge rate; 이하 "GIC rate")[452]를 적용한 금액을 경과일수만큼 부과한다. 일반 가산금리는 매분기마다 검토하며, 2018/19년의 일반 가산금리는 〈표 Ⅶ-2〉과 같다.[453]

〈표 Ⅶ-2〉 미납부·지연납부 시 가산금 (2018/19년 기준)

분기	일반 가산금리(연간) GIC annual rate	일반 가산금리(매일) GIC daily rate
2018.07~2018.09	8.96%	0.02449315%
2018.10~2018.12	8.96%	0.02454794%
2019.01~2019.03	8.94%	0.02454794%
2019.04~2019.06	향후 발표 예정	향후 발표 예정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General-interest-charge-(GIC)-rates/, 검색일자: 2019.1.28.

452) 일반 가산금리(GIC rate)는 매일의 '90 day Bank Accepted Bill rate' 금리에 7%를 반영한 이자율을 연간 합산하여 정해진다.

45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interest-and-penalties/, 검색일자: 2019.1.28.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세관청에 의해 경정되는 경우 신고세액과 경정세액의 차이 금액에 대해 과소 가산금(shortfall interest charge)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때까지 본인이 과소납부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가산금보다 낮은 금리로 가산금을 부과한다. 과소신고 가산금리[454] 또한 매분기마다 검토하며, 2018/19년의 과소납부 가산금리는 〈표 Ⅶ-3〉과 같다.

〈표 Ⅶ-3〉 과소납부 가산금 (2018/19년 기준)

분기	과소가산금리(연간) SIC annual rate	과소가산금리(매일) SIC daily rate
2018.07~2018.09	4.96%	0.01358904%
2018.10~2018.12	4.96%	0.01358904%
2019.01~2019.03	4.94%	0.01353425%
2019.04~2019.06	향후 발표 예정	향후 발표 예정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Shortfall-interest-charge-(SIC)-rates/, 검색일자: 2019.1.28.

다. 기록 및 유지 관련 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과세 관련 자료를 기록 및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는 각 사유별 가산세 점수(penalty unit)에 기본 가산세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 가산세금액은 2017년 7월 1일부터 210호주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세법에 따른 자료를 기록 및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4,200호주달러(20점×210달러)가 된다.

〈표 Ⅶ-4〉 기록 및 유지의무 위반 시 가산세

구분	납세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점수
과세자료를 기록 및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점(penalty units)
신고서(declarations)를 작성 또는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점(penalty units)
과세관청 담당자에게 자료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20점(penalty units)
부가가치세(GST)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점(penalty units)

454) 과소가산금리는 매일의 '90 day Bank Accepted Bill rate'의 금리에 3%를 반영한 이자율을 연간 합산하여 정해진다.

〈표 Ⅷ-4〉의 계속

구분	납세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점수
세금계산서(tax invoice) 또는 신용전표(adjustment note) 요청 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20점(penalty units)
동일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이중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전표를 발급한 경우	20점(penalty units)
원천징수의무자 등록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점(penalty units)
활동보고서(activity statement)를 전자신고해야 하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점(penalty units)
전자납부의무자가 전자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점(penalty units)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interest-and-penalties/penalties/failure-to-meet-other-tax-obligations/, 검색일자: 2018.12.11.

3.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호주의 원천징수제도는 'Pay-as-you-go(PAYG)'로 2000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원천징수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PAYG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납세액 미납위험이 높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며, 구체적인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455]

- 근로소득, 고용계약하에 지급하는 각종 지급액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 소득
-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제외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세금을 미납부할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도록 요청한 소득(예, 연예인, 스포츠 선수에게 지급하는 금액 또는 건설대금)
- 납세번호(tax file number)를 제공하지 않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소득
- 비거주자가 호주 소재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자본이득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근로소득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tax table for daily and casual workers)[456]에 따른 세액을

455)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10.3, Country Analyses IBFD.
456) 호주 국세청, *NAT 1024*, https://www.ato.gov.au/uploadedFiles/Content/MEI/downloads/Daily-casual-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주급, 2주급, 월급, 일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액은 매년 변동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에서 매년 공시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10%의 세율로, 배당 및 사용료 소득의 경우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단, 호주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인 경우 조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다수 국가와의 조약에서는 배당 및 사용료 소득의 경우 15%의 세율로 과세한다.[457] 우리나라 또한 호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호주에서 받는 이자는 10%의 세율로, 배당 및 사용료 소득은 15%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소득은 납세자번호를 소득 지급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일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충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호주 국세청장이 요청한 경우 원천징수한다.[458]

호주는 2016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호주에 소재한 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거주자가 호주에 소재한 고액 자산의 처분 시 구매자가 자본이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459] 원천징수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자산, 호주에 있는 물질의 채굴(mining), 채석(quarring), 탐광(prospecting) 권리,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기타 호주 실물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 이전까지 체결된 계약은 비거주자가 처분한 호주 자산의 양도가액이 200만호주달러(약 16억원)이상인 경우, 201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비거주자가 처분한 호주 자산의 양도가액이 75만호주달러(약 6억 300만원)이상인 경우 부동산 구매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구매자는 구입가격에 대해 1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단, 비거주자 판매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호주 납세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clearance certificates)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구매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460]

---

workers-tax-table-2018-19.pdf, 검색일자: 2019.1.10.

45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vesting-in-Australia/Interest,-unfranked-dividends-and-royalties/, 검색일자: 2019.1.10.

458)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10.3., Country Analyses IBFD.

45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Capital-gains-tax/In-detail/Calculating-a-capital-gain-or-loss/Capital-gains-withholding—Impacts-on-foreign-and-Australian-residents/, 검색일자: 2019.1.29.

46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Capital-gains-tax/In-detail/Calculating-a-capital-gain-or-loss/Capital-gains-withholding—Impacts-on-foreign-and-Australian-residents/?anchor=Clearance certificates#Clearancecertificates, 검색일자: 2019.3.13.

비거주자는 과세연도 말 해당 자본이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461]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납세자가 별도로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러한 예납적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은 소득지급 시 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되며, 이후 납세자는 고용주로부터 원천징수 내역서(payment summary)를 수령하여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국외전출세 개요 및 적용 요건[462]

호주는 국외전출세(departure tax) 제도를 1985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463] 국외전출세는 납세자가 다른 나라로 출국하여 호주 거주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자에 대해 호주에서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대상자는 호주 거주자의 지위가 중단되는 자이며, 거주자 지위가 중단되는 날 기준으로 과거 10년 중 5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자이다.

과세대상 자산은 호주에 소재하는 부동산, 호주에 위치한 광물·석유·채석재료에 대한 광업, 채굴, 탐사권, 호주에서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자산으로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호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간접지분율이 10%이상인 주식이 있다.

국외전출세는 호주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한 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정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 계산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소득에 각종 공제액을 반영한 순이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호주 비거주자가 된 이후 호주에 있는 자산을 처분한 날과 다시 호주 거주자가 된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허용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호주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하는 자산의 증감분에 대해서도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된다.

46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capital-gains-tax/in-detail/calculating-a-capital-gain-or-loss/capital-gains-withholding—impacts-on-foreign-and-australian-residents/?page=16, 검색일자: 2019.3.13.

462)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Going-overseas/When-you-leave-Australia/, 검색일자: 2018.12.13.

463) IFA(2002), pp.35~36; 홍범교 · 송은주 · 정경화,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2015, p.26.

제4장 | 영국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

가. 소득세 도입 이전[464]

영국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소득세를 도입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1799년도에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W. Pitt가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 이전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 및 기타 간접세를 위주로 세금제도가 운영되었다.

18세기 전반에 걸쳐 직접세는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었으며 소유 토지의 규모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토지세(Land Tax)는 귀족계급에서부터 상공업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전반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세율은 매년 의회에서 「토지세법(Land Tax Act)」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으며, 각 개인 토지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토지세는 정부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체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지명한 '젠트리' 계급의 각 지역 커미셔너가 징수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주로 각 지역 내에 실생활에 종사하는 상인이나 농부 등의 중간 계급 지역민들로 구성되었다.

18세기에 적용된 간접세 중 대표적인 것은 물품세(excise duty)였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용품(소금, 양초, 가죽, 맥주, 비누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의회에서 부과 징수하였다.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일부 사치품(비단, 금은도금, 말, 마차 등)에 대해서도 물품세가 부과되었으며, 의회에서 경제상황 등에 따라 과세대상 물품 품목을 변경하거나 세율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간접세는 거래상인들이 징수 납부하였기 때문에 담세자인 물품 소비자들은 간접세 부과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편 전쟁 등의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고

464) https://www.parliament.uk/, https://www.parliament.uk/about/living-heritage/transformingsociety/private-lives/taxation/overview/taxes18thcentury/, 검색일자: 2019.2.4.

자 일명 창문세(Window Tax)라고 하는 제도가 1696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창문이 10개까지의 집에 대해서는 주택당 2실링의 세금을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10~20개 사이의 창문에 대해서는 4실링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1778년부터 해당 주택 가치에 따라 변동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나. 개인소득세 도입[465]

영국은 1799년 William Pitt의 주도로 소득세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William Pitt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관련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1783년에 총리(Prime Minister)가 된 이래 의회를 설득하여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던 중 1793년에 영국이 프랑스 혁명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군비 조달을 위해 대규모 재정 부담이 더해졌고 그에 따라 세금 부과 규모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존재하던 간접세 등 세수로는 재원 충당이 어려워지자 1799년도에 이르러 William Pitt는 개인소득세를 주도적으로 도입하였다.

새로운 소득세 제도하에서 연간소득이 2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연간소득 60파운드부터 200파운드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1% 이하(1/120)의 저율에서 10%까지의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되었다.[466] 다만 도입 초기 실제 징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1천만파운드 정도의 세수 예측과는 달리 고작 600만파운드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입 초창기에는 개인의 사적 재정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등 소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또한 상인이나 제조업자 등을 위주로 조세탈루도 횡행하였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세 도입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애국적인 의무로 여기기도 하였다.

다. 소득세 폐지 및 재도입[467]

나폴레옹 전쟁이 1815년에 끝난 이후 소득세 납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빠른 속도로 악

465) Wolters Kluwer, 2015, p. 4. & www.parliament.uk, https://www.parliament.uk/about/living-heritage/transformingsociety/private-lives/taxation/overview/incometax/, 검색일자: 2019.2.4.
466) John Jeffrey-Cook, 2010, p.386.
467) www.parliament.uk, https://www.parliament.uk/about/living-heritage/transformingsociety/private-lives/taxation/overview/incometaxbolished/, 검색일자: 2019.2.4.

화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약 7억파운드를 넘을 정도로 불어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소득세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지주, 상인, 제조업자, 은행가 등 각 계층에서 소득세에 대한 반발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영국 하원(House of Common)에 400여 건 이상의 소득세 반대 청원이 제출되고 맨체스터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816년 3월 18일자로 소득세 폐지를 인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어 시간이 흘러 1840년 초반 무렵에는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론이 재계를 위주로 확산되었으며, 수출입에 대한 높은 관세 부담을 철폐하자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당시 총리였던 Sir Robert Peel은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여 무역 관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개인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1842년에 이르러 소득세를 재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700여 품목 이상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폐지하였다. 이후 소득세는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가. 제1,2차 세계대전 전후[468]

20세기에 들어와서 소득세 부과 수준 및 납세자 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영국이 제1,2차 세계대전을 연이어 치름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수 기반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개인소득세 기본세율은 6% 수준이었으나 1918년에 이르러서는 30%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납세자 규모 또한 1914년 당시에는 약 113만명 수준이었으나 1920년경에는 약 300만명 수준으로까지 증가하였으며 1920년 초반에는 이보다는 줄어든 약 220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조세수입의 약 60% 정도는 직접세로 충당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득세와 Super Tax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고로 Super Tax는 1907년 Herbert Asquith가 제안하여 1909년에 도입된 것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동 제도는 1973년도까지 존속되다가 이후에는 소득세법상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통합되었다.

468) www.parliament.uk, https://www.parliament.uk/about/living-heritage/transformingsociety/private-lives/taxation/overview/costofwar/, 검색일자: 2019.2.4.; www.parliament.uk, https://www.parliament.uk/about/living-heritage/transformingsociety/private-lives/taxation/overview/firstworldwar/, 검색일자: 2019.2.4.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전후하여 영국의 군비 확충을 위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1938년 당시 소득세 기본세율은 27.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5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41%의 추가 세금(Super Tax)이 부과되었다. 또한 이 당시 직접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약 1천만명으로 소득세 납세자 기반도 크게 확대되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재정비용 충당을 위하여 소득세율이 더욱 높아졌으나, 1941년도에는 세액공제(tax credit)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다소 경감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한편 1944년에는 PAYE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가 매주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으로부터 근로자의 세액을 징수 납부하게 되었다. 이는 수백만명의 근로자에 영향을 미친 대규모 조세개혁으로서 종전에 연간 또는 반기별로 소득세를 납부하던 방식에 비해 조세징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나. 20세기 후반[469)]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쟁 당시의 비정상적 소득세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1971년도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75%였으며 1974년도에는 83% 수준에까지 달하였다.

1980년대 들어 Margaret Thatcher 정부가 주도한 감세정책에 힘입어 소득세율이 인하되기 시작하였다. 단적으로, 대처 수상 집권 기간 동안 소득세 기본세율은 33%에서 25%까지, 최고세율은 83%에서 40%까지 각각 인하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78-79 과세연도에는 최소세율(starting rate)이 25%, 기본세율(basic rate)이 33%였으며 상위세율(higher rate)은 40%에서 83%까지 적용되었다. 또한 투자소득이 높은 납세자에 대한 추가세율이 15%가 적용되어, 총소득세율이 최고 98%에 달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이에 집권 보수당 정부는 기초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30%로 낮추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60%로 낮추는 개혁을 우선 단행하였다. 이어 1984년에는 투자소득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을 거쳐 기본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1988년도에는 최고세율이 40% 수준까지로 인하되었으며 기본세율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소득세 과세 구조도 매우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거의 대다수(약 95%가량)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또는 기본소득세율 25%을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0%의 고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였다.

469) Antony Seely, 2018, p.13; Stuart Adam, James Browne and Christopher Heady, 2010, pp.1~89.

〈표 Ⅰ-1〉 최근 30년간 소득세율 변화

(단위: %)

과세기간	최소세율 (starting rate)	기본세율 (basic rate)	상위세율 (higher rate)
1978~79	25	33	40~83
1979~80	25	30	40~60
1980~81부터 1985~86까지	-	30	40~60
1986~87	-	29	40~60
1987~88	-	27	40~60
1988~89부터 1991~92까지	-	25	40
1992~93부터 1995~96까지	20	25	40
1996~97	20	24	40
1997~98부터 1998~99까지	20	23	40
1999~2000	10	23	40
2000~01부터 2007~08까지	10	22	40
2008~09부터 2009~10까지	-	20	40
2010~11부터 2012~13까지	-	20	40~50
2013~14부터 2016~17까지	-	20	40~45

자료: Antony Seely, *Income tax: increases in the personal allowance since 2010*, House of Commons, 15 November, 2018, p.13.

1990년대 들어서는 세율 구조가 다소 복잡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1992년에는 2천파운드 미만의 소득에 대해 최소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1999년도에 이르러 10%로 인하되었다. 최소세율 구조는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적용되다가 2008년도에 이르러 최종 폐지되었다. 최소세율 폐지로 인한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2008년 5월에 인적소득공제액을 600파운드만큼 인상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대부분 상쇄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2000년대 들어서도 이어져 인적소득공제(personal allowance)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Ⅰ-2〉 최근 30년간 기본인적공제액 및 기본세율 적용구간 한도 변화

(단위: 파운드)

과세기간	인적공제액 (personal allowance)	기본세율 적용구간 한도 (Basic-rate limit)
1979~80	5,623	48,272
1984~85	5,927	45,534
1989~90	6,386	47,466
1994~95	6,262	43,078
1999~2000	6,878	44,424
2004~05	6,697	44,318
2009~10	8,024	46,348
2014~15	10,250	32,663
2015~16	10,768	32,290
2016~17	11,000	32,000

주: 2016년 4월 기준 물가를 반영한 금액임.
자료: Antony Seely, *Income tax: increases in the personal allowance since 2010*, House of Commons, 15 November 2018, p.15.

한편, 최근 30여 년간 개인소득세 납세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시작 당시 약 2,600만명 수준이었던 납세자는 2000년대 들어 약 3,000만명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기본세율 적용 대상 납세자 수는 약 2,500만명 정도에서 유지된 반면 고세율 적용 납세자 규모는 1979년 약 70만명 수준에서 2010년대에 이르러는 약 500만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납세자 단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세 목적상 단일 과세단위로 간주되었다. 1970년 당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목적상 여성의 소득은 그 남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여성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천명하였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꾸준히 이어오던 중 1990년에 이르러 부부 각자 독립된 납세 개체임을 인정하고,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각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체계가 도입되었다.

〈표 Ⅰ-3〉 최근 30년간 소득세 납세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과세기간	총 납세자	최소세율 적용 납세자	기본세율 적용 납세자	최고세율 적용 납세자
1979~80	25,900	-	25,226	674
1984~85	23,800	-	22,870	930
1989~90	25,600	-	24,040	1,560
1994~95	25,300	5,180	18,200	2,000
1999~2000	27,200	2,280	22,354	2,510
2004~05	30,300	3,570	23,333	3,330
2009~10	30,600	163	27,202	3,190
2014~15	30,500	236	25,516	4,759
2015~16	30,200	-	25,249	4,957
2016~17	30,100	-	25,309	4,743

자료: Antony Seely, *Income tax: increases in the personal allowance since 2010*, House of Commons, 15 November, 2018, p.15.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1. 과세권자[470]

영국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근본적으로는 의회(Parliament)에 귀속되며, 의회 결의로 제·개정되는 영국「재정법(Finance Act)」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영국 국세청(HMRC)은 의회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에 대한 과세 권한을 행사하고 소득세 징수, 납세 관리 등의 실질적인 과세행정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법률상 위임 관계에 근거하여 영국 국세청은 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 과세관청은「재정법 2008(Finance Act 2008)」제36조의 정보 요구권 및 조사권(the information and inspection powers)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과세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세무신고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납세자의 세무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이면 세무신고 전 · 후에 상관없이 언제든 정보 요구가 가능하다. 과세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세무신고에 대한 질의'에 국한되지 않고 납세자의 기록, 사업장과 사업 관련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

영국의 개인소득세는 모두 중앙정부가 과세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소득세 법령 체계

영국의 법원(法源)은 일반적으로 제정절차를 거쳐 문서화되는 제정법(legislation), 관습법(common law) 및 유럽연합법(European Union Law)로 나뉘어진다.[471] 제정법은 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Acts of Parliament)과 권한의 위임으로 행정부 각료들이 공포하는 시행령(Statutory Instruments)으로 구분되며, 영미법계의 특성으로 인해 판례를 통해 형성된 관습

470) Wolters Kluwer, 2015, p. 10 & p. 1523.;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about, 검색일자: 2019.2.22.

471) the Judicial Office International Team, 2016, pp.25~26.

법 또한 법원에 포함된다. 영국은 1973년 현재의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법원 또한 영국 법원을 형성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법은 EU 기능에 관한 조약 등의 소위 EU헌법이라고 불리는 조약과 규정(Regulation)과 지침(Directive) 및 EU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의 결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모두 구속력 있는 법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 헌법은 학설에 따라 법원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영국 헌법의 구성에 대한 논쟁 및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72]

따라서 영국 과세체계상 소득세 과세를 규율하는 단일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성문법령 및 판례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소득세 법원을 구성한다. 기본적인 소득세 과세 규정은 의회에서 제정된 성문의 법령(Acts)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이러한 법령의 세부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체계의 세부 내용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영국 국세청(HMRC)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지침(statements, notices, leaflets 등)을 발간함으로써 실제로 세법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지는 아니하지만 과세관청의 세법 해석을 제시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규범으로 준수되고 있다.

가. 성문 규정[473]

소득세 과세제도의 기본 골격 및 주요 내용은 Income Tax 2007(ITA)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 부동산 관련 소득, 저축 및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Income Tax(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ITTOIA)가 적용되며, 급여 및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Income Tax (Earnings and Pensions) Act 2003 (ITEPA)에서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한편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ICTA)는 주로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Capital Allowances Act 2001 (CAA)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상기 법률은 매년 영국 재정법(Finance Act)의 개정에 따라 변동되며, Finance Act는 매년 영국의 예산안(Budget proposal) 심사 과정을 거쳐 수정 반영된다.

472) 영국 헌법의 특성에 대해서는 Ann Lyon,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United Kingdom*,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3 등의 책과 논문을 참조.

473)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나. 판례법(Case Law)

또한 성문 규정 이외에 판례에 따라 구축된 과세 원칙도 중요한 법원(法源)으로서 통용된다. 영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 및 쟁송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과세 사건을 두고 수많은 조세쟁송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법원에서의 판례는 영국 세법의 형성 및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행정규칙 등[474]

1) 시행규칙(Statements of Practice)

영국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 및 재무부(Her Majesty's Treasury)에서는 의회에서 규정한 세법에 기반하여 시행령(statutory instruments)을 제정한다. 즉, 법률에서 전반적인 세법 규정을 제시하면 각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이행 지침을 국세청 또는 재무부의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주요 세법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지침(statements of practice)을 공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법령 및 과세원칙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에 대한 설명도 제시한다.

2) 특별양해조치(Extra-Statutory Concessions)

특별양해조치는 특정 세법 규정에 대해 납세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취지로 해당 규정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해당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행정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동 규정의 집행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별양해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는 아니하며 조세불복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납세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해당 특별양해조치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용할 수 있다.

3) 언론 공시(Press releases)

영국 과세관청은 연중 수시로 다양한 조세 관련 사안들을 언론에 공표한다. 특히 예산안

474) Pearson Education, http://catalogue.pearsoned.co.uk/assets/hip/gb/hip_gb_pearsonhighered/sample chapter/Melville16.pdf, 검색일자: 2019.2.4.

(Budget proposal)은 언론 공표를 통해 발표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연간 예산계획 및 세법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각종 시행규칙이나 특별양해조치의 경우에도 대부분 언론 공시를 통해 대중에 공개된다. 한편 영국에서는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해당 규정을 법제화할 의도가 발표된 날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공시를 통해 법률 제정의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언론 공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내부지침(Internal Guidance Manuals)

HMRC는 국세청 내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침의 성격으로서 과세 법령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내부지침 항목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되며 국세청 질의센터(HMRC Enquiry Centre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브리프(HMRC Brief)

HMRC는 세법 관련 특정 주요 사안이나 쟁점에 대하여 행정청 입장에서의 해석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각 사안들의 관련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6) 안내서(Leaflets)

상기 이외에도 영국 국세청은 일반 대중들이 세법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용어를 포함하여 조세체계에 대한 간명한 설명 자료들을 배포한다. 이는 전반적인 조세체계 개괄에서부터 각 세목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3. 과세권 범위 (terrirtory, geographical jurisdictions)[475]

영국은 전 세계 과세시스템(worldwide tax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영국은 해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영국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475)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소득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외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등 속지주의 과세체계의 특징도 갖고 있다.

4. 열거주의・포괄주의[476]

영국은 소득세 과세에 대해 열거주의(source doctrine)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한 근거 없이는 소득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과세되지는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적인 과세근거는 해당 조세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존재하여야 과세 가능하다.

열거주의 사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느 타인의 자동차가 고장난 상황을 목격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동 식료품업자가 호의를 베풀어 타인의 승용차 수리와 이동을 도와주고 이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을 받게 된 상황이다. 해당 사례금은 식료품업자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사업관계의 일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이러한 사례금은 수령자가 베푼 인간적 호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세법상 명시된 과세대상(source)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비록 식료품업자가 수령한 소득이지만 영국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 GOV.UK,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5035, 검색일자: 2019.2.20.

또한 납세자의 조세 채무 등 과세관계는 기본적으로 조세법령상 문언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만약 납세자가 관련 세법 문언상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동 세법 규정의 의도가 과세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명목상의 거래관계에만 좌우되어 과세관계가 결정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납세자의 권리 및 조세채무 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해당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단지 형식적(sham)으로만 구성될 경우 법원에서는 동 거래의 실질(substance)를 바탕으로 과세 관계를 판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원은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진 형식적 거래를 무시하고 진정한 납세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476) Wolters Kluwer, 2015, p. 222.; William B. Barker, 1996. pp.12~34.

5. 과세연도[477]

영국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직전연도 4월 6일부터 당해 연도 4월 5일까지의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주요 소득별 과세연도 귀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Ⅱ-1〉 주요 소득 종류별 과세연도 귀속 기준

구분	귀속 기준
근로소득	급여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자소득	당해 이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배당소득	당해 배당소득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자산운용소득	발생액 기준으로 확정
사업소득	사업자의 회계기간을 적용 [세부사항 예시 제공]

주: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만, 사업자 · 전문가 · 성직자(vocations)의 경우 회계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과세기간에 속하는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며 해당 회계기간에 대한 납세가 허용된다.[478]

477)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478)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28.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영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① 영국 거주자인 개인 또는 신탁(trust) 및 ②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신탁으로서 영국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 개인 등이 영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영국 거주자 판정은 다음 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국 내 체류 일수를 바탕으로 기타 직업 및 생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며 국외소득면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토록 한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영국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영국에서 납세 부담을 지는 제한적 납세의무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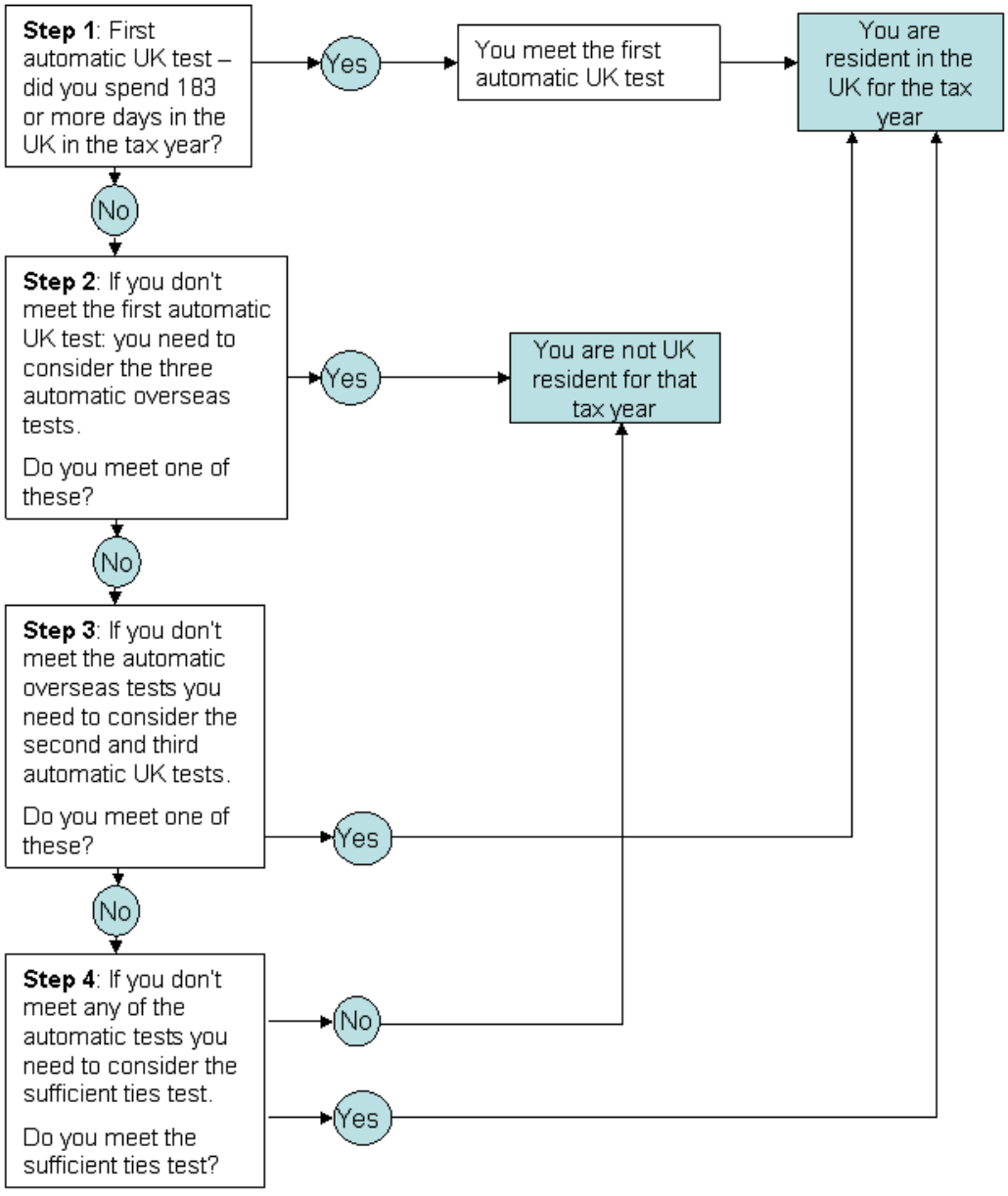
2. 거주자 판정 요건 : 기본 요건, 체류 일수 판정 세부 내역, 기타 특칙 등[479]

영국은 2013년 이전까지는 거주자 요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정의(definition)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판례법(case law) 등에 근거한 기본 원칙 및 국세청 지침 등을 참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였다.[480]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당해 과세연도 중 영국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일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고, 183일 미만 체류 시에는 영국 내 체류 목적이나 영국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방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이 어렵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에 보다 명확한 거주자 판정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SRT) 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4월 6일부터 운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상황별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479) HMRC, 2016, pp. 1~105.; 이동규 · 김준현 · 정경화, 2015, pp.15~42.
480) Alexander M. G. Gelardi, 2014, pp.39~40.

[그림 Ⅲ-1] 거주자 심사제도의 기본 구조



자료: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27484/150506_RD, 검색일자: 2019.2.4.

영국의 거주자 심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체류일 및 소재지, 생활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각 심사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표 Ⅲ-1〉 거주자 심사 단계별 판정 개요

구분	개요
(1) 1차 영국 거주자 심사	과세연도 중 영국 내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 → 영국 거주자로 우선 판정
(2) 국외 거주자 심사	국외 거주 관련 세부 요건(해외 체류일 및 근무 형태 등) 충족 → 영국 비거주자로 판정
(3) 2차 및 3차 영국거주자 심사	영국 내 거주 관련 세부 요건(영국 체류일 및 근무 일수 등) 충족 → 영국 거주자로 판정
(4) 영국관계 심사	이전 (1)~(3) 단계의 모든 심사에서 영국 내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영국 내 사회경제적 제반 관계 요건들을 종합하여 영국 거주자 여부 최종 판정

주: HMRC, *Guidance note: Statutory Residence Test(SRT)*, Published August 20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영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건은 영국 내 체류기간이며, 납세의무자가 과세연도 중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기간 동안 영국 거주자로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영국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외거주 심사(Automatic overseas tests)를 먼저 실시하여 해외 거주일 및 근무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영국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와 같은 우선적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영국거주 심사(Automatic UK tests) 및 영국관계 심사(Sufficient ties test)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국내외 근무 기간, 영국 내 체류일수 및 기타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국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가. 1차 영국거주 심사

영국 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우선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 영국 내에서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한다. 영국 내 체류 일수(spend days)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해당일 자정(midnight) 시점에 영국 내에 있을 경우 영국에서 체류한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기준들을 적용한다.

i) 특정일의 자정 시점에 영국에 소재하면 당해 일 전체를 영국 내 체류 일수에 포함함

ii) 일시적인 이동 기간(transit days)은 체류 일수에서 제외함

- 이동 기간에 해당하는 예: 일방 타국에서 다른 국가로 여행 가는 도중 영국 내에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일 다음날에 영국을 떠나는 경우

iii) 비록 자정 시점에는 영국 내에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30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영국 체류일로 간주(deeming rule)

- 직전 3개년 중 1개 과세연도 이상에서 영국 거주자였으며,
- 아래 라.에서 후술하는 영국관계 심사 관련 요건 중 3개 이상의 영국 내 관계(UK ties)가 존재하고,
- 자정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영국 내에 없더라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영국에 머무른 경우

나. 국외거주 심사

국외거주 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 단계별 테스트 중 어느 하나를 통과하면 곧바로 영국 비거주자로 인정되며, 더 이상의 후속적인 영국 거주자 심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표 Ⅲ-2〉 국외거주 심사 관련 단계별 테스트

구분	개요
1차 국외거주 심사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연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해 영국 거주자로 판정된 적이 있지만, 당해 과세연도 영국 체류일이 16일 미만인 경우 → 영국 비거주자로 판정
2차 국외거주 심사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연도 모두에 대해 영국 거주자로 판정된 적이 없고, 과세연도 영국 체류일이 46일 미만인 경우 → 영국 비거주자로 판정
3차 국외거주 심사	당해 과세연도 동안 업무상 중요한 중단(significant break) 없이 해외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아래 (i) 및 (ii)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 당해 과세연도 중 영국 내 체류일이 91일 미만 (ii) 당해 과세연도 중 영국 내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합이 31일 미만 → 영국 비거주자로 판정

주: HMRC, *Guidance note: Statutory Residence Test(SRT)*, Published August 20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2차 및 3차 영국거주 심사

2차 영국거주 심사는 과세연도 중에 납세자가 영국 내 주거를 가진 적이 있는지를 위주로 영국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주거(home)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주거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건물, 자동차, 선박 및 이와 유사한 종류의 구조물 등이 주거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연속적으로 91일 이상 아래 ① 및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해당 기간 중 최소 30일 이상이 당해 과세연도에 속할 경우 영국에 주거를 가진 적이 있다고 본다. 이때 영국에 하나 이상의 주거를 둘 경우 해당 주거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들 중 최소 하나의 주거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영국의 거주자로 본다.

① 당해 과세연도 중 최소 3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sufficient amount of time) 동안 소재(present)하는 영국의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것

② 해외에는 주거(overseas home)가 없을 것, 또는 해외 주거가 있더라도 당해 과세연도 중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체류할 것

영국 거주자요건 관련 사례 1

사실관계

A는 호주에서 살아 왔으며, 2012년 6월에 영국 런던에 휴가차 방문한 후 영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함. A는 유일한 집이었던 호주 주택을 2014년 1월 10일에 처분하고 영국에 2014년 1월 25일에 도착함. A는 2014년 2월 1일에 런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이는 A의 유일한 주택으로서 현재 1년간 살고 있음. 2013/14 과세연도 중 A는 호주의 집에서는 250일 동안 체류하였으며, 런던의 아파트에서는 55일 동안 지냈음.

분석

2013~2014년도 중 A는 영국 내 주택에서 2014년 2월 1일부터 살았기에 동 과세연도 중 최소 30일 이상 체류한 것이 된다. 또한 2014년 2월 1일부터 A가 영국 내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주택이 없는 기간이 91일 이상 연속되면서 그 중 최소 30일이 2013/14 과세연도에 해당함. 따라서 A는 2013/14 과세연도 2차 영국거주 심사 목적상 거주자에 해당함

자료: HMRC, 2016, p.19.

3차 영국거주 심사는 납세자가 중요한 단절 없이 영국에서 전일근무(full time)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국 거주자로 판정한다. 이 경우 당해 365일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연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365일 기간 중 3시간 초과하여 일하는 날들의 총근무일수 합계 중 75% 이상이 영국에서 3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어야 하며, 영국에서 3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날로서 최소 하루 이상이 당해 365일 기간 및 당해 과세연도에 모두 속해야 한다.

영국 거주자요건 관련 사례 2

사실관계
G는 다국적회사의 한 지점을 위해 일하며 프랑스 파리에서 전일제로 근무(full-time)함. G는 매달 이틀 동안 영국에서 근무하며 해당일 각각 3시간 이상 영국에서 근무함. 2013년 9월 1일에 G는 영국에 2년간 근무 일정으로 파견됨. G는 프랑스 파리 사무소에 매달 이틀 동안 각 3시간 이상 근무함

분석
2014년 4월 5일로 종료되는 365일 기간 동안 G는 관련 기준상 영국 내에서 전일제 근무한 것으로 산출됨. 또한 G는 2013년 9월 1일 이전에 매달 2일 동안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영국 근무상 중요한 단절(significant break)은 없음.

2014년 4월 5일로 종료되는 365일 기간 동안 G가 3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총일수는 240일임. 그러나 이 중 62%에 해당하는 150일 동안만 영국에서 3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 따라서 당해 365일 기간을 놓고 볼 때는 3차 영국거주 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경우 다른 365일 기간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2014년 8월 31일로 종료되는 365일 기간 동안 G는 관련 기준상 영국 내에서 전일제 근무한 것으로 산출됨. 동 365일 기간 동안 G가 3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총일수는 230일이며, 이 중 91%에 해당하는 210일 동안 영국에서 3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 동 365일 기간 중 일부는 2013/14 과세연도에 속하며, 그러한 기간 중 최소 1일 이상 G는 영국에서 3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

따라서 G는 3차 영국거주 심사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자로 판정됨

자료: HMRC, 2016, p.25.

라. 영국관계 심사

영국관계 심사는 상기 가.~다.에서와 같이 국외거주 심사 또는 영국거주 심사 등에서 영국거주자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영국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관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영국관계 지표들은 가족관계(family tie), 거소관계(accommodation tie), 근로관계(work tie), 체류기간(90-day tie) 등의 4가지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는 영국 내 체류기간 등 상기 관계 지표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을수록 영국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과거 3개 과세연도 동안 영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가 영국관계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직전 3개 연도 중 영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거주자 판정 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영국 거주자요건 관련 사례 3

사실관계
B는 당해연도 5월 및 11월 사이에 영국을 125일 동안 방문하여 체류하였으며, 그 중 104일은 영국 내에서 1일당 3시간 이상 근무하였음. 영국에서 체류할 동안 B는 여러 개의 호텔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거소관계(accomodation tie)는 존재하지 않는다. B는 최근 3개연도 중 그 어느 한 기간에도 영국 거주자인 적은 없다. B의 17살된 아들은 영국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영국 거주자이다. B가 영국을 방문한 기간에 그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여름철의 3주일이다.

분석
B의 경우 2개 이상의 영국관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B는 우선 근로관계(work-tie)는 가지고 있다. 다만, B가 그의 유일한 아들과 영국에서 함께 체류한 기간은 3주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B가 영국 내에 가족관계(family tie)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B는 영국관계 요건이 1개에 불과하여 당해 과세연도 중 영국 거주자로 볼 수 없다.

자료: HMRC, 2016, p.104.

3. 납세자 단위: 개인 단위 과세 및 배우자와의 관계

영국 소득세법상 과세 단위는 개인이며 가족 구성원들과의 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법정파트너(civil partners)[481]의 경우에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소득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배우자나 법정파트너가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공동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관련 소득 및 공제금액을 배분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나 법정파트너 간에는 50:50의 균등한 비율로 공동 자산 및 소득이 배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배우자나 법정파트너 간에 해당 공동 자산 등에 대한 지분이 균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관계 및 실제 배분비율을 과세관청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세자에 대한 소득 배분은 당사자가 정한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481) 법정파트너(civil partners)는 영국 법률상 인정된 동성혼인 관계를 의미한다. 영국은 2004년 제정된 법률 「Civil Partnership Act 2004」에 의거하여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 세법에서도 이에 따라 통상의 기혼 커플과 같은 세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Wolters Kluwer, 2015, p.33. 참조).

배우자 등 간의 공동소득 배분 예시

사실관계
E 및 F는 법정파트너 관계로서 부동산 임대자산을 공유하고 있다. E는 해당 자산의 75% 지분을 갖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75%를 수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 F는 나머지 25%의 지분 및 소득 수취권을 가지고 있다

분석
이 경우 만약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임대소득이 6,000파운드라 한다면, 당사자들의 별다른 의사 통지가 없을 경우 E 및 F는 각각 3,000파운드의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귀속된다(즉, 50:50 비율로 배분).
반면, 당해 실제 소득 수취비율을 국세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과세소득이 결정된다. 이 경우 E의 과세소득은 4,500파운드(6,000파운드의 75%), F의 과세소득은 1,500파운드(6,000파운드의 25%)로 각각 결정된다.

자료: GOV.UK, https://www.gov.uk/guidance/income-tax-when-you-rent-out-a-property-case-studies#jointly-owned-property, 검색일자: 2019.1.9.

납세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우자나 법정파트너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당해 납세자의 소득세 목적상 해당 급여를 비용 공제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 등이 사업파트너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서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급여 지급 등에 대한 내역이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동 급여가 해당 배우자 등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및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만 비용 공제가 인정된다.[482]

482) ICPA, https://www.icpa.org.uk/portal/tax/spouses_wages__legitimate_expense_tax_dodge, 검색일자: 2019.1.9.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1. 종합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으로 포함하는 기준

영국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당해 과세연도 중 발생한 각종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산출한다. 과세대상 종합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각종 원천으로부터의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해당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된다. 또한, 과세대상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과세소득으로 지정된 항목들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소득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영국의 과세대상 소득은 연금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종합소득 구성 소득 종류

과세대상 종합소득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포함한다.

1)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일반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483]

"급여(salary), 임금(wage), 수수료, 사례금 등을 비롯하여 고용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금전 또는 이와 유사한 가치를 갖는 재산"

이에 따라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가 받는 금전적 가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영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이러한 일반적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급여 등의 일반적 형태의 근로소득 이외에도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과 같은 특정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직장 관련 연금 및 기타 사적 연금 등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된다. 다만 퇴직소득은 그 발생 원인이나 소득지급 형태 등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과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483) Section 62 of the Income Tax (Earnings and Pensions) Act 2003.

2) 사업소득(business income)[484]

영국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상거래(trade), 전문적 용역(profession) 등의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칭한다. '상거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각종 상행위 및 제조활동 등을 포함하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거래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전문적 용역(profession)은 전문지식기술에 전적으로 기반한 업무 또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노동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한편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자체는 전문적 용역에 해당하지만 고용 관계하에서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예: 회사에 고용된 커피 바리스타).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 목적상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3) 배당 등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485]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소득의 범주에는 배당(dividend), 이자(interest), 사용료(royalty), 부동산소득(immovable property), 신탁소득(trust) 등 자본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다만 자본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자체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으로서 아래 제2장에서와 같이 별도로 과세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별도의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에 대한 대가로 분배(distribution)되는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에는 일반적인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주식배당, 주식상환초과금, 지분증권에 대한 이자 등 기업 자본 분배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이자소득은 각종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전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대가를 포괄한다. 이에는 일반적인 예금, 대여금 등의 이자와 더불어 선이자 등 할인금, 채무증권으로부터의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금전거래가 포함된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세부 종류에 따라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상당수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료소득은 개인이 저작권(copyright), 특허권(patent) 등의 무형자산을 사용하게 함으

484) Wolters Kluwer, 2015, p.137.
485)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로써 얻는 대가를 통칭한다. 부동산소득은 토지 등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대가로서 각종 임대료(rent)를 포함한다.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토지 및 이에 부속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이 모두 해당된다.

4) 기타소득(other taxable income)[486]

상기 주요 소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세법 규정 또는 판례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인정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고용 관계나 자영업 등 사업활동에서 비롯되지 않은 일시적인 소득이 해당된다. 일례로 일시적인 저작 활동에 따른 대가, 소개비, 커미션, 프리랜서 수입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비과세소득

개인이 수취하는 소득으로서 그 성격상으로는 상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상 별도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크게 납세자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 개인저축계좌 등의 이자소득, 기타 목적에서의 비과세 혜택 등으로 구성된다.

1) 납세자 복지 관련

국민의 생활 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지원금 등은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상당수 항목들이 비과세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비과세대상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다수 포함한다.[487]

- 사별 보조금(bereavement payment)
- 아동보조금(chile benefit) 및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장애생활보조(Disability Living Allowance)

486) GOV.UK, HMRC Guidance, HS325 other taxable income(2018), Updated 6 April 20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ther-taxable-income-hs325-self-assessment-helpsheet/hs325-other-taxable-income-2018, 검색일자: 2019.2.19.;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19.

487) GOV.UK, https://www.gov.uk/browse/benefits, 검색일자: 2019.02.19.; Citizensadvice, https://www.citizensadvice.org.uk/debt-and-money/tax/what-is-taxable-income/taxable-and-non-taxable-income/, 검색일자: 2019.2.19.

- 고용지원보조금(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 주거보조금(Housing Benefit)
- 모성지원공제(Maternity Allowance)
- 연금세액공제(Pension Credit)
- 전쟁상이연금(War Disablement Pension) 등 기타 국가지원 보조금

2) 개인저축계좌 등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계좌에서 운용되는 투자금으로부터의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2018/19년도 현재 개인저축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금 한도는 연간 2만파운드이며, 해당 투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이자 등의 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개인저축계좌 투자금에 대한 자본이득 또한 과세되지 아니한다.[488]

한편 개인저축계좌 연간 투자 한도 2만파운드 중 4천파운드까지는 생애개인저축계좌(lifetime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40세 미만의 성인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금액의 25%에 상당하는 보너스(연간 한도 1천파운드)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보너스 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계좌의 자금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지만,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출하는 것은 계좌 개설 이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489]

이외에도 아래에서와 같이 특정 형태의 투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 특정예금증서(authorized savings certificates)에서 발생한 소득
- 소득비례저축(certified save as you earn) 관련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및 만기수익
- 특정 벤처캐피털신탁(venture capital trust)의 배당금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비과세증권(securities free of tax to residents abroad)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비거주자가 보유한 특정 외국통화표시증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
- 영국 재무부에서 발급한 비과세예금증서(tax reserve certificates)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

488)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489) GOV.UK, https://www.gov.uk/lifetime-isa, 검색일자: 2019.2.20.

3) 기타 비과세 대상[490]

이외에도 각종 정책적 목적 상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질병, 장애, 실업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받는 특정 보험금
- 생명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특정 형태의 이익
-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compensation or damages for personal injuries)
- 노조단체(trade union)로부터 지급받은 파업수당 및 실업급여
- 국세청으로부터 수령한 국세환급이자
- 지방정부로부터의 주택보조금(housing grants)
- 근무와 관련된 직업훈련 보조금
- 교육보조금 및 장학금 수령액
- 학교 통학 관련 비용 보조금
- 기타 특정 사회보장 관련 보조금 등

2. 분류과세 대상 소득[491]

영국 거주자가 자산의 처분 등으로부터 수취한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위와 같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된다. 자본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영국 거주자이다. 다만 비거주자가 영국 내에 지점 또는 대리인(agency)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영국 내 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본이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과세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및 동산 자산, 증권, 지적재산권, 영업권 등의 유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이며 일부 예외적으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대상 자본이득은 기본적으로 자산 처분으로 인해 받는 대금에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월된 자본손실금액 또한 공제 가능하다. 자본이득세 산출 시 처

49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491) GOV.UK, HMRC, Capital Gains Manual, Updated 11 December 2018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1700, 검색일자: 2019. 2.25.;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25.

분 시점은 처분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되, 해당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대상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연간 11,700파운드까지는 비과세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감면 또는 이연(exemptions and deferral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납세자의 경우 10%, 그 외 납세자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당소득은 영국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일반세율에 비해 다소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사실상 분류과세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간 최대 2천 파운드까지 배당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소액 배당을 받는 개인 주주에 대한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배당소득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일반세율에 비해 다소 낮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Ⅳ-1〉 2018/19년도 배당소득 적용세율

(단위: %)

구분	세율
기본세율	7.5
중간세율	32.5
최고세율	38.1

자료: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 결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을 포함한 전체 종합소득이 소득세 기본세율 구간(즉 34,500파운드 이하)에 해당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 종합소득이 상위세율 40%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소득은 32.5% 세율을 적용하며, 전체 종합소득 구간이 최고세율 적용 대상일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38.1%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세율 적용에 있어 배당소득은 전체 종합소득 중 가장 상위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492] 배당소득 및 기타 종합소득이 존재할 경우 세율 적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92)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과세사례 1
(사실관계) 2018/19 과세연도에 개인납세자 A의 배당금 수령액은 3,000파운드이며 그 외의 종합소득은 35,000파운드에 달한다.

(세율적용) 배당소득 3,000파운드 중 2,000파운드의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은 1,000파운드이다. 따라서 전체 과세대상 종합소득은 36,000파운드이며 개인소득공제 한도 11,850파운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최종 종합소득금액은 기본세율 적용 구간인 34,500파운드 이하임. 이에 따라 1,000파운드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적용할 세율은 7.5%로 결정된다.

자료: GOV.UK, https://www.gov.uk/tax-on-dividends, 검색일자: 2019.2.2.

한편 기타 종합소득이 낮아 개인소득공제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배당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과세사례 2
(사실관계) 2018/19 과세연도에 개인납세자 B의 배당금 수령액은 14,000파운드이며 그 외의 종합소득은 7,600파운드에 달한다.

(세율적용) 기타 종합소득 7,600파운드에서 개인소득공제 한도 11,850파운드에 미달하는 부분은 4,250파운드이며, 이를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은 14,000 - 2,000(배당소득공제) - 4,250(개인소득공제 미사용분) = 7,750파운드임. 결과적으로 최종 종합소득금액은 기본세율 적용 구간이며,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 7,750파운드×7.5% = 581.25파운드의 소득세가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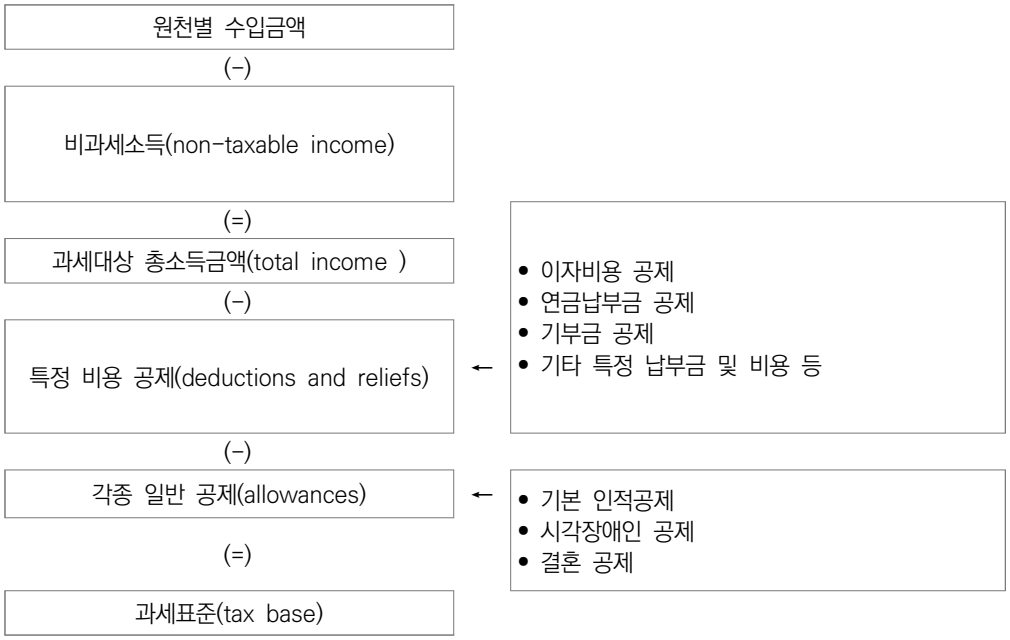
자료: UK FreeAgent, https://www.freeagent.com/rates/dividend-tax/, 검색일자: 2019.2.20.

V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체계

1.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 방법 개괄

각 종류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별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으로 합산한다. 각 소득 종류별로 소득공제 가능액을 차감한 뒤 종류별 과세금액을 결정한다. 이어 개인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표 V-1〉 과세표준 산출체계



자료: Wolters Kluwer,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15-16*, Croner-i, 2015, pp.46~4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각종 소득공제

개인소득세 목적상 소득공제는 크게 ① 특정한 형태의 비용에 대한 공제 및 ② 일반적·개괄적 성격의 공제와 같이 구분된다.

가. 특정한 비용 공제 (deductions)

주로 납세자가 특정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들 중 소득세법에서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한 항목들을 의미한다. 이에는 이자비용, 연금납부금, 사업손실, 특정단체 납부금, 특허권 비용,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이자비용[493]

다음과 같은 특정한 용도로 차입한 금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한다.
-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
- 종업원지주회사 지분 취득에 사용
- 파트너십 지분 취득에 사용
-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 차입자가 65세 이상으로서 종신연금 취득을 위해 사용된 차입금

다만, 당좌차월(bank overdraft) 및 신용카드 이자 등 다음과 같은 차입금 이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당 이자가 당좌차월 또는 신용카드 거래 계약에서 발생된 경우
- 해당 이자금액이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 차입 거래의 주요 목적이 조세 절감을 위한 경우

2) 보험료 납부금[494]

소정의 등록연금(registered pension scheme) 납부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영국 내 관련

493)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494)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소득(relevant UK earnings)의 100%에 상응하는 만큼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연간 한도는 3,600파운드로 제한된다. 또한 생애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연금펀드(pension fund)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는 총금액은 1,030,0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

3) 기부금

일반적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영국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기부금 공제는 교회 등 자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기부금보조(Gift Aid) 제도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495] 기부금보조는 개인 기부자가 교회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25%)에 해당하는 만큼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자선단체에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례로, 기부자가 100파운드의 금원을 교회 등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정부에서 25파운드를 보조하여 125파운드의 기부금을 교회가 받게 되는 것이다.

기부금보조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대가성 없는 금전 형태의 이전 거래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496] 기부금원은 기부자 자신의 것이어야 하며, 현금,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전신환 등의 금전 거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예배나 설교 과정에서의 봉헌금 등은 자선 등의 목적에 따른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향후 상환 의무나 자산취득 등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자산, 용역, 권리 등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기부금 지급액의 한도는 없지만, 기부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기부금보조 금액에 상응할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497] 기부금원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상·하한 제한은 별도로 없다. 다만, 기부를 행한 당해 과세연도에 기부자는 기부금보조 금액을 충당할 만큼의 충분한 세금(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한 추가 납세 의무가 있다. 결국 기부금보조 제도는 기부자가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기부단체로 이전해 주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498]

---

495) GOV.UK,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chapter-3-gift-aid), 검색일자: 2019.1.8.

496) GOV.UK,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Chapter 3: Gift Aid, Chapter 3.2 and Chapter 3.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chapter-3-gift-aid, 검색일자: 2019.1.8.

497) GOV.UK,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Chapter 3: Gift Aid, Chapter 3.3 and Chapter 3.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chapter-3-gift-aid, 검색일자: 2019.1.8.

기부금 예시

2015 과세연도에 개인 납세자 Mr. Green은 자선단체 A 및 B에 각각 800파운드 및 1,600파운드를 기부하였으며, 기부자는 소득세로 250파운드만을 납부하였음.
이 경우, 기부금보조로 자선단체 A 및 B에 지원된 금액은 600파운드(=800*25% + 1,600*25%)에 해당함. 따라서 Mr. Green은 동 600파운드와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액 250파운드와의 차액 350파운드에 대해 추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됨.

기부금보조 제도를 활용하여,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의 경우 기부금 지급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499] 세금 감면액은 기부금보조가 가산된 총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면, 100파운드의 최초 기부금에 대하여 25파운드의 보조금이 가산된 125파운드가 기준이 된다. 또한 기본세율(20%)을 초과하는 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해당 기본세율 초과 부분에 상응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40% 또는 45%의 세율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125파운드의 20%(=40%-20%) 또는 25%(=45%-20%)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일반적 소득공제 (allowances)

1) 기본인적공제(basic personal allowance)[500]

성별 또는 기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총소득에서 일괄적으로 11,850파운드를 공제한다. 다만, 10만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부분 2파운드당 1파운드의 비율로 소득공제 금액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연간 총과세대상 소득이 12만 3,7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기본 인적공제 금액은 0이 된다.

498)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2013, p.6.
499) 영국 정부(https://www.gov.uk/donating-to-charity/gift-aid), 검색일자: 2019.1.8.
50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Individual Taxation* sec. ita, Country Analyses, September 24, 2018, p.33.

기본인적공제 예시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105,128파운드일 경우:

① 과세대상 소득 중 10만파운드 초과분 = 105,128 - 100,000 = 5,128
② 소득 초과분의 1/2 = 5,128 / 2 = 2,564
③ 인적공제 가능 기본 금액 = 11,850
④ 소득공제 금액 (③ -②) = 11,850 - 2,564 = 9,286

2) 시각장애인공제 (blind person's allowance)[501]

당해 과세연도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을(registered) 입증한 납세자에 대해 적용된다. 만약 당해 과세연도 중 해당 납세자의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동 공제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배우자나 법적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배우자 등은 동 과세연도 전체 또는 일부 기간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와 동거중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소득공제금액 변화

기본인적공제 및 시각장애인공제 금액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기간 동안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V-2〉 기본인적공제 및 시각장애인공제 금액 변화

(단위: 파운드)

과세연도	기본인적공제[1)]	시각장애인공제
2010/11	6,475	1,890
2011/12	7,475	1,980
2012/13	8,105	2,100
2013/14	9,440	2,160
2014/15	10,000	2,230
2015/16	10,600	2,290
2016/17	11,000	2,290
2017/18	11,500	2,320
2018/19	11,850	2,390

주 : 1) 과세소득이 10만파운드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부분 2파운드당 1파운드의 비율로 기본인적공제 금액을 인하함

자료: GOV.UK, HMRC Income Tax personal allowances and relief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come-tax-personal-allowances-and-reliefs, 검색일자: 2019.2.25.

501) GOV.UK, https://www.gov.uk/blind-persons-allowance, 검색일자: 2019.2.8.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체계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영국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3구간으로 나누어진다. 2018/19년 현재 34,500파운드 미만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이 적용되며, 34,500~15만파운드까지는 중간세율(higher rate, 40%)이 적용되며, 15만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Ⅵ-1〉 2018/19년도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

(단위: 파운드)

과세표준	세율
0~34,500	20%
34,501~150,000	40%
150,001~	45%

자료: GOV.UK, HMRC Guidance, Income Tax rates and allowances for current and past years, Updated 1 May 20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income-tax/income-tax-rates-and-allowances-current-and-past, 검색일자: 2019. 2.25.

2. 구간별 적용 세율 및 특칙: 적용 세율 표, 과거 주요 세율 변동 내역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및 세액산출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2〉 2018/19 연도 산출세액 계산 예시

(단위: 파운드)

구분		항목별 계산	소계
	근로소득:		
	급여	160,000	
	복리후생	15,000	
①	총과세대상 소득		175,000
	기본 인적공제:		
	인적공제 기본금액	11,850	
	10만파운드 초과소득에 대한 인적공제 차감액	(11,850) = min{(175,000-100,000)/2, 11,850}	

구분		항목별 계산	소계
②	인적공제 적용 가능액		0
③	과세표준	= ① − ②	175,000
	산출세액 계산:		
	기본세율 적용구간	34,500 × 20% = 6,900	
	중간세율 적용구간	(150,000-34,500) × 40% = 46,200	
	최고세율 적용구간	(175,000-150,000) × 45% = 11,250	
④	총산출세액		64,350

자료: http://taxsummaries.pwc.com/ID/United-Kingdom-Individual-Sample-personal-income-tax-calculation, 검색일자: 2019.2.25.

한편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Ⅵ-3〉 스코틀랜드 지역의 2018/19년도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

(단위: 파운드)

과세표준	세율
0~2,000	19%
2,001~12,150	20%
12,151~31,580	21%
31,581~150,000	41%
150,001~	45%

자료: GOV.UK, HMRC Guidance, Income Tax rates and allowances for current and past years, Updated 1 May 20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income-tax/income-tax-rates-and-allowances-current-and-past, 검색일자: 2019.2.25.

한편, 최근 연도의 과세표준 구간 및 적용세율(스코틀랜드 이외)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4〉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2012~2018년)

(단위: 파운드, %)

구분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기본세율	적용세율	20	20	20	20	20	20	20
	과표구간	~34,370	~32,010	~31,865	~31,785	~32,000	~33,500	~34,500
중간세율	적용세율	40	40	40	40	40	40	40
	과표구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최고세율	적용세율	50	45	45	45	45	45	45
	과표구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자료: GOV.UK, HMRC rates of Income Tax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rates-of-income-statistics, 검색일자: 2019.2.25.

3. 세액 공제: 세액공제 종류, 각 세액공제별 요건 및 한도

가. 기업투자기구(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502]

EIS는 소규모 기업들에 자본을 투자하는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정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 기업의 주식에 대해 개인이 3년 이상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당해 과세연도에 발행된 주식가액의 30%에 달하는 감면률을 적용하며 최대 100만파운드까지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1) 적격 사업 활동(qualifying trade Activity)

EIS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발행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이 90% 이상 출자한 자회사가 소정의 적격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90% 이상 출자 자회사'란 90% 이상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산 등의 상황 시 90% 이상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 자회사는 당해 EIS 적격기업만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적격 사업 활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502) GOV.UK, HMRC, Guidance HS341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Income Tax relief (2018), Updated 6 April 20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erprise-investment-scheme-income-tax-relief-hs341-self-assessment-helpsheet/hs341-enterprise-investment-scheme-income-tax-relief-2018, 검색일자: 2019.2.2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20.

Activity A: 해당 기업 또는 그 90% 이상 자회사가 '적격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식 발행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동 적격 사업은 영국 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wholly or mainly)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적격 사업 준비 수행기간에 해당할 경우 이는 당해 사업 활동 시작시점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제한된다. '적격 사업'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영리활동으로서 아래와 같은 예외 업종 이외의 것을 뜻한다.

- 토지, 상품, 선물, 증권 기타 금융상품 취급
- 일반적인 도소매업 이외의 상품 취급업
- 은행, 보험, 대부업, 팩토링 등의 금융활동
- 리스업
-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수수료 취득
- 법률 또는 회계서비스업
- 부동산 개발
- 농업 또는 정원업(market gardening)
- 산림 관리, 목재 생산 등의 사업
- 조선업
- 석탄 채굴 또는 제철업
- 호텔업 및 이에 준하는 숙박 관련업
- 요양원 또는 주거형 케어하우스 등의 업종 등

Activity B: 당해 주식 발행 또는 그 직후 시기에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발행 시점부터 ① 영국에서 주로 또는 전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업으로부터 '적격 사업'을 이끌어내거나(derive), ② 적격 사업이 연구개발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적격 투자자

투자자는 개인이어야 하며 주식발행 시점 이전 2년 전부터 당해 주식 처분시점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에도 해당 발행회사와 관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해 개인이 주식 발행회사 또는 그 어떤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동 발행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본다. 당해 회사 또는 그 자회사 주식의 30% 이상의 보통주 또는 의결권 등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개인이 동 회사의 임원이거나 구성원인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서 특정한 대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종류의 대가 지급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전적으로 발생한 여비 또는 기타 경비의 정산액
- 해당 회사 또는 관련자에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로서 합리적인 거래목적이 있는 경우
- 투자에 대한 통상의 대가로서 수수하는 정도의 배당 또는 기타 수익금
- 객관적 시장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수되는 상품공급 대가
- 주식발행 회사가 점유한 부동산에 대한 렌트로서 적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 관련 법령상 조건을 충족하는 적정 수준의 대가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3) 적격 기업

EIS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서 해당 주식 발행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종(trade) 요건

당해 주식 발행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적격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 '적격 사업'이란 상업적 목적의 영리활동으로서 토지, 주식 거래 및 기타 금융거래 등 제외 업종으로 특정된 항목 이외의 활동을 의미한다.

나) 비상장 요건

당해 관련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비상장 상태이어야 하며 비상장 해제가 예정되거나 주식교환 조건에 따라 타 기업의 자회사로 될 것으로 예정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 통제 및 독립성 요건

당해 관련 기간 동안 주식 발행기업은 소정의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제(control)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독립성 요건과 관련하여, 동 발행기업은 관련 기간 동안 타 회사가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가 아닐 것이 요구된다.

라) 총자산 요건

당해 주식 발행기업의 자산가치가 주식발행 시점 직후 700만파운드를 넘지 아니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800만파운드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마) 종업원 수 요건

전일제 종업원의 수가 50명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자회사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일 경우에는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 전체의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일 것이 요구된다.

바) 적격 자회사 요건

주식 발행회사가 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해당 자회사는 당해 관련 기간 전체에 걸쳐 '적격 자회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적격 자회사란 ① 동 주식 발행회사의 51% 이상 자회사이면서 ② 동 회사 또는 그 자회사 이외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통제 · 관리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나. 초기기업투자기구(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503]

SEIS는 신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발행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소규모, 신규 창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EIS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즉, 기업 설립 및 초창기에는 SEIS에 의한 세제 지원을 받고 이후에는 EIS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SEIS는 투자주식가액의 50%에 상당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동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만파운드이다. SEIS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크게 ① 투자자 요건, ② 투자주식 요건, ③ 주식발행회사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요건을 적용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투자기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기간으로 구분된다.

503) GOV.UK, HMRC, Guidance HS393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 reliefs(2018), Updated 9 April 20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ed-enterprise-investment-scheme-income-tax-and-capital-gains-tax-reliefs-hs393-self-assessment-helpsheet/hs393-seed-enterprise-investment-scheme-income-tax-and-capital-gains-tax-reliefs-2018, 검색일자: 2019.2.2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20.

- Period A: 기업의 설립 시점부터 시작하여 당해 주식 종료일(발행일 이후 3년이 되는 시점을 종료일로 봄) 직전까지의 기간
- Period B: 당해 주식 취득 시점부터 시작하여 상기와 같은 주식 종료일까지의 기간

1) 투자자 요건

Period B에 해당하는 기간의 어느 시점 동안에도 투자자는 당해 주식 발행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 제약 조건은 투자자가 당해 발행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는 Period A 기간 동안 그 어느 시점에도 당해 회사에 대한 상당한 수준(substantial)의 이해관계(interest)를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당해 투자자가 주식 발행회사 또는 그 자회사 주식의 30% 이상의 보통주 또는 의결권 등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2) 투자주식 요건

해당 주식은 일반적인 보통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 또는 그 90% 이상 소유 자회사의 '적격 사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Period B의 종료 이전에 해당 주식 발행으로부터 모집한 재원을 '적격 사업 활동'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식발행회사 요건

당해 회사는 Period B 기간 내내 '적격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영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은 Period B의 시작 시점에 채무지불능력 상실, 자본잠식, 파산직면 등의 상황[504]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세액공제

이외에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벤처자본신탁(venture capital trust) 세액공제, 적격 사회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social investment tax relief)가 있으며 이들 세액공제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504)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의는 European Commission의 Community Guidelines on State Aid for Rescuing and Restructuring Firms in Difficulty (2004/C 244/02)에 따른다.

〈표 Ⅵ-5〉 세액공제 비교

제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연간투자액	투자액 공제비율	배당소득 세액공제
기업투자기구(EIS)	100만파운드, 지식집중기업에 최소 100만파운드를 투자하는 경우 200만파운드	30%	배제
초기기업투자기구(SEIS)	10만파운드	50%	배제
벤처자본신탁(VCT)	100만파운드	30%	배제
사회적기업(SITR)	20만파운드	30%	가능

자료: GOV.UK,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capital-gains-tax-relief, 검색일자: 2019.3.4.

4.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유무 및 관련 제도 개관

가. Working Tax Credit(WTC) 및 Child Tax Credit(CTC)

영국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Working Tax Credit (WTC)을 도입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같이 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환급 가능한 형태의 세액공제제도로서 근로 여부 및 근로시간,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을 결정한다. 또한 부양자녀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나, 기본적인 최소근로시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영국은 2003년도에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일정 세액을 환급해주는 공제제도(CTC)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같이 최소근로소득 요건을 두는 국가들과 차별화된다. 자녀의 수, 나이,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급대상자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CTC 급여액이 결정된다.

영국은 WTC(working tax credit)의 자격 요건으로 연령에 따른 자녀 여부와 주당 업무시간과 소득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해야 한다.[505]

- ○ 16세부터 24세까지는 자녀가 있거나 적격 장애인이어야 하며,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요구조건이 없음
- ○ 다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Universal Credit area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연금세액공제 조건에는 해당해야 함

505) GOV.UK,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 검색일자: 2019.2.20.

○ 장애 등 다른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연령별로 최소 16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의 일정 시간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함

〈표 Ⅵ-6〉 영국의 연령별 업무시간 요건

상황	주당 시간
25~59세	30시간
60세 이상	16시간
장애인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독신[1]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부[1)2)]	일반적으로 24시간(한명이 최소 16시간)

주: 1) 자녀는 16세 이하로 승인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20세 이하.
2) 24시간 미만이라도 16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장애, 6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장애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혜택을 받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보호자 공제를 받는 경우 또는 입원·투옥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 GOV.UK,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eligibility, 검색일자: 2019.2.21.

○ 대상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소득(self-employed) 또는 둘 모두를 수행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해야함

WTC 급여산정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소와 더불어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의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의 최대금액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실제 수취금액은 아래와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

〈표 Ⅵ-7〉 영국의 WTC 급여산정요소(2017~18)

(단위: 파운드)

구성요소		연간금액
기본요소(Basic Element)		1,960
부부요소[2)](Couple Element, 기본요소에 추가)		2,010
한부모요소(Lone Parent Element, 기본요소에 추가)		2,010
30시간요소[3)](30 Hour Element, 다른 요소에 추가)		810
장애요소[1)](Disability Element, 다른 요소에 추가)		3,000
중증장애요소[1)](Severe Disability Element, 다른 요소에 추가)		1,290
자녀양육요소[2)]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 최대 자녀양육경비	주당 175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최대 자녀양육경비	주당 300
	자녀양육경비 보조비율	70%

주: 1) 합산신청이 이루어지고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요소에 해당되는 경우 부부당 2가지 요소를 포함함.
2) 부부이면서 이 중 한 사람이 이민통제에 해당하면서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부부요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합산신고는 가능함.
3) 30시간요소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자에게만 적용됨.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pril 2017, p.9.

○ 업무시간, 장애 여부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다양하지만, 자녀가 없는 25세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독신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최대 795파운드임

〈표 Ⅵ-8〉 영국의 소득별 적용금액(자녀가 없는 경우)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	25세 이상의 주당 30시간 이상의 독신	25세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의 부부
11,700[1)]	795	2,615
12,000	485	2,495
13,000	75	2,085
14,000	0	1,675
15,000		1,265
16,000		855
17,000		445
18,000		35
19,000+		0

주: 1) 25세 이상의 주당 30시간 최저임금(national living wage)로 근무하는 경우 연간 11,700파운드의 소득이 발생함.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pril 2017, p.20.

〈표 Ⅵ-9〉 영국의 소득별 적용금액(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6,240[1)]	7,300	10,080	12,865
11,700[2)]	5,945	8,725	11,510
15,000	4,595	7,325	10,155
20,000	2,545	5,325	8,105
25,000	495	3,275	6,055
30,000	0	1,225	4,005
35,000		0	1,955
40,000+			0

주: 1) 연간소득 6,240파운드는 파트타임(주당 1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의 근무)을 가정하여 산정됨.
2) 11,700파운드의 소득을 가진 가계에서 최소한 한 피부양자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가정함.
3) 장애아동이 존재한다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음.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pril 2017, p.21.

이와 같이 WTC 금액은 납세자의 개인 상황(근로시간, 장애 여부,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즉, 개별 납세자의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연간 최대 수급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연간 소득금액(annual income, 부부합산)을 감안하여 WTC 금액이 감소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만약 연간 소득금액[506]이 6,42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41%의 감소율로 WTC 금액이 감소한다.[507] 또한 WTC를 수령할 수 있는 연간 소득금액 한도는 납세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예: 자녀가 없는 독신은 13,100파운드,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18,000파운드임).[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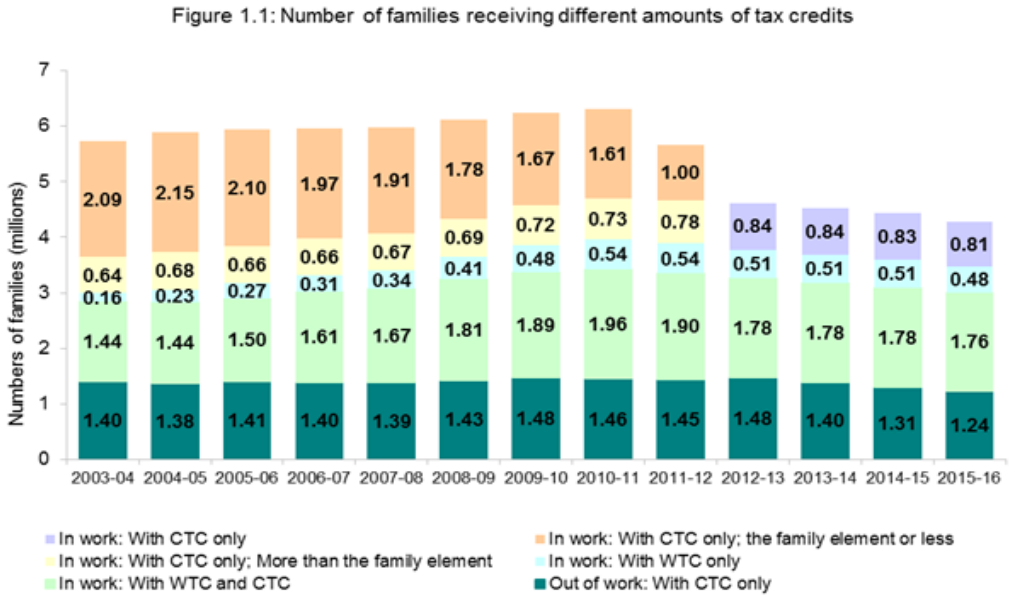
나. 세액공제 실행 규모

영국의 세액공제(WTC와 CTC) 혜택 가구 수는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큰 폭의 감소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 혜택 가구 수는 2003~04기간 574만가구에서 2010~11기간 631만가구로 증가하였으나, 2010~11기간부터 감소가 이루어져 2015~16기간에는 425만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2012년(2010년 예산안에서 확정된)부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적용 시 두 번째 소득구간(4만파운드) 가구에 적용되던 가족요소(연간 545파운드)가 폐지된 것에 기인한다. 이를 테면, WTC의 혜택만 받는 가구(자녀가 없는)는 2003~04기간 약 16만 4천가구에서 2010~11, 2011~12기간 54만가구로 매년 약간씩 증가하였으나, 2012~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5~16기간 48만가구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WTC와 CTC의 모든 혜택을 받는 가구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506) 연간 소득금액이란 근로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사회보장혜택, 연간 300파운드 이상의 배당 · 이자 ·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금액을 의미함(HMRC, 2018, pp.21~24.)
507) HMRC, 2018, p.26.
508) GOV.UK,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eligibility, 검색일자: 2019.1.23.

[그림 Ⅵ-1] 연도별 WTC 및 CTC 혜택 가구 수

(단위: 백만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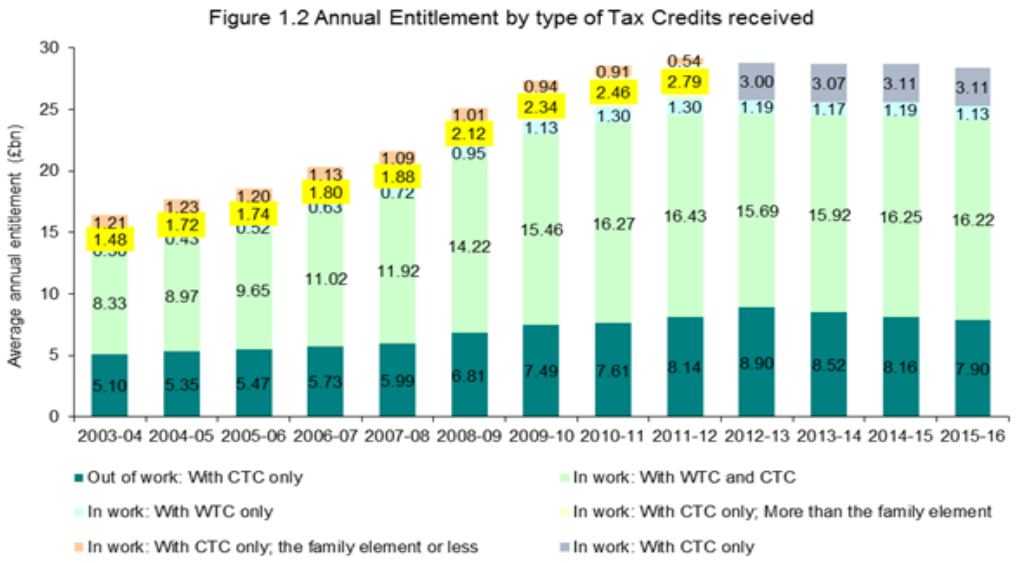


자료: HM Revenue and Customs,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UK Finalised annual award in 2015~16, 2017, p.11.

WTC와 CTC의 전체 공제금액은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후 기간에는 전체 규모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규모는 2003-04기간 160억파운드에서 2011~12기간 290억파운드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기간은 280억파운드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WTC와 CTC를 모두 부여받는 가구에 대한 혜택금액 비중이 51%에서 57%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Ⅵ-2] 연도별 WTC 및 CTC 금액

(단위: 십억파운드)



자료: HMRC,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UK Finalised annual award in 2015-16, 2017, p. 12.

최근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WFTC(Work Families'tax credit)는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구분된 그룹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509] 전반적으로 WFTC는 이전에 일하지 않다가 일하게 되는 성인의 수가 이전에 맞벌이하다가 퇴직하는 성인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홀로사는 자녀 부양 단독 여성에 대한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데 연구결과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특히, 부양 자녀가 있는 가계의 성인의 업무시간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WFTC가 1999년 이전의 FC(famlily credit)에 비해 전업 근무하는 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최저한세

영국은 소득세 세액공제 등의 전체에 대한 별도의 최저한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509) Mike Brewer & James Browne, 2006, pp.1-19.

Ⅶ 신고, 납부 및 징수 체계

1. 신고 및 납부 의무

가. 신고 의무

영국 개인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과세제도(Self Assessment system)가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저축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원천징수시스템에 의해 종결되어 신고의무가 사실상 없을 수 있다. 근로, 연금 및 저축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개인과 사업자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은 서면신고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신고의 경우 1월 31일까지이다.[510]

- ○ 2017/2018년 과세기간(2017.4.6. ~ 2018.4.5.) 종료일로부터 서면신고는 6개월 이내(2018년 10월 31일 자정), 온라인신고는 9개월 이내(2019년 1월 31일 자정) 제출되어야 함
- ○ 세액의 납부기한은 2017/2018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임

나. 납세의무 확정(assessment)[511]

1) 자가확정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세 납부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러한 자가확정(self-assessment)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 후 9월 30일까지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세 납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신고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확인한다. 원천징수금액이 적정하고 추가적 세액이 없다면 납세자가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

510) GOV.UK, https://www.gov.uk/self-assessment-tax-returns, 검색일자: 2019.1.7.
511)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으며, 원천징수세액 이외의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금액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 후 12월 31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amended self-assessment)할 수 있다. 한편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접수 후 9개월 이내에 세액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가 과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관청이 보유한 납세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실제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간편 확정(simple assessment)

영국 정부는 가급적 세무신고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2015년 중에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간편 확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간편 확정 제도에서는 소득세 관련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즉,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소득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과세관청이 산출한 세액 및 납부기한, 세액 산정에 참고한 소득 정보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만약 과세관청이 통보한 세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간편 확정 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는 간편 확정 통보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세액을 경정하거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다. 세액 납부[512]

자가확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당해 과세연도 중 1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세 납부액의 절반을 예납
- 당해 과세연도 종료 후 7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세 납부액의 절반을 추가 납부
- 당해 과세연도 종료 후 1월 31일까지: 잔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납부

512)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4. 등

간편 확정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료 후 1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간편 확정 과세 통지가 당해 과세연도 종료 후 10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당해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3개월 이후까지 납부 의무가 있다.

납세자는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을 경우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급청구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은 당초 세액 결정 시 착오나 오류가 당시의 보편적인 관행과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급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전연도에 대한 납부세액이 1천파운드가 초과하는 개인 납세자는 당해연도 소득세액 추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ayment on account, 중간예납). 중간예납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513]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이며, 각각 직전 과세연도 소득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은 당해연도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선급세액으로 차감된다. 예를 들어, 2017~2018 과세연도 소득세 결정세액 3천파운드, 2017~2018 중간예납액 1,800파운드의 경우, 2019년 1월 31일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소득세액은 2,700파운드[=3,000-1,800+(3,000×50%)]이다.

다만, 중간예납은 직전연도 신고한 납세액이 1천파운드 이하이거나, 소득세 부담액의 80% 이상을 원천징수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한편 개인 납세자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액이 직전 과세연도 소득세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간예납액의 감액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라. 수정(경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영국 납세자는 법정 신고기한을 준수하였는지에 관련 없이[514]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오납부에 대한 수정(경정) 신고를 할 수 있다.[515]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법정신고 기한 종료 후 4년 이내에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516], 최근 2년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청구로 하고 그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서면신고에 의한다(예: 15/16년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31일까지 그 외의 기간은 서면신고로 청구하여야 함).[517]

513) GOV.UK, https://www.gov.uk/understand-self-assessment-bill/payments-on-account, 검색일자: 2019.2.25.
514) GOV.UK, https://www.gov.uk/claim-tax-refund, 검색일자: 2019.1.7.
515) GOV.UK,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elf-assessment-claims-manual/sacm12005, 검색일자: 2019.1.7.
516) GOV.UK,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elf-assessment-claims-manual/sacm12155, 검색일자: 2019.1.7.

한편, 영국 과세관청은 현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액을 재경정하고 이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HMRC가 납세자에게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과세신고 기한으로부터 기산되며,[518] 이러한 부과제척기한은 납세자의 고의 유무나 과실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기한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 · 통보하였으나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이외에 통상적인 자진신고 항목의 경우 4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납세자의 부주의 · 태만 및 고의에 의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각 6년 및 2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519]

2.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영국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 등이 있다.

〈표 Ⅷ-1〉 가산세 종류별 개요

구분	무신고가산세[1]	과소신고가산세 (inaccuracy penalty)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이자 (late payment)
가산세율	· 1일~3개월: £100 · 3~6개월: 1일당 £10(£900) · 6개월~1년: 5%* · 1년 경과: 5%* * £300 중 큰 금액	· 부주의: 0~30% · 고의: 20~70% · 고의로 은닉: 30~100%	· 30일 경과: 미납세액(unpaid tax)의 5% · 6개월 경과: 5% · 1년 경과: 5%*	· 연 3.25%
한도	· 1년 경과 이후 추가 가산세 없음 (최대 £1000 + 세액의 10%)	-	· 1년 경과 이후 추가 가산세 없음 (최대 15%)	-
산정기준	· Sch.55 FA 2009	· Sch.24 FA 2007	· Sch.56 FA 2009	· Sch.54 FA 2009 · 영국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에 따라 변동[2]

주: 1) GOV.UK, https://www.gov.uk/self-assessment-tax-returns/penalties, & https://www.gov.uk/government/news/hmrc-releases-most-optimistic-self-assessment-expense-claims, 검색일자: 2019. 1.7.
2) GOV.UK,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liance-handbook/ch140180, 검색일자: 2019.1.7.

517) GOV.UK, https://www.gov.uk/self-assessment-tax-returns/corrections, 검색일자: 2019.1.7.
518) Schedule 39 Finance Act 2008과 Schedule 51 Finance Act 2009
519) GOV.UK,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liance-handbook/ch56100, 검색일자: 2019.1.7.

가. 무신고 가산세 (failure to notify chargeability to tax)[520]

납세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과세대상 세금이 있음에도 이를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10월 5일까지 과세관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과세연도 종료 후 1월 31일 시점에 미납부된 세액에 대해 적용되며, 납세자의 고의 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 납세자의 고의가 없을 경우: 잠재적 세수손실액의 최대 30%
- 납세자의 고의가 있지만 이를 은폐하지는 않은 경우: 잠재적 세수손실액의 최대 70%
- 납세자의 고의가 있고 이를 은폐한 경우: 잠재적 세수손실액의 최대 100%

한편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해당 행위를 전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적절히 감경될 수 있으며, 납세의무 위반이 해외에서의 거래와 연관될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나. 신고불성실 가산세(inaccuracy penalties)[521]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납세자 신고 관련 서류의 하자(errors in the taxpayer's document)가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납세자의 협력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한 반면,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가산세가 가중될 수도 있다.

1) 납세자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

동 가산세는 납세자가 과실 또는 고의(careless or deliberate)로 인해 국세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에 이르게 될 경우에 적용된다.

- 납부대상 세액의 과소 산출
- 결손금의 허위 또는 과다 계상
- 세액환급액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520) GOV.UK, HMRC Manual, Self Assessment: the legal framework, Updated 25 August 2016,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elf-assessment-legal-framework/salf210, 검색일자: 2019.2.25.;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25.

521) HMRC, 2018, pp. 1~6.;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2.25.

즉, 당해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부실 또는 착오 등으로 거래 사실과 달라 과소신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에 해당하며 과소신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소신고 사유는 부주의한 경우, 고의적인 경우, 고의적이고 정보은닉의 경우로 나뉘며, 해당 사안에 따라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 최소 0%에서 100%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정한다.

납세자의 '과실'은 납세자가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인정된다. 만약 납세자가 정보를 제공할 당시에는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고도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과실'에 따른 신고오류로 간주된다.

납세자의 '고의'가 있을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또한 여러 종류의 오류가 혼재할 경우 각 종류의 오류별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오류 발생의 원인 종류별로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부주의에 의한 오류일 경우: 잠재적 세수손실액의 최대 30%
- 고의에 의한 오류일 경우: 잠재적 세수손실액의 최대 70%
- 고의에 의한 오류이면서 은폐행위가 있을 경우: 잠재적 세수손실액의 최대 100%

〈표 Ⅶ-2〉 과소신고 사유별 적용 가산세율

(단위: %)

부과사유		최소	최대
부주의한 경우	자발적 고지	0	30
	비자발적 고지	15	30
고의적인 경우	자발적 고지	20	70
	비자발적 고지	35	70
고의적이고 정보은닉의 경우	자발적 고지	30	100
	비자발적 고지	50	100

자료: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7/11/schedule/24, 검색일자: 2019.2.25. & HMRC, *Penalties for inaccuracies in returns and documents*, Compliance checks series – CC/FS7a, 2018, pp.1~6.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경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해당 행위를 전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적절히 감경될 수

있으며, 해당 거래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은 구두, 장부 제공, 기타 협력 등의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다. 각 정보 제공 형태별로 적용 가능한 감면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두(거래사실에 관한 정보 제공, 질문의 충실한 답변 등)의 경우 가산세율의 30%, 협력(서면 질문의 충실한 답변, 상시의 방문조사 협조 등)은 40%, 장부의 제공(거래 장부의 지체없는 제공)은 30% 감면하며 감면율은 중복적용됨

- 예를 들어, 과소신고(납부세액 3천파운드)가 납세의무자의 부주의로 발생되었으며 과소신고 사유가 비자발적(과세관청 조사)로 확인되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조사결과에 협력(30%)하고 장부를 제공한 경우(40%)에는 합계 70%로 가산세율을 감면함

① 부주의한 경우, 비자발적 고지 가산세율 범위 계산: 최대 30% - 최소 15%= 15%,

② 15%*70%(감면율)=10.5%

③ 부주의한 경우, 비자발적 고지 최고 가산세율 30%-10.5%=19.5%

④ 가산세액=과소신고 납부세액 3,000파운드*19.5%=585파운드

한편, 납세자가 소득세액 산출 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등 정당한 사유(reasonable excuse)가 있음이 입증될 경우 위와 같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영국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의 일례로 예측하지 못하거나(unforeseen) 피할 수 없는(inescapable)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 거래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증빙하여야 한다.

3) 해외 사안(offshore matter) 관련 가산세 가중

통지의무 해태, 납세 정보 오류 및 신고불성실 등의 사실이 해외 사안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다. 이는 해외 국가의 과세 투명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불투명성이 높을수록 가산세 가중 정도가 높다. 영국 정부는 해외 국가들의 과세투명성 정도에 따라 Category 1~3의 세단계로 구분하며, Category 1 및 3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별도로 명시하되 나머지 국가들은 Category 2로 분류하고 있다. 각 Category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가중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Ⅷ-3〉 카테고리별 가산세 가중

구분	가산세 가중
Category 1	기본 가산세율 그대로 적용
Category 2	기본 가산세율의 1.5배를 적용하며 관련 세액의 150%를 한도로 함
Category 3	기본 가산세율의 2배를 적용하며 관련 세액의 200%를 한도로 함

자료: HMRC, Compliance checks: Higher penalties for offshore matters CC/FS 17, 2019, p.2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522)]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미납세액에 5%의 가산세가 1차로 부과된다. 1차 가산세 부과 이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미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추가로 5%의 가산세가 2차로 부과된다. 이후 6개월(즉, 1차 가산세 부과일로부터 11개월)이 더 경과하더라도 미납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미납액의 5%에 해당하는 3차 가산세가 부과된다.

라. 지연이자[523)]

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penalties)의 지연납부(late-payment)에 대해서는 지연이자(interest)가 부과되며, 적용 이자율은 고시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경된다. 현행 지연이자율은 3.25%로서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별도의 한도 규정은 없다. 또한 지연이자는 소득세 목적상 비용으로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3. 원천징수세율 및 절차

영국은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중이 높다.

522) GOV.UK,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elf-assessment-legal-framework/salf308a, 검색일자: 2019.2.25.
523)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hmrc-interest-rates-for-late-and-early-payments/rates-and-allowances-hmrc-interest-rates, 검색일자: 2019.2.25.

가. 급여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시스템

영국은 임금 및 급여(wages and salaries)에 대하여 소득 수취 시 징수하는(pay as you earn, PAYE) 원천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과세연도 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소득세 금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각 근로자에게 PAYE code를 부여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관청에서 개별 근로자의 납세 상태 및 소득공제 현황 등을 관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2013년도에 기존 원천징수시스템을 효율화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PAYE(Pay-As-You-Earn) RTI(Real-Time-Information)제도[524]를 도입하였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매달(또는 매주)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Income Tax(Earnings and Pensions) Act(ITEPA) 2003 의 Part 2부터 Part 7에서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PAYE, Pay-As-You-Earn) Part 11에서 규정하고 있다.

PAYE RTI 제도하에서 고용주는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종업원별 과세정보[525]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영국 국세청은 그렇게 제공된 납세자의 세무자료를 토대로 납세자별 납세코드(tax code)를 부여하고 동 코드에 따라 PAYE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계산된 세액을 고용주가 원천징수하는 구조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급여 '지급'시점은 세부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급여의 지급 형태는 현금, 현금바우처 등 모든 종류의 대가를 포함한다.

영국은 RTI 제도 도입 후, 소규모 사업자 등 온라인 신고가 면제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간이세액표(Taxable Pay Tables)를 활용한 원천징수를 허용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온라인

524) RTI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31002164108/http://www.hmrc.gov.uk/about/briefings/briefing-rti-paye.pdf)

525)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의 근로기간, 소득, 해당 고용계약 외 별도 고용을 통한 소득 및 기타 모든 소득원에 대한 정보, 연금수입 유무, 각종 정부 혜택, 학자금 상환금 등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FPS(Full Payment Submission)상에 기록하여 영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납세자 정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영국 국세청(GOV.UK, https://www.gov.uk/what-payroll-information-to-report-to-hmrc)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PAYE시스템을 통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의무화하였다.[526] PAYE RTI 시스템하에서 영국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527]

2) 원천징수 절차

고용주는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날에 당해 연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종업원들에게 당해 연도에 납부한 원천징수명세서(P60)를 제공해야 한다. 연간 수입이 1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 투자소득이 있는 개인, 회사의 임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고용주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한다.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에는 전 직장의 고용주가 발급한 확인서 사본을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종전의 PAYE code 정보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전된다.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회보장부담금 또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주는 당해 과세연도가 종료한 뒤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해 과세연도 중 근로자에 지급한 총급여 및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표 Ⅶ-4〉 고용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

기한	신고내용
매달 22일까지	종업원 근로소득세 및 국민보험 원천징수 납부
4월 5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Full Payment Submission, FPS) 제출
4월 6일부터	급여대상자명단 업데이트
4월 6일부터	급여원천징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5월 31일까지	종업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P60) 전달
7월 6일까지	종업원 비용 및 수당, 보조금 등 복지혜택 내역 신고

자료: GOV.UK, https://www.gov.uk/payroll-annual-reporting, 검색일자: 2019.2.25.

526)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able-pay-tables-calculator-method, 검색일자: 2019.2.25. 소규모 사업자 등을 위한 간이세액표는 영국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음

527) GOV.UK, https://www.gov.uk/paye-for-employers, 검색일자: 2019.2.25. 원천징수의무자는 영국 국세청의 PAYE 기본 프로그램(Basic PAYE Tools)을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할 수 있음

원천징수는 불이행 시에는 일반적인 PAYE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납부에 대하여 3.25%의 가산세(interest rate)를 부담하고 수정납부에 대해서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528]

3) 급여소득세 환급절차

PAYE RTI제도하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무정보가 적시에 갱신되어 납세자별 tax code에 따라[529] 정확한 세액이 원천징수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 이직 또는 퇴직 등의 고용관계 변화, 연금수령 등의 이유로 세금을 과도하게 또는 미달하여 납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고용주의 계산상의 착오로 세액이 잘못 징수된 경우, 고용주는 국세청에 추가적으로 FPS를 제출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에서 정산할 수 있다.[530]

즉,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531] 환급을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국가보험번호, 고용인정보, 국가복지혜택 및 필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구비하여 환급사유와 함께 유선 또는 서면으로 환급요청을 할 수 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환급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 최대 4~6주가량 소요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환급신청 사유를 검토한 후,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에게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추후 급여에서 공제[532]하거나 국세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533]

나. 배당소득

영국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이자소득

2016년 4월 6일부터는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28)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hmrc-interest-rates-for-late-and-early-payments/rates-and-allowances-hmrc-interest-rates, 검색일자: 2019.2.25.
529) 납세자는 본인에게 부여된 tax code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세청에 유선, 우편, 이메일, 또는 온라인 질의서 등을 통해 tax code 변경을 상시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tax code 질의서는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530) GOV.UK, https://www.gov.uk/payroll-errors, 검색일자: 2019.2.25.
531) GOV.UK, https://www.gov.uk/claim-tax-refund, 검색일자: 2019.2.25.
532) 미납세액이 3천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533) GOV.UK, https://www.gov.uk/tax-overpayments-and-underpayments, 검색일자: 2019.2.25.

라. 사용료소득

영국 내에서 지급되는 특허권과 관련된 사용료는 기본세율(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는 사용료가 원천징수자의 사업 등 직무(trade, profession or vocation)와 관련되어 지급된 것일 경우에 한정된다.

마. 기타소득

연금소득 및 특정 렌트료 등의 연간지급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4. 국외전출세

영국은 영구적인 거주를 위해서나 최소 1개의 과세기간 동안 전업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 시 과세관청에 form P85양식을 과세 신고기한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534] 다만 국외전출에 따른 별도의 과세는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 거주자였던 자가 5년 이내에 영국으로 귀환하는 경우에만 자본이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535]

534) GOV.UK, https://www.gov.uk/tax-right-retire-abroad-return-to-uk, 검색일자: 2019.3.31.
535) GOV.UK, https://www.gov.uk/tax-uk-income-live-abroad/selling-or-inheriting-assets, 검색일자: 2019.3.31.

제5장 | 독일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1. 개인소득세 도입 배경

세계적으로 근대적 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시점을 언급할 때 주로 영국에서 William Pitt의 제안으로 1799년에 총소득에 대한 누진적 과세형태의 소위 전쟁세(Kriegsabgabe)가 도입된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에서 현대적 의미의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처음 주장된 시점은 1806년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독일지역의 여러 제후국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인 프로이센 공화국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던 인물 중의 한 명인 Karl Freiherr vom Stein이 개인의 총소득에 대해 신고납세 형태의 누진적 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배경은 영국에서 전쟁세가 도입된 것과 동일하게 당시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이 이끌고 있던 프랑스와 전쟁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금제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쟁세 형태의 소득세는 1808년에 프로이센(Preußen)과 쾨닉스베르그(Königsberg) 등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실제 이처럼 개인의 총소득에 대해 신고납세 형태의 누진과세로 소득세가 프로이센 지역에서는 1811년부터 1813년까지 징수되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하여 1813년 3월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여 독불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1813년 10월 라이프찌히에서 소위 '해방전쟁'으로 불리는 전투를 통해 프랑스를 물리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더 이상 전쟁자금 조달 명목의 조세징수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 세금에 대한 강력한 조세저항이 생겼고, 또 부정직한 신고납부로 인한 불만이 커 이 세금은 1814년에 폐지되었다.

다시 독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개인소득과세제도가 도입된 것은 1820년 프로이센에서 Karl August Fürst von Hardenberg가 수상(Staatskanzler)으로 재직하던 때이었다. 이때 소득세는 국민을 부와 직업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 대해 0.5~48달러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부과하였다. 과거 문제가 되었던 부정직한 신고납부의 문제는 부과과세제도의 도입으로 해소되었다. 이 세금은 소득세를 개인들의 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직업 등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분세(klassensteuer)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형태의 소득세였다.

독일에서 이러한 신분세 성격의 소득세가 소득의 규모에 따른 차등과세로 전환된 시점은 1851년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여전히 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납세자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집단에 대해서는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형태여서 여전히 오늘날처럼 납세자에 대해 각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오늘날과 같은 소위 단일체계에 의한 소득세(eine Einheits-Einkommensteuer) 형태의 소득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891년 프로이센에서였다. 그 사이 독일은 1871년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 독일제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1890년 프로이센의 재무부장관으로 취임한 Johannes von Miquel은 독일에서 'Miquel'sche Steuerreform(미쿠엘의 조세개혁)'으로 불리는 대대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때의 혁명적 조세개혁을 통해 독일은 소득세(Einkommensteuer), 재산세(Vermögensteuer), 영업세(Gewerbesteuer)를 도입하게 된다. 놀랍게도 그때 도입된 이 세 가지 세목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1891년 6월 24일 발효되었다. 당시 도입된 소득세는 개별 납세자가 각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시스템이었다. 누진적 세율은 최저 0.6%에서 최고 4%수준이었다. 연소득이 900마르크에서 1,050마르크까지는 6마르크, 즉 대략 0.6%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하고, 연소득이 10만마르크 이상의 경우 4%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당시 소득세법은 과거 문제가 되었던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고 부과과세방식을 취하되 다만 국가가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납세자들에게 자신이 과세기간 동안 어떤 경제활동을 하여 얼마의 소득을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의무(Erklärungspflicht)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쿠엘 재무부장관이 추진한 소득세 모델이 그 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대부분의 독일의 주(lLnd)에 도입되었다. 다만, 브레멘(1848), 헤센(1869) 그리고

작센(1874)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미 유사한 내용의 소득세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세는 독일의 각 주마다 내용이 다른 형태이었다.

독일 전역에 통일적인 내용의 「소득세법」이 시행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면서부터이다. 공화국의 재무부장관직을 수행하던 Matthias Erzberger가 폭 넓은 재정개혁을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과거 개별 주에서 주별로 달리 부과징수하던 소득세를 연방법에 의해 규율하여 연방세로 전환시켰다. 즉, 그 이전까지 소득세는 주세(Landessteuer)이었는데 Erzberger의 조세개혁으로 처음으로 연방세가 된 것이다. 당시 독일은 막대한 전후배상비와 전후복구비를 조달해야 했는데 그 재원조달을 위해 연방은 막대한 세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독일 최초의 「연방소득세법」은 1920년 3월 29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연방의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최저 10%에서 최고 60%로 대폭 상향하였다.

그 이후 이 법은 1925년과 1934년에 큰 변화를 경험한다. 1925년 개정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근로소득카드(Lohnsteuerkarte)의 도입이다. 이 카드는 근로소득의 정산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카드로 근로소득세는 이 카드를 통해 정산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카드는 조세행정이 전산화되면서 2011년부터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고 있다.

1934년에는 근로소득 납세의무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근로소득자를 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Lohnsteuerklasse)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현재는 그 등급이 6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1934년의 「연방소득세법」이 현재 독일 소득세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점령위원회에 의해 주도된 1945년과 1946년 법개정에 의해서 소득세 세율이 급증하였는데, 최고세율이 95%나 되었다. 그 후 법개정을 통해 높은 소득세 세율은 점점 낮아지게 되었고, 또한 소비세 세율의 인상을 통해 소득세 세율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하였다.

1949년에 제정된 독일의 헌법(Grundgesetz)은 소득세의 세수는 원칙적으로 주(land)의 몫이고, 다만 연방도 일부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그 후 1955년 개정되었는데 개정헌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는 연방과 주의 공동세(Gemeinschaftssteuer)로 정의되었다.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라 독일의 소득세는 주와 연방의 공동세로 작동하고 있다.

그 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소득세법 개정 중 주목할 만한 개정을 꼽으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1974년 8월 5일의 소득세법 개정이다. 이를 통해 특별공제제도(Sonderausgabenabzug)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둘째는, 199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과누진세율제도(Linear-progressiver Tarif)를 도입한 것이다. 셋째는, 1996년 소득세법 개정이다. 이 개정을 통해 인간다운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본공제(Grundfreibetrag) 금액이 상향되었고, 또 납세자가 아동수당(Kindergeld)과 아동공제(Kinderfreibetrag)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1. 소득세 법령 체계

독일 소득세법령의 체계는 우선, 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정입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독일 헌법(Grundgesetz)에서는 소득세가 연방과 주의 공동세인 점[536], 소득세에 대한 입법권이 연방이 주와 경쟁적 입법(die konkurrierende Gesetzgebung)권을 가진다는 점[537][538], 소득세에 대한 부과징수행정이 연방행정기관이 아닌 주 행정기관의 몫인 점(독일 「연방헌법」 제108조 제2항), 연방과 주 간의 세수배분기준[539][540]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법률(Gesetz)로는 일반 조세법인 「조세통칙법(Abgabenordnung)」과 개별법인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 EStG)」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을 하나의 법에 모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법은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제 · 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의 제 ·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헌법에 따라 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일 연방소득세법은 2019년 1월 현재 총 19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연방소득세법의 구성체계는 아래와 같다.

I. 납세의무(Steuerpflicht)

II. 소득(Einkommen)
- 1. 과세를 위한 물적 전제들(Sachliche Voraussetzungen für die Besteuerung)
- 2. 비과세 수입(Steuerfreie Einnahmen)
- 3. 이익(Gewinn)
- 4.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잉여이익(Überschuss der Einnahmen über die Werbungskosten)
- 4a.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Umsatzsteuerrechtlicher Vorsteuerabzug)
- 5. 특별공제(Sonderausgaben)
- 6. 수취와 지출(Vereinnahmung und Verausgabung)
- 7. 공제되지 않는 지출(Nicht abzugsfähige Ausgaben)
- 8. 개별적인 소득종류들(Die einzelnen Einkunftsarten)

536) 독일 「연방헌법」 제106조 제3항.
537) 연방과 주가 경쟁적 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은 우선 연방이 입법을 할 수 있으며, 연방이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도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동식,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공동세제도 활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8, p.52
538) 독일 「연방헌법」 제105조 제2항.
539) 현재 연방과 주는 같은 비율로 소득세 세수를 배분받는다.
540) 독일 「연방헌법」 제106조 제3항 제2문.

a) 농림업(Land-und Forstwirtschaft)
b) 영업(Gewerbebetrieb)
c) 자유직업(Selbständige Arbeit)
d) 근로소득(Nichtselbständige Arbeit)
e) 자본(Kapitalvermögen)
f) 임대(Vermietung und Verpachtung)
g)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
h) 공동의 규정들(Gemeinsame Vorschriften)

III. 부과(Veranlagung)

IV. 세율(Tarif)

V. 조세경감(Steuerermäßigungen)

VI. 징수(Steuererhebung)
1. 소득세 징수(Erhebung der Einkommensteuer)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Steuerabzug vom Arbeitslohn[Lohnsteuer
3.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Steuerabzug vom Kapitalertrag[Kapitalertragsteuer])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가진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Veranlagung von Steuerpflichtigen mit steuerabzugspflichtigen Einkünften)

VII. 건축업과 관련한 원천징수(Steuerabzug bei Bauleistungen)

VIII. 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Besteuerung beschränkt Steuerpflichtiger)

IX. 그 밖의 규정들, 과태료, 처분규정들 그리고 종결규정들(Sonstige Vorschriften, Bußgeld-, Ermächtigungs- und Schlussvorschriften)

자료: 독일소득세법전을 기초로 저자 작성

독일 소득세법전은 독일에서 법조문을 표시하는 기호인 '§'표시를 한 후 일련번호(1, 2, 3 등)를 매기는 순서로 작성한다.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뒤에 a, b, c 등을 추가하며, 해당 조문이 삭제되더라도 조문번호는 그대로 남겨둔다. 독일 연방소득세법 구성이 우리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우선, 아동수당(Kindergeld)을 「소득세법」 제10장(제62조부터 제78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고, 노령수당(Altersvorsorgezulage)을 「소득세법」 제11장(제79조부터 제99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소득세제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 조세행정절차적 규정은 다수를 「조세통칙법(Abgabenordnung)」에서 규정하지만 소득세법 자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상환 등 절차적 규정도 일부 함께 두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별도의 특례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세법의 하나의 장[541]에서 특례규정을 모두 모아두고 있다는 점이다.

541) 소득세의 경우에는 제5장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입법으로는 우선 법규성이 긍정되는 법규명령으로서 「소득세 시행령(Einkommen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EStDV)」이 있다. 이는 연방 재무부가 제·개정한다. 소득세 시행령은 대상이 되는 법률조문(예, 「소득세법」 제1a조)을 특정한 후(Zu § 1a EStG) 그 아래에 법률과 동일하게 일련번호(1, 2, 3등)를 매기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Zu§3 des Gesetzes
- §4 Steuerfreie Einnahmen
- §5 (weggefallen)

Zu den §§4 bis 7 des Gesetzes
- §6 Eröffunung, Erwerb, Aufgabe und Veräußerung eines Betriebs
- §7 (weggefallen)
- §8 Eigenbetrieblich genutzte Grundstücke von untergeordnetem Wert
- §8a (weggafallen)
- §8b Wirtschaftsjahr
- §8c Wirtschaftsjahr bei Land-und Forstwirten
- §9 (weggefallen)
- §9a Anschaffung, Herstellung
- §10 Absetzung für Abnutzung im Fall des §4 Abs. 3 des Gesetzes
- §10a (weggefallen)
- §§11bis 11b (weggefallen)
- §11c Absetzung für Abnutzung bei Gebäuden

행정입법이긴 하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 지침(Einkommensteuer-Richtlinien, EStR)이 있다. 소득세 지침은 개별 소득세법규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조문 자체도 대상이 되는 법률조문(예, 「소득세법」 제1a조)을 특정한 후(Zu § 1a EStG) 그 아래에 지침(Richtlinien)을 의미하는 'R'을 표기하고 다음에 일련번호(1, 2, 3등)를 매기는 순서로 작성하고 있다.

Zu §1a EStG
R 1 EStR 2005 – R 1. Steuerpflicht
Zu §2 EStG
R 2 EStR 2005 – R 2. Umfang der Besteuerung
Zu §2a EStG
R 2a EStR 2005 – R 2a. Negative ausländische Einkünfte
Zu §3 EStG
R 3 EStR 2005

R 3.0 EStR 2005 – R 3.0 Steuerbefreiungen nach anderen Gesetzen, Verordnungen und Verträgen
R 3.2 EStR 2005 – R 3.2 Zu §3 Nr. 2 EStG
R 3.26a EStR 2005 – R 3.26a Zu §3 Nr. 26a
R 3.29 EStR 2005 – R 3.29 Zu §3 Nr.29
R 3.40 EStR 2005 – R 3.40 Zu §3 Nr.40
R 3.44 EStR 2005 – R 3.44 Zu §3 Nr.44

2. 과세권자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Einkommensteuer)는 현재 주와 연방의 공동세로 부과징수되고 있다. 부과징수행정은 주(land)의 행정조직인 세무서(finanzamt)에서 하고 있다. 즉, 공동세이므로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세수를 연방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542] 연방과 주 등에(일정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게마인데에도 배분됨) 배분한다. 입법권은 연방헌법상으로는 연방과 주가 소위 '경쟁적 입법권(die konkurrierende Gesetzgebung)'을 가진다. 경쟁적 입법권의 경우 연방이 입법을 하는 경우 주는 입법을 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소득세 입법은 연방하원(Bundestag)이 입법을 하고 있다. 대신, 연방하원은 소득세법을 제·개정할 때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득세처럼 수익에 대한 세금의 일종으로 영업세(Gewerbesteuer)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Gemeinde)의 세금이다.[543] 이 세금의 과세행정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Finanzamt)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자체에서 행한다. 하지만, 과세표준은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해주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이 결정한 징수율에 따라 부과징수행정을 하게 된다.

3. 과세권 범위

독일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독일 국내(Inland)에 주소나 일상적인 체류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양자 중 어느 것도 없이 독일 국내에서 소

542)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자산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연방과 주가 각각 50%씩, 근로소득세와 그 외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는 연방 42.5%, 주 42.5%,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15.0%로 배분된다. 참고, 이동식,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공동세제도 활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8, p.61.

543) 영업세에 대해서는 참고,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p.133 이하

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독일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소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가 독일 국내(Inland)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독일 「소득세법」상 과세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내(Inland)'를 어디까지로 이해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독일 연방공화국 본토가 이에 속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외에 독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은 독일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die ausschließliche Wirtschaftszone)과 대륙붕(Festlandsockel) 중 그곳에서 연구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수행중이거나 인공섬이나 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지역도 국내(Inland)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열거주의·포괄주의

독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시점을 주로 1891년 프로이센으로 언급하는데 당시 프로이센의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Quellentheorie)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형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파악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여 바이마르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행해진 1920년의 조세개혁을 통해서이다. 이때 처음으로 독일에서 소득세가 연방법에 의해 규율되어졌는데 당시 연방정부는 패전에 따른 전쟁 뒷마무리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급격히 인상하는 동시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순자산증가설(Reinvermögentheorie)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현재 독일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총 7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앞의 3가지 소득, 즉 농림업소득, 영업소득, 자유직업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고, 근로소득, 자산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은 소득원천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Ⅱ-1〉 과세대상 소득 유형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소득유형	1. 농림업소득 2. 영업소득 3. 자유직업소득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소득유형	1. 근로소득 2. 자산소득 3. 임대소득 4. 기타소득

자료: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1항을 기초로 저자 작성

5. 과세연도

독일의 소득세도 1역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금(Jahressteuer)이다.[544] 독일 소득세의 과세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사기간(Ermittlungszeitraum)과 과세기간(Veranlagungszeitraum)을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조사기간은 소득세 부과를 위한 이익의 조사기간이고, 과세기간은 부과처분을 위한 이익의 귀속기간이다. 예컨대, 특정연도의 조사기간에 속하여 함께 조사가 되었더라도 그렇게 해서 밝혀진 소득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귀속되어 부과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세대상 소득의 조사기간(Ermittlungszeitraum)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이다. 과세연도는 합산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7항 제2문은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특칙을 두고 있다. 즉, 하나의 과세연도에 납세의무자가 무제한 납세의무자에서 제한적 납세의무자로 변경이 된 경우 제한적 납세의무자로 변경된 상태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의 국내소득은 무제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업소득과 영업소득에 있어서 이익은 역년(Kalenderjahr)이 아니고 다른 회계연도(Wirtschaftsjahr)를 적용하여 조사한다(ermitteln).[545] 농림업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회계연도이다. 다만, 수확시기의 차이 등으로 회계연도를 달리 정해야 할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Rechtsverordnung)으로 이와 다른 회계연도를 정할 수 있다.[546]

544)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7항.
545) 독일「소득세법」제4a조.
546) 독일「소득세법」제4a조 제1항 제1호.

영업소득의 귀속자가 자연인이 아니고 회사(Firma)인 경우에는 회사등록부에 매년 결산을 하는 회계연도로 등록한 것이 소득세 계산에서의 회계연도가 된다.[547] 영업소득의 경우에는 이익(Gewinn)을 원칙적으로 회계장부의 결산에 기초하여 하는 것이므로 회계결산과 소득세 이익 조사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외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역년(Kalenderjahr)이 조사기간이 된다.[548]

회계연도와 역년이 다른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농림업소득과 영업소득이 다르다. 농림업소득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연도에 귀속되는 부분과 종료되는 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을 분할하여 각각의 역년에 귀속시킨다. 즉, 2018/19년 농림업소득에 대한 조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조사하지만 소득세 부과 시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2018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은 2019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549] 단, 농림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시킨다.[550]

영업소득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역년의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551]

소득세 과세기간(Veranlagungszeitraum)은 독일「소득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를 때 역년(Kalenderjahr)으로 한다.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한다는 것이다.

547) 독일「소득세법」제4a조 제1항 제2호.
548) 독일「소득세법」제4a조 제1항 제3호.
549) 독일「소득세법」제4a조 제2항 제1호.
550) 독일「소득세법」제4a조 제2항 제1호 제2문.
551) 독일「소득세법」제4a조 제2항 제2호.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가. 의의

독일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자는 자연인(Natürliche Personen)에 한한다.[552] 주식회사 등 물적 회사는 독일 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소득세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합명회사 등 인적 회사는 독일법상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투자자들이 (영업소득으로) 소득세(만일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553] 물론,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회사를 단위로 계산하지만 소득세는 지분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과세된다.

독일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의 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독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무제한 납세의무자와 제한적 납세의무자로 구분하는 것을 거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결국 우리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에 관한 논의와 같은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무제한 납세의무자와 제한적 납세의무자

독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im Inland) 주소(einen Wohnsitz)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를 가진 자연인을 무제한(unbeschränkt) 납세의무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제한 납세의무자의 전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독일 「소득세법」 제1조 제4항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를 가지지 않았지만 독일 국내에서 독일 「소득세법」 제49조에 따른 국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beschränkt)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소득세법」 제1조 제4항에서는 독일 국내에 주소

552) 독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553) 영업소득은 기초자치단체세인 영업세(Gewerbesteuer)의 과세대상이기도 한데, 영업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와 달리 회사 자체가 된다.(이동식, 『독일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pp.140~141)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독일「소득세법」제1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1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소득세법」제1조 제2항은 '독일 국적의 납세자가' 독일 국내에 주소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법인체와 직무수행관계(Dienstverhältnis)가 있고,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독일 국내의 공공재정에서 충당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납세자가 주소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제한적 납세의무자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즉, 다른 나라에서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건을 충족하는 독일 국적자에 대해서는 비록 독일 내에 주소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가 없어도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독일 국적자여야 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예컨대,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대표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 독일 소득세법상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취급된다.

독일「소득세법」제1조 제3항은 독일 국내에 주소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의 과세연도에 속하는 소득의 최소 90%가 독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독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금액이 독일「소득세법」제32a조 제1항 제2문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Grundfreibetrag)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납세자를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취급함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소득세법」제1a조 제1항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납세자나 유럽경제지역(EEA) 결성을 위한 협약국의 국적을 가진 납세자가 독일「소득세법」제1조 제1항에 따라 무제한 납세의무자이거나 아니면 동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취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별거하지 않는 한은 비록 독일 국내에 주소나 일상적 체류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독일「소득세법」제26조 제1항 제1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배우자를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소득세법」제26조 제1항 제1문은 독일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와 부부합산 과세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전제조건으로 부부가 모두 무제한 납세의무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요건

가. 법적 규율

독일 「소득세법」에서 무제한 납세의무와 제한적 납세의무를 판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은 독일 국내에 주소(Wohnsitz) 또는 일상적인 체류장소(gewöhnlicher Aufenthalt)를[554]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555] 이때 주소와 일상적 체류장소의 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통칙법(Abgabenordnung)」에서[556]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이 해당 개념에 대한 정의를 조세통칙법에서 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비록 소득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 등 다른 세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세목에 이 개념들을 공통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다.

나. 주소와 일상적 체류장소(거소)의 개념정의와 양자의 관계

주소(Wohnsitz) 개념에 대해서는 「조세통칙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상적인 체류장소(gewöhnlicher Aufenthalt)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8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beibehalten)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benutzen) 볼 수 있는 정황하에서(unter Umständen) 주택(Wohnung)을 이용하고 있는(innehaben) 장소를 주소(Wohnsitz)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9조는 납세자가 그 장소 또는 지역에서 단지 일시적으로(vorübergehed)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정황에서 체류하는 장소를 일상적인 체류장소(Gewöhnlicher Aufenthalt)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조 제2문은 연속해서(stets) 그리고 처음부터(von Beginn an) 6개월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 이 법의 영역에서는 일상적인 체류장소(Gewöhnlicher Aufenthalt)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짧은 기간 체류중단을 하더라도 기간의 연속성은 인정한다.[557] 그러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체류했더라도 그가 방문이나, 휴양, 관광이나 이와 유사한 사적인

554) '일상적 체류장소' 개념은 우리 세법상 '거소'개념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단어에 충실하게 기본적으로는 '일상적 체류장소'로 번역하기로 한다.
555) 독일 「소득세법」 제1조.
556)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을 합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대부분의 주요 세목이 국세이자 동시에 지방세(주세)인 소위 공동세인데 이 공동세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이 법에 의해 규율되어 진다.
557) 독일 「조세통칙법」 제9조 제2문 후단.

목적으로 방문 중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일상적인 체류장소(Gewöhnlicher Aufenthalt)로 보지 않는다.

하나의 납세자가 독일 소득세법상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든 일상적인 체류장소든 둘 중 하나가 독일 국내에 있으면 된다. 하나의 장소에 주소와 거소가 동시에 인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납세자의 경우 주소와 거소가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다. 주소 개념의 세부판정기준

독일「조세통칙법」제8조에 따른 '주소(Wohnsitz)' 판정은 오직 객관적 요소만에 의하여 특정 장소가 세법상 주소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하고 있다. 납세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법률에서 정한 객관적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는 한 하나의 납세자는 동시에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게 된다(아래 일상적 체류장소 판정과는 다름). 주된 주소(Hauptwohnsitz)와 2차적 주소(Nebenwohnsitz)와 같은 개념 구분을 독일「조세통칙법」제8조는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을 주소로 판정한다.

또한 독일「조세통칙법」제8조에 따른 '주소(Wohnsitz)' 판정은 실제적 정황만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법률적인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민법상 주소판정과「조세통칙법」제8조에 따른 판정은 다르다.

독일「조세통칙법」제8조에 따른 '주소(Wohnsitz)' 판정의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주택(Wohnung)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주택이라 함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머무르기에 적합한 공간을 의미한다.[558] 주택을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률 예컨대,「평가법(Bewertungsgesetz)」이나「주택건축법(Wohnungsbaugesetz)」상 주택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559]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투숙하고 있는 호텔방도 여기서의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장에서 단순히 숙박을 위해 마련한 장소(Schlafstelle) 또는 특정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Bauwagen)도 여기서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주택을 이용(innehaben)해야 한다. 주택을 이용한다는 것은 주택을 실제적

558) BFH von 23. 11. 1988, II R 139/87, BStBl II 1989, 182, 183.
559) BMF-Anwendungserlass zur AO 1977 v. 15. 7. 1998, BStBl I 630, 633, Nr. 3.

으로(tatsächlich)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Bestehen einer Nutzungmmöglichkeit)를 의미한다. 납세자가 주택을 이용하는 목적은 실제 거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단지 '일시적으로(vorübergehend)'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이러한 목적을 인정한다. 독일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은 이때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통칙법」 제9조 제2문의 문구를 인용하여 6개월 이내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판정한다.[560] 항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출장의 경우처럼 실제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이 납세자가 돌아오는 경우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소가 될 수 있다.

라. 일상적 체류장소 판정의 세부기준

독일 「조세통칙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적인 체류장소(Gewöhnlicher Aufenthalt)는 우리 세법상 거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의 세부판정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 조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일상적인 체류장소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규정이고, 두 번째 문장은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장소를 일상적 체류장소로 본다는 규정이고,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의 예외로 비록 6개월 이상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휴양 등 법률에서 정한 사적인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일상적인 체류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결국 독일 「조세통칙법」 제9조에 따른 일상적 체류장소 판정 요건은 크게 나누었을 때 두 개의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독일 「조세통칙법」 제9조 제1문에 따른 구성요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9조 제2문에 따른 구성요건이다. 양자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제1문의 요건을 충족해도 일상적인 체류장소를 인정하고, 제2문의 요건만을 충족해도 일상적인 체류장소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구성요건에 우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제2문에 따른 판정을 우선할 것을 권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제2문은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판정만으로 특정 장소를 일상적인 체류장소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통칙법」 제9조 구성요건의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정황 판단만에 의하여

560) BFH von 30. 8. 1989, I R 215/85, BStBl II 1989, 956, 957.

특정 장소를 일상적인 체류장소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어떤 장소를 일상적인 체류장소로 의도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장소가 일상적인 체류장소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조세통칙법」 제8조에 따른 주소(Wohnsitz) 판정의 경우와 달리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통칙법」 제9조에 따른 일상적 체류장소는 하나의 시점에 한 곳만 인정된다. 그래서 새로운 일상적 체류장소가 인정되려면 기존이 일상적 체류장소였던 장소는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세법상 일상적 체류장소가 될 수 없게 된다.

독일 「조세통칙법」 제9조에 따른 일상적인 체류장소(Gewöhnlicher Aufenthalt)는 첫째, 납세자의 실제적인 체류(tatsächliche Anwesenheit)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즉, 실제로 해당 납세자가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체류가 단지 일시적인 체류(vorübergehender Aufenthalt)가 아니어야 한다. 납세자의 체류가 일시적 체류인지 여부는 납세자의 의사가 아니라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어떠한 체류가 일시적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조세통칙법」 제9조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3. 납세자 단위[561]

가. 개관

현재 독일에서 소득세 과세단위는 부부합산과세와 개인별 과세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혼한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들이 부부합산과세를 할 것인지, 개인별 과세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결혼한 부부들은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한다. 그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나. 역사적 변천

독일 소득세법상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몇 차례의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독일 전역에 소득세가 처음 실시된 1920년 독일의 연방소득세법에 따를 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고 거기에 더하여 미성년 자녀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위 가족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561) 아래 글은 이동식, 「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 종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검토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0, p.551 이하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다.

이때에는 가족의 소득을 단순합산하고 그 합산한 금액을 그대로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쟁 후 1951년 제정된 연방소득세법은 '가족'이 아니라 '부부'만을 합산과세대상으로 한정하면서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방식은 종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단, 배우자의 독립적인 근로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세제도는 당연히 결혼한 가정에 대한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국가가 결혼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으로 징벌을 하는 것이 연방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연방헌법재판소에까지 이어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7. 1. 17. 판결을 통해 이러한 징벌적 과세는 독일 「연방헌법」 제6조 제1항(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과 유사)의 정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562]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소위 '이분이승방식'을 입법자에게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입법자는 1958년 연방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결혼한 부부에 대해 개인별 과세와 이분이승제도의 선택권을 인정하였다.

다. 과세단위에 대한 현행 제도 내용

현행법상 소득세 과세단위제도는 기본적으로 1958년에 마련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과세단위결정제도가 큰 틀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연방소득세법」상 결혼한 부부는 연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개인별 과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분이승방식에 의한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분이승방식은 부부가 자신들이 소득을 합산하여 그것에 대해 바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2로 나누어 그 나눈 금액을 누진세율적용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계산하여 산출된 세액에 다시 2를 곱하면 부부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방소득세액이 된다. 예컨대, 부부의 합산소득이 400이고 세율표상 400의 구간에서는 세율이 10%, 200의 구간에는 5%라고 할 때, 부부가 납부해야 할 연방소득세는 200(=400/2)×5%×2=20이 된다. 독일의 경우에 결혼한 부부의 경우 대부분 세부담 감면을 위하여 이분이승방식을 선택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부부 모두 고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처럼 일부 사례는 이분이승방식이 오히려 개인별 과세보다 더 세부담이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부의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이유로 소득세를 더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562) BVerfG v. 1. 17. 1957. 1 BvL 4/54.

라. 이분이승방식에 의한 부부합산과세와 혼인의 자유

이분이승방식에 의한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하게 되면 결혼한 부부의 경우 개인별 과세에 비해 소득세 세부담이 대부분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분이승방식에 의한 세금계산이 개별 신고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이것이 미혼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 헌법상 혼인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다르게 취급된다. 왜냐하면 독일「연방헌법」제6조 제1항이 '혼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한 자에 대한 세부담의 우대를 특별한 보호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독일「연방헌법」제6조 제1항 "Ehe und Familie stehen unter dem besonderen Schutze der staatlichen Ordnung." (혼인과 가족은 특별한 국가질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Ⅳ 과세대상 소득(Einkünfte) 종류

1. 독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파악의 원칙들

독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파악은 몇 가지 원칙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종합합산과세원칙이다. 독일 소득세법은 우리 세법과 달리 분류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소득유형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둘째, 기간과세원칙이다. 독일 소득세법도 우리 세법과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귀속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 셋째, 순소득과세원칙이다. 이는 각 소득유형별로 그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과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획득을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손실도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이 원칙은 응능과세원칙의 실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넷째, 명목가치에 따른 소득산정원칙이다. 이는 물건의 실제 가치와 화폐가치가 다르더라도 화폐가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생활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 배제원칙이다. 이는 소득의 처분에 해당하는 생활 관련 비용을 소득세 과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만, 생활과 관련한 지출 가운데 납세자의 담세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예, 부양가족의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한다.

2. 소득의 종류

독일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소득(Einkünfte)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총 7개로 나누고 있다.

① 농업 및 산림업 소득(Einkünfte aus Land- und Forstwirtschaft)
②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
③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
④ 근로소득(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⑤ 자본소득(Einfünfte aus Kapitalvermögen)
⑥ 임대소득(Einkü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
⑦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

3. 이원적인 소득종류의 구분(Dualismus der Einkunftsarten)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1항은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어떤 종류의 소득(Einkünfte)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항은 이때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Einkünfte)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은 7가지 소득종류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이익소득(Gewinneinkünfte)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잉여소득(Überschusseinkünfte) 유형'이다.

이익소득(Gewinneinkünfte) 유형에 속하는 소득은 농업 및 산림업(이하 '농림업'이라 함) 소득(Einkünfte aus Land- und Forstwirtschaft),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 그리고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이다. 잉여소득(Überschusseinkünfte) 유형에는 독일 소득세법상 총 7가지 소득종류 중 이익소득(Gewinneinkünfte) 유형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4가지의 소득종류, 즉 근로소득(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자본소득(Einfünfte aus Kapitalvermögen), 임대소득(Einkü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 그리고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이 이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를 이익소득(Gewinneinkünfte)과 잉여소득(Überschusseinkünfte)으로 나누는 것은 독일 소득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익소득(Gewinneinkünfte) 유형은 독일 소득세 역사에서 1920년 처음으로 법률에 입법된 순자산증가설(Reinvermögenszugangstheorie)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익소득(Gewinneinkünfte) 유형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Einkünfte)을 '이익(Gewnn)'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면서[563], 이익은 과세기간 동안의 자산의 증가(Vermögensmehrungen)로 이해한다. 즉, 이 소득 유형에서는 과세대상으로서의 이익(Gewinn)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회계연도 말의 사업자산가치와 회계연도 초의 그것의 차이로 인식한다.[564] 이 유형에 속하는 소득의 종류에 있어서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 그 가치의 증가는 소득세 과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잉여소득(Überschusseinkünfte) 유형은 소득원천설(Quellentheorie)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잉여소득(Überschusseinkünfte) 유형에서 소득(Einkünfte)은 수익(Einnahmen)이 필요경비(Werbungskosten)를 초과하는 부분(Überschuss)을 의미한다.[565] 이 유형은 소

563)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2항 제1호.
564) 독일「소득세법」제4조 제1항.
565)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2항 제2호.

득원천설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Quelle)이 되는 자산(Vermögen) 자체는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없고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만이 과세대상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소득에 있어서는 자산 자체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이해한다.[566] 물론 그러한 가치의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인식하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자산 양도차익의 경우에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처음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

4. 개별적 소득유형

가. 농림업소득

어떤 소득이 농림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소득세법」 제13조부터 제14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림업소득도 일종의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소득의 적극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농림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법률 조문 중에는 특히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이 중요하다. 제1항은 다시 4개의 유형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에서 언급하는 바가 가장 기본이 된다. 이에 따르면 농업, 임업, 포도재배, 원예, 기타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일체의 영업으로부터의 소득이 농림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문은 동물사육의 경우에도 한 회계연도에 사육하는 동물의 수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역시도 농림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사육으로 인한 소득에는 동물 자체의 처분에 따른 소득뿐만 아니라 우유나 달걀처럼 동물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물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한다.

독일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농림업소득이 되는 것은 작물을 재배하여 작물 자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소득처럼 자연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그런데 독일 「소득세법」 제13조 제2항은 그러한 농림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수적인 사업도 농림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목재를 벌목하여 그 목재 자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독일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농림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 목재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소(Sägewerk)을 운영한다면 그

566) Dieter Birk, Steuerrecht 13. Auflage, C.F. Mülller, 2010, p.184.

운영에 따른 소득도 제13조 제2항에 따라 농림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자연에서 생산한 농림업 관련 제품이 50% 이상 해당 사업장에 투입되는 경우에만 농림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독일「소득세법」제14조는 농림업용 자산이나 농림업사업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농림업소득으로 과세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영업소득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15조부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소득은 우리나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업소득의 범주 가운데 농림업자의 소득,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자유직업자의 소득, 임대소득이 영업소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영업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독일「소득세법」제15조 제1항 제1문 제1호)
② 회사 또는 조합의 사원 또는 지분권자가 합명회사(OHG)나 합자회사(KG) 또는 납세자가 사업자나 공동사업자로 관여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분배금(독일「소득세법」제15조 제1항 제1문 제2호)
③ 영업의 양도나 포기 또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지분의 양도나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독일「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문 제1호-제3호)
④ 과거 5년 이내 물적 회사에 1%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가 그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독일「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사원 등이 회사에 특별한 급부를 제공하고(예, 경영활동, 자금대여, 회사의 활동에 필요한 재화의 제공 등) 그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대가는 사원 등에게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사원들이 자신이 관여하는 회사의 사업 전체 혹은 일부의 양도, 지분의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독일「소득세법」제15조 제2항은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영업(Gewerbebetrieb)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독립적인 활동이어야 하고, 둘째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 이익(Gewinn)을 획득할 의사로 행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넷째 시장에서 행해지는 경제활동에의 참여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농림업소득으로 인식되는 행위와 자유직업소득으로 인식되는 행위는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567] 세 번째 요소인 '이익'을 획득할 '의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행위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절감하는 것은 이때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568] 또한 나머지 요건이 모두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이익을 획득할 의사가 '부수적 목적'인 경우에도 이익을 획득할 '의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본다.[569]

다. 자유직업소득

자유직업소득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략 아래와 같은 소득획득행위가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된다.

① 자유직업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독일「소득세법」제18조 제1항 제1호)
② 국가에서 관장하는 복권의 당첨자의 소득(독일「소득세법」제18조 제1항 제2호). 단, 그 소득이 영업소득이 아닐 것.
③ 유언집행자의 활동에 대한 보수처럼 그 밖의 독립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독일「소득세법」제18조 제1항 제3호)
④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에의 참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상(독일「소득세법」제18조 제1항 제4호)
⑤ 전문자영업자의 활동에 기여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독일「소득세법」제18조 제3항)

위 5개 유형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유직업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다. 입법자는 어떤 경우가 '자유직업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직업유형(Katalogberufen)을 독일「소득세법」제18조 제1항 제1호 제1문에서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직업유형은 3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독립적인 학문적, 예술적, 저술적, 수업적, 교육적 활동, 둘째,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증인, 특허변호사, 측량기사, 기술자, 건축가, 화학의 생산과 거래를 자문하는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국가 및 기업경제에 대한 상담사, 선서

567) 독일「소득세법」제15조 제2항.
568) 독일「소득세법」제15조 제2항 제2문.
569) 독일「소득세법」제15조 제2항 제3문.

한 회계장부검수사, 1980년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 세무대리인(Steuerbevollmächtigten), 민간요법치료사, 치과의사제도가 마련되기 전 치과진료를 할 수 있었던 치과전문가(Dentist), 물리치료사, 언론인, 사진기자, 통역사, 번역사, 수로(水路) 안내인, 셋째, 이러한 직업들과 '유사한 직업들'이다. 어떤 전문가의 활동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업들과 유사한 직업들을 자유직업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다. 법률에서 열거된 자유직업과 유사한 직업이 유사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을 때 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이 아니라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으로 과세된다. 양자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영업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이다.

라.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독일 소득세법에서는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4가지 경우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공적인 혹은 사적인 고용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급료, 임금, 상여금, 특별상여금 그리고 그 외 다른 수입과 혜택
② 회사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교적 차원의 행사를 통해 사용자가 피용자와 피용자의 동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익
③ 과거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휴직급여, 퇴직연금, 미망인과 고아보조금 그리고 그 외의 이익과 혜택
④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퇴직금펀드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부담금 등

비독립적 노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첫째, 근로자는 노동성과, 즉 특정한 노동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는 노동내용과 조건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는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즉, 근로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마. 자산소득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소득세법」제20조가 여러 형태의 소득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적인 의미일 뿐이다. 거기서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자산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해당 소득이 자산소득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자본재산의 투입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대가나 혜택을 의미한다.

다른 소득유형에 비해 자산소득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왜냐하면 자산소득의 성격을 가진 소득이 이익소득유형(농림업소득, 영업소득, 자유직업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자산소득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570]

바. 임대소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래와 같이 4종류이다.

① 토지나 건물, 선박,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 지상권(Erbbaurecht) 등)의 대여
② 집합물(Sachinbegriff)의 대여, 특히 영업용 동산의 대여
③ 저술가, 예술가, 영업가 등의 저작권의 기간제한부 대여
④ 임대료청구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

임대소득은 영업소득이나 자유직업소득에 비해 보충적 지위에 있다.[571] 즉, 영업용 부동산이나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전문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획득하는 소득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영업소득 혹은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독일「소득세법」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은 특정 소득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다른 6개의 소득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소득

570) 독일「소득세법」제20조 제8항.
571) 독일「소득세법」제21조 제3항.

유형에서 포섭되지 않는 모든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중 법률에서 규정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게 된다.[572]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들을 크게 유형화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1호)
② 부양의무 이행에 따른 소득(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1a호)
③ 개인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2호)
④ 기타의 역무제공으로 인한 소득(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3호, 제23조)
⑤ 의원법이나 이에 준하는 역무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의 일부(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4호)
⑥ 연금펀드 등에서 지급되는 소득(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5호)

5. 비과세소득

가. 법적 근거와 법조문의 성격

특정 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소득유형에 의해 포섭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면 비과세됨은 당연하다. 독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3조와 제3b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특히, 제3조는 총 71개의 비과세소득 유형을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부를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은 100% 비과세를 하고, 또 어떤 유형은 그 중 일정 부분만을(예, 40%) 비과세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소득세법」제3조와 제3조b의 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 한다.[573]

이 규정들에 의하여 비과세로 언급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해당 규정이 없었더라면 소득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과세를 규정한 조문들은 창설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비과세 유형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단지 선언적으로 비과세로 규정해둔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독일「소득세법」제3조 제19호, 제20호, 제58호에서 규정한 비과세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574]

572) Dieter Birk, Steuerrecht 13. Auflage, C.F.Müller, 2010, p.240.
573) 독일「소득세법」제3c조.
574) Dieter Birk, Steuerrecht 13. Auflage, C.F. Mülller, 2010, p.184.

나. 비과세소득(Steuerfreie Einnahmen)의 3가지 유형

독일「소득세법」제3조와 제3b조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는 소득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보면 재정적 목적(Fiskalzweck)에 의한 비과세, 사회정책적 목적(Sozialzweck)에 의한 비과세 그리고 과세행정의 단순화를 위한 목적(Vereinfachungszweck)에서 행해지는 비과세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적 목적(Fiskalzweck)에 의한 비과세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비과세 혹은 외교관 등에 대한 비과세를[575] 예로 들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등으로부터의 지급보험금, 정부로부터의 생계보조금, 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공단의 의료보험료보조금, 출소한 죄수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 장학금 등도 이 유형의 비과세에 해당한다.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한 비과세의 유형으로는 여러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미래보장적 성격의 지급금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위로금의 일부, 외국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과세행정의 단순화를 위한 목적(Vereinfachungszweck)에서 행해지는 비과세 유형으로는 예컨대,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배치된 공무원에게 별거수당(Trennungsgeld)을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 중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실제 별거수당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비과세한다.[576]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도(Reisekostenvergütungen für Verpflegung)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내에는 실제 그 여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비과세한다.[577]

다. 주요 비과세소득 항목들

제3조의 여러 항목 중 주요한 비과세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 요양보험 및 법률에 따른 사고보험에 따른 보상금
- 실업수당 및 단기근로수당
- 연방이나 주의 금고에서 지불된 경비보상 차원의 수당

575) 독일「소득세법」제3조 제29호.
576) 실제로는 그 별거수당을 자신의 근무와 관련된 용도로 지출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577) 독일「소득세법」제3조 제13호.

- 부수직업적으로 훈련보조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Erzieher), 직장에서 직업교육이 수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교육을 보조하는 인력(Ausbilder)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수익의 일부
- 근로자의 회사자본참여에 따른 이익
-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장학금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무료로 사용함으로 인한 이익
- 사회보험에 있어서 사용자부담분
- 노령연금의 부담금
- REIT회사에 있어서 회사자산가치의 증가분
- 일요일, 휴일 또는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V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체계

1. 개관

총수입(Einnahmen)에서 필요경비(Betriebsausgaben, Werbungskosten)를 공제하여[578] 소득금액(Einkünfte)을 산출한다. 이 소득금액을 독일어로 표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이익소득유형과 잉여소득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소득세법상 'Einkünfte(소득금액)'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익소득유형에 국한하여 사용할 때는 'Gewinn(이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잉여소득유형에 국한하여 사용할 때에는 'Überschuss der Einnahmen über die Werbungskosten(필요경비를 공제한 이익의 잔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579]

소득금액(Einkünfte)에서 다시 다양한 소득공제(Freibetrag)를 한 후에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 Einkommen, Bemessungsgrundlage)을 산출하며 그 과세표준에 세율(Steuertariff)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하며 그 세액에 다시 세액공제와 감면을 하고 지연가산금 등을 추가하여 결정세액을 도출한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1단계: 각 개별 소득종류 내에서의 소득의 조사(법 제2조 제1항, 제2항)
- 농림업소득: 제13조-제14a조
- 영업소득: 제15조-제17조
- 자유직업소득: 제18조
- 근로소득: 제19조, 제19a조
- 자산소득: 제20조
- 임대소득: 제21조
- 기타소득: 제22조-제23조

※ 소득의 종류별로 필요경비 공제

제2단계: 소득금액 합계액의 형성: 제2조 제3항
※ 7개 소득종류의 소득금액을 합산
소득금액의 합계액
- 노령자(65세이상)감면공제: 제24a조

578) 독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이익소득유형에서는 Betriebsausgabe라고 하고 잉여소득유형에서는 Werbungskost라고 한다.
579)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2항 제1문.

-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공제: 제24b조
- 농림업종사자에 대한 공제: 제13조 제3항

=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 제2조 제3항

제3단계: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s Einkommen)의 조사

총소득금액
- 특별공제: 제10조-제10c조
- 손실공제: 제10d조
- 실업보험처럼 예방적 차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지출공제: 제10조,제10a조
- 비통상적인 부담: 제33조-제33b조
- 자가주택에 대한 차감 등 조세혜택: 제10e조-제10i조 와 FördergebietsG 제7조

= 소득(Einkommen): 제2조 제4항
- 자녀소득공제: 제31조, 제32조 제6항
- 제46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공제(Härteausgleichsbetrag): 제46조 제3항

= 과세대상소득=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s Einkommen)

제4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s Einkommen) × 세율(*기본공제[Grundfreibetrag] 규정)

제5단계: 세액공제·감면 및 추가
- 외국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감면
- 세액추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액(제32d조 제3항과 제4항, 제10조 제5항, 산림피해 보상법 제3조 제4항 제2절에 의한 추가액 등)

2. 소득금액계산

가.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소득금액계산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Ermittlungsarten)에는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독일「조세통칙법」제162조에 따른 추계과세를 한다.

① 독일「소득세법」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비교
② 독일「소득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윤계산방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

③ 독일「소득세법」제13a조 제1항에 따른 표준율(Durchschnittssätze) 적용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④ 독일「소득세법」제5a조에 따른 선박의 톤수에 따른 소득금액계산

이 중 일반적인 사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다.

첫째, 독일「소득세법」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비교에 따른 소득금액계산방법이라 함은 소득금액 계산을 장부에 기록된 사업용자산(Betriebsvermögen)의 당해 사업연도 말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그것을 공제한 금액에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증가시키고, 자본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없는 상태에서 장부상 당해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이 10억원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가액이 7억원이면 그 차액 3억원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아래의 납세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① 법률규정에 의해 기장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기장을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납세자와 법률상 그러한 의무는 없지만 실제 이를 행하는 자유직업소득자와 농림업소득자(독일「소득세법」제4조 제1항)

② 법률규정에 의해 기장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기장을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납세자와 법률상 그러한 의무는 없지만 실제 이를 행하는 영업소득자(독일「소득세법」제5조 제1항)

둘째, 독일「소득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윤계산방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대로 된 기장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추계과세가 아니라 좀 더 간단한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은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총수입(Betriebseinnahmen)에서 그 사업을 위해 투입한 경비(Betriebsausgabe)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자산가치의 변경 등은 소득금액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자유직업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법률에 의해 기장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고 또 자발적으로 기장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결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입과 지출은 기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소득종류에서 인정되지 않는 평균율(Durchschnittssätze)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허용되는 것으로 농림업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단, 모든 농림업소득 종사자에게 이러한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기장의무가 부

과되지 않고 실제 기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농림업의 규모가 법률이 정하는 규모보다 더 영세한 경우에만 이것이 허용된다.

네 번째 방식은 국제선박에 의해 해운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580]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부과를 하는 방식이다.

나. 잉여소득유형에 있어서 소득금액계산

잉여소득유형, 즉 근로소득, 자산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이익소득유형과 다른 소득금액계산방법(Einkunftsermittlungsmethode)이 인정된다.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2항 제2호는 필요경비(Werbungskosten)를 공제하고 남는 수익(Überschuss der Einnahmen)이 소득금액(Einkünfte)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잉여소득유형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요건 일반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필요경비(Werbungskosten)를 수익(Einnahmen)의 획득(Erwerbung), 보호(Sicherung), 유지(Erhaltung)를 위한 경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조 제1항 제2문 아래에서는 법에서 열거된 항목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항목들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 제5항에서는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필요경비(Betriebsausgaben) 인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소득세법」제4조 이하를 잉여소득유형에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잉여소득유형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에 있어서 특별한 것 중의 하나가 출퇴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비용을 근무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출퇴근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2007년「소득세법」개정으로 이러한 비용이 기본적으로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다만 출퇴근 거리가 21㎞ 이상인 경우에는 21㎞부터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개정 이후 출퇴근경비를 필요경비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소득세 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2008년 12월 9일 결정을 통해 이러한 입법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581] 그 결정 이후 출퇴근 경비는

580) 이러한 납세자는 대부분 회사일 것인데 독일은 회사의 경우 물적 회사만 법인격이 부여되고, 인적 회사는 회사가 소득세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소득세법」에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581) Bundesverfassungsgericht) zum Urteil des Zweiten Senats vom 9. Dezember2008 - 2 BvL 1/07 - .

이동거리 첫 1㎞부터 ㎞당 30센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단, 1년에 그 한도는 4,500유로이다.[582]

독일에서 잉여소득유형의 경우에는 이처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필요경비공제는 납세자가 공제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검증하여 공제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금액계산방식은 잉여소득유형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필요경비성 지출을 증명하여 해당 부분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직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한 학원비, 세미나비용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직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도구, 의류 등을 구매하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583]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소액의 근로소득자들이 필요경비 입증을 위해 수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경우에도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부양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1천유로의 표준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다.[584] 납세자는 실제 금액을 입증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든지, 그러한 입증 없이 표준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3. 과세표준 산출체계

가. 개관

총 7개의 소득유형별로 소득금액계산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이 된다. 독일 세법상 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 Einkommen) 산출은 총소득금액에서 다시 2단계의 계산과정을 거쳐 도출하게 된다. 첫째 단계는, 총소득금액에서 다양한 공제금액을 공제하여 '소득(das Einkommen)'이라는 것을 산출하고, 둘째 단계는, 첫째 단계에서 산출한 과세대상 소득에서 다시 자녀소득공제(Freibeträge für Kinder)와 독일「소득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공제(Härteausgleichsbetrag)를 공제하여 과세대상소득, 즉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e Einkommen)을 계산한다.

582) 독일「소득세법」제9조 제1항 제4호.
583) 독일「소득세법」제9조 제1항 제6호.
584) 독일「소득세법」제9a조.

나. 소득(das Einkommen) 산출을 위한 다양한 공제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에서 '소득(das Einkommen)'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소득금액에서 과세연도 간 손실공제(Verlustabzug)를 하고 특별지출에 대한 공제(Sonderausgaben)와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위한 공제(Aussergewöhnliche Belastungen) 및 자가주택에 대한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과세연도 간 손실공제(Verlustabzug)는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손실을 소득세 과세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총소득금액을 도출하기 이전 단계에서 손실상계(Verlustausgleich)를 통해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고, 총 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에서 '소득(das Einkommen)'을 산출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손실공제(Verlustabzug)는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전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전기이월도 가능하고 차기이월도 가능한데 우선 전기이월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도 남은 손실은 차기이월대상이 된다.

특별지출에 대한 공제(Sonderausgaben)는 독일「소득세법」제10조에서 제10g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창출에 객관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는 없지만 인세(人稅)인 소득세의 성격상 납세자의 담세력을 줄여주는 주관적인 요소들을 소득세 계산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감면해주는 것들이다. 예컨대, 이혼하거나 장기 별거중인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생활비의 경우 지불하는 납세자의 소득세 담세력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이를 특별지출에 대한 공제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실업보험료, 건강보험료, 책임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 교회세 납부액, 14세까지 자녀의 육아비용의 2/3(자녀 1인당 4천유로 한도), 납세자 본인의 직업교육비용, 국가공인 학교의 수업료의 30%, 기부금 등도 특별지출에 대한 공제(Sonderausgaben)로 감면된다.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위한 공제(Aussergewöhnliche Belastungen)는 '비경상적 부담에 대한 공제'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특정 납세자가 본인과 동일한 자산상태, 가족상태, 소득수준에 있는 다수의 다른 납세자들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조건으로 과세소득을 감해주는 것으로 특별지출에 대한 공제(Sonderausgaben)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감면해주는 조치이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33조부터 제33b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위한 공제

(Aussergewöhnliche Belastungen)'의 일종으로 장애자표준공제(Behindertenpauschbetrag)로 최소 310유로(장애 정도가 20에서 30 사이인 경우)에서 최고 1,420유로(장애 정도 95에서 100 사이인 경우)를 공제해 준다. 그 외에도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부양비용, 직업교육 중인 자녀를 위한 교육비공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공제 등이 있다.

자가주택에 대한 공제는 주거 목적의 자가주택에 대한 조세경감을 위해 일정금액을 소득세계산시 감면해주는 것이다.

다.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 Einkommen) 산출을 위한 다양한 공제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에서 과세연도 간 손실공제(Verlustabzug), 특별지출에 대한 공제(Sonderausgaben),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위한 공제(Aussergewöhnliche Belastungen) 및 자가주택에 대한 공제를 해서 '소득(das Einkommen)'을 산출하고 그 소득에서 다시 자녀소득공제(Freibeträge für Kinder)와 독일「소득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공제(Härteausgleichsbetrag)를 하면 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 Einkommen)'이 산출된다.

자녀소득공제(Freibeträge für Kinder)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최소생계비를 배려한 것으로 2018년의 경우 자녀 1인당 7,428유로를 공제한다. 납세자는 매달 자녀보조금(Kindergeld)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자녀보조금 대신에 자녀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주어야 한다. 즉, 부과주의 조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독일 소득세의 경우에 납세자가 결혼 여부, 자녀보조금의 수령 여부, 자녀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이 개별 납세자에게 자녀보조금이 유리한지, 자녀소득공제가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리한 쪽으로 소득세를 부과징수한다. 만일 자녀보조금을 수령한 납세자에게 자녀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수령한 자녀보조금을 소득에 가산하고 대신 자녀소득공제를 해주어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사회보장적 성격의 자녀보조금이「사회법」이 아닌「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소득공제의 일종인 자녀소득공제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585]

585)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자녀양육과「소득세법」-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법센터 세미나 자료집, 2007 참조.

독일「소득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공제(Härteausgleichsbetrag)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 공제는 독일「소득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관련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액수가 410유로를 넘지 않으면 징수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행정비용의 과다를 고려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86] 그런데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410유로를 초과하면 갑작스레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면서 부담이 가혹(Härte)해질 수 있게 된다. 독일「소득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공제(Härteausgleichsbetrag)는 이러한 세부담의 가혹을 조정(Ausgleich)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410유로를 초과하더라도 410유로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586) 독일「소득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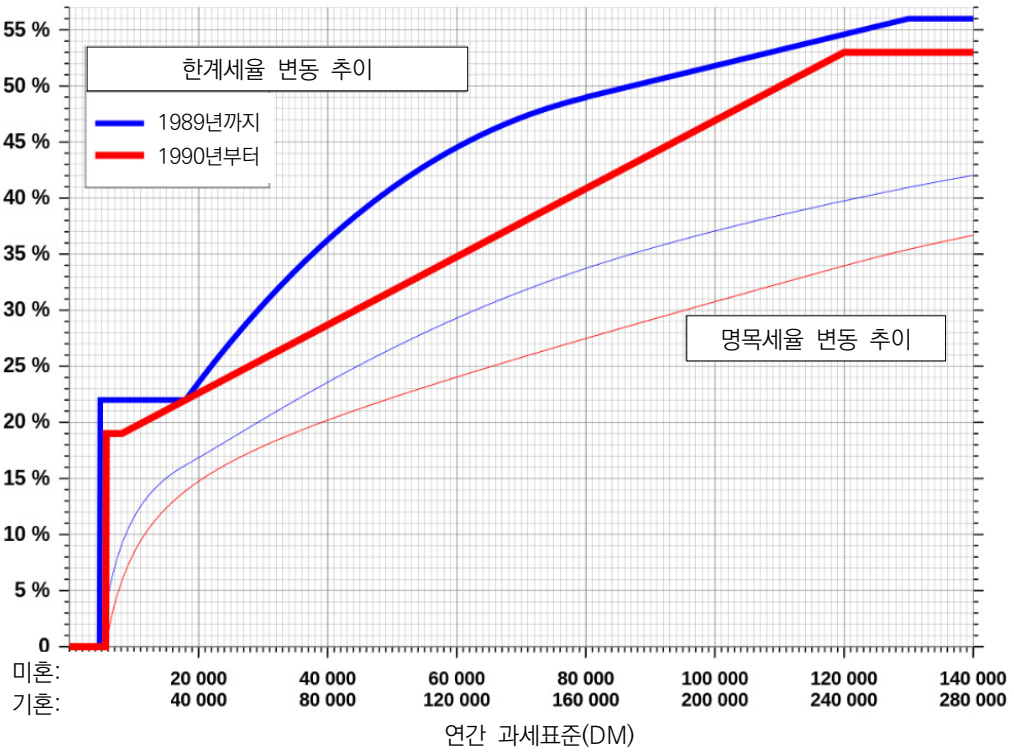
1. 세율체계

가. 세율체계의 역사적 변천

독일의 소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체계를 취하지만 구간에 따라서는 비례세율체계를 취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단계별 고정세율(Stufentarif)이 적용되었다. 이는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어 단순누진 형태로 과세가 되는 체계였다. 그 결과 과세구간이 변경되는 소득층에는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후 1934년에는 초과누진 형태의 세율(Anstoßtarif)이 도입되었다. 이 세율은 과세구간이 변경되는 영역에서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는 해결하지만, 동일한 과세구간에 있어서는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세율은 하나의 과세구간 초기에는 누진율이 높게 나타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진율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에 의하여 단계별 고정세율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가 1952년 다시 초과누진세율 형태의 세율이 도입되었다. 1958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초과누진세율체계를 유지하되 세율이 하나의 공식으로 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공식은 1990년에 크게 변화하게 되어 세율체계는 누진세율체계와 비례세율체계를 혼합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1990년 세율체계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취할 경우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소위 '중산층의 배(Mittelstandsbauch)'[587]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587) [그림Ⅵ-1]을 보면 중간의 불룩한 곡선부분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 곡선이 나타내는 의미는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아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Ⅵ-1] 1990년 독일의 소득세 세율제도 개혁



주: 1. 굵은 선은 한계세율을 나타내며, 얇은 선은 명목세율을 나타냄
2. 청색은 1989년까지 한계세율과 명목세율의 변동추이를 나타내며, 적색은 1990년부터의 한계세율과 명목세율의 변동추이를 나타냄

자료: https://de.wikipedia.org/wiki/Einkommensteuertarif#/media/Datei:ESt_D_Tarifreform_1990.svg

나. 현재의 기본 세율체계

현재 독일 「소득세법」상 세율체계는 독일 「소득세법」 제32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의 소득세 세율체계는 기본적으로 1990년 도입된 수식체계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 세율은 통상 5개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단계는 소득세가 0이 되는 구간이고, 둘째와 셋째 단계는 누진율이 적용되는 구간이고, 넷째와 다섯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첫째 단계는 세금이 0이 되는 기본공제(Grundfreibetrag)구간이다. 이는 납세자 본인 또는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최저생계비를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녀의 최저생계비는 기본공제(Grundfreibetrag) 항목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한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하여 과세에서 제외시킨다. 2019년 현재 기본공제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 9,168유로(부부합산과세의 경우에는 그 2배가 됨)이다. 1995년까지 기본공제금

액은 2,871유로이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공제금액이 최소한 「사회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기본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588] 그 이후에 입법자는 기본공제금액을 사회보장법상 최저생계비에 맞추어 매년 변화시키고 있다.[589]

둘째 단계는, 과세대상 소득금액 9,169유로부터 14,254유로까지로 거의 수직 형태의 누진구조로 세율부담이 14%부터 23.97%까지의 구간이다.

셋째 단계는, 과세대상 소득금액 14,255유로부터 55,960유로까지로 완만한 누진구조 형태를 취하며 세부담은 23.97%부터 42%까지이다.

넷째는, 과세대상 소득금액 55,961유로부터 265,326유로까지로 증가하는 소득에 대해 42%의 비례세율로 과세가 되는 구간이다.

다섯째 구간은, 소위 '부유세"(Reichensteuer)'라고도 불리는 구간으로 과세대상 소득금액 265,327유로부터 증가하는 소득에 대해 45%의 비례세율로 과세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2007년에 추가되었다.

다. 특별한 세율

독일에는 위에서 검토한 기본세율 이외에 일정한 소득에 대해만 적용되는 특수한 세율체계가 존재한다. 첫째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부분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둘째는, 누진유보제도(Progressionsvorbehalt)제도이다. 이 제도는 독일 「소득세법」 제32b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을 일단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포함시키고 그렇게 할 경우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비과세금액을 뺀 금액에 적용해서 세율 적용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세대상소득이 20,000유로이고, 비과세소득이 11,000유로가 있는 경우 양자를 합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도출하므로 이 금액은 31,000유로가 되고 이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예컨대, 20%라고 한다면 과세대상 소득금액 20,000유로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590] 이 제도는 비과세제도로 인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 최소한 누진율 적용에 의한 소득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588) BVerfG v. 25.9.1992-BvL 5/91, BVerfGE 87, 153.
589) 2018년에는 9,000유로이고, 2019년에는 9,168유로이다.
590) 과세대상금액이 20,000유로에 비과세소득 11,000유로를 합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 적용을 하였을 때 세율이 15%라고 가정해보면 누진유보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누진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어떤 항목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할 때에 누진유보제도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 단순히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낮아져 결국 과세대상으로 남아있는 소득 전체에 대한 세부담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비과세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유보제도를 통해 그러한 효과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독일「소득세법」제34조에서 규정한 소위 '비통상적인 소득에 대한 세율경감(Tarifermäßigung für außerordentliche Einkünfte)'이다. 영업양도와 포기로 인한 영업소득(부분적으로 과세면제된 소득은 제외), 일실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장에 따라 부여되는 이익 등이 그 대상이다. 독일「소득세법」제34조는 두 가지 형태의 세율 경감을 규정하고 있다. 그 한 유형은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평균세율(Durchschnittssteuersatz)의 56%를 적용하여 특별하게 세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다.[591] 그리고 다른 한 방법은 비통상적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A)과 비통상적 소득의 5분의 1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B)을 가지고 비통상적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A)에 통상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C)과 비통상적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A)과 비통상적 소득의 5분의 1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B)에 대해 통상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D) 그 차액(E=D-C)을 도출한 후 다시 비통상적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A)에 통상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C)에 두 세액의 차액(E)을 5배곱한 세액(F)을 합한 금액(G=E+F)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하는 방식이다.[592]

2. 세액공제 및 감면

독일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특별한 세율을 통한 세액공제 내지는 감면이 전부이다.

591) 독일「소득세법」제34조 제3항.
592) 독일「소득세법」제34조 제1항.

3. EITC제도의 존재 여부 등

독일에서도 EITC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고 있다.

4. 최저한세

독일 소득세법에 명시적으로 최저한세를 규정한 제도는 없다.

Ⅶ 신고, 납부 및 징수체계

1. 신고납부제도

가.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독일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Veranlagungszeitraum)이 종료함과 동시에 성립한다(entstehen).[593] 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으로 확정되는 부과주의 조세(Veranlagungssteuer)이다.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초자료는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Steuererklärung)를 통해 확보한다.

나. 소득세 신고

독일의 소득세는 부과주의 조세이지만 납세자의 협력의무의 일종으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소득세 신고는 법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여서 행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식을 보게 되면 인적사항과 각종 공제와 감면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달리 세액계산을 납세자가 하지는 않는다.

독일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독일「조세통칙법」제149조 제1항과「소득세법」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도 온라인 사이트[59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독일「소득세법」제46조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과세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예,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처럼 누진유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401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595]

신고기한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조세통칙법」제14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 연도의 그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이다. 농림업소득 종사자 중 조사기간을 역년으로 하지 않고 다른 회계연도(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593) 독일「소득세법」제36조 제1항.
594) www.elster.de
595) 독일「소득세법」제46조.

신고기한은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2018년 농림업소득의 경우 2019년 9월말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농림업소득에 대해 신고기간이 다른 이유는 농림업소득의 경우에는 회계기간(Wirtschaftsjahr)이 시작되는 연도에 귀속되는 부분과 종료되는 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을 분할하여 각각의 역년에 귀속시켜 부과처분하기 때문이다.

다. 소득세 납부

독일의 소득세는 신고주의 조세가 아니고 부과주의 조세이므로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Steuerbescheid)를 받고 나서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납부하게 된다. 독일 세법이론에 따르면, 부과주의 조세의 경우 세법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책임은 부과권자인 국가의 몫이고, 납세자는 부과권자가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서 협력할 의무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질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독일 소득세법에서도 납세자의 협력의무의 일종으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신고시 세액을 계산하지도 않고 신고와 동시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다만, 납세자는 과세연도 중간에 사전납부(Einkommensteuer-Vorauszahlung)를 해야 한다. 사전납부할 소득세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거연도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납부할 세액은 세무서에서 발부하는 사전납부결정서(Vorauszahlungsbescheid)에 의하여 확정된다. 사전납부는 매년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의 10일까지 해야 한다.[596] 이러한 소득세 사전납부는 모든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 연 세액이 최소 400유로를 초과하고 그리고 사전납부하는 세액이 최소한 100유로를 초과해야만 이행의무가 부과된다.[597]

2. 신고 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등

가. 개관

독일 소득세법에서는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 자체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세통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596) 독일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597) 독일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지연가산세(Verspätungszuschlag) 부과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늦게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독일「조세통칙법」제152조에 따라 신고지연가산세(Verspätungszuschlag)를 부과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entschuldbar)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598]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599] 세무대리인의 실수도 납세자의 실수로 처리된다.

신고지연가산세는 부과세액의 0.25%로 하되 한 달에 최소한 25유로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지연가산세는 25,000유로를 초과하지는 못한다.[600] 과거에는 최고액은 25,000유로로 하되 부과세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연가산세의 규모가 지연가산금의 목적, 경과한 기간의 정도, 부과처분을 통해 확정된 납부세액의 규모, 지연을 통해 납세자에게 주어진 이익,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세무서가 재량적으로 결정하였다.[601]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통일적이지 못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에서 확정한 액수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Säumniszuschläge) 부과 등

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Säumniszuschläge)가 부과된다.[602] 신고지연가산세(Verspätungszuschlag)나 이자(Verzinsung) 등 조세의 부수의무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603] 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3일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604]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가 지연된 매월마다 납부세액의 1%가 부과된다.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이미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도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부과처분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지 않는다.[605]

598) 독일「조세통칙법」제152조 제1항.
599) AO § 152 Rn. 2 in Niewerth in BKSt Lfg. 6. November 2000,
600) 독일「조세통칙법」제152조 제1항.
601) 구 독일「조세통칙법」제152조 제2항.
602) 독일「조세통칙법」제240조.
603) 독일「조세통칙법」제240조 제2항.
604) 독일「조세통칙법」제240조 제3항.
605) 독일「조세통칙법」제240조 제1항.

이러한 납부지연가산세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시에 납부하게 하는 압박수단이라는 측면과 이자의 측면도 함께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606] 근로소득자,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세금납부가 없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지연가산세 채무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부를 지연하면 성립한다.

신고지연가산세(Verspätungszuschlag)와 달리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감면제도는 없다.

납부기한을 유예해주는 경우(Stundung) 유예해주는 기간 동안 매월 0.5%의 이자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607] 이러한 이자 부과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unbillig)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608]

3. 원천징수제도

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은 지급자인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3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3년 1월 1일 부터는 전산으로(www.elster.de) 그러한 정보들이 관리되고 더 이상 카드는 발급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전산망을 통하여 개별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받고 해당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자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러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자에게 별도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해지지 않는다. 물론, 법률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609]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독일 소득세법은 근로자를 6개 등급(Steuerklasse)으로 나누고 있다.[610]

606) Seer in Tipke/Lang Steuerrecht 23. Auflage., 2018, § 21 Rn. 363.
607) 독일「조세통칙법」제234조, 제238조.
608) 독일「조세통칙법」제234조 제2항.
609) 독일「소득세법」제38b조 제1항.
610) 독일「소득세법」제46조 제2항.

〈표 Ⅶ-1〉 소득세법의 납세자 등급

조세등급 구분	내용
Steuerklasse	1. 무제한 납세의무자 중 1) 미혼자(ledig) 2) 기혼자(verheiratet), 배우자와 사별한 납세자(verwitwet), 이혼한 납세자(geschieden)로서 Steuerklasse III과 Steuerklasse IV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자 2. 제한적 납세의무자
Steuerklasse II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미혼자 중 독일「소득세법」제24b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대한 조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자
Steuerklasse III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기혼자(verheiratet), 배우자와 사별한 납세자(verwitwet), 이혼한 납세자(geschieden)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Steuerklasse IV	기혼자(verheiratet)로 부부 양쪽이 모두 무제한 납세의무자이고 과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별거생활을 하지 않는 납세자
Steuerklasse V	Steuerklasse IV에 속하는 납세자가 신청으로 Steuerklasse III에 편성되게 된 경우
Steuerklasse VI	동시에 여러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납세자

자료:「독일소득세법」제46조 제2항을 기초로 저자 작성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결정은 근로자의 여러 사정을(예, 납세자의 조세등급, 자녀공제금액 등) 고려하여 결정된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08년 세법개정으로 2009년 1월부터는 크게 변화하였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Abgeltungsteuer, 공식적으로는 Kapitalertragsteuer)의 도입이다.[611] 과거에는 자산소득도 다른 소득유형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고 다른 소득유형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2008년 세법개정으로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경비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필요경비로 801유로(부부합산과세의 경우 1,602유로)를 저축자 일괄공제(Sparer Pauschbetrag)라는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공제하며[612], 이자 · 배당 등 자산소득을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과세는 해당

611) 독일「소득세법」제43조.

원천징수로 종결된다.[613] 단, 납세자는 자신에게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세율에 따른 과세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5% 원천징수가 더 유리하므로 납세자들은 기본세율에 따른 과세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산소득에 대한 차별적 원천징수제도의 도입에 대해 뉴른베르크재정법원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614]

612) 독일「소득세법」제20조 제9항.
613) 독일「소득세법」제32d조.
614) FG Nurnberg vom 7.3.2012, 3 K 1045/11, EFG 2012 S. 1054.

제6장 | 프랑스

Ⅰ 개인소득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세금은 인간의 모든 지각에 앞서 존재하는 선험적(a priori) 제도가 아니다. 국가를 이뤄 생활하며 이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경험적(a posteriori) 제도일 따름이다. 따라서 세금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프랑스 대혁명(1789)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체제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현재 민주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법 및 세제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615]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1. 개인소득세 도입 역사

프랑스 소득세는 대혁명(1789년) 이후에 도입되었다. 그 이전 즉, 구체제(舊體制, ancien régime)시절에는 간접세인 소금세(impôts sur le sel), 유통세(aides) 및 관세(traites)가 주된 세입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당시 귀족계층(noblesse)이나 성직자 계층(clergés)은 면세대상이어서,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었다.

직접세도 일부 시행되었는데, 프랑스 북부지역에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수단(biens routiers)에 대한 우마차세(taille)[616], 남부지역에서는 자산에 대한 부동산세, 인두세(capitation)[617],

615)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조세평등주의를 동일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는 (수평적 평등)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많이 부담하는 (수직적 공평)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헌재, 1989.7.21. 89헌마38 결정, 1999.11.25. 98헌마55 결정). 조세평등주의에서 평등의 개념은 공평의 개념과 비교할 때 같거나 더 넓다고 한다(이창희, 『세법강의(제15판)』, 박영사, 2017, p.49.)

616) 1439년 11월 2일 칙령(勅令, edit: 왕이 내리는 명령). 이 세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617) 1695년 1월 16일 선언(déclaration). 이 세제는 루이 14세 때 전비조달을 위해 시행되었고 1728년 4월 1일에 폐지되었다.

18세기에 제정된 1/10세, 1749년에는 1/20세[618]가 있었다.[619] 이들 세목 역시 귀족계층이나 성직자 계층은 면세대상이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으며, 루이 16세의 항복으로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가 제정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헌법을 완성하기 전, 1789년 8월 26일에는 국민주권의 조항과 인간의 천부적 권리 및 권력분립의 원칙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조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조세 평등주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선언의 제13조는 "공권력(公權力)의 유지 또는 행정지출을 위한 공동(共同)[620]의 조세는 필요하다.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원칙[621]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公共) 조세[622]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감시(監視)하며, 그 할당액, 과세기준, 징수기간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623]을 천명하고 있다.

종전 구체제 시절에는 왕의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시민들의 대표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전문(前文)에서는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의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애착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규정[624]하고 있어서, 이 선언에 포함된

618) 당시 세무관이었던 에티엔 드 실루엣(Etienne de Silhoutte)이 고안한 것으로 소득 중 이십 분의 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의미한다.

619) 프랑스 세제 역사의 자세한 내용은 André NEURRISSE, 「Histoire de la Fiscalité en France」, Economica, 1996, pp.31~40 참조.

620) '공동의 조세' 중 공동(commune)이란 프랑스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른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귀족과 성직자 계층은 면세대상이었다.

621) CGI, 제13조: Pour l'entretien de la force publique, et pour les dépenses d'administration, une contribution commune est indispensable ; elle doit être également répartie entre les citoyens, en raison de leurs facultés.

622) '공공 조세'의 공공(publique)란 대표자를 통해서 만든 법률에 따라 해당 납세자 전부에 보편적으로 납세의 무가 있다는 의미다.

623) CGI, 제14조: Les citoyens ont le droit de constater, par eux-mêmes ou par leurs représentants, la nécessité de la contribution publique, de la consentir librement, d'en suivre l'emploi, et d'en déterminer la quotité, l'assiette, le recouvrement et la durée.

세금 관련 규정의 정신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본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간접세(등록세와 인지세는 제외)는 폐지되었다. 그 대신 부동산수입세(Contribution foncière), 동산수입세(Contribution sur les revenus mobiliers), 산업 및 상업소득세(Contribution des Patentes), 창문세(Contribution des portes et fenêtres) 등 4가지 종류의 세금이 시민의 능력에 맞게 부과되었다.

그러나 나폴레옹 1세가 통치한 제1제정(1804~1815년)시대에는 유통세(Droit sur la circulation)와 소비세(Droit de la consommation) 등 간접세가 다시금 등장했고, 19세기 말에는 이들이 국가 재정수입의 4분의 3을 담당하게 되었다.[625]

한편,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파리증권거래소(Bourse de Paris) 개장으로 상징되는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이를 위해 1872년 6월 29일 법률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해 3%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과세가 시행되었고, 이후 1901년 2월 25일 법률에 따라 최고세율이 18.5%까지 적용하는 누진과세체계[626]가 확립되었다. 이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거래소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627] 프랑스에서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가 처음 시행된 것이다.

2.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가. 1945년 이전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세제를 개편하였는데, 1914년 7월 15일 관련 법률에서는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요셉 까이유(Joseph Caillaux)의 주장을 구체화하여 소득세 과세를 담은 방안을 입법하였다.

---

624) Constitution de 1958, PRÉAMBULE : Le peuple français proclame solennellement son attachement aux Droits de l'homme et aux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tels qu'ils ont été définis par la Déclaration de 1789, confirmée et complétée par le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이하 생략).

625) 물론 이때에는 귀족계층이나 성직자 계층에 대한 면세제도는 폐지되었다.

626) 1894년 보레(Bauré)는 3천프랑 이상의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다음 해 급진당(Parti Radical)에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도입 주장을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하였다. 같은 해 국민의회의 35인으로 구성된 외부위원회(extra-parlementaire)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소득의 종류를 5가지 -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 임대소득, 자본소득, 근로소득, 산업 및 상업소득 - 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14년에는 본격적인 누진과세체계가 도입되었다.

627) Jean Lamarque·Olivier Négrin·Ludovic Ayrault, 「Droit Fiscal Général」, LexisNexis, 2016, p.921.

이에 따르면, 제5조에서 일반소득세(impôts général sur le revenu)를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프랑스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소득세는 각 소득종류별 소득금액(impôts cédulaires)에 대해 부과한다(이른바 '분류과세'를 의미함)고 규정한 뒤 각종 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628] 그리고 세율은 최고 12.5%까지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1917년 7월 31일 법률에서는 비례형 분류과세제도(cédulaires proportionnels)를 도입하였다.[629]

분류과세란 소득을 산업 및 상업소득, 농업소득, 근로・연금소득, 비상업소득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 1872년 6월 29일 법률에 따른 자본소득,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의 분담금 및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의 분담금이 추가되었다.[630] 세율은 비례세[631] 형태였다.[632]

이후, 1920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소득금액이 55만프랑 이상에 대해서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누진과세체계를 재도입하였다.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39년에는 소득금액이 40만프랑 이상의 소득에 대해 70%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1945년 이후

프랑스 소득세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12월 9일 법규명령(décret)에 따라 대폭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전 시행 중이던 유형별 비례형(cédulaires proportionnels) 소득세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도 시행 중인 가족단위(foyer fiscal) 과세제도가 이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628) 이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당시 프랑스는 소득별로 과세를 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데 차이가 있다.

629) 이때는 소득별로 서로 다른 소득금액 산출체계 및 세율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630) Jean Lamarque・Olivier Négrin・Ludovic Ayrault, op. cit, p.922.

631) 비례세란 누진과세체계가 아닌 세율체계를 의미한다.

632) 당시 시행되었던 일반소득세와 유형별 비례형 소득세 과세제도의 주된 차이를 살펴보면, 전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과세하지만, 후자는 개인 소득에 법인의 소득까지 포함하되 비례세로 과세한다는 점이다.

한편, 1950년 6월 6일 법규명령(décret)[633]에 의해, 세목마다 있었던 세법전도 통일하여 단일세법전(單一稅法典)인 「조세일반법(Code Généarl des Impôts : CGI)」[634]을 제정하였고, 여기에 소득세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1959년 12월 28일 법률에서는 소득세 과세체계의 간편화를 위해 1948년 12월 9일 법규명령(décret)에 따라 도입되었던 비례세(taxe proportionnelle)나 누진부가비례세(surtaxe progressive)를 폐지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1960년 1월 1일부터는 CGI에서 소득종류별 과세가 아닌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누진세율[635]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1965년 7월 12일 법률에 따라 배당세액공제(avoir fiscal)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이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대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45년 8월 15일 법률명령(ordonnance)[636]에 따라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자본과세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주식의 순가치(기준일 평가액 – 취득원가)에 대해 3~20%로 과세하였다.

이후 1963년 12월 19일 법률(1976년 7월 19일 법률에 따라 보완되었음)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다. 동산양도소득 중 귀중품은 7.5%로, 골동품과 고가장식품은 2만프랑 이상에 한해 4.5~7%로 과세하였으며, 주식양도소득은 16%로 과세하였다.[637]

---

633) 법규명령(décret)이란 행정부가 법률의 집행을 목적으로 행하는 명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유사하다. 국사원은 이 법규명령의 제정권은 수상에게 있다고 한다(「헌법」 제21조).

634) 프랑스 세법체계는 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으로 구분한다. 조세실체법에서는 세법의 모든 세목을 Code Général des Impôts에 모아 세법전을 만들었으며, 조세절차법은 Les Procédures des Fiscales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Code Général des Impôts를 직역하면 '조세에 관한 일반법전'이라는 의미다. 이를 축약하면 「조세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를 「일반세법전」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일반조세'에 대척점에 있는 '특별조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조세실체법이라는 용어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는 세법의 분류체계 명칭과 동일하여, 세법전의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면도 있다. 한편, 통상적인 용어인 '프랑스 세법', '프랑스 세법전'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는 「국세기본법」이라는 명칭 대신에 '한국 세법'이라는 일반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2009년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 편)』에서 사용하였던 「조세일반법」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635) 최고 7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 해도 있었다.

636) 법률명령(ordonnance)이란 대통령이 국가에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으며 헌법상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 발하는 명령이다(헌법 제16조).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유사하다.

637) 이 무렵, 외국기술과 자본의 유치를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공제(déductions du revenu)'제도가 도입되었다.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1978년 7월 13일 법률),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공제(1980년 12월 30일 법률), 영화산업에 대한 소득공제(1985년 7월 11일 법률), 퇴직자의 저축소득에 대한 소득공제(1987년 7월 17일 법률),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공제(1994년 2월 11일 법률) 등이 있다. 또한, 주택취득 및 유지(1970년

2005년 사르코지(Sarkozy) 정부는 소득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소득세 부담 상한규정(bouclier fiscal)을 도입하였다(2013년까지 시행되었음).[638] 이에 따르면 소득세는 해당 납세자 소득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639]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28일 법률에 따라 초고득자(très haute revenus)에 대해서 기존의 세율에 추가하여 별도로 3~4%의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640] 다음 정부인 올랑드(Hollande) 정부는 2013년 12월 29일 법률에 따라 일반소득세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였다.[641]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이던 배당세액공제(avoir fiscal) 제도는 국내배당과 국외배당의 차별 등 이른바 조세중립성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29일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다.

2015년 12월 29일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서류신고 또는 전자신고를 통한 소득세 신고제도를 변경하여, 서류신고를 폐지하고 전자신고제도(déclarations souscrites par voie electronique)만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642]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프랑스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 성격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였고, 최종 소득세확정신고 단계에서 이를 차감하여 납부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이 늦어진 것은 원천징수제도의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 현재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foyer fiscal)인데 매달 개인단위 원천징수로 인

12월 20일 법률), 박애사업(philanthropiques)에 대한 기부 (1989년 12월 29일 법률), 중앙관리사무소(Centre de Gestion) 기부에 대한 '세액감면(réduction des impôts)'제도가 도입되었다(1982년 12월 29일 법률). 아울러 산업 및 농업기업의 기술개발비(1987년 12월 30일 법률), 단기간 노동자의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crédit d'impôts)'제도도 도입되었다 (1989년 12월 29일 법률).

638) 2005년 12월 30일 법률.

639) 이후, 근로소득자의 소비능력 향상(pouvoir d'achat)을 위해, 2007년 8월 21일 법률에서는 50%로 하향 조정하였다.

640) CGI, 제223 sexies조. 이에 따르면, 개인(독신)의 과세표준금액이 25만~50만유로에 대해서는 3%, 그 이상의 경우에는 4% 세율을 적용하고, 결혼한 경우의 가족단위 과세표준금액이 50만~100만유로에 대해서는 3%, 그 이상의 금액에는 4% 세율을 적용하였다.

641) 올랑드 정부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75%까지 인상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었고, 이를 법률화하고자 했으나,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에서는 해당 조문이 '조세평등주의 원칙(Le 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위원회, n° 2012-662 DC, 2012.12.29. 결정).

642) CGI, 제1649 quater B quinquies조.

해 프랑스가 보전하려는 가족의 틀이 해체될 우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부담, 세금을 받는 은행의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643]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Ⅰ-1〉 소득세제 연혁표

연도	내용
1872. 6. 29. 법률	프랑스 최초 소득세제 도입
1914. 7. 15. 법률	누진세율 적용
1917. 7. 31. 법률	비례형 분류과세제도(cédulaires proportionnels) 도입
1948. 12. 9. 법규명령	종합과세제도 및 가족단위 과세제도(foyer fiscal) 도입
1950. 4. 6. 법규명령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을 제정하여 소득세를 규정
1965. 7. 12. 법률	배당세액공제(avoir fiscal) 제도 도입
2005. 12. 30. 법률	소득세 부담 상한선 제도 도입
2011. 12. 28. 법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추가 부담제도 도입
2012. 12. 29. 법률	배당세액공제(avoir fiscal) 제도 폐지
2015. 12, 29. 법률	전면적인 전자신고제도 도입
2018. 10. 23. 법률	근로소득자에 대한 매달 원천징수제도 도입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643) 프랑스 과세관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원천징수납부와 관련하여, 개인단위 또는 가족단위 과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선택할 경우 가족의 명단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부담이 많아지는 등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Ⅱ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프랑스 소득세는 국세로서 1년 단위로 소득을 측정하여 과세하고, 과세대상 소득은 조세일반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한정하며, 법원(法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헌법에서 조약의 우선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다르다고 본다. 프랑스의 세법전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일법전 체계다. 따라서 소득세법과 관련된 규정은 소득조세일반법에서 다른 세목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하나, 지정학적으로는 프랑스 영토이지만 과세권이 자치적으로 부여된 해외영토는 세법상 프랑스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과세권자

프랑스 소득세는 국세로서 부과와 징수는 예산부(ministère du Budget)의 소관이다. 그런데 종전의 예산부는 '일반조세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 DGI)', '관세 및 간접세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 DGDDI)' 및 '공공재정회계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mptabilité publique : DGCP)'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4월 3일 법규명령 n°2008-310(이는 2016년 9월 19일 법규명령 n°2016-1234에 의해 개정되었음)에 따라 DGI와 DGCP를 합쳐서 일반조세 및 공공재정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 publique: DGFiP)을 신설하였고,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644]

한편, 일반적인 소득세 세무조사는 예산부 소속의 '국가세무조사총국(direction nationale des vérification de situations fiscales : DNVSF)'에서 맡고 있고, 중요한 탈세사건의 세무조사는 '국가세무검사국(direction nationale d'Enquêtes fiscales : DNEF)'에서 맡고 있다.[645]

644) Jean Lamarque, Oliver Négrin, Ludouic Ayrault, op.cit, p.139.
645) Jean Lamarque, Oliver Négrin, Ludouic Ayrault, Ibid, p.146.

2. 소득세 법령체계

가. 법원(法源, Source du Droit)

소득세와 관련된 법원(法源)은 헌법(constitution), 조약(traités) 및 법률(loi)이 있다. 현행 프랑스 헌법은 1958년 10월 4일에 제정[646]된 것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위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조세의 기준, 세율 및 모든 성격의 세금징수 방식은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647]

또한, 헌법 제55조에서는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각기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조건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648]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제협약 및 조약은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49] 따라서, 조세조약이 프랑스 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650]

이 중 소득세의 법원과 주로 관련이 있는 법률은 헌법, 조약, 세법, 법규명령 및 부령을 들 수 있다.[651]

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프랑스 헌법 제39조는 "법률안 제안권은 수상과 국회의원이 각각 가진다."라고 규정[652]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40조에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및 수정안은 그 채택이 국고 수입의 감소나 국고지출의 신설 또는 증가를 초래하면 이를

646) 이를 제5공화국 헌법이라고 한다.

647) 원문: La loi fixe les règles concernant: l'assiette, le taux et les modalités de recouvrement des impositions de toutes natures.

648) 한편 프랑스의 법규범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다. 헌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개혁을 위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법률(loi référendaire),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가통치조직의 「기본조직법(Loi Organique)」, 헌법 제61조에 따른 의회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양원 규칙(règlements des assemblées), 헌법 제38조에 따라 정부가 시정방침의 수행을 이해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는 수권법률(loi d'habilitation), 예산법률(loi de finances), 법률명령(ordonnance)과 법규명령(décret), 부령(arrêté) 등이 있다.

649) 원문: Les traités ou accords régulièrement ratifiés ou approuvés ont, dès leur publication, une autorité supérieure à celle des lois, sous réserve, pour chaque accord ou traité, de son application par l'autre partie.

650)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여, 프랑스와는 달리, 국제법과 국내법이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해석 차원에서는 특별법 우선원칙을 적용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등).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결정)에는, 세법이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배제, tax treaty override)하기도 한다(예: 소득세법 제156조의 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반면, 프랑스는 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우월적 효력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배제현상은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651) Martin Collet, 「Droit fiscal(제6판)」, puf, 2017, pp.18~24.

652) 원문: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653]하고 있어서,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은 행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국정 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 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일정한 기간 법규명령(décret)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데 (제1항)", 위 법규명령[654]은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부령(arrêté)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즉, 장관은 정부 조직상의 위계질서에 기초한 해당 부처 내의 업무나 조직에 관한 것이나 혹은 법률이나 법규명령(décret)에서 명백하게 수권한 사항에 대해 집행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령 발동권, 즉, 부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한편, 프랑스 법원(法院) 조직 중 우리나라 대법원 역할을 하는 곳은 국사원(Conseil d'Etat, CE)이다. 국사원은 행정재판에 있어서 최고법원이다.

국사원은 1789년 '행정권의 활동에 대해서 사법재판소는 간섭할 수 없고 행정권 자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근본원칙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행정권의 자율적인 통제기관으로서 창설되었으며, 1872년에는 일반 행정에서 독립하여 고유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우리나라는 행정부의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최종판단을 하는데, 프랑스는 행정부에서 한다는 의미다).

아무튼, 이 국사원에서 나온 판례[655] 역시 법원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656]

나. 소득세 관련 세법조문의 구성

프랑스 세법은 단일법전 체계다. 따라서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 중 실체법에 관한 사항은 조세일반법(CGI)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우리나라는 각 세목마다 별도의 법전이 있다). 그리고 신고와 납부, 세무조사 등 절차적인 내용은 「조세절차법(Les Procédures des Fiscales, LPF)」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657]

653) 원문 : Les propositions et amendements formulés par les membres du Parlement ne sont pas recevables lorsque leur adoption aurait pour conséquence soit une diminution des ressources publiques, soit la création ou l'aggravation d'une charge publique.

654) 프랑스 헌법에서 말하는 '법규명령(décret)'은 행정부에 의하여 정립되는데, 법규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사원의 의견 청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고 제정한 법규명령은 형식의 하자(Vice de Forme) 또는 무권한(Incompétence)으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사법연수원, 『프랑스법 Ⅰ』, 2008, p.27.).

655) 국사원 판례 검색 사이트 www.conseil-etat.fr/Decisions-Avis-Publications/Decision

656) Martin Collet, op.cit, pp.18~19.

프랑스 조세일반법은 1950년도에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2,000여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절차(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세절차법은 1980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약 250여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4개의 부칙(annexe) 법전을 가지고 있다. 조세일반법과 조세절차법은 4개의 별도의 부칙 법전을 가지고 있다(이들 부칙 역시 법원에 해당한다).

이중 부칙 Ⅰ은 국사원의 자문과 동의를 받아서 발표된 법규명령이고, Ⅱ는 국사원의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모은 것으로 행정부와 하원에서 법원이 인정된 것을, 부칙 Ⅲ은 대통령령을, 부칙 Ⅳ는 부령을 모은 것이다.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를 과세요건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658]

〈표 Ⅱ-1〉 조세일반법 조문상 소득세 주요 내용

조문	내용	비고
제1 A조 ~ 제11조	Dispositions Générales	총칙
제12조 ~ 제61 A조	Revenus Imposables	과세대상소득
제63조 ~ 제78조	Bénéfices de l'Exploitation Agricole	농업소득
제79조 ~ 제90조	Traitements, Salaires, Pensions et Rentes Viagères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종신연금
제92조 ~ 제103조	Bénéfices des Professions non Commerciales	비상업소득
제108조 ~ 제150조	Revenus des Capitaux Mobiliers	자본소득
제150-0-A조 ~ 제150-V-M조	Plus-values de Cession à Titre Onéreux de Biens ou de Droits de toute Nature	양도소득
제151-0조 ~ 제168조	Versement Libératoire des Exploitants Individuels	비상업소득 외
제170조 ~ 제175조	Déclarations des Contribuables	신고의무
제182 A조 ~ 제187조	Retenue à la Source de l'Impôt sur le Revenu	소득세 원천징수
제193조 ~ 제199조	Calcul de l'Impôt	세액의 산출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657) 안창남, 『프랑스 조세절차법 연구』, 한국세무사회, 2001.

658) 한편, 우리나라 소득세법 편제는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프랑스 법의 편제는 일반적으로 Livre 1er(제1권) → Première Partie(제1부) → Titre 1er(제1편) → Chapitre 1er(제1장) → Section 1er(제1절) → Sous-section 1er(제1부속절) → 해당 Article (법조문)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조세일반법 중 소득세는 Livre Premier(제1권) Assiette et Liquidation de l'Impôt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 Première Partie (제1부) Impôts d'État(국세) → Titre Premier (제1편)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세금) → Chapitre Premier(제1장) Impôt sur le Revenu (소득세) → Section I(제1절) Dispositions Générales(총칙) → Article 1(제1조) : Définition du Revenu Net Global (순소득 합계의 정의)의 순서로 편제되어 있다.

3. 과세권의 범위

프랑스 과세당국이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행사하는 과세권의 범위를 살펴보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를 프랑스에서 과세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프랑스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서 특정 소득에 대해 어느 체약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를 규정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때, 지정학적으로 프랑스라고 할 때는 본토와 해외영토를 포함하나, 조세일반법에서는 이를 좁게 규정하여 과세고권이 독립적으로 주어진 해외영토는 프랑스에서 제외하고 있다.[659]

4. 열거주의 · 포괄주의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은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다. 전자는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방법이고(이른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후자는 과세대상 소득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다.[660] 포괄주의 방식도 전면적인 포괄주의와 특정 유형에 한정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규정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나뉜다.[661]

한편, 열거주의 방식에 따르면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662]

프랑스 조세일반법에서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세대상 소득을 8가지(근로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자본소득, 산업 및 상업소득, 이사의 소득, 농업소득, 비상업소득)로 열거하고 있다.[663]

---

659) 세법상 프랑스란 프랑스 본토, 코르스(Corse), 해외 섬(과달루페 Guadeloupe, 기니 Guyana, 마르티니크 Martinique, 헤위니용 Réunion)을 포함하나, 과세고권이 독립적으로 부여된 뉴벨칼레도니아(Nouvelle Calédonie), 폴리네시 프랑세스(Polynésie française), 오세앙 엥디엔 섬(îles de l'Océan indien), 왈리스(Wallis), 푼투나(Futuna), 오스트랄 지역(terre australes) 및 앙타르티크 프랑세스(antarctiques françaises)는 제외한다.

660) 구별의 실익은 일시적 · 우발적인 소득(예: 양도소득, 위법소득 등) 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다. 열거주의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포괄주의는 반대로 포함한다.

661) 우리나라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에서는 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득과 '유사한 소득' 역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예: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662) 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사실상 '세법의 공백 영역'에 속하여 비과세대상 소득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663)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소득의 과세대상 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말의 순자산(자산—부채)에서 기초의 순자산(자산—부채)을 차감하여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théorie du bilan)'에 따르고 있다(Jean-Jacques Bienvenu & Thierry Lambert,

그러나 이 중 비상업소득(우리나라의 '기타소득'에 해당)의 경우에는 앞서 열거한 과세대상 소득 중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까지를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있다.[664] 이른바 포괄주의 방식으로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665]

요약하면, 비상업소득의 경우에만 포괄주의 방식으로, 다른 7가지 소득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5.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소득의 산출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역년(année civil)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산업 및 상업소득(BIC)과 농업소득(BA)의 경우, 해당 납세자가 역년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exercice comptable)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른다.[666] 예를 들면,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기업의 장부 기록 개시일이 9월 1일이라면, 이 기업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다.[667]

만일 해당 기업이 회계연도를 정하지 아니했다면 과세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한다.[668]

한편, 과세기간 중 폐업을 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물론 장부를 한 사업자는 장부기록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또한 그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Droit Fiscal(제3판), puf, 2003, p.231.)

664) CGI, 제92조 제1항 : Sont considérés comme provenant de l'exercice d'une profession non commerciale ou comme revenus assimilés aux bénéfices non commerciaux, les bénéfic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des charges et offices dont les titulaires n'ont pas la qualité de commerçants et de toutes occupations, exploitations lucratives et sources de profits ne se rattachant pas à une autre catégorie de bénéfices ou de revenus.

665) 이와 같은 입법형태는 세법에 열거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다.'는 의미로 이를 'Cédule-Balai'라고 표현하기도 한다(Martin Collet, op.cit, p.249.)

666) CGI, 제36조.

667)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기업도 모두 역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설정한다.

668) CE, n° 91396, 1974.11.4.

Ⅲ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 및 법인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이며, 이들은 다시 프랑스 거주자와 프랑스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전자는 속인주의 과세원칙을 후자는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한다. 반면 과세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foyer fiscal)로 한다.[669]

1. 납세의무자와 과세범위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소득세 납세의무자[670]는 자연인인 개인 및 법인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671]이며, 이들은 다시 프랑스 거주자와 프랑스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전자는 속인주의 과세원칙을 후자는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한다.

한편, 어느 인(人, person)이 양쪽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하고,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프랑스 조세일반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반면, 납부할 세액의 산출은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족단위(foyer fiscal)'로 과세한다.[672] 다시 말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지만, 부담하는 소득세는 그가 속한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산출한다.[673]

---

669) 가족 구성원이 1인인 경우, 개인단위 과세제도와 동일한 세금부담효과가 있다.

670)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을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개념은 우리나라 세법상 납세의무자와는 같지 않고 오히려 납세자 개념과 가깝지만, 편의상 납세의무자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671) 우리나라 세법상 '법인격 없는 법인'과 유사하다.

672) 2009년에 발행한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는 foyer fiscal을 '세대 단위'로 번역하였으나(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 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p. 72), 이번 보고서에서는 foyer fiscal을 '세대 단위'보다 더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개념인 '가족단위'로 번역한다(최종보고회에서는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가정단위가 더욱 합리적이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소득세 신고할 때 foyer fiscal을 입증하는 서류가 'livret de famille'인데 이를 번역하면 '가족부'인 점, 둘째, 프랑스 거주형태상 미성년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은 보편적이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점, 셋째 우리나라도 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빙이 '주민등록부'라는 명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뀐 점, 넷째, 우리나라 세대 구성원에는 가족이 아닌 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다섯째, 소득세법상 과세단위를 논할 때, 개인단위→부부단위→가족단위로 전개하는 것이 개인단위→부부단위→세대단위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673) CGI, 제6조 제1항 : Chaque contribuable est imposable à l'impôt sur le revenu, tant en raison de ses bénéfices et revenus personnels que de ceux de ses enfants et des personnes considérés comme

따라서 어느 개인이 프랑스 거주자인지 아닌지와 함께,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만, 프랑스는 ① 특정 납세의무자 개인 및 그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② 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수 (part)[674]로 나누어서 1part당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고, ③ 이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1part당 산출세액을 구한 뒤, ④ 다시 ③에 가족의 수를 곱하여 해당 가족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조세일반법」 제1조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소득세는 제156조 내지 168조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다."[675]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 '세법상 주소(domicile fiscal)'가 있는 자(거주자를 의미함)는 세법에서 규정한 소득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이라 함)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프랑스 국내원천소득'[676]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677]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78]

한편, 법인세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의 소득은 일단 법인단계에서 소득을 계산한 뒤 해당 법인의 주주나 사원들에게 그들의 지분만큼 분배되고 그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679]

가. 개인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가지는 자를 인(人, person)이라고 하는데, 인은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자연적인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을 의미하고, 후자는 관련법으로부터 인격(人格)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소득세와 관련한 권리와

étant à sa charge au sens des articles 196 et 196 A bis.

674) '가족 구성원의 수'와 세법상 '가족의 수(Part)'는 다르다. 왜냐면 후자는 가족의 구성 현황(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등)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675) CGI, 제1 A조 : Il est établi un impôt annuel unique sur le revenu des personnes physiques désigné sous le nom d'impôt sur le revenu. Cet impôt frappe le revenu net global du contribuable détermin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156 à 168.

676)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과 같은 개념이다.

677) 프랑스 비거주자 중 프랑스 내에 여러 거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프랑스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추계 과세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5년 12월 29일 법률(n° 2015-1786)에 따라 폐지되었다.

678) CGI, 제4 A조 : Les personnes qui ont en France leur domicile fiscal sont passibles de l'impôt sur le revenu en raison de l'ensemble de leurs revenus. Celles dont le domicile fiscal est situé hors de France sont passibles de cet impôt en raison de leurs seuls revenus de source française.

679) 우리나라 인적회사나 공동사업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의무의 주제가 되며, 법인은 상법 등 해당 법인의 존재와 관련된 근거법으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는다.

나. 법인격 없는 법인

세법상 법인격이 없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주나 구성원에게는 그들의 지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부과된다.[680] 예를 들면, 합명회사, 민사회사, 파트너십, 농업회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681]

다. 과세범위

프랑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전 세계 소득(프랑스 국내소득원천 + 국외원천소득)[682]에 미치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프랑스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한다.[683]

680) CGI, 제8조 :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6, les associés des sociétés en nom collectif et les commandités des sociétés en commandite simple sont, lorsque ces sociétés n'ont pas opté pour le régime fiscal des sociétés de capitaux, personnellement soumis à l'impôt sur le revenu …… 이하 생략함.

681) 프랑스 상법은 법인을 크게는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으로 구분하고, 사법인을 다시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영리법인에는 민사회사와 상사회사가 있고, 상사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단(association)과 비영리재단(fondation)으로 구분한다.
가장 보편적인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와 기타 형태의 회사(합명회사, 민사회사, 경제이익단체, 익명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에는 주식회사(societe anonyme: SA), 유한 책임회사 (Societe à responsabilite limitee: SARL) 및 단순주식회사(societe par actions simplifiee: SAS)가 있다.
SA는 발기인이 7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SARL 및 SAS는 1인 주주가 가능하다. 한편, 무한책임회사인 합명회사(societe en nom collectif), 민사회사(societe civile) 및 경제이익단체(groupement d'intérêt economique)가 있다. 이외에도 특수한 기업형태인 익명회사(societe en participation)는 건설업, 공연예술 및 출판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기업형태는 설립이 간단하고 (법인사업자명부 등록 불필요) 법적 고시가 필요 없다.

682) 그러나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프랑스에 주소가 있으면서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연도 중 해외 근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거나, 근로 용역을 제공한 해당 국가에서 낸 세액이 이를 프랑스에서 과세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때는, 예외적으로, 프랑스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safe-harbour rule'이 없어서, 거주자인지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조세마찰이 있다고 본다.).

683) CGI, 제4 A조 : Les personnes qui ont en France leur domicile fiscal sont passibles de l'impôt sur le revenu en raison de l'ensemble de leurs revenus. Celles dont le domicile fiscal est situé hors de France sont passibles de cet impôt en raison de leurs seuls revenus de source française.

〈표 Ⅲ-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

구분	소득 구분	
	프랑스 국내원천소득	프랑스 국외원천소득
프랑스 거주자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프랑스 비거주자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소득세 납세의무 없음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한편,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특정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684]

「조세일반법」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소득을 8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과세체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이렇게 산출한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 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한다.[685]

2. 거주자 판정요건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란, 아래에서 열거한 경우와 같이, 프랑스 내에 '세법상 주소'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세법상 주소(domicile)는 민법상 주소나 국적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686]

세법상 주소는 ⅰ) 거주기준 ⅱ) 직업 기준 ⅲ) 경제적 기준 및 ⅳ) 공무원의 경우로 구분하여 프랑스 거주자인지를 판단한다.[687] 이들 기준 중 한 가지만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는 프랑스 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로 간주한다.[688]

684) CGI, 제4 Bis조 제2항.

685)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분류하여 과세(분류과세)하는 체계이지만, 프랑스는 이를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8가지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소득의 과세체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소득'을 의미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는 대표적인 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소득도 있음을 밝혀둔다. 해당 소득을 표기하고 있는 단어를 모두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옮기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지도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686) Bruno Gouthière, *Les Impôts dans les Affaires Internationales(제12판)*, Francis Lefebvre, 2018, p.621.

687) 가족구성원 중 일부는 거주자이고 일부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를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가족 중 미성년자가 그 가족의 주된 소득자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688) CGI, 제4 B조 : 1. Sont considérées comme ayant leur domicile fiscal en France au sens de l'article 4A : a. Les personnes qui ont en France leur foyer ou le lieu de leur séjour principal; b. Celles qui exercent en France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salariée ou non, à moins qu'elles ne justifient que cette activité y est exercée à titre accessoire; c. Celles qui ont en France le centre de leurs intérêts économiques. 2. Sont également considérés comme ayant leur domicile fiscal en France les agents

한편, 어느 인(人)이 조세조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의 조항에 따라 2중 거주자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한다.

가.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1) 거주기준

어느 납세의무자가 프랑스 내에 '가정(foyer)'[689] 또는 '주된 거소(lieu de séjour principal)'[690]가 있다면 그는 프랑스 거주자로 간주한다.[691] 여기서 foyer는 가족들의 이해 중심지와 납세자가 주로 머무르는 장소를 두 가지를 의미한다.[692] 이 장소는 납세의무자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고, 그 장소가 호텔이나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숙식장소라고 할지라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693]

주된 거소란 해당연도 중 6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6개월이란 기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694] 납세자가 여러 나라에 거주할 경우, 그중 제일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거주했다면, 혹 6개월 이내에 프랑스에서 체류했다고 하여도 프랑스에 주된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695]

2) 직업기준

납세의무자가 프랑스에서 그 업무와 관련된 '주된 활동(activité professionnelle principale)'을 수행한다면 그는 프랑스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예비적인 활동은 제외).[696] 여기서 주된 활동이란 납세자의 수입금액과 관련 본질적이고 주된 부분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697]

---

de l'Etat qui exercent leurs fonctions ou sont chargés de mission dans un pays étranger et qui ne sont pas soumis dans ce pays à un impôt personnel sur l'ensemble de leurs revenus.

689) 같은 뜻: résidence habituelle.
690) CGI, 제4 B조 제1항 제a호.
691) 프랑스 가족상황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원 같은 역할을 '가족부(livret de famille)'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692) CE, n° 5924, 1985.2.28.
693) CE, n° 359971, 2014. 4. 9.
694) 파리 고등행정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Paris), n°94-1491, 1995.12.28.
695) CE n° 94488, 1976.7.16.
696) CE, n° 316082, 2011.4.27.
697) CGI, 제4 B조 제1항 제b호.

3) 경제활동 중심지 기준

납세의무자가 프랑스에 '경제활동의 중심지(centre des activités economiques)'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프랑스 거주자로 간주한다.[698]여기서 경제활동의 중심지란 납세의무자의 주된 투자처, 주된 수입의 발생장소[699] 및 사업의 본사(siège)가 프랑스 내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700]

4) 공무원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프랑스 공무원의 경우, 그가 근무하는 국가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701], 그는 프랑스 거주자로 간주한다.[702]

나. 조세조약상 판정 기준

프랑스 1958년 10월 4일「헌법」제55조에서는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각기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조건으로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약에 조세조약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한편,「조세일반법」제4 bis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프랑스 국적을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거나, 프랑스에 세법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없든지 간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프랑스에 배분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03]

프랑스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약을 기준으로 체결되었는데, 프랑스

698) CGI, 제4 B조 제1항 제c호.

699) 관련 예규(국일 46017-91, 1998.2.21.) :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해당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 및「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700) CE, n° 27685, 1983.12.21.

701)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과세관청에 있다.

702) CGI, 제4 B조 제2항.

703) CGI, 제4 bis조 : Sont également passibles de l'impôt sur le revenu : 2° Les personnes de nationalité française ou étrangère, ayant ou non leur domicile fiscal en France, qui recueillent des bénéfices ou revenus dont l'imposition est attribuée à la France par 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relative aux doubles impositions.

의 납세의무자가 2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중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항구적인 주거 →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 국적 → 상호합의' 순서에 따라 거주국이 결정된다.[704]

3. 과세단위

프랑스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foyer fiscal)이다.[705] 가족은 개인 또는 배우자로 구성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가 추가되며 이외에 부모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년을 포함한다.

한편, 각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가족단위로 소득금액을 합한 뒤 세법상 해당 가족 part를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part의 합계로 나눈 뒤,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곱하여 part당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세대의 part 합계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다.[706]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총산출세액 = 【(RNI / N) × BP】× N

주: RNI (Revenu Net Imposable): 각 소득종류별 순소득의 합계액
N (Quotient Familial du Foyer): 가족단위의 part 합계
BP (Barème Progressif):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704) 우리나라와 프랑스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 거소 · 본점의 소재지 ·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동 개인의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국 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양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705)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Précis de Fiscalité 2014(Tome 1)*, 2015, p.15.

706) 물론 개인단위의 과세표준 산출 시스템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일단 가족단위로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가족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part 수로 나눌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개인단위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의 구별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프랑스 가족관계는, 납세자 본인을 중심으로 열거하면, 독신, 결혼, 홀아비, 과부, 이혼, 동거(concubinage), 별거 중인 자, 계약결혼으로 불리는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lité, PACS)'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707]

가. 개인

프랑스「조세일반법」상 가족의 기초단위인 개인은 독신자, 과부, 이혼한 자, 별거 중인 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이를 'individu isolé'라고 한다).[708]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개인은 그 자체로 가족단위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부부 또는 시민연대계약(PACS)에 의한 결혼

부부란 프랑스 민법에 따라 이성 사이에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성 사이의 부부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마련하기 위해 1999년 11월 15일 법률 n°99-944호로 PACS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민법전에 '공동생활과 사실혼'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일반법, 사회보장법, 노동법을 수정하였다.

프랑스「민법」제515조의 1에 의하면 '시민연대계약은 공동생활을 꾸려나갈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자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709]

이 계약으로 결합한 당사자들은 상호보조 의무를 지며 상호보조의 분담 방식은 계약 때문에 정해지고,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의 필요와 공동거처 비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이 빌린 부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710]

이 계약 체결 이후 유상으로 취득한 가구에 대해 공유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이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으면, 가구는 반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재산의 취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711]

이 계약은 당초 결합신고에 대한 최초 증서의 비고란에 종료 사실을 기재하는 즉시 종료된다.[712]

---

707)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률」이다.

708) 동거를 하고 있는 자(concubinage)는 가족단위 과세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다(CE, n° 319.897, 2010.1.27.; CE, n° 311.121, 2010.3.12.).

709)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사이, 직계인척과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 어느 한쪽이 혼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 어느 한쪽이 시민연대계약으로 이미 맺어진 사람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프랑스「민법」, 제515조 제2항).

710) 프랑스「민법」제515조 제4항.

711) 프랑스「민법」제515조 제4항 제1호. 또한, 이 계약 체결 이후 유상으로 소유주가 된 기타 재산은 해당 재산의 취득증서 또는 등기증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가 반씩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프랑스「민법」제515조 제5항 제2호).

한편, 프랑스는 만 18세가 넘으면 성년으로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나이가 되고, 사람이 생기면 동거를 한다. 동거는 프랑스에서 보편적인 주거형태인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713]

조세일반법은 PACS 대해 "민법 제515조의 1에 의해 규정된 시민연대계약으로 결합한 당사자들은 계약신고를 등록한 후 3번째 연도의 소득세 과세연도부터 공동과세의 대상이 되고[714]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연도의 소득은 개인별로 과세한다."[715]고 규정하고 있다.[716]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분부터 시민연대계약의 파트너들은 해당 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가족단위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계약의 체결일과 파기일이 같은 연도일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또한, 2006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해당 계약의 서명일 이후의 소득분부터 파트너들의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717] 신고서에 서명도 함께 하여야 한다.[718]

만일 파트너 중 한쪽만 서명한 경우에는 다른 쪽에 대해서 대항(opposable)할 수 있다. 시민연대계약의 파트너에 대한 세무신고, 세금의 징수, 세무조사 등은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실시된다.[719]

부부는 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에 부부 모두 서명을 하여 신고한다. 배우자 각자는 상대방에 대해 본인의 소득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solidairement)가 주어진다.[720]

다.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은 납세자 본인, 미성년자 및 「조세일반법」 제196 및 제196 A bis에 규정된 자(18세 미만이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 또는 장애인 또는 입양자 및 같이 사는 장애인)를 포함한다.[721] 부부는, 뒤에서 언급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족단위합산의 대상이 된다.

712) 프랑스 「민법」 제515조 제7항 제7호.
713) 우리나라처럼 미혼과 기혼에 대한 구별이 없기에 세법상 미혼모(未婚母) 또는 미혼부(未婚父)라는 말이 따로 없다.
714)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X 또는 Y"로 분리하여 2명의 이름을 표기하여야 한다.
715) CGI, 제6조 제7항 제1호.
716) 이외에도 CGI, 제777조의 2에서는 이들의 증여세를 그리고 제779조의3에는 양도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717) 이 경우에도 이들 파트너의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CGI, 제196조, 제196 A bis조 및 제196 B조).
718) 서명 형식도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Monsieur X 또는 Madame Y〉로 표기한다.
719) CGI, 제7조.
720)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CGI, 제1685조 제2항).

라. 가족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프랑스에서도 가족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가족단위 과세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은 가족단위 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인 부부의 소득격차가 크면 클수록 부부의 소득격차가 적은 경우보다 훨씬 세금혜택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커서[722], 이는 세금부담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결과 소득이 낮은 여성은 직장에 근무하기보다 차라리 취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과세를 할 경우, 소득이 높은 자에게 누진과세를 하는 경우보다는 부부의 소득을 평균하여 과세한다면 전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부부란 경제생활 공동체이므로 부부 중 누구의 소득이 높거나 적다고 하여도 이는 부부 공동의 몫이므로, 세법도 이를 좇아가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사법에서도 부부를 중심으로 수당 등이 책정되고 있어서 과세체계가 이를 따라가는 것이 세무행정비용 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한다.[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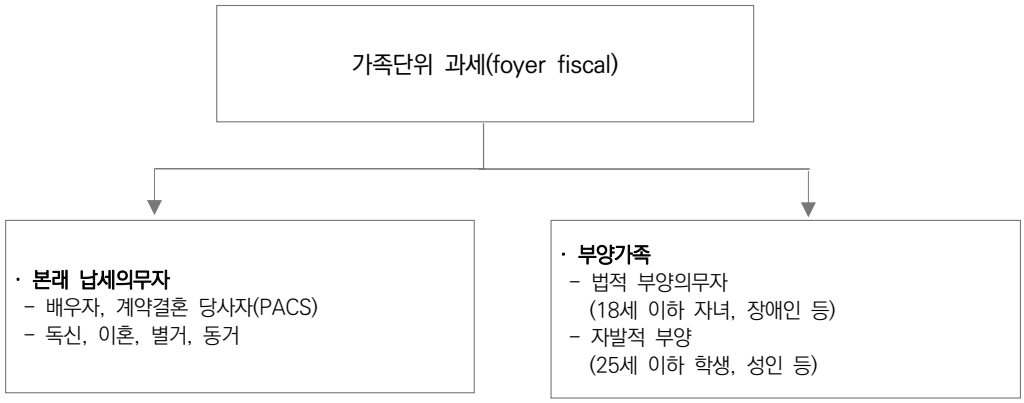
살펴보건대, 선진국에서 가족단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정도라고 본다. 독일의 경우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를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제도가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는 일부 소득에 대해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한 경험이 있다.

결국, 개인단위, 부부단위, 가족단위는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개인단위보다 가족단위의 세부담이 현격히 줄어든다면 공제 혜택의 한도 등을 두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가족단위 과세제도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721) CGI, 제196조 및 제196 A bis조에 규정된 부양자는 18세 이하의 아이 또는 장애인, 입양자 등을 의미한다.
722) 왜냐하면, 부부 A와 B 사이의 소득격차가 크면 클수록(A가 높다고 가정) 이를 평균한 1인당 평균값은 낮아져서, 결국 A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A가 독신일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A와 B의 소득격차가 없다고 하면, A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A가 독신일 경우와 유사하게 된다.
723) Aurélien BAUDU, *Droit Fiscal 2018~2019*, Gualino, 2018, pp.95~104.

[그림 Ⅲ-1] 가족단위 과세제도 구성도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마.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세부담 비교

우리나라 개인별 소득세 과세제도와 프랑스의 가족단위 과세제도의 세부담 차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과 프랑스의 세부담 비교를 위해, 편의상 납세의무자 A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3명과 거주하고 있고 그의 순소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가 한국에서 낼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① 순소득: 1억원
② 인적공제: (150만원 × 5인)= 750만원
③ 과세표준: 9,250만원
④ 적용세율: 35%
⑤ 납부할 세액: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747만원

반면, 위 납세의무자 A에 대해 현행 프랑스 가족단위 과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그가 프랑스에서 낼 세액은 아래와 같다.

① 순소득: 1억원
② part 계산: 4 part
(본인 1 + 배우자 1 + 첫째 자녀 0.5 + 둘째 자녀 0.5 + 셋째 자녀 1)
③ 과세표준: 2,500만원 (1억원 /4part)
④ 적용세율: 15%
⑤ 1part당 납부할 세액: 267만원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⑥ 총납부할 세액: (267만원 × 4 part) = 1,068 만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 A가 납부할 소득세액을 한국의 개인단위로 하여 세금부담액을 계산하면 1,747만원이지만, 프랑스의 가족단위로 하면 1,068만원이 된다. 즉, 679만원이 줄어든다.

물론,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더 많은 비교를 해야겠지만, 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가족이 번 소득을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가족단위 과세제도는 나름 논리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과세단위라고 생각한다. 소득과 소비의 주체를 세법이 따라가서 세금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Ⅳ 과세대상 소득 종류

프랑스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특징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 8가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데 있다.[724] 우리나라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체계(분류과세)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Ⅳ-1〉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
1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traitements, salaires, indemnités, emoluments, pensions et rentes viagères)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2	양도소득 (plus-values de cession à titre onéreux de biens ou de droits de toute nature)	양도소득
3	부동산 임대소득 (revenus fonciers)	사업소득
4	자본소득 (revenus de capitaux mobiliers)	이자소득, 배당소득
5	산업 및 상업소득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사업소득
6	이사소득[1] (les gérants majoritaires des 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근로소득, 배당소득
7	농업소득 (bénéfices de l'exploitation agricole)	사업소득
8	비상업소득 (bénéfices des professions non commerciales)	기타소득

주: 1) 여기에는 법인세 납부를 선택한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포함됨.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 근로소득

조세일반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catégorie)[725]에는 봉급, 급여, 연금소득,

724) Frédéric DOUET, *Précis de Droit Fiscal de la Famille*, LexisNexis, 2018, pp.21~52.
725) 프랑스 근로소득 규정은, 우리나라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근로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소득과 제3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종신주택연금(rentes viagères)을 포함하

퇴직소득 및 종신주택연금(rentes viagères) 등이 있다.[726] 이 소득의 신고자 수는 프랑스 전체 소득세 신고자의 4분의 3 정도가 된다.

프랑스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727] 및 종신주택연금과 양육수당 등 일정기간 동안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근로소득이라는 유형에 포함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각기 다른 별도의 소득금액 산출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근로소득금액 산출과정에서 프랑스는 근로수입금액의 10% 또는 실제 발생비용으로 하는 방식 중 납세의무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제5장 제1절) 근로소득자의 실질적인 절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오직 정부가 세법에 규정한 '근로소득공제액'에 한정한다.).

가. 급여 및 봉급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 등 종속적인 관계(l'existence d'un lien de subordination)[728] 또는 종속관계(étroite dépendance)가 존재하고 있거나 법률의 규정(disposition express de la loi)에 따라 근로소득자로 구별되는 경우 (예를 들면, 가사노동자, 보험대리인, 언론인 등), 이들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729] 여기에는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급여도 포함한다.[730]

여기에는 공무원의 봉급(traitements), 일반 노동자의 급여(salaires), 수당(indemnités), 사례금(émoluments)을 포함한다.

급여의 범위는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물론 노동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유사급여(예 : 휴가수당, 실업수당, 사택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 식대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상법 제 L 225-177조 내지 제 L 255-18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731]

고 있어서, 이를 근로소득 ·연금소득 · 퇴직소득이라고 표현하여야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독자의 이해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726) CGI, 제79조 전반절: Les traitements, indemnités, émoluments, salaires, pensions et rentes viagères concourent à la formation du revenu global servant de base à l'impôt sur le revenu.

727)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미미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 대신, 근로소득 과세체계로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728) 민법, 제1779조 및 제1780조.

729) CGI, 제81조.

730) CGI, 제79조 후반절: Il en est de même des prestations de retraite servies sous forme de capital.

731) CGI, 제80 bis조 제1항: L'avantage correspondant à la différence entre la valeur réelle de l'action à la date de levée d'une option accord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225-177 à L.

나.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질병·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년 일정액을 사전에 납입하고 이를 토대로 연금계약자 등이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매월 또는 매년 등의 단위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의미한다.[732]

다. 종신주택연금 및 자녀양육수당

종신주택연금(rentes viagères)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납세의무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정의 수입이 있으면, 이를 근로소득 과세체계에 포함해서 과세하고 있다.[733]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종신주택연금(rentes viagères à titre onéreux)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연금(rentes viagères à titre gratuit)이 있다.[734]

종신주택연금은, mortage loan처럼, 납세의무자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매월 생존 기간 동안 받는 경우라든지, 친족 또는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 사망 시 해당 주택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생존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을 경우, 이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적용한다.[735]

한편, 「민법」[736]에 따라 이혼시 지급받는 자녀양육수당(pension alimentaire)도 법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받는 자의 소득[737]으로 간주한다.[738]

2. 양도소득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 중 소득세 적용을 받는 법인이 소유한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739]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740]

225-186 du code de commerce, et le prix de souscription ou d'achat de cette action est imposé dans la catégorie des traitements et salaires.

732) 이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소득세 납부세액 결정 시 특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733) 이 부분의 작성은 프랑스 PWC에 근무하는 Paul Shon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았다.

734) 「민법」 제1968조.

735) 저작자(auteur)가 저작권료를 기업,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저작자가 비상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이 금액은 급여소득으로 본다(CGI, 제93-1조).

736) 「민법」 제205조, 제254조, 제276조, 제282조, 제285조, 제293조, 제294조.

737) 반대로 지급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법령에 따라 소득세 산출시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738) CGI, 제80 quater조 : Sont soumis au même régime fiscal que les pensions alimentaires les versements de sommes d'argent mentionnés à l'article 275 du code civil (이하 생략).

739)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는 그 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산업 및 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즉,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부동산(immobilière) 및 부동산 권리 양도소득, 동산(biens meubles) 및 동산의 권리 양도소득, 미술품(objets d'art) 양도소득 및 주식(droits sociaux)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741]

> 양도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간되는 다른 보고서에 담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개요만 설명하였다.

가.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양도소득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 또는 도관회사(transparente)[742] 및 인적회사(translucide)[743]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744] 도관회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인 개인(associes) 단계에서 양도소득 및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인적회사의 경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단계에서 산출하나, 과세는 이를 주주에게 분배한 것으로 하여 개인단계에서 소득세로 과세한다.[745]

과세물건에는 건물, 토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부동산 법인(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746] 등이 있다.

---

740) CGI, 제150 U조: (……) les plus-values réalisées par les personnes physiques ou les sociétés ou groupements qui relèvent des articles 8 à 8 ter, lors de la cession à titre onéreux de biens immobiliers bâtis ou non bâtis ou de droits relatifs à ces biens, sont passibles de l'impôt sur le revenu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150 V à 150 VH.

741) 우리나라와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비교하면 대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개인의 파생상품소득(revenus dérivés)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이를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742) CGI, 제1655-ter조.

743) CGI, 제8조. 한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물적회사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로 과세한다.

744)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할 때는 산업 및 상업소득(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우리나라의 사업소득에 해당)으로 과세한다.

745) 만일 해당 법인의 주된 활동이 산업적, 상업적이면 해당 주주에게 배분될 양도소득의 종류는 plus-values professionnelles로 과세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주의 성격에 따라 어느 소득으로 볼 것인지(예를 들면,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여부가 달라진다.

746) CGI, 제150 UB조 제1항. 한편, 부동산 법인 50% 판정 기준은 주식양도 전 최근 3년 동안 해당 법인의 산업, 상업, 농업 또는 비상업소득에 사용되지 않는(non affectés) 부동산의 가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동산 양도소득

동산 양도소득 중 세법에 열거된 과세물건은 귀금속, 보석[747], 예술품, 수집품(collection), 골동품, 경주용 말, 요트, 오크통에 담긴 포도주 등이 있다.[748]

다. 주식양도소득

주식 등을 양도한 자[749]로서, 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주식과 채권 및 권리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750]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별하여 각기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revenus fonciers)이란 건축물 등에 대한 임대(예를 들면, 주택, 아파트 사무소 등)[751]과 토지 등에 대한 임대소득[75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임대, 광고권, 어업권, 경작권의 임대[753] 등을 통해 형성된 소득을 의미한다.[754]

한편,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에 따라 과세대상 세목이 다르다. 즉, 개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개인이고, 법인이면 해당 법인이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755]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도관회사(transparente) 즉, 건설 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인이거나, 해당 부동산을 운용하는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주주를 위해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그를 해당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756]

747) CGI, 제150 VI조 내지 VM조.
748) CGI, 제150 UA조.
749) CGI, 제150-0-A조. 이 조문의 적용대상은 주식의 양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다루고 있음)를 제외한 사회적 권리(droits sociaux),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영업권, 회원권 등을 포함한다. 이편에서는 이를 주식양도소득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750)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상장법인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751) CGI, 제14-1-ter조.
752) CGI, 제14-2조.
753) CGI, 제29조.
754) 동산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임대소득이라고 쓴다.
755) CE, n° 365765, 2015.10.1.
756) CGI, 제1655 ter조.

법인 중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법인세 과세 대신 소득세 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757]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임대, 광고권, 어업권, 경작권의 임대 등을 과세물건으로 한다.

한편, 사업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계상된 자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산업 및 상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758] 이는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반면, 동산(meuble)[759]이나 장비(equipement) 등을 임대한 경우, 이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사업소득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한다.[760]

그러나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일부를 임대(재임대 포함)할 경우, 해당 소득은 비과세한다.[761]

4. 자본소득

자본소득(revenus de capitaux mobiliers, RCM)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으로, 해당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revenu fixe)되는 이자소득과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는(revenu variable)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소득 및 파생상품 소득(revenu dérivé)으로 구성된다.[762]

이자소득은 금전을 대여하고 일정기간의 경과로 약정된 이율에 따라 발생되는 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여기에는 예금은 물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된다.

---

757) CGI, 제8조.

758) CGI, 제14조.

759) 동산(meuble)이란 이동 가능한 모든 종류의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예정동산(豫定動産, Meuble par Anticipation) 즉, 수목이나 농작물 등이 토지에서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지만 곧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동산으로 간주하는 것과 법률에 의해 동산의 성격이 부여된 저작권, 주식 등을 의미하는 법정동산(法定動産, meuble par détermination de la Loi)을 포함한다(민법 제529조).

760) CGI, 제35조 제1항 제5호: Personnes qui donnent en location un établissement commercial ou industriel muni du mobilier ou du matériel nécessaire à son exploitation, que la location comprenne, ou non, tout ou partie des éléments incorporels du fonds de commerce ou d'industrie; 제5 bis호 : Personnes qui donnent en location directe ou indirecte des locaux d'habitation meublés.

761) CGI, 제15조 제2항.

762) Martin Collet, 「op.cit」, p.257.

배당소득이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자본소득이 있는 개인 및 법인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법인은 자본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거주자는 속인주의 과세원칙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Avoir Fiscal 제도(우리나라의 gross-up 제도와 유사)는 경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1948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제투자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고(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임) 또한 이를 악용하여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더구나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회원국 사이의 배당소득 과세를 둘러싼 중립성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2013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5. 산업 및 상업소득

산업(industriels) 및 상업(commerciaux) 소득은 기업의 제조 등 산업활동, 판매 등 상업활동 및 수공업(artisanale)을 포함하는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763] 예를 들면, 소매업, 가내수공업, 산업활동업, 서비스업, 운송업, 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중개업, 은행업, 음식·숙박업 등이 있다.

이 소득의 특징은 계속적·반복적[764]인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765]으로 재화의 판매 또는 중개를 통하여 얻은 소득,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동산 또는 재화의 임대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을 포함한다.[766]

「조세일반법」에는 산업 및 상업소득의 유형을 열거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경우와는 달

763) CGI, 제34조: Sont considérés comme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pour l'application de l'impôt sur le revenu, les bénéfices réalisés par des personnes physiques et provenant de l'exercice d'une profession commerciale, industrielle ou artisanale. 관련판례 : CE, n° 46770, 1984.3.14.; CE, n° 160777, 1997.5.12.

764) 「조세일반법」 제35조 각 항에서는 우리나라의 계속적·반복적 의미의 단어를 'habituellement'로 사용하고 있다. 원어를 해석하면 '습관적으로'라는 의미인데, 이 보고서에는 이를 우리나라와 같은 의미를 지닌 '계속적·반복적'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한다.

765)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규정은 총괄주의적 성격(caractère attractif)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비상업소득의 경우 일시적·우발적 성격이 짙으나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그때는 비상업소득이 아닌 산업 및 상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CE, n° 418035, 1980.5.7.).

766) 관련 규정: CGI, 제34조 내지 제35조.

리 유형별 포괄주의적인 입법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767]

산업 및 상업소득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그 성격 및 소득금액 산출과정이 유사하다. 과세대상 소득은 산업 및 상업소득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총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된다.

산업 및 상업소득의 적용대상자는 ① 프랑스 내에 주된 거소가 있는 자 또는 ② 프랑스 밖에 주된 거소가 있지만 사업 활동의 중심지가 프랑스 내에 있는 자 중 산업 및 상업활동을 하는 개인과 ③ 법인세를 적용받지 않은 법인이 포함된다.

6. 이사의 소득

이 규정의 존재 이유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이사(관리자, 파트너 포함)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법인단계에서는 손금으로 하고 개인단계에서는 소득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격이 없는 법인(법인이지만 소득세를 적용받는 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고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어서, 이 차이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체계의 유리한 점을 골라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의 소득이지만 경영자인 이사의 소득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이사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별도의 과세체계를 통해 중과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768]

법인의 이사 중 법령이 정하는 자는 그들이 받은 급여소득에 대해 일반 근로자의 급여소득과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그 대상자는 ① 유한회사(SARL)의 다수지분을 가진 업무집행자(gérant majoritaire)[769],

767) CGI, 제35조. 이 규정에 따르면 산업 및 상업소득의 유형에 포함되는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중 산업 및 상업소득을 11가지라고 '열거 (ci-après)'하고 있지만, 해당 조문을 보면 앞서 열거한 11가지 유형 이외에 다른 유형의 소득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주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768) 우리나라 인적회사의 주주가 얻은 소득을, 실무적 차원에서, 배당소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부담이 각기 다르다. 근로소득으로 할 때 가장 세금부담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이사의 소득은 바로 이와 같은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아예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OECD 모델조세조약 제16조에서 이사의 소득(directors' fees)을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소득(dependent personal services)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769) 해당 법인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자이다. 이때 50%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은 본인 및 그와 가족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자가 보유한 주식의 수를 합하여 주식 보유수를 계산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더하여 판단한다.

② 주식합자회사(société en commamdites par action)의 업무집행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유한회사(SARL)의 다수지분을 가진 업무집행자 외의 자가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7.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농지, 축산, 임업 등의 경영을 통해 얻은 소득을 지칭한다. 농업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토지는 본인 소유이거나 임차한 경우이거나 상관없다.[770]

과세물건으로는 농업경영과 관련한 생산물[771] 및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토지 등의 임대소득[772]을 포함한다. 프랑스 농업소득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기준을 이용한 비과세 농업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원칙적으로 모두 농업 등에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773]

8. 비상업소득

비상업소득(bénéfices non commerciaux)은 개인 또는 파트너십의 구성원이 행한 상업적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자유 직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774]

우리나라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및 자유 직업소득과 그 성격과 성질이 유사하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변호사, 중개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입금액은 비상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775]

문제는 비상업소득이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에 있다.[776] 즉, 다른 소득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은 이를 모두 모아(catégorie balai) 비상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777] 판례는 여기에 속하는 소득의 특징을 일시적·우발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고 있다.[778]

770) CGI, 제63조.
771) CGI, 제63조.
772) CGI, 제65조.
773) 이는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있는 농업국가이면서 동시에 각 농업인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774) CGI, 제92조.
775) CGI, 제156-I조 제2항.
776) CGI, 제92조 제1항.
777) 다시 말해, '기타소득'인가 아니면 '기타의 소득'인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 조세일반법상 비상업소득은 후자를 지칭하고 있다고 본다.
778) 예를 들면, 점성가(astrologue)의 소득 (CE, n° 92.182, 1976.10.22.), 매춘(prostituée)소득(CE, n° 43.471,

비상업소득은 권리의무확정주의 방식이 아닌 현금주의 방식(comptabilité de caisse)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9. 비과세소득

현행 조세일반법 체계에서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일반법」 중 제1편(titre premier)의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세금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제1장(chapitre premier)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779] 중 제1절(section I)은 일반적인 총칙 규정을 두고 있고, 제2절(section 2)에서는 과세대상 소득(revenus imposables)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절에서 비과세대상 소득(revenus non-imposables)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780]

물론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체계상 위 8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이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일반법」에서는 소득세 과세대상 8가지 소득을 규정하면서도, 해당 소득의 범주에 드는 소득 중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두고는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근로소득

① 실습생이 받는 급여(연간 17,763유로 한도)
② 26세 미만의 학생 근로자 급여(연간 4,441유로 한도)
③ 참전군인이 받는 참전수당
④ 판결에 따라 받는 배상금(indemnité)
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받는 보상금의 50%
⑥ 레지옹 도뇌르 훈장에 부수하여 받은 상금, 상이군경 수당
⑦ 구직수당[781]

1985.2.27.), 뚜쟁이(proxénète)소득 (CE, n° 13.222, 1980.11.5.) 등이 있다.

779) 제1편 중 제1장은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를, 제2장은 법인세(Impôt sur les Bénéfices des Sociétés et Autres Personnes Morales)를, 제3장은 기타 직접세목(Taxes Diverses)을, 제4장은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세목 중 공통적인 사항(Dispositions Communes aux Impôts et Taxes, revenus et bénéfices visés aux chapitres I à III)을 담고 있다. 제2편은 소비세(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et Taxes Assimilées)를 규정하고 있다.

780)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781) CGI, 제81조 제1항. 그러나 이 수당은 납세의무자가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발생비용 공제

나. 양도소득

① 주된 거주용 주택(habitation principale)[782] 즉, 양도자가 주로 거주한 '주된 거주용 주택' 및 해당 주택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783]
②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의 양도가액이 15,000유로 이하인 경우[784]
③ 부동산 취득 후 22년 이상이 지나간 부동산
④ 비거주자(국적은 EU 회원국)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중 양도차익이 15만유로 이하인 경우[785]
⑤ 가구, 수집보관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및 기타 5,000유로 이하의 동산의 양도
⑥ 개인 소장품을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기증하는 경우[786]

다. 자본소득

① 근로자 및 비근로자의 저축증진을 위한 예금의 이자[787]
② 장기저축 관련 주식 및 펀드 소득[788]
③ Livrets A형의 이자소득
④ Livret d'epargne entreprise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⑤ Plans d'epargne Logement으로부터 받은 12년 동안의 이자소득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수입금액에 포함한다.
782)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유사하나, 프랑스는 고가주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주된 거주용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783) CGI, 제150 U조 제2항.
784)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금액 기준이 적용하지 않는다.
785) CGI, 제150 U조 제3항.
786) CGI, 제150 V조.
787) CGI, 제150-0A조 제2항 및 제4항.
788) CGI, 150-0A조 제5항.

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체계

앞의 제4장에서와 같이, 납세의무자 개인의 각 소득종류별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이후에는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아래에서는 각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였다.

1.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① 근로수입금액에서 ②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근로수입금액은 급여수입금액, 연금수입금액, 종신주택연금수입금액 등을 더하여 산출하고, 필요경비는 조세일반법에서 정하는 ③ '개산방식'과 ④ 납세의무자 스스로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실제 발생경비 산정방식' 중 납세의무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산출한다.

근로소득금액 = 【(근로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제 (개산방식, 실제발생경비 산정방식 중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방식 선택)】

가. 근로수입금액

근로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급여의 범위는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물론 노동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유사급여(예: 휴가수당, 실업수당, 사택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 식대 등)를 포함한다.[789] 근로수입금액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

연금수입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함한다.

한편, 종신주택연금(rentes viagères)은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이 있으므로, 「조세일반법」은 이를 근로소득 과세체계에 포함해 과세하고 있다.

789) CGI, 제82조 : Pour la détermination des bases d'imposition, il est tenu compte du montant net des traitements, indemnités et émoluments, salaires, pensions et rentes viagères, ainsi que de tous les avantages en argent ou en nature accordés aux intéressés en sus des traitements, indemnités, émoluments, salaires, pensions et rentes viagères proprement dits.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790]에 따라 결정되며, 비과세대상 근로수입금액은 제외한다.

나. 필요경비계산

근로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①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개산방식과 ② 세법에 따라 실제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한다.

한편, 연금소득과 종신주택연금의 경우에는 개산방식을 통한 필요경비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개산방식

개산방식은 세법에서 필요경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수입금액 총액에 10%를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한다.[791] 이 경우 공제 최저한은 2017년도의 경우 430유로이고 상한액은 12,305유로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도는 근로소득공제라고 본다. 프랑스는 일괄적으로 수입금액의 10%만을 공제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수입금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을 달리 산정하고 있다.

2) 실제 발생경비 산정 방식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근로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비의 정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다.

---

790) C'est la disposition du revenu a donné entre le 1er janvier et le 31 décembre qui constitute le critère de rattachment.(Jean-Jacques Bienvenu & Thirrry Lambert, 「op.cit」, p.237.)

791) CGI, 제83조 제3항 : La déduction à effectuer du chef des frais professionnels est calculée forfaitairement en fonction du revenu brut, après défalcation des cotisations, contributions et intérêts mentionnés aux 1° à 2° ter ; elle est fixée à 10 % du montant de ce revenu. Elle est limitée à 12 305 € pour l'imposition des rémunérations perçues en 2017 ; chaque année, le plafond retenu pour l'imposition des revenus de l'année précédente est relevé dans la même proportion que la limite supérieure de la première tranche du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 Le montant de la déduction forfaitaire pour frais professionnels ne peut être inférieur à 430 €, sans pouvoir excéder le montant brut des traitements et salaires.

가) 교통비 및 자동차 유지비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 및 자동차 유지비는 비용으로 공제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집과 직장의 거리가 40km 이내에 한정한다.

그러나 40km 이내에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통비와 차량유지비를 근로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한편, 차량비는 운행 거리와 차량의 배기량(CV)[792]에 따라 한도가 있다. 2017년도 귀속 소득의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한도금액 계산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1〉 자동차 경비 한도액 계산표

자동차			
자동차 출력	5,000km까지	5,001~20,000km	20,001km부터
3CV	주행거리 × 0.410	(주행거리 × 0.245) + 824	주행거리 × 0.286
4CV	주행거리 × 0.493	(주행거리 × 0.277) + 1,082	주행거리 × 0.332
5CV	주행거리 × 0.543	(주행거리 × 0.305) + 1,188	주행거리 × 0.364
6CV	주행거리 × 0.568	(주행거리 × 0.320) + 1,244	주행거리 × 0.382
7CV	주행거리 × 0.595	(주행거리 × 0.337) + 1,288	주행거리 × 0.401
Vélomoteurs, Cyclomoteurs, Cylindre 〈 50㎤			
2,000km 까지		2,001~5,000km	5,001km 부터
주행거리 × 0.269		(주행거리 × 0.063) + 989	주행거리 × 0.146
Scooters, Motos, Cylindrée 〉 50㎤			
출력	5,000km까지	5,001~20,000km	20,001km부터
1~2CV	주행거리 × 0.338	(주행거리 × 0.084) + 760	주행거리 × 0.211
3~5CV	주행거리 × 0.400	(주행거리 × 0.070) + 989	주행거리 × 0.235
6CV 이상	주행거리 × 0.518	(주행거리 × 0.067) + 1,351	주행거리 × 0.292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792) CV는 cheval-vapeur의 약자로 유럽의 마력 단위이다. 영국은 HP(horse power)로 표기하는데, 1HP는 745.7W에 해당한다. 프랑스 마력과 영국 마력과 차이는 1.3배 정도 전자가 높다.

〈계산사례〉

근로자인 A는 집에서 직장까지 20km 거리를 본인 소유 자동차로 출퇴근한다. A의 자동차는 7CV이다. A는 220일을 근무했고, 운행 거리는 8,800km이었다. A는 월평균 1,300유로의 급여를 받았다(연간 15,600유로). 이 경우, 공제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 실제 소요 비용 방식:
(운행거리 8,800km × 배율 0.337) + 1,288 = 4,253.6유로
② 개산방식: 연간급여 15,600유로 × 10% = 1,560유로
③ 차액(①—②) : 2,693.6유로

∴ 납세자가 ①의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②의 방식을 선택한 것보다 ③의 금액만큼 비용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나) 식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식당이 없거나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식대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다.

다) 사무실 경비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 자택에 드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업무수행을 위한 동산(mobilier) 중 500유로 이상인 자산은 10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하고, 컴퓨터 등 전산장비는 3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동산 중 500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라) 기타 경비

이외에도 제복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에는 제복구입비, 업무와 관련한 택시비, 호텔비 및 식사 초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마) 연금 및 주택종신연금(Rentes Viagère) 소득의 필요경비

연금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 규정이 없다. 그러나 종신주택연금(rentes viagère)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2〉 종신주택연금 (rentes viagères)의 필요경비 반영비율

소득자의 연령	필요경비 계산 비율
49세 이하	수입금액의 70%
50세 이상 ~ 59세 이하	수입금액의 50%
60세 이상 ~ 69세 이하	수입금액의 40%
70세 이상	수입금액의 30%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근로소득금액 산출방법의 선택

근로소득금액은 총 근로수입금액에서 비과세대상 금액을 차감한 뒤, 대응하는 필요경비 및 공제대상액을 빼내어 산출한다.

이때 필요경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개산공제나 실제발생경비 공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계산사례〉

(단위: 유로)

구분	개산공제방식	실제발생비용 공제방식
급여	18,000	18,000
구직수당[1)]	비과세	6,000
총근로수입금액	18,000	24,000
개산공제 (수입금액의 10%)	1,800	—
순 근로소득금액	16,200	
실제발생비용	-	3,200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	16,200	20,800

주: 1) 구직수당은 계산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수입금액이지만, 실제 발생비용 공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함.

4) 공제(Déduction)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은 지출 내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는 근로소득금액 산출 시 공제한다.

① 사회보장부담금(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793]
② 보험분담금[794]
③ 일반사회보장분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 도입

2019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시행하고 있었던 분기별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매달 정부가 정한 기준[795]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공제한 뒤, 취득부대비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법률이 정한 비용 공제하여 산출한다.[796]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수입금액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양도가액(prix de cession)에 양도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797]을 더하고 중개수수료나 공증비용 등 양도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798]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격과 일치한다.

793) CGI, 제83조 제1항. 여기에는 노령보험료, 퇴직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794) CGI, 제83조 제1항.
795) 우리나라의 간이세액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아직 계산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796) CGI, 제28조.
797) CGI AnnexeⅡ, 제74 D조.
798) 양도가액 산출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만일,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시가로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나. 필요경비

취득가액(prix de revient)[799]은 등기부상 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더하고 자본적지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만일 취득부대비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7.5%를 취득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편, 과세대상 부동산이 장기보유한 것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그 공제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800]

〈표 V-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년까지	0%
6년 이후 21년까지	매년 6%
22년	4%
23년부터 30년까지	(의미 없음)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라. 동산의 경우

동산의 양도차익은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유사하나, 양도가액 계산 시 저장이나 상태 보존을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구입 후 3년부터 5%의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해당 동산을 취득한 후 22년이 지나 23년 이후에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은 없다(공제금액이 100%에 달하기 때문이다).

799) 취득가액 산출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유사하다.
800) CGI, 제150 VC조.

반면, 귀중품 등은 동산양도차익 계산방식과는 달리, 양도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단, 양도가액이 1인당 개당 5,000€ 이하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금, 은, 백금, 골동품 등은 판매가액으로 하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든지, 양도일로부터 22년 이전에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계산방법(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다.

마. 주식양도의 경우

주식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상장법인의 경우와 비상장법인의 경우가 다르다. 상장법인의 양도가액은 주식거래소의 양도가액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더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취득가액은 주식중개소의 취득가액에다가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더하여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지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프랑스는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에 주식양도에 따른 수당 등을 더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감하여 산출한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중개수수료 등을 더하여 산출한다.

한편, 2017년 12월 31일 이전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별 공제제도가 있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공제제도가 폐지되었다.

주식양도소득을 얻은 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12.8% 세율을 적용한 완납적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일한 양도소득(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호별 공제와 유사함) 내에서 통산할 수 있고, 그래도 남을 때에는 이후 10년 동안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801]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유로를 한도로 한다.

801) CGI, 제150-0-D조.

3.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서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빼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다.[802]

>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영세임대사업자 방식 또는 실제발생 경비 공제방식)
> - (이월결손금 공제)】

가. 수입금액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현금주의 방식에 따라 수입금액을 확정한다.[803] 즉, 임대료 수입금액은 해당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한다. 임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임대료수입금액으로 추가한다. 또한, 영업권이나 권리금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나. 필요경비

임대소득 결정은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15,000유로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영세임대사업자 과세방식(régime du micro-foncier)'과 '실제 발생경비 공제방식(régime réel)'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물론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15,000유로 이하인 자도 실제 발생경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다.

1) 영세임대사업자 과세방식(Régime du Micro-Foncier)

이는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금액을 해당 임대수입금액의 30%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다른 경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세임대사업자 과세방식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15,000유로임을 감안하면, 추계비용의 최대치는 4,500유로가 된다.[804]

802) CGI, 제14조 내지 제34 quarter조.
803) CGI, 제29조: le revenu brut des immeubles ou parties d'immeubles donnés en location, est constitué par le montant des recettes brutes perçues par le propriétaire. (이하 생략)

2) 실제 발생경비 공제방식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effectivement payées)이다. 여기에는 해당 부동산의 유지보수비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개량비가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관리 요원의 인건비, 토지세 및 이에 부대되는 세금,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감가상각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포함된다.[805]

다. 결손금공제

임대소득 관련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결손금으로 하고, 추후 10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아닌, 임대소득 금액에서만 차감할 수 있다.[806]

한편, 결손금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지급이자비용에 기인한 경우, 이자비용에 따른 결손금은 추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하지만, 지급이자를 제외한 비용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10,700유로까지다.

〈계산 사례〉

납세의무자 A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10,000유로이고, 임대주택 수리비용은 2,000유로이며,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지급이자금액은 21,000유로라고 가정할 경우 결손금 처리는 아래와 같다.

(1) 임대소득금액 계산
① 임대수입금액: 10,000
② 수리비용: 2,000
③ 지급이자: 21,000
④ 결손금: 13,000

(2) 결손금 처리
㉠ 이자비용만 비용으로 처리한 후, 남은 결손금은 추후 10년 동안 임대소득 금액에서 이월공제한다. (10,000 — 21,000 = △ 11,000). 즉 11,000유로는 10년 동안 이월공제한다.
㉡ 그 대신 수리비용 2,000유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공제한도액 10,700유로에 미달하므로 전액공제 가능함).

804) CGI, 제32조.
805) CGI, 제31조 제1항.
806) CGI, 제156조 제1항 제3호.

4. 자본소득금액

자본소득금액은 자본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자본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지급 시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자본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공제)】

가. 수입금액

자본소득 수입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 방식에 따라 계상한다.

나. 필요경비

자본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예: 지급이자)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지만, 해당 자본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예: 주식 유지비용, 현금인출 비용)은 경비로 인정한다.[807]

다. 결손금 공제

자본소득에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소득 내에서만 6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라. 원천징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및 파생상품 소득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은 총 30%로, 소득세 12.8% 및 사회보장분담금 17.2%를 합한 것이다.[808]

807) CGI, 제13조.

808) CGI, 제200 A조. 2018년 이전에는 자본소득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경우와 변동된 경우를 구분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달리 적용했었으나, 2018년 세법 개정으로 단일화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편, 납세의무자의 절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예납적 원천징수 방법과 공제방식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공제방식이란 자본소득금액에다가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17.2% + CSG 분담금 비율 중 6.8%)을 곱하고 자본소득공제(자본소득금액의 40%)을 공제하여 과세대상금액을 확정한 뒤, 여기에 다시금 CSG 분담금 비율 중 6.8% 금액을 빼내고 난 금액에 41%의 세율을 곱하여 사회보장분담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합한 금액이, 앞서 설명한 30%(소득세 12.8% + 사회보장분담금 17.2%)보다 적다면, 납세의무자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CGI, 제28조).

5. 산업 및 상업소득금액

산업 및 상업소득의 과세대상 소득은 우선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당기순이익(résultat comptable)에 기초[809]한 뒤, 여기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이를 반영(세무조정)하여 산출한다.[810]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닌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811]

산업 및 상업소득금액 = 【(기업회계상 소득금액)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예를 들면, 준비금과 충당금의 설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발간될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서는 개요만을 간추렸다.

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과세대상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이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과 필요경비 규정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때 세법상 수입과 비용의 인식기준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 방식'[812]으로 하지만, 소규모사업자 소득에 대해서는 현금의 수입일과 지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세무신고에서는 우리나라 경우와는 달리, 공인회계사(프랑스는 세무사 제도가 없고,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이를 수행함)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809) CGI Annexe Ⅱ, 제38 quarter조.
810) 관련 판례 : CE, n° 271895, 2007.12.28.; CE, n° 316667, 2010.5.5.; CE, n° 164657, 1998.7.8.; CE, n° 375358, 2014.10.24.
811) 이러한 점은 법인세도 같다.
812)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수입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받을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조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작업은 없고, 모든 신고의무나 그에 따른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의 몫이 된다는 의미다.

1) 기업회계

기업회계상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당기순이익 = P + Ss −(A + FGX + Am + Prov) − SE

※ P: 매출, Ss: 기말재고, A: 당기 구입, FGX: 일반관리비,
Am: 감가상각비, Prov: 준비금 및 충당금, SE: 기초재고

2) 세무회계

세법상 산업 및 상업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필요경비는 ① 기업의 경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개인적인 경비는 제외) ②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고 ③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어야 하며(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하여 비용화함) ④ 장부상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결산조정).[813]

하지만 인건비의 경우, ⑤ 기업주,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 성격의 비용 ⑥ 기업주의 동거가족(salaire du conjoint) 등에게 지급한 급여성격의 비용은 그들이 사실상 근무를 하였을 때는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지만, 2018년은 연간 17,500유로를 한도로 한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⑦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 500유로 이상이어야 하며(위 금액 이하인 경우는 즉시 상각함) ⑧ 재화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여야 하고 ⑨ 기업의 소유재산이어야 하며 ⑩ 결산조정만 가능하다.

감가상각비 계상을 위한 기초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방법은 정률법(amortissement linéaire)과 정액법(amortissement dégressif)이 있다. 한편, 조세정책 목적상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특별 가속상각이 허용되나, 호화 및 사치 재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814]

지급이자의 경우, 해당 차입금이 기업의 경영과 관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산입

813) 관련 판례: CE, n° 139789, 1996.2.16.; CE, n° 312058, 2009.5.7.
814) CGI, 제39조 제4호.

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과 유사하게, 차입금이 자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된다.

소득세를 적용받는 파트너십 회사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2018년의 경우 2.03%)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된다.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은 추후 발간될 보고서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나. 결손금 공제

만일 산업 및 상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사업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될 수 있다. 결손금이 상계되지 못하고 남으면 그다음 해부터 6년 이내에 공제될 수 있다.

다. 세무조정 책임자

세무조정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해당 납세의무자다. 프랑스에서는 세무사라는 직업은 없고 공인회계사가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의무조항이라든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책임 아래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소규모 사업자 소득금액 결정 특례규정

산업 및 상업소득 중 판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815]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

1) 소규모기업세제

수입금액 기준으로 17만유로 미만(서비스업은 7만유로, 부가가치세 제외, 2017년 기준)인 사업자에게 '소규모기업 세제(micro entreprise)'가 적용된다. 이른바 추계과세를 하는 것으로, 판매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29%를, 서비스업은 50%를 각각 소득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815) 이때 수입금액은 해당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2년도 평균으로 한다.

2) 간편신고세제

소규모기업세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 중 수입금액 기준으로 78만 9천유로(서비스업은 23만 8천유로, 부가가치세 제외)인 자는 수입과 지출의 인식기준을 현금기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다.[816]

3) 실제 발생경비 공제방식

소규모세제나 간편신고세제 대상자 이외의 자는 상법(code de commerce)의 규정에 따라 기장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이익에 세무조정을 한 후의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817]

6. 이사의 소득금액

이사의 소득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래 표의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따른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금액 산출방법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법인 이사의 소득은 그가 속한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법인 중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즉, 소득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의 각 소득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반대로, 주식회사(SA)의 대표이사(PDG)나 유한회사의 다수자본 보유 업무집행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해당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V-4〉 법인이사 급여의 소득 종류

구분	이사의 유형	과세소득 유형
개인기업	경영자(exploitant)	기업의 활동 유형에 따라 BIC, BNC, BA
합명회사(SNS) 중 법인세 미적용 법인	사원(associé) 및 업무집행자(gérants)	기업의 활동 유형에 따라BIC, BNC. BA

816) CGI, 제53 A조.
817) CGI, 제53 A조.

〈표 V-4〉의 계속

구분	이사의 유형	과세소득 유형
합명회사(SNS) 중 법인세 적용 법인	사원(associé) 및 업무집행자(gérants)	CGI, art 62 적용
합자회사(SCS) 법인 중 법인세 미적용 법인	업무집행자 (gérants commandités)	기업의 활동 유형에 따라 BIC, BNC, BA
합자회사(SCS) 법인 중 법인세 적용 법인	업무집행자 (gérants commandités)	CGI, art 62 적용
EURL[1] 법인 중 법인세 미적용 법인	업무집행자(gérants)	기업의 활동 유형에 따라 BIC, BNC, BA
EURL 법인 중 법인세 적용 법인	경영자(exploitant) 및 업무집행자(gérants)	CGI, art 62 적용
유한회사(SARL)	다수자본을 가진 업무집행자 (gérant majoritaire)	CGI, art 62 적용
	기타 업무집행자	근로소득
주식회사(SA) 및 SAS	대표이사, 일반이사	근로소득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자본소득 RCM
	감사위원회 위원	BNC
SCA	다수자본을 가진 업무집행자 (gérant majoritaire)	CGI, art 62 적용
	기타 업무집행자	근로소득
	감사위원회 위원	BNC

주: 1) Entreprise Unipersonn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S : Société par Action Simplifiée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7. 농업소득금액

농업소득금액은 산업 및 상업소득금액 산출방법과 유사하다.[818]

농업소득금액 = 【(기업회계상 소득금액)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공제)】

818) CGI, 제63조.

가.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수입금액은 산업 및 상업소득과 동일하다.

나. 필요경비

산업 및 상업소득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규모농업기업 세제, 간편 신고 세제 및 실제 발생 경비 공제방식 제도가 있다.

1) 소규모농업기업 제도

이 제도는 수입금액[819]이 82,200유로 이하인 납세자에게 수입금액의 13%를 소득금액으로 추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현금수입장부 및 그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820]

2) 간편신고 제도

이 제도는 수입금액이 82,200유로 초과 35만유로 이하인 납세자에게, 산업 및 상업소득의 간편납세제도와 유사하게, 수입과 비용의 인식을 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실제발생경비 공제제도

이 제도는 수입금액이 35만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 및 상업소득의 실질신고제도와 유사하다.

8. 비상업소득금액

비상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819) 이때 수입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년도의 평균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다.
820) CGI, 제72조 내지 제74조.

비상업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영세사업자 방식 또는 실제발생경비 공제방식)
- (이월결손금 공제)】

가. 수입금액

비상업소득의 수입과 비용의 인식기준은 현금주의 방식에 따라서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비용도 마찬가지로 지급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선택 때문에 예외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나. 필요경비

연간 수입금액이 7만유로(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납세자는 해당 수입금액의 37%를 비용으로 공제하고 난 63%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추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최저한은 305유로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 대신에 실제발생경비 공제방식제도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자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장부상 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만일 결손금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6년 동안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Ⅵ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랑스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를 유형별로 8개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적용한 과세체계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한 소득금액을 더하면 '개인별 순종합소득금액'이 된다.

그리고 해당 개인이 속한 가족에 대해 가족단위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① 각 소득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뒤 ②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③ 우리나라의 제세공과금 격인 '사회보장분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 CSG)'을 공제하며 ④ 특별공제를 하여 ⑤ '순종합소득금액(revenu net global)'을 산출한다.[821]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그리고 가족단위의 소득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사회보장분담금 및 특별비용의 공제를 하여 가족단위의 과세표준금액을 확정한다.[822]

1. 결손금 공제

원칙적으로 가족단위 구성원의 결손금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같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면 A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이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인 B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일 경우, 이 둘을 상계하여, 가족단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다.[823]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한 결과도 (-)일 경우, 원칙적으로[824], 남은 7가지 소득 중 (+)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825] 이렇게 해도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하고, 향후 6년 동안의 '가족단위 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한다.

821) Jean-Jacques Bienvenu & Thierry Lambert, *Droit fiscal*, puf, 2018, pp.248~317.
822) 참고자료: Jean Lamarque, Oliver Négrin, Ludouic Ayrault, op.cit, pp.1131~1151.
823) CGI, 제156조 제1항.
824)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음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의 이익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CGI, 제156조 제3항). 한편 농업소득의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7,826유로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CGI, 제156조 제1항 제3호).
825) CGI, 제13조 제3항.

〈표 Ⅵ-1〉 소득종류별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소득의 종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요건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 중 실제 지급경비(이자 제외) 10,700유로를 한도로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급이자는 이후 10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함
농업소득	2017년 기준, 결손금 중 108,904유로를 한도로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후 6년 동안 농업소득에서 6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함
채권 · 증권 양도소득	채권 · 증권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연도 또는 이후 10년 동안 같은 소득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함
상업적 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업적 소득 중 비인적용역 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후 6년 동안 같은 소득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함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사회보장분담금 공제

사회보장분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 CSG)은 프랑스의 거주자 소득에 부가해서 부과하는데, 2018년 기준 소득세에 9.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납부한 사회보장분담금 중 6.8%는 '가족단위 순종합소득금액' 산출 시 공제한다. 나머지 2.4% 사회보장분담금을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3. 특별비용공제

프랑스「민법」제205조, 제211조 및 제367조에 의하면, 노약자 또는 유약자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양료는 지급자에게 비용으로 공제되고 지급받는 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 법원 등의 결정에 따라 자녀양육비를 지출한다면 자녀 1인당 연간 5,795유로를 한도로 특별비용공제가 가능하다.[826]

그러나 성인 자녀 중 독신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1년에 자녀 당 5,795유로를 한도로 한다.[827]

또한, 75세 이상 부모에 대한 부양비 명목으로, 1인당 3,445유로를 한도로 특별비용공제

826) CGI, 제208조.
827) CGI, 제196 B조.

가 가능하다.[828]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인당 2,376유로 한도로 특별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795유로를 한도로 특별비용공제가 가능하다.[829]

4. 가족단위 Parts 계산

프랑스 소득세제상 과세단위는 가족단위이다. 그런데 각 가족 수(parts)를 계산하는데, 1인 1점(parts)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세법상 가족단위 가족 수 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Ⅵ-2〉 가족과 생활하는 납세자의 parts 계산표

가족 상황	혼인 또는 계약결혼	독신 또는 동거	부모로서 자식과 떨어져 있는 경우
자녀: 없음	2	1	1.5
자녀: 1명	2.5 (2+0.5)	1.5 (1+0.5)	2
자녀: 2명	3 (2+0.5+0.5)	2 (1+0.5+0.5)	2.5
자녀: 3명	4 (2+0.5+0.5+1)	3 (1+0.5+0.5+1)	3.5
자녀: 4명	5 (2+0.5+0.5+1+1)	4 (1+0.5+0.5+1+1)	4.5

(적용 사례)

가족 상황	Parts 합계
A와 B가 혼인하고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2.5
A와 B가 혼인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각각 1
A와 B가 혼인하고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4
A와 B가 계약결혼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2
A는 성년이 된 자식을 두고 있으나 떨어져 사는 경우	1.5
A와 B는 혼인하고 성년이 된 자식 1명과 함께 사는 경우	2 (반면 성년이 된 자식 1명에 대한 공제 혜택은 있음)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828) CGI, 제156조 제2항.
829) 관련 판례: CE, n° 2012162, 2012.12.29.

5. 적용세율

프랑스 가족단위 각 1part에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830]

〈표 Ⅵ-3〉 1part에 적용하는 소득세 세율표

(단위: 유로, %)

과세표준	적용세율
9,807	0
9,807 초과 27,086 미만	14
27,086 초과 72,617 미만	30
72,617 초과 153,783 미만	41
153,783 초과	45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계산 사례〉

납세자 A는 2018년도 순(Net) 급여소득이 30,000유로라고 하자. A는 배우자가 있으나 자녀는 없다. 한편,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 A는 근로소득공제 10%를 적용받는 것을 선택하였다. 납부할 세액은 아래 순서와 같이 계산한다.(단위: 유로)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30,000 - (30,000 × 10%) = 27,000

② 1Part당 소득금액:
[27,000 ÷ 2 Part (배우자 있고 부양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3,500

③ 1Part당 세액 계산 내역:
(9,807 × 0%) + [(13,500 - 9,807) × 14% = 517

④ A 납세자의 경우 2 Part이므로 총납부할 세액: (517×2 Part) = 1,034

830)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CGI, 제1609 nonies G조). 그러나 과세표준이 50,000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금·은·백금의 경우 10%, 기타의 경우에는 6%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표 Ⅵ-4〉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적용세율 (%)
50,001 ~ 60,000	2% × 과세표준 - (60,000-과세표준) × 1/20
60,001 ~ 100,000	2% × 과세표준
100,001 ~ 110,000	3% × 과세표준 - (110,000-과세표준) × 1/10
110,001 ~ 150,000	3% × 과세표준
150,001 ~ 160,000	4% × 과세표준 - (160,000-과세표준) × 15/100
160,001 ~ 200,000	4% × 과세표준
200,001 ~ 210,000	5% × 과세표준 - (210,000-과세표준) × 20/100
210,001 ~ 250,000	5% × 과세표준
250,001 ~ 260,000	6% × 과세표준 - (260,000-과세표준) × 25/100
260,001 ~	6% × 과세표준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6. 고소득자의 추가적 소득세 부담

조세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 이외에 부가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한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Ⅵ-5〉 초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추가적 소득세 세율표

납세자 유형별	
독신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250,001유로부터 500,000유로까지 : 3%	과세대상 소득이 500,000유로부터 1,000,000유로까지 : 3%
과세대상 소득이 500,000유로 초과분 : 4%	과세대상 소득이 1,000,000유로 초과 : 4%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계산 사례〉

납세자 A가 600,000유로를 받았다. 독신자이다. 이 경우 A가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500,000 - 250,000) × 3% + (600,000 - 500,001) × 4%] = 11,500유로

7. 소득공제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한 뒤, 추가적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소득공제금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멸한다. 주된 소득공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Ⅵ-6〉 소득공제 산출 및 한도

구분	소득공제 산출방법 및 한도
구제헌금	(0.75× 531유로) + (0.66× 지출액 -531유로). 단, 두 번째 항목은 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함
장학기부	61유로(중학교까지 1인당), -153유로(고등학교), -183유로(대학교)
언론을 위한 기부	지출액의 30%(단, 1인당 1,000유로, 부부인 경우 2,000유로 한도)
노약자를 위한 기부	지출액의 0.25%(단, 1인당 2,500유로, 부부인 경우 5,000유로 한도)
이혼가정을 위한 기부	지출액의 0.25%(단, 35,000유로 한도)
문화재산 취득을 위한 기부	지출액의 0.4%(한도 없음)
역사적 기념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기부	지출액의 0.18%(단, 20,000유로 한도)
산림유지를 위한 기부	지출액의 0.18%(단, 1인당 700유로 부부인 경우 1,400유로 한도)
메세나(mécénat)를 위한 기부	지출액의 0.6% (단, 해당 기업 매출액의 0.005%를 한도)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8. 세액공제

가족단위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확정된 뒤, 법령에서 정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할 세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초고소득자의 경우에는 10,000유로까지 세액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표 Ⅵ-7〉 세액공제 산출 및 한도

구분	세액공제 산출방법 및 한도
무의탁 아동 돌봄 지출	(0.5×지출액). 단, 1년 2,300유로를 한도로 하며, 해당 아동은 6살 이내이어야 함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수리를 위한 지출	(0.25×지출액). 단, 1인당 5,000유로를 한도로 하며, 부부인 경우 10,000유로 한도로 함
가사 도우미 지출	(0.5× 지출액). 단, 1년 12,000유로를 한도로 하며, 아동 1인당 1,500유로를 추가하되, 총 1년 15,000유로를 한도로 함
노동조합 및 국가 또는 국방을 위한 회비	(0.66×지출액). 단, 과세표준금액의 1%를 한도로 함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이를 종합하면 다음 소득세 계산흐름도와 같다.

〈표 Ⅵ-8〉 소득세 계산흐름도

① 납세의무자
– 개인 (personne physique) – 가족 구성원 (foyer fiscal) – 프랑스 거주자 (domociliée en France) – 프랑스 원천소득이 있는 자 (disposant de revenus en France)
② 과세대상 소득
–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처분가능소득 revenu disponible, 순소득 revenu net)
③ 총종합소득(소득종류별)
– 근로소득 – 양도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농업소득 – 상업 및 산업소득 – 이사의 소득 – 비상업소득
④ 순종합소득
Σ 카테고리별 소득 (–) 이월결손금 (–) 사회부담금 (CGI) (–) 종합소득에 대응되는 비용

〈표 Ⅵ-8〉의 계속

⑤ 산출세액 산출방법 및 순서
– 개인별 순종합소득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가족단위 순종합소득 산출
– 1Part당 과세표준 산출
– 1Part당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적용하여 낼 세액 산출
– 가족단위로 낼 세액 산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추가 부담
– 납부할 세액 산출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9. 조세감면

프랑스 세금정책 목적상 창업기업, 연구기업, 면세지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831]

가. 창업기업

새롭게 기업을 창업(création d'entreprises nouvelles)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832]

1) 세금감면조건

①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이 산업 또는 상업 및 수공업 분야일 것(금융, 부동산 임대 등은 제외)
② 창업기업일 것(기존에 있던 기업의 다른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것이나 사업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은 제외)
③ 해당 기업의 과세표준 금액 산출이 장부에 의의할 것(régime réel d'imposition)
④ 회계연도 말 기준 적어도 3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

831) 개인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832) 관련 규정: CGI, 제44 sexies조.

한편, 2007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위 조건 이외에 지역적으로 ⅰ) Zone d'aides à finalité régionale 또는 ⅱ) Zone de revitalisation eurale et urbain 에 설립될 것이 추가되었다.

2) 세금감면 내용

① 창업 후 24개월까지: 100% 감면
② 창업 후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75% 감면
③ 창업 후 37개월부터 48개월까지: 50% 감면
④ 창업 후 49개월부터 60개월까지: 25% 감면

한편, 2000년 1월 이후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의 상한선을 20만유로로 제한하였다.

나.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11월 16일 정부와 연구협정(projet agrée)을 체결한 기업은 법령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833]

1) 세금감면조건

① 정부와 연구협정을 체결한 기업
②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단지(zone de recherche et de développement)에 설립될 것

2) 세금감면 내용

① 창업 후 36개월까지: 100% 감면
② 창업 후 37개월부터 80개월까지: 50% 감면

833) 관련 규정: CGI, 제44 undecies조.

한편, 세금감면 금액의 상한선은 공제받고자 하는 연도와 그 이전 2개 연도의 합계액인 20만유로에 한정한다.[834]

다. 면세지역 투자기업

정부가 지정하는 면세지역(zone francie)[835]에 설립한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836]

1) 세금감면 조건

① 2020년 12월 31까지 정부가 고시한 3개 면세지역에 투자할 것
② 산업 및 상업활동과 수공업 분야의 사업을 할 것(금융, 부동산 임대 등은 제외)
③ 수입금액은 1천만유로 이하, 자산규모 1천만유로 이하, 종업원 50인 이하인 기업에 한정된다. 단, 수입금액의 25% 이상을 종업원 250인 이상이면서 외형규모 5천만유로이거나 자산규모 4,300만유로 이상인 기업으로부터 얻지 않을 것

2) 세금감면 내용

① 창업 후 60개월까지: 100% 감면
② 창업 후 61개월부터 120개월까지: 60% 감면
③ 창업 후 121개월부터 144개월까지: 40% 감면
④ 창업 후 145개월부터 169개월까지: 20% 감면

한편, 세금감면 금액의 상한선은 매년 10만유로이며 종업원 1인당 5,000유로를 추가한다. 한편, 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세금감면 상한선은 50,000유로다.

834) 예를 들면, 2019년의 세금공제 상한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0만유로라는 의미다.
835) 프랑스 정부는 1996년, 2003년 및 2006년 3차례에 걸쳐 면세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836) 관련 규정: CGI, 제44 octies조.

Ⅶ 신고, 납부 및 징수체계

프랑스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는 대부분 조세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거주자가 외국으로 주소를 옮기기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세를 부과하고, 조세피난처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75%로 우선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신고 및 납부

프랑스 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3월 20일 이전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837] 그러나 부령(arrêté)에서는 각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신고기한을 별도로 두고 있다.[838]

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있는데, 이는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월 15일 및 5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각각 3분의 1씩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후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300유로 이하이면 9월 16일까지, 300유로 초과일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839]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부동산 양도가 있는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소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840]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세액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해 9월 15일 이후에 미납분, 부족분에 대한 고지행위가 이루어진다.

자본소득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자는 신고서식 2042 N 또는 2042 S를 작성하고, 이를 2042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837) CGI, 제175조. Les déclarations doivent parvenir à l'administration au plus tard le 1er mars. Toutefois, les déclarations souscrites par voie électroniq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649 quater B ter doivent parvenir à l'administration au plus tard le 20 mars, selon un calendrier et des modalités fixés par arrêté.

838) 이에 따르면, 2018년도 소득의 경우, 제1호 내지 제19호 Départements에 거주하는 자 및 비거주자는 2019년 5월 22일까지, 제20호 내지 제49호 Départements에 거주하는 자는 2019년 5월 29일까지, 제50호 내지 제976호 Départements에 거주하는 자는 2019년 6월 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고가 한꺼번에 몰려서 업무에 혼잡을 줄 우려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https://www.impots.gouv.fr/portail/www2/minisite/declaration/je-declare-mes-revenus-en-ligne.html).

839) 매년 부령(arrêté)에 따라 납부기한이 달라진다.

840) CGI, 제150 VG조 제1항 제3호.

2. 소득세 신고납부 위반 시 가산세 세율

가.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의 경우

무신고와 지연신고의 경우에는 월 0.75%에 해당하는 이자에 상당한 가산금과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만일 처음 요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40%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그다음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80%의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한편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미첨부되었을 경우에는 1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보정요구 이후에도 역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841]

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한 월의 첫 일부터 '경정통지서'의 마지막 날까지에 대해 매월 0.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악의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법을 남용하거나 탈세한 경우에는 8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 무납부 또는 지연납부의 경우

소득세의 경우 무납부에 대해서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라. 국세환급금과 환금가산금

만일 납세자가 관련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신고 시 또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매달 0.4%의 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환급받는다.[842]

3.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프랑스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소멸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연도가 지난 후 3년째 해의 12월 31일까지다.[843] 종전에는 소규모사업자 및 비상업소득자를 위한 협의과세제도(forfait)가 있었으나 최근 폐지되었다.

841) CGI, 제1729 B조.
842) LPF, 제208조.
843) LPF, 제L 169조

4. 출국세

출국세는 2011년 7월 29일 법률에 따라 공격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조세일반법」제48조를 신설하여 도입하였다. 2011년 3월 3일 이후 프랑스에서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특정회사의 1% 이상이거나 80만유로(당초에는 130만유로이었으나, 2013년 세법 개정 시 EU 회원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기준금액을 낮추었다)인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출국세를 부과한다.

적용대상자는 출국일 15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당초에는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의 합계가 6년 이상이었음).

과세표준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적용세율은 12.8%이고 여기에 17.2%의 사회보장부담금이 추가된다.[844]

5. 원천징수

2018년 1월 1일부터는 투자소득의 과실이 일정하게 고정된 자본소득(예: 이자)에 대해 12.8%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완납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방법과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한 뒤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845]

그러나 투자소득의 과실이 일정하지 않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 12.8%를 적용하고, 완납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방법과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한 뒤,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위 경우와는 달리 받은 금액의 40%는 공제하고 아울러 사회보장부담금 CSG(배당금액×6.8%)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양도소득을 얻은 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1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완납적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완납적 원천징수 세율은 총 30%로, 소득세 12.8% 및 사회보장분담금 17.2%를 합한 것이다.[846]

---

844) Bruno Gouthière, op.cit, pp. 148~153.

845) 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분담금 17.2%가 부가되어 징수한다.

846) 2018년 이전에는 자본소득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경우와 변동된 경우를 구분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달리 적용했었으나, 2018년 세법 개정으로 단일화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절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① 완납적 원천징수 방법과 ② 공제방식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공제방식이란 자본소득금액에다가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17.2% + CSG 분담금 비율 중 6.8%)을 곱하고 자본소득공제

〈계산 사례〉

납세의무자 A는 2018년도 배당소득 20,000유로가 있다. 이 경우 A가 취할 절세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소득세 종합과세
- ㉠ 배당소득: 20,000
- ㉡ 사회보장분담금: 20,000 × 17.2% = 3,440
- ㉢ CSG: 20,000 × 6.8% = 1,360
- ㉣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
  20,000 − 공제액 8,000(총배당액 × 40%) − CSG 1,360 = 10,640
- ㉤ 적용세율 (41%로 추산): 10,640 × 41% = 4,362
- ㉥ 사회보장분담금 포함 세금부담 총액: 4,362 + 3,440 = 7,802

② 완납적 분리과세
- ㉠ 배당소득 20,000 ×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12.8% = 2,560
- ㉡ 사회보장분담금: 20,000 × 17.2% = 3,440
- ㉢ 사회보장분담금 포함 세금부담 총액: 2,560 + 3,440 = 6,000

※ CSG는 종합소득에 적용하고, 분리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CSG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배당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 A는 ②의 완납적 분리과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조세일반법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표 Ⅶ-1〉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구분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프랑스 내 지점 소득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점의 과세표준에 12.8% 세율을 적용(CGI, 제115 quinquies 조)
연예인 · 체육인 소득	프랑스에서 얻은 소득의 15%, 단, 조세피난처(CGI, 제238-OA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75%(CGI, 제182 B조)

(자본소득금액의 40%)을 공제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확정한 뒤, 여기에 다시금 CSG 분담금 비율 중 6.8% 금액을 빼내고 난 금액에 41%의 세율을 곱하여 사회보장분담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합한 금액이 앞서 설명한 완납적 원천징수 방법인 〈소득세 12.8% + 사회보장분담금 17.2%〉보다 적다면, 납세의무자는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CGI, 제28조).

〈표 Ⅶ-1〉의 계속

구분	원천징수
인적용역소득	프랑스에서 얻은 소득의 15%, 단, 조세피난처(CGI, 제238-OA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75%(CGI, 제240조)
배당소득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액에 12.8% 세율을 적용(CGI, 제187조). 단, 조세피난처(CGI, 제238-OA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75%(CGI, 제240조)
이자소득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액에 12.8% 세율을 적용(CGI, 제187조). 단, 조세피난처(CGI, 제238-OA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75%(CGI, 제125 A조 제3항)
예술인 소득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액에 15% 세율을 적용(CGI, 제182 B조). 단, 조세피난처(CGI, 제238-OA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75%(CGI, 제125 A조 제3항)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6. 최저한세

당초 비거주자에 한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2015년 12월 17일 법률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제도가 폐지되었다.

7. 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 이외에, 해당 소득에 대해 일정률을 곱한 사회보장분담금 17.2%[847]가 더해진다.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9.7%(CSG 9.2% + CRDS 0.5%)을 부담한다. 한편, 부동산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의 변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848]

847)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9.2% + 연대세(prélèvement social, PS) 7.5% + 사회의 부채상환을 위한 기여금(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0.5%)]

848) Gervais Morel, *Fiscalité, Placements & Réductions d'impôt(제30판)*, EYROLLES, 2019.

〈표 Ⅷ-2〉 사회보장 분담금 변천 내역

(단위: %)

연도	사회보장분담금 비율
1996년 2월 1일 이전 취득분	0
1996년 2월 1일 ~ 12월 31일	0.5
1997년 1월 1일 ~ 12월 31일	3.90
1998년 1월 1일 ~ 2004년 6월 30일	10.0
2005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11.0
2009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12.1
2011년 1월 1일 ~ 2011년 9월 30일	12.3
2011년 10월 1일 ~ 2012년 6월 30일	13.5
2012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15.5
2018년 1월 1일 이후	17.2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8. 근로장려세제

프랑스 근로소득장려세제(Prime Pour l'Emploi, PPE)는 2002년도에 신설되었는데, 2016년 최저통합급여(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와 합쳐지면서, Prime d'activité(PA)로 변경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최저임금 근로자(SMIC)이다.

종전의 PPE 제도는 세액공제 형태의 지원방식이었으나, 현재 PA 제도는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PA 제도의 적용대상은 18세 이상의 근로자 중 월 기준 1,500유로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이다(다만, 실습생이나 학생근로자의 경우 월 기준 893.25유로 이하의 급여).[849]

새로운 근로장려세제인 PA 적용대상자는 최대 매달 531.10유로까지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단위 과세제도처럼, 가족의 수가 많을 경우 수당지급 한도는 높아진다.

849) 이 경우 급여기준 금액은 파트타임 형태든 종일근무 형태를 가리지 않고, 실제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제1편 총론]

제2장 OECD 회원국의 소득세 통계

국내문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웹사이트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Tax Database 검색일자: 2019.3.12.
Revenue Statistics 검색일자: 2019.3.11., 2019.3.12.

[제2편 조사대상 국가별 개인소득세 제도]

제1장 미국

국내문헌

김기영, 「비거주자 전환시 출국세 도입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5호, 2013. pp.196~203.

김재원 ,「미국法源에의 체계적 접근」, 제20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691.

안종석·구자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p.21, p.25, p.31.

윤인숙,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미국』, 한국법제연구원, 2018. p.37, p.47.

이창희, 『미국 법인세법』, 박영사, 2018, p.11.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196, p.216, p.390.

장덕렬, 『미국세무의 이론과 현실』, 조세통람사, 1993, p.12.

최원,「원천징수 개념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제11권 2호, 2011.
홍완식·김수용·최혜선,「미국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2010. pp.5~6, p.7,

해외문헌

田中英夫 編,『英米法辞典』, 東京大學 出版部, 1991, p.147.
Sheldon D.Pollack, *The First National Income Tax, 1861-1872,* 2014, pp.1~20.
Daniel Q. Posin & Donald B.Tobin, *Principles of Federal Income Taxation,* 2003, pp.13~17.
Lawrence Howard Selzer, *The Personal Exemptions in the Income Tax,* 1968, pp.43~44.
Scott Hollenbeck and Maureen Keenan Kahr, *Ninety Years of Individual Income and Tax Statistics, 1916-2005,* 2007, p.2.
Kevin E. Murphy·Mark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19, pp.16-5 ~ 16-6, p.8~11, p.15~29.

웹사이트

CATO INSTITUTE,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tax-policy-under-president-bush, 검색일자: 2019.1.15.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p5307.pdf, 검색일자: 2019.1.28.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2/WH_CuttingTaxesForAmericanWorkers_Feb2018.pdf, 검색일자: 2019.1.2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tax-years, 검색일자: 2018.12.27.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taxation-of-nonresident-aliens-1, 검색일자: 2018.12.27.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검색일자: 2019.1.29.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newsroom/interest-on-home-equity-loans-often-still-deductible-under-new-law, 검색일자: 2019.1.2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i6251.pdf, 검색일자: 2018.3.13.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n746.pdf, 검색일자: 2019.3.15.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i8854.pdf, 검색일자: 2019.3.4.
IBFD, J.G. Rienstra,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검색일자: 2018.11.30.
IBFD, J.G. Rienstra,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sec. 4., Country Analyses IBFD, 검색일자: 2019.3.15.
미국 조세합동위원회, https://www.jct.gov/publications.html?func=startdown&id=5093 검색일자: 2019.1.28.
주 휴스턴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5649/view.do?seq=13091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19.1.28.

제2장 일본

국내문헌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p.36~37, p.47, p.62, p.79.
———,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pp.36~37.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1호-일본 조세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7. p.137.
안종석·김정아·구자은·정경화,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세법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p.48~51
오윤, 『세법의 이해』, 박영사, 2018, p.228.
———, 『세법원론』, 한국학술정보, 2018, pp. 458~459.
———, 「한국과 일본의 조세법률주의 비교연구」, 『法學論叢』 제26권 제4호, 2009, pp.122~130.
은민수, 「칼 샤우프의 조세개혁 실패와 일본의 저부담 조세구조의 형성」, 『아태연구』 제22권 제4호, 2015, p.130.
황남석, 「일본의 소득세법 제정과정에 관한 소고」,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2013, pp.12~16.
홍범교·송은주·정경화,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12.

해외문헌

도쿄 세리사회, 『외국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의 세금과 세리사제도』, 2017.11, p.2.

John W Darcy, *Japan Master Tax Guide*, Wolters Kluwer, 2017/18, pp.193~216.

웹사이트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http://www.kfs.go.jp/introduction/index.html, 검색일자: 2018. 11.7.

일본 국세청, 「세금의 역사」, https://www.nta.go.jp/taxes/kids/hatten/page16.htm, 검색일자 2018. 11. 5.

일본 국세청, 「シャウプ권고의 재고」,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kenkyu/backnumber/journal/09/pdf/09_05.pdf, 검색일자: 2018. 12.3.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20.htm, 검색일자: 2018.11.22.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00.htm, 검색일자: 2018.12.04.

일본 국세청, 「No.2260 소득세의 세율」,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검색일자, 2018. 12.5.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0.htm, 검색일자: 2018.12.11.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13.htm, 검색일자: 2019.1.7.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024.htm, 검색일자 2019.1.1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osirase/9205.htm, 검색일자 2019.1.10.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00.htm, 검색일자: 2019.1.15.

일본 국세청, 「급여소득자와 세금」,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2_1.htm, 검색일자: 2019.1.18.

일본 국세청,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표(월간표)」,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zeigakuhyo2018/01.htm, 검색일자: 2019.1.18.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04/06.htm, 검색일자: 2019.2.20.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50.htm, 검색일자: 2019.2.25.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615.htm, 검색일자: 2019.3.5.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00.htm, 검색일자: 2019.3.5.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20.htm, 검색일자: 2019.3.12.
일본 민주당, 「세제개정 과정의 개혁」, http://www1.dpj.or.jp/policy/manifesto/seisaku 2009/10.html, 검색일자: 2019. 3.14.
일본 세제조사회,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9/1222zeiseitaikou.pdf, 검색일자: 2018.12.3.
일본 재무부, 「각 연도별 세제개정」,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 /index.html, 검색일자 2018. 11. 7.
일본 재무부, 「인적공제 개요」,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3. htm(검색일: 2018. 11. 10.
일본 재무부, 「기타소득공제제도의 개요」,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 /income/b03.htm, 검색일자: 2018. 11. 10.
일본 재무부,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10.htm, 검색일자: 2019. 1. 3.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tins/n04_3.pdf, 검색일자 2019.1.10.
일본 재무부, 「부양공제의 재검토에 대해서」,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 /income/047a.htm, 검색일자: 2019. 3. 14.
일본 내각부, 「아동수당 Q&A」, 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ippan.html, 검색일자: 2019.3.12.
일본 법률정보, http://law.e-gov.go.j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0-26」,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 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EC%9D%BC%EB%B3%B8-2011%EB%85%84-%EC%84%B8%EB%B2%95%EA%B0%9C%EC%A0%95%EB%8C%80%EA%B

0%95-%EB%B0%9C%ED%91%9C/203956, 검색일자: 2018.12.3.
IBFD, Japan - 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검색일자 2018.12.6.

제3장 호주

국내문헌

김재진,「Henry Tax Review - Australia's Future Tax System-」,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1.
안종석,『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홍범교・송은주・정경화,『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해외문헌

ATO, "Individual Tax Return Instructions 2018," 2018. 5.
CCH, "Australian Taxation Law," Wolters Kluwer, 2012.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Wolters Kluwer, 2014.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Wolters Kluwer, 2015.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Wolters Kluwer, 2018.
Luc de Broe, "General Report on The tax treatment of transfer of residence by individuals," IFA Cahiers, 2002.
Richard Eccleston, "The Tax Reform Agenda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013.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8.3.9.," Country Analyses IBFD.
호주 국세청, "ATO fact sheet, The Sharing economy and tax," 2017.
호주 국세청, "A Brief History of Australia's tax system," 2016.
호주 재무부, "Tax Reform: Road Map," 2012. 5.

웹사이트

ATO tax rate, https://atotaxrates.info/tax-offset/senior-australians-tax-offset/, 검색일자: 2019. 1. 28.
Australia Human service Departmen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enablers/working-credit/29721#a3, 검색일자: 2018. 12. 11.

Australia Human service Departmen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ubjects/payments-families#a1, 검색일자: 2019. 3. 12.

Australian Human Service Department,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enablers/working-credit/29721, 검색일자: 2019. 3. 12.;

CCH, https://iknow.cch.com.au/topic/tlp1703/overview/non-assessable-non-exempt-income, 검색일자: 2018. 12. 13.

Income Tax Rates Act 1986,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189, 검색일자: 2019.03.31.

ITAA 1936,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336, 검색일자: 2019. 03.31.

ITAA 1997,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336, 검색일자: 2019. 03.31.

T. Toryanik,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sec. 1.10.3, Country Analyses IBFD.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290, 검색일자: 2019.03.3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 검색일자: 2019.01.0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Going-overseas/When-you-leave-Australia/, 검색일자: 2018. 12. 1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183-day-test/, 검색일자: 2018. 12. 4.

호주 국세청, A Brief History of Australia's tax system, 2016,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economic-roundup-winter-2006/a-brief-history-of-australias-tax-system/, 검색일자: 2018. 9. 21.;

호주 국세청, ATO Interpretative Decision ID 2001/381,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AID/AID2001381/00001, 검색일자: 2019.03.3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income-and-deductions-for-business/deductions/, 검색일자: 2018. 12. 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Capital-gains-tax/In-detail/Calculating-a-capital-gain-or-loss/Capital-gains-withholding—Impacts-on-foreign-and-Australian-residents/, 검색일자: 2019. 1. 2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Capital-gains-tax/In-detail/Calculating-a-capital-gain-or-loss/Capital-gains-withholding—Impacts-on-foreign-and-Australian-residents/?anchor=Clearancecertificates#Clearancecertificates, 검색일자: 2019. 3. 1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interest-and-penalties/, 검색일자: 2019. 1. 2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interest-and-penalties/penalties/failure-to-lodge-on-time-penalty/, 검색일자: 2018. 12. 1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interest-and-penalties/penalties/failure-to-meet-other-tax-obligations/, 검색일자: 2018. 12. 1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d/self-assessment-and-the-taxpayer/, 검색일자: 2019. 1. 1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183-day-test/, 검색일자: 2018. 12. 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domicile-test/, 검색일자: 2018. 12. 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resides-test/, 검색일자: 2018. 12. 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detail/Residency/Residency---the-superannuation-test/, 검색일자: 2019. 1. 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Investing-in-Australia/Interest-unfranked-dividends-and-royalties/, 검색일자: 2019. 1. 1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Work-out-your-tax-residency/, 검색일자: 2018. 12. 0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in-detail/your-notice-of-assessment/?page=3, 검색일자: 2019. 3. 1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growing-your-super/adding-to-your-super/tax-on-contributions/, 검색일자: 2019. 1. 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your-super/Super-contributions---too-much-can-mean-extra-tax/?page=3#Non_concessional_contributions, 검색일자: 2019. 1. 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Withdrawing-and-using-your-super/Withdrawing-your-super-and-paying-tax/?anchor=Howtaxappliestoyoursuper, 검색일자: 2019. 1. 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Law/#Law/table-of-contents?category=A, 검색일자: 2019. 3. 1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General-interest-charge-(GIC)-rates/, 검색일자: 2019. 1. 2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Shortfall-interest-charge-(SIC)-rates/, 검색일자: 2019. 1. 2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Tax-professionals/Prepare-and-lodge/Tax-agent-lodgment-program/Tax-returns-by-client-type/Substituted-accounting-periods/, 검색일자: 2019. 3. 8.

호주 국세청, IT 2167,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ITR/IT2167/NAT/ATO/00001, 검색일자: 2019.03.31.

호주 국세청, IT 2650 'Income tax: residency - permanent place of abode outside Australia', 31~42,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ITR/IT2650/NAT/ATO/00001, 검색일자: 2018. 12. 4.

호주 국세청, IT 2681, Example 3,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locid=ITR/IT2681/NAT/ATO, 검색일자: 2018. 12. 4.

호주 국세청, NAT 1024, https://www.ato.gov.au/uploadedFiles/Content/MEI/downloads/Daily-casual-workers-tax-table-2018-19.pdf, 검색일자: 2019. 1. 10.

호주 국세청, Tax Ruling 93/25,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TXR/TR9325/NAT/ATO/00001&PiT=99991231235958, 검색일자: 2019.03.31.

호주 법률사이트,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282, 검색일자: 2018. 12. 03.

호주 재무부,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economic-roundup-issue-2-2013-2/economic-roundup-issue-2-2013/tax-policy-formulation-in-australia/, 검색일자: 2019. 1. 29.

호주 재무부, https://www.finance.gov.au/superannuation/arrangements-for-australian-government-employees/, 검색일자: 2019. 1. 4.

제4장 영국

국내문헌

이동규 · 김준현 · 정경화, 『거주자 판정 사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8.

해외문헌

Adam, Stuart, James Browne, and Christopher Heady, *Taxation in the UK,* 2010.

Barker, William B., "A Comparative Approach to Income Tax Law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46, 1996.

Brewer, Mike and James Browne, "The effect of th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on labour market participati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riefing Note No. 69, 2006,.

Gelardi, Alexander M. G., "The New United Kingdom Statutory Residence Rules," *International Tax Journal*, May-June 2014.

HMRC, Guidance note: Statutory Residence Test(SRT), Published August 2016.

_____,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pril 2017.

_____,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18.

_____,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UK Finalised annual award in 2015-16, 2017.

_____, Penalties for inaccuracies in returns and documents, Compliance checks series - CC/FS7a, 2018.

Jeffrey-Cook, John, "William Pitt and his Taxes," reprinted from *British Tax Review*, 4, Sweet & Maxwell, 2010, p.386.

Kluwer, Wolters,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15-16*, Croner-i, 2015.

Lyon, Ann,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United Kingdom,*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3.

Seely, Antony, *Income tax: increases in the personal allowance since 2010,* House of Commons, 15 November, 2018.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Gift Aid and reliefs on donations, National Audit Office, 21 November 2013.

the Judicial Office International Team, The Judicial System of England and Wales A visitor's guide, Judicial Office, 2016.

웹사이트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uk_chaphead, 검색일자: 2019. 2. 4. 등

Citizensadvice, https://www.citizensadvice.org.uk/, 검색일자: 2019. 2. 19.

GOV.UK, https://www.gov.uk/, 검색일자: 2019. 2. 22. 등.

Pearson Education, http://catalogue.pearsoned.co.uk/, 검색일자: 2019. 2. 4.

UK FreeAgent, https://www.freeagent.com/, 검색일자: 2019. 2. 20.

www.parliament.uk, https://www.parliament.uk/, 검색일자: 2019. 2. 4.

제5장 독일

국내문헌

이동식, 「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 종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0, p.551

_____, 『독일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pp.140~141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법센터, 『자녀양육과 소득세법 : 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 세미나 자료집, 2007.

해외문헌

Dieter Birk, Steuerrecht 13. Auflage, C.F. Mülller, 2010, S. 184.

제6장 프랑스

국내문헌

안창남, 『프랑스 조세절차법 연구』, 한국세무사회, 2001.

_____,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 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이창희, 『세법강의(제15판)』, 박영사, 2017.

해외문헌

André NEURRISSE, "Histoire de la Fiscalité en France," *Economica*, 1996.

Bruno Gouthière, *Les Impôts dans les Affaires Internationales*(12édition), Francis Lefebvre, 2018.

Frédéric DOUET, *Précis de Droit Fiscal de la Famille*, LexisNexis, 2018.

Gervais Morel, *Fiscalité, Placements & Réductions d'impôt*(30e édition), EYROLLES, 2019.

Jean-Jacques Bienvenu & Thierry Lambert, *Droit Fiscal*(3e édition), puf, 2003, p.231.

_____, *Droit fiscal*, puf, 2018.

Jean Lamarque, Oliver Négrin, Ludouic Ayrault, *Droit Fiscal Général*, LexisNexis, 2016.

Martin Collet, *Droit fiscal*, puf, 2017.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Précis de Fiscalité 2014*(Tome 1), 2015.

웹사이트

www.conseil-etat.fr/Decisions-Avis-Publications/Decision.

www.legifrance.gouv.fr.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 제1권 -

발 행	2019년 3월 29일
발 행 인	김유찬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TEL: (044)414-2114(代)
홈 페 이 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 가	15,000원
조판및인쇄	디자인 범신
I S B N	978-89-8189-975-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